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072-10

정책보고서 2016-99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고경환·장영식·이기호·강지원·김솔휘·정영애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072-10

정책보고서 2016-99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고경환·장영식·이기호·강지원·김솔휘·정영애

【책임연구자】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솔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영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 생산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1.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이용자를 위하여

- 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승인번호 제117077호)입니다.

- 본 보고서에는 사회복지지출을 OECD 작성기준에 따라 공공, 법정,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과 사회보험지출(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로 구성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고용주의 법정급여(법정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
 -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라 함은 공공과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되며,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표현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민간기업(비 법정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공동체, 사회적기업, 모금기관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의 모금 및 후원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재원에 의한 사회복지지출로 구성
 - ※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 공공사회복지지출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혜택과 부담을 추가한 것으로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 사회적 급여에 대한 직접세, 이전소득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지출
 - ※ 순사회복지지출 = 총사회복지지출 + 조세혜택 - 조세부담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GDP 대비 비율 등은 국민계정 SNA2008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5년 통계는 확정치가 포함된 자료로 OECD에는 2018년에 확정치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 본 통계는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통계표의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음을 의미하며, 「0.0」은 단위 미만을 의미합니다.

□ 통계표의 수치는 소수점이 있는 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내용의 합과 총 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전화 02-6020-33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전화 044-287-8290

메일 socx@kihasa.re.kr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개요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25
제1절 공공부문 통계생산 기준 및 방법	27
제2절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	40
제3절 신규 및 변경 자료에 대한 검토	64
제3장 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69
제1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71
제2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76
제4장 사회복지지출 생산 과정과 결과	8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87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97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02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06
제5장 결론: 동향과 국제비교	117
제1절 추이와 동향	119
제2절 국제비교	121

참고문헌	127
부 록	131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33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188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194
부록 4. 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 매뉴얼(SOCX Manual)	214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database Manual)	261

표 목차

〈표 2-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28
〈표 2-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29
〈표 2-3〉 e-호조 결산자료 구조-예시	29
〈표 2-4〉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30
〈표 2-5〉 사회복지 분야(080)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31
〈표 2-6〉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32
〈표 2-7〉 주택부문 추계범위	33
〈표 2-8〉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34
〈표 2-9〉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35
〈표 2-10〉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37
〈표 2-11〉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38
〈표 2-12〉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38
〈표 2-13〉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39
〈표 2-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42
〈표 2-15〉 동일 Program에 대한 부처간 분류 기준의 차이(예시)	45
〈표 2-16〉 ALMP 중복계상으로 배제되는 항목 예시	46
〈표 2-17〉 누리과정 지원사업	47
〈표 2-18〉 누리과정 도입 과정	47
〈표 2-19〉 누리과정 지원 확대	48
〈표 2-20〉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변화	49
〈표 2-21〉 교육비특별회계(시도 및 지역교육청)	50
〈표 2-22〉 공립 유치원 회계(학교회계)	51
〈표 2-23〉 사립 유치원 회계	52
〈표 2-24〉 2015년 기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출	55
〈표 2-25〉 조정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변수	55
〈표 2-26〉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변화	67
〈표 3-1〉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73
〈표 3-2〉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75
〈표 3-3〉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5년)	78
〈표 3-4〉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5년)	79

〈표 3-5〉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81
〈표 3-6〉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81
〈표 3-7〉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82
〈표 3-8〉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와 기부금 수입 총액	83
〈표 3-9〉 2013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83
〈표 3-10〉 2015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복지영역 기부금 배분 규모 추계	83
〈표 4-1〉 일반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88
〈표 4-2〉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89
〈표 4-3〉 공적연금 지출규모	90
〈표 4-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90
〈표 4-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91
〈표 4-6〉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92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3
〈표 4-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93
〈표 4-9〉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4
〈표 4-1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5
〈표 4-11〉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6
〈표 4-12〉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97
〈표 4-13〉 퇴직연금 지출규모	97
〈표 4-1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98
〈표 4-15〉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98
〈표 4-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4-2015년)	100
〈표 4-17〉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1
〈표 4-18〉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01
〈표 4-19〉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02
〈표 4-20〉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3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04
〈표 4-22〉 제도별 기능별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5
〈표 4-23〉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106
〈표 4-24〉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108
〈표 4-25〉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10

〈표 4-26〉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5)	111
〈표 4-27〉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112
〈표 4-28〉 직접세율 추계결과	113
〈표 4-29〉 간접세율 추계결과	114
〈표 4-30〉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114
〈표 4-31〉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5

부표 목차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133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134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35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136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137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38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139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140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141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42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143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144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145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46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47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48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49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53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57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61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65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69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173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77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81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185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186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4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5
〈부표 30〉 OECD 국가의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6
〈부표 31〉 OECD 국가의 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7
〈부표 32〉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8
〈부표 33〉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9
〈부표 34〉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200
〈부표 35〉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	201
〈부표 36〉 공공사회복지지출	202
〈부표 3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5
〈부표 38〉 민간사회복지지출	208
〈부표 39〉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211

그림 목차

[그림 1-1]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생산 개념도	13
[그림 1-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기초 데이터의 논리모형	16
[그림 2-1]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비	60
[그림 4-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108
[그림 5-1]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액 추이	119
[그림 5-2]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비 추이	120
[그림 5-3]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2015)	121
[그림 5-4] 노령 지출과 노인 부양비(2013)	122
[그림 5-5] 보건지출과 기대여명(2015)	123
[그림 5-6] 가족 지출과 출산율(2015)	1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공공, 법정민간,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여 OECD 제공 및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함에 있음.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가간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기본통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립에도 핵심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OECD협정문 제3조에 따른 '권고의무'에 해당)임.

2. 작성기준 등의 변화

-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면에서 작성기준의 변경, 추계 범위의 변화가 발생함.
-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의 재원별 분류의 명확화
 - 기존의 매뉴얼(SHA1.0)에서는 재원을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정 매뉴얼(SHA2011)에서는 가입의 강제성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기존 체계 하에서의 '공공재원'과 '민영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정부·의무가입제도'로, 가계직접부담을 비롯한 나머지 재원(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을 포괄하여 민간재원으로 분류함.

- ALMP데이터베이스의 영역 변경
 -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Job sharing) 영역이 2014년 말부터 고용장려금의 하위 영역으로 편입됨.
 -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관련 지출도 포함예정.
- SNA2008을 적용한 국민계정(GDP) 자료 사용
 - 한국은행에서 SNA2008을 신규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계정(GDP) 자료를 사용.
- 맞춤형 보장급여 개편: 교육급여,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였고, 이는 맞춤형 급여제도라는 제도 명칭으로 시행(2015.7.20.)됨.
 -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별로 다층화함.
 - 주거급여만 '주거' 영역에 분리하고, 교육급여는 종전의 방식대로 '기타'에 포함.
 - 개별 급여에 대한 소관부처: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생계급여 등을 포함하는 그 외 급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함.
- 법정퇴직금의 포함범위 확대
 - 노령급여 : 법정퇴직금 중 정년퇴직자(0.6%)와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퇴직자(20%)의 퇴직금 포함.
- 병가급여 분류 개선
 - 직장의 병가급여는 직장의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로 분류함.
- 기능별 분류 개선
 - '산재보험(유족급여, 장의비)'과 보훈보상금(유족보상금)은 '근로무능력'에서 '유족'으로 분류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보건 범위 확대
 - 국민보건계정의 기존범위(민간비영리단체 및 기업)에 임의가입건강보험 추가.

3. 추계결과

- 2015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59.7조원으로 GDP 대비 10.21%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62.6조원으로, 중앙정부 45.7조원(73.0%), 지방자치단체 16.9조원(27.0%)으로 구성됨.
 - 사회보험의 지출규모는 96.3조원으로, 건강보험의 비중(49.2%)과 공적연금의 비중(35.8%)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5.1조원으로 GDP 대비 0.96%로 나타남.
 - 비자발적 퇴직자의 법정퇴직금(52.2%)과 퇴직연금(25.9%)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발민간사회복지지출은 31.5조원으로 GDP 대비 2.01%로 나타남.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민간모금기관 등, 사회적 기업, 공동체)로 구성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부문 91.7%, 제3섹터 8.3%로 나타남.

- 총사회복지지출은 206.3조원으로 GDP 대비 13.19%로 나타남.
 - 공공사회복지지출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5.3%),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7.3%) 순으로 나타남.

- 순사회복지지출은 204.3조원으로 요소GDP 대비 14.54%로 나타남.
 -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추계한 순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조세혜택(3.9%)에 조세부담(4.9%)을 공제한 99.0%로 나타남.

4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표 1〉 2015년도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총괄표

통계	구분	계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제도 및 재원				
공공사회 복지지출 (A)	계	159,738	42,348	4,822	9,206
	GDP 대비 비중	10.21	2.71	0.31	0.59
	일반정부지출 ¹⁾	62,568	10,818	1,201	5,765
	사회보험	96,343	30,952	3,621	3,208
	교통통신요금감면	826	578	-	233
법정민간 사회복지 지출(B)	계	15,082	12,084	-	338
	GDP 대비 비중	0.96	0.77	-	0.02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12,052	12,052	-	-
	출산전후휴가급여	811	-	-	-
	자동차책임보험	1,703	-	-	-
사회복지지출 (C=A+B)	계	174,819	54,432	4,822	9,544
	GDP 대비 비중	11.18	3.48	0.31	0.61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D)	계	31,481	654	21	585
	GDP 대비 비중	2.01	0.04	0.00	0.04
	기업부문	28,857	-	-	436
총사회복지 지출 (E=C+D)	계	206,300	55,086	4,843	10,129
	GDP 대비 비중	13.19	3.52	0.31	0.65
순사회복지 지출 ³⁾ (H=E-F+G)	계	204,282			
	요소GDP 대비 비중	14.54			
	조세부담(F)	10,164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418			
	간접세	8,745			
조세혜택(G)		8,145			
GDP		1,564,124			
요소GDP		1,405,345			

주: 1) 중앙정부지출과 지방자치단체지출을 합한 것임.
 2) 이중계산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순사회복지지출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제 1 장

서론

제1절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개요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개요

1.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개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을 따르고 있다. 현재 IMF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정통계기준은 2014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¹⁾) 이다. 재정을 살펴보는 방법은 다양하나 정부의 기능(function)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이 바로 OECD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COFOG²⁾는 정부의 기능을 ① 일반 공공행정, ② 국방, ③치안 및 질서, ④ 경제, ⑤ 환경 보호, ⑥ 주거 및 지역 사회 개발, ⑦ 보건, ⑧ 여가 및 문화& 종교, ⑨ 교육, ⑩ 사회보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능 분류는 각국의 정부가 어떤 영역에 투자하는지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적 이전(현금과 현물 급여) 수준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OECD SOCX이다.

OECD SOCX는 매뉴얼(Manual)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지출’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OECD는 각 국가에서 생산한 사회복지지출통계를 검증한 후 통계생산자와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2년에 1번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홈페이지는 자원(resource), 영역(branch), 지출 유형(type of expenditure),

1) 발생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현금의 수입-지출이 없더라도 미래에 국가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미지급금 등은 부채 항목에 추가.

2) COFOG는 원래 유엔 통계국에서 정부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작성한 것임. 이는 각 국 정부에 적용하여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음(UN Statistics division). ‘보건’은 의료장비 등 생산물, 외래서비스, 입원서비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타 보건 등 여섯 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며, ‘사회보장’은 상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아동, 실업, 주거, 사회적 배제, R&D 사회보장, 기타 사회보장 등의 아홉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유형(type of programmes), 측정(measure)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측정은 각 국가가 자국의 통화로 생산하여 제공한 사회복지지출통계를 국제비교 가능하도록 GDP, GNI, PPPs 등의 단위로 환산하여 보여준다.

매뉴얼(2017)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은 “불리한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이나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Willem Adema et al., 2017, para.10).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간 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거나 혹은 의무적인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Willem Adema et al., 2017, para.13).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가구 간 이전은 제외되고, 퇴직금은 노후소득 보장이나 실업보상이 아닌 경우 제외 된다³⁾.

또한 급여제공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은 제외한다. 이러한 이유는 당초 SOCX가 정부의 기능 중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재정 지출 중 실제로 사회적 이전으로 지출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만약 IMF GFS 기준에서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OECD SOCX의 기준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면, 이는 사회보장 기능 예산에 행정비용이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행정비용이 사회복지지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나 취업상담 및 알선,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등은 의사나 상담사, 교사가 없이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이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선정, 급여의 관리, 전달체계의 이용 등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행정 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대출금 역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정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의 대출금은 사회복지지출이 아니다. 이는 수급자에게 제공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재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업자금융자에서 정책금리를 제시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거나, 무이자대출을 지원했다면 이러한 이자차액보전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이는 정부로부터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된 사회적 이전이기 때문이다.

3) 퇴직금은 개인의 생애주기별 재분배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것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님.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퇴직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 및 실업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반영되어 일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고 있음(고경환 외, 2014, p.28).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당분간 퇴직금제도와 병행될 예정임.

이러한 매뉴얼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사회적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이전을 추출하여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한다. 이 때 자료는 일반정부(중앙+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공기업, 민간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은 세부사업별 지출항목의 기능코드와 급여코드를 입력한다. 기능코드는 영역(branch)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① 노령, ② 유족, ③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④ 보건, ⑤ 가족, 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⑦ 실업, ⑧ 주거, ⑨ 기타 사회정책으로 구분된다⁴⁾. 급여코드는 지출 유형(type of expenditure)으로 ① 현금 ② 현물로 구분한다.

이렇게 사회복지지출의 기초데이터가 마련되면, OECD SOCX 매뉴얼에서 제시한 산정식에 따라 더하거나 감하면서 지출통계⁵⁾를 생산하고, 기초데이터와 지출통계 산정식 근거자료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 SOCX 담당자는 단순히 제시된 데이터를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와 경향성 검토,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토, 개별 사업 단위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 및 학술자료(article or doctoral thesis)를 활용한 제도 검토 등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품질 검수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 사회복지지출 기초 데이터의 생산 개념도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 지출 통계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기초 데이터 생산 기준과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OECD 사회복지지출(SOCX)은 IMF의 재정통계(GFS) 중 보건(Health)과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의 두 영역을 기초로 한다. 이는 정부의 기능 중 보건 부문과 사회보장부문을 포함하여 OECD는 social expenditure로

4) SOCX의 하위 영역은 COFOG의 하위 영역과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배제가 '기타'로 별도 구분되어 있음. 또한 R&D 예산은 COFOG에서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적 이전이 아니므로 SOCX는 미포함.

5) OECD SOCX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지출을 측정하는 지출통계는 네 개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mandatory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voluntary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그러나 순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public+private mandatory social expenditure)과 총사회복지지출(total social expenditure)이 부수적으로 생산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총 여섯 개의 지출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명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사회복지지출이라고 명명하고 있다⁶⁾. 따라서 social expenditure를 ‘사회복지지출’이라고 할 때 이는 보건과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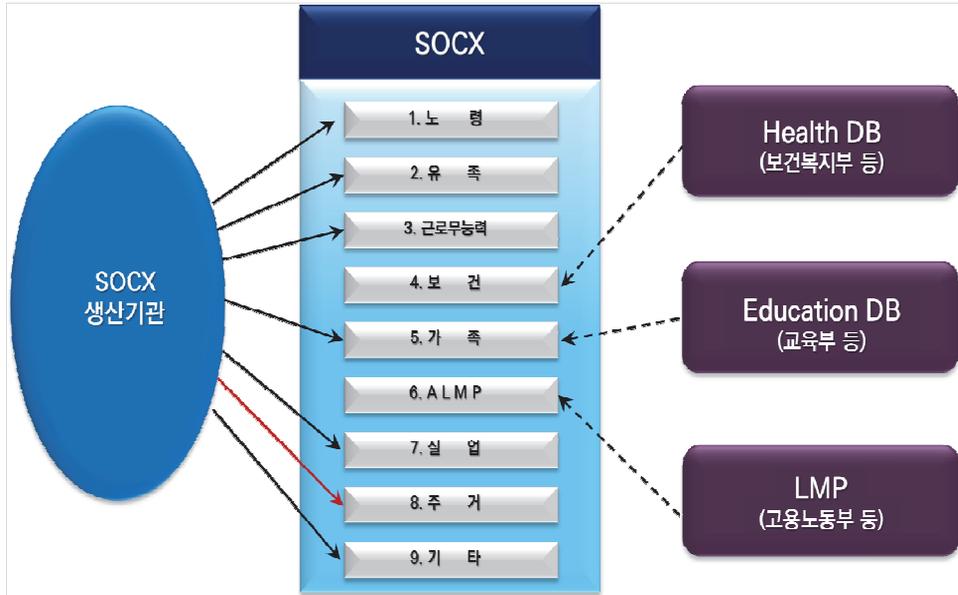
재정통계에서 보건이 별도의 정부 기능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OECD 역시 보건 통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으로 생산된 Health DB의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다.

유사하게 교육 역시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육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서비스’는 교육의 기능과 사회복지의 기능이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의무교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동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무교육이 되는 것에 강한 반발 역시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는 교육통계에 포함되지만,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OECD는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교육통계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해당하는 기초 통계를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한다. 한국에서 교육통계의 생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생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ECD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노동은 중요한 사회보장 영역의 하나이지만, 완전 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세계 각국이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OECD는 노동과 관련한 재정통계와 고용정책 및 고용지표 등이 결합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Labour Market Place database, LMP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지출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데이터베이스만 활용하고 있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고용보험 자료로 연구진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

6) 영어 번역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social welfare’를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로,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인 ‘social protection’을 ‘사회보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음. OECD는 보다 넓은 의미로 social expenditure로 표기하였으며, ‘사회복지’로 해석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가 동일 어휘를 사용하게 됨.

[그림 1-1]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생산 개념도



주: →는 직접 제공, - ->는 관련 전문DB로부터 원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과 교육(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독자적인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주체 및 생산 기관이 모두 상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여 OECD에 제출할 때 3개의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OECD에서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담당자가 개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신의 자료를 추출하여 포함한 값을 기준으로 최종 공표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할 때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잠정치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별 데이터베이스 생산 주체와 생산 기관 간 중복 검증 및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기준년도와 생산 방식, 공개하는 기준 및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데이터의 값이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지출 역시 기초 데이터의 값이 변경되고, 이는 지출 통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구진은 사회복지지출을 원화 기준으로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는 GDP와 GNI 등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지표를 산출하는데, 이 때 분모가 되는 GDP 혹은 GNI의 기준년도 및 기준자료의 변경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도 한다. 즉 본 연구에서 2010 GDP를 기준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생산했는데, 향후 GDP 기준년도가 변경되어 GDP 값이 달라질 경우 본 보고서에서 제출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통계와 다를 수 있다.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기초 데이터의 논리 모형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자료 입력, 자료 검토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자료 수집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지만,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자료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비영리민간부문의 기부금 등의 자료 확보가 사실상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다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요구한 자료는 동일한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자체 데이터셋(data set)을 구축한다. 공공부문은 중앙부처 예결산서 양식을 따르고 있어 소관, 회계, 계정, 분야/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출목, 지출세목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기능과 급여 형태를 추가로 입력하여 OECD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양식(OECD_KOR)의 자료를 구축한다. 민간부문은 수집에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료 수집과 함께 1) 기능, 2) 급여 형태, 3) 제도를 추가로 입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기초데이터 셋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체데이터 셋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검토한다. 이는 OECD SOCX 매뉴얼에 기초한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정부의 기능 중 '080 사회복지' 분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 부문별 사업의 하위 사업들의 내용을 확인한다. 이는

OECD KOR 데이터셋에서 기능별 분류를 입력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다음으로 080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업인지,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거나 의무적인 가입이 요구되는 제도인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060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바우처,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이재민구호 및 주택피해복구비 등은 080 사회복지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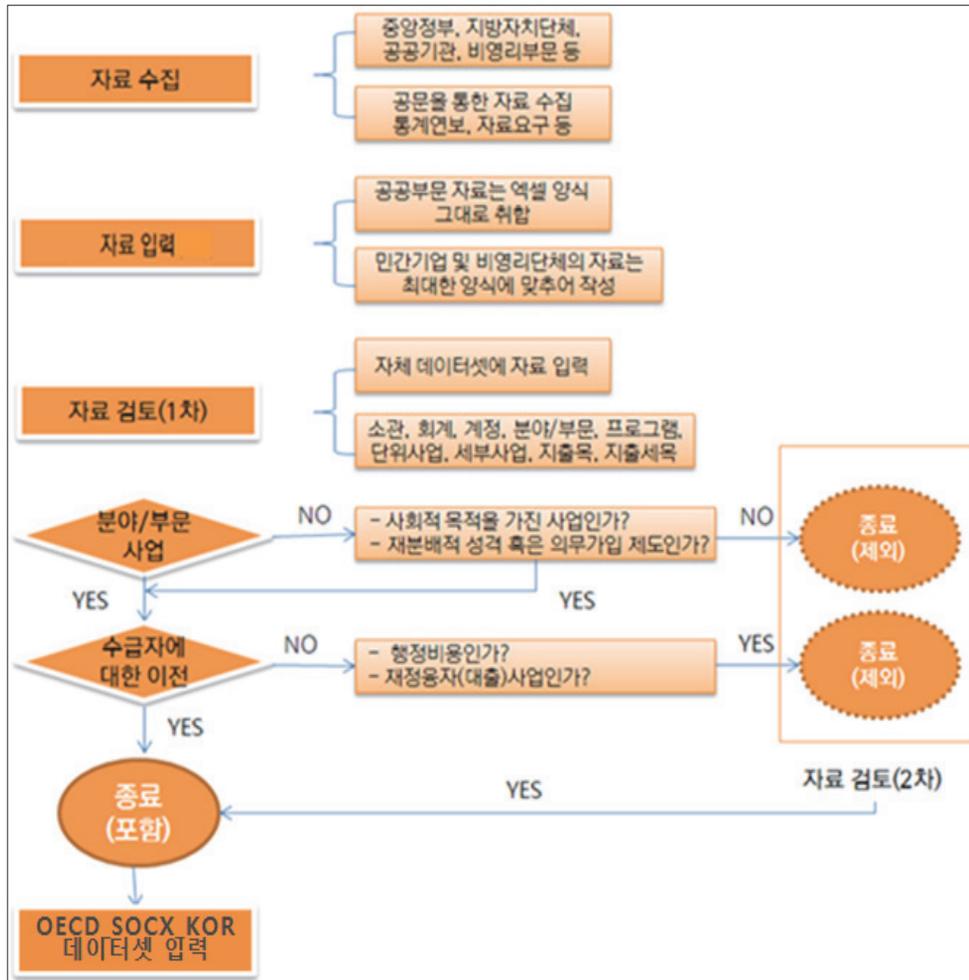
다년간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 제도는 기능 및 급여형태에 대한 자료가 이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는 주로 신규 및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 매년 신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의 검토 단계에서 연구진은 부처 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2015년에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셋에 입력된 자료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80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모든 사업이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는 사회적 이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행정비용이나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재정용자 사업 중 대출에 해당하는지, 행정비용인지 등을 확인하여 제외 대상 사업을 분류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난 자료만이 OECD_KOR 데이터셋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연구진은 분야 및 부문별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업과 수급자에 대한 이전이 아닌 사업들만 목록화하여 두 번째 자료 검토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원내 분야별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부처 담당 공무원과 사업의 성격 및 대상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OECD가 요구하는 SOCX의 데이터 셋인 엑셀파일(OECD_SOCX_KOR)이 만들어 진다.

연구진은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을 위해 가급적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OECD SOCX의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자료의 한계, 혹은 혼합적인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별 분류나 급여 형태별 분류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연구진은 발견 즉시 관계전문가회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년도 자료 까지 소급하여 수정한다. 이런 경우 해당년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림 1-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기초 데이터의 논리모형



4. OECD SOCX 매뉴얼 변경 및 적용

본 연구는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SOCX)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즉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는 격년으로 제출하고 있다⁷⁾.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각국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작성 지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지침 변경에 따라 과거년도와 비교 가능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ECD는 작성 지침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년도를 소급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 제시된 과거년도 기준 데이터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OECD SOCX의 작성 지침은 상당히 꾸준히 지속적으 개정되고 있다. 처음에 SOCX의 기능별 분류는 13가지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기능별 지출 항목을 9가지로 축소하였다. 분류 항목은 축소되었으나 규모는 변함이 없다. 한편, 선진국에서 주택바우처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현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를 노령·장애·기타급여로 2004년 이래 각각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전체 임대주택 이용자를 저소득층의 급여인 ‘기타’로 소급 분류하였다.

2006년에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의 구성항목을 재구조화하였다⁸⁾. 2009년에는 법정퇴직금 항목에 ‘법정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의 퇴직금’만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Adema and Ladaique, 2009). 이는 정년퇴직자의

7) OECD 요청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확정치(1990~2015)와 전망치(2016~2018년)를 2018년에 2월에 제출하였으며, OECD는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 10월경에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X 12th)를 공표할 예정이다.

8) 2006년까지 ALMP의 세부 항목은 소극적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노동시장의 훈련, 청소년 관련 사업, 고용보조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고용서비스와 행정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였으나 이후 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경됨. 즉 ALMP의 세부항목은 PES(공공고용서비스, Public Employment Service)와 행정, 직업훈련, 고용인센터, 지원고용 및 재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창업인센터의 6개 영역임.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요인에 의한 해고로 공공재원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해고자의 퇴직금이 실업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한국의 퇴직금 상당 부분을 노령연금에서 배제시키는 결과였다⁹⁾.

마지막으로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매뉴얼 개정판(2017)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에 대한 통계 생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유아교육비 지출 추계시 입학연기아동과 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듯 보육료 지출 추계에서도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OECD, 2017: para 18). 이와 함께 정부의 저금리 대출과 시중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이자지원을 포함(OECD, 2017: para 37)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9) 한국에서 퇴직금은 노후소득보장측면과 노동시장이유로 인한 해고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유럽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되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고,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해고수당의 성격과도 상이함.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노동시장에 이직이 반복되거나 증가하는데, 이 때 해고자에게 제공되는 퇴직금은 법정노령연금에 도달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퇴직금과는 다름.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관례를 통해 결정되고, OECD는 추계 원칙과 배치되는 사례들에 대해 유럽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OECD SOCX의 작성기준에 따라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OECD SOCX는 총 4개의 지출 통계로 이뤄진다.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이다.¹⁰⁾

이러한 통계의 생산을 위해 OECD는 각국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셋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셋(OECD_SOCX_KOR)을 생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4개의 지출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OECD SOCX의 작성지침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국제 기준과 한국의 제도 간 괴리를 줄이고 가급적 한국의 제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지난 시간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 수준에 합당한 복지제도의 양적 구축과 발달에 몰두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복지제도의 성숙과 확충에 따라 복지제도의 질적 성숙을 도모할 때가 되었다. 5대 사회보험의 성숙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한 기초보장, 사회서비스의 확충 등으로 한국은 제도적 측면의 사회안전망은 구축되었다.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복지욕구의 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입, 저성장기조 등으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복지제도를 지속가능성,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10)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회복지지출’은 OECD SOCX 홈페이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public social expenditure+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으로, OECD SOCX manual(2011)에서는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로 표기하고 있음. 이를 글자대로 의역하면 ‘공적 법정 사회복지지출’이나, 학자들과 논의를 거쳐 부르기 용이하고 의미전달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통계로 OECD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이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는 기준과 생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통계연구 본연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의 기초통계 생산과 관련된 추계 기준과 추계 방법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민간 부문 사회복지지출의 기초통계 생산과 관련된 추계 기준과 추계 방법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이러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에 의해 생산된 지출 통계(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에서 생산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 및 국제비교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문헌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OECD사무국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외부연구진 협업,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국내외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 자료와 국외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자료는 우리나라의 부처별 예산서 및 예산 설명자료, 2015년 업무보고 자료, 각 소관부처에서 발표한 신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보도자료, 신문 및 방송에서 보도된 사회보장 관련 기사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고 자료의 검토 단계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조사에서 탈피하여 민간모금기관과 후원금에 대한 자료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변화에 따른 제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문헌과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UN의 국민계정(2008 SNA)과 OECD의 SOCX 작성기준(OECD, 2011; OECD, 2007; Adema et al., 2009)과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기준

(OECD, 2004; Eurostat, 2006 등)과 추계자료를 활용하였고, 간접세의 거시자료로 OECD의 Revenue Statistics(2011)를 활용하였다. 또한 Country note와 Country data를 통해 국제비교의 설명 자료로 이용하였다.

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Bottom-Up방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특성과약과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기초통계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의 세입세출예·결산서(중앙정부는 dBrain System,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시스템과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수집자료)와 각 사회보험공단의 통계연보(결산서), 여러 관련 기관의 전산자료 분석,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조세감면 자료가 수록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을 사용하였다. 이 중 세입세출예·결산서와 통계연보는 공표자료를 이용하여 하위단위의 지출항목을 재분류하였다. 즉 공표자료를 세부 분해하여 전체구성을 파악하는 Bottom-Up방법을 사용하였다.

다. 2차 자료 가공분석

원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일부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기 발간된 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하거나 해당기관에 재분석을 의뢰하였다. 2차 자료를 가공 분석한 것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 등이다.

급여내용이 수록된 원자료(raw data)의 경우 개인의 정보보호로 원시자료 접근이 곤란한 만큼 사전에 산출방법과 분석형태를 해당기관에 의뢰한 후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관세청의 장애인물품의 관세감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휴가급여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수집된 기초자료는 OECD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원별, 제도별로 분류하였다. 이때 기능별 분류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의 급여나 정부의 세출항목, 그리고 전산분석자료를 가능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라. 조사연구(Survey)

조사연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등 요금 감면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공기업과 대한항공, 공항철도(주), SK텔레콤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모금 및 후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기준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 중, 공단과 어린이집법인을 제외한 총 1,623개소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부문의 급여인 공제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공제회 성격 중 유사보험과 보증손해공제를 제외한 12개 공제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 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출하는 급여를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로 추계 하고자 공통의 기준설정에 따른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자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OECD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지출이나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통계작성의 기준 및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다른 사회보장 체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각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포함여부를 고심한 내용에 대하여는 OECD관계자들¹¹⁾, OECD회원국의 통계생산 연구자들¹²⁾과 Case Study를 병행하였다. 이들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질의와 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파트의 David Grubb 등임.

12) 독일 연방보건복지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의 Dr. Roland Berntsen, Dr. Jörg Peschner,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정보조사분석부(情報調査分析部)의 Yukiko M. Katsumata 부장(部長),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회복지계정 통계담당자인 Mr. Arne Kubitzka 등임.

바. 타 데이터베이스 생산기관과 협업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사회복지지출에 반영할 때 이중계산이나 누락 등을 검증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했을 뿐 본 연구에서 생산한 통계와의 중복검증 등을 검토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OECD 담당자 또는 국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정책결정자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주체 및 생산기관을 포함하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의 이해를 돕고 중복 검증의 필요성과 자료의 공유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육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은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사. 관계전문가 회의 및 복지지출분석협의회 회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한 국가가 수행하는 정책 노력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종종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구축된 자체데이터 셋을 각 부처 재정 또는 사업 담당자와 외부 복지·재정전문가로 구성된 복지지출분석협의회의 검토를 받는 검증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추계의 정확성은 결국 통계의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본 원의 연구진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등이다. 또한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통계의 생산을 위해 통계생산기관의 실무자와 실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제1절 공공부문 통계생산 기준 및 방법

제2절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

제3절 신규 및 변경 자료에 대한 검토

2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 기초통계 생산

제1절 공공부문 통계생산 기준 및 방법

1. 정부지출

가. 자료수집

중앙정부 재정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성격과 상세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세입세출예·결산서』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료는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정부의 직접지출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요금과 궁능 등 입장료 감면 역시 정부 지출에 포함된다. 정부지출의 재정범위는 중앙정부의 직접지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자치단체고유사업), 교통요금과 입장료 감면액을 포함하며, 회계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이다.

나. 자료 입력

중앙정부지출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의 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IMF기준에 따라 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원칙적으로 080 사회복지 분야와 090 보건 분야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보건부문의 지출은 OECD Health database를 통해 추출된 항목들을 재분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2-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4		자연	112		산업기술지원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5		해양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6		환경보호일반	114		산업진흥·고도화
	014	재정·금융	080		사회복지(8)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16	일반행정	081		기초생활보장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82		취약계층지원	120		수송 및 교통(5)
	023	경찰	083		공적연금	121		도로
	025	재난방재·민방위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3		도시철도
050		교육(3)	085		노인·청소년	124		해운·항만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6		노동	125		항공·공항
	052	고등교육	087		보훈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53	평생·직업교육	088		주택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54	교육일반	089		사회복지 일반	141		수자원
060		문화 및 관광(5)	090		보건(2)	142		지역 및 도시
	061	문화예술	091		보건의료	143		산업단지
	062	관광	092		건강보험	150		과학기술(3)
	063	체육	093		식품의약품안전	151		기술개발
	064	문화재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65	문화 및 관광일반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070		환경보호(6)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071	상하수도·수질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072	폐기물	110		산업·중소기업(6)	900		기타
	073	대기	111		산업금융지원			

주: 음영부문은 복지재정에 포함되는 항목임.
 자료: 기획재정부(2014).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소관부처, 분야와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예산), 세목 등으로 구성되고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러나 결산자료는 세부사업까지만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예산자료와 결산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추출한다. 즉 예산서의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결산서의 세부사업을 정렬한 후 세부사업 기준에서 예산서와 결산서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예산서의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그대로 결산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예산서와 결산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각 부처별 결산자료를 참조하거나 추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서의 내역사업별 예산 비율을 토대로 결산서에 적용한다.

사회복지지출의 기초통계 생산을 위하여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080 사회복지분야를 추출한다. 아래와 같이 분야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액, 세목 등을 추출하고 유사하게 예산자료를 참고로 내역사업의 결산액을 추출하여 연계한다.

〈표 2-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결산액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3,438,472,50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748,835,25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82,172,35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26,751,25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양곡할인	39,205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양곡할인	96,925,000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15,465,764
...

주: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하여 제시함.

자료: 기획재정부(2016), 2015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기초 데이터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자료(e-호조)를 수집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금액과 자체사업비에 대한 결산자료를 포함한다.

〈표 2-3〉 e-호조 결산자료 구조-예시

자치단체명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원
충북괴산군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	의료급여기금 시군부담금	자체재원
경기양주시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자체재원
충북제천시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생활보장	자체재원

주: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하여 제시함.

자료: 행정안전부(2016), 2015년 e-호조회계시스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법률¹³⁾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시행하는데,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통한 제공은 공공사회복지지출로, 민간기업의 것은 민간사회복지지출로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사업소 단위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궁·능 등 입장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버스 및 여객선 교통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표 2-4〉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구 분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일반정부	교 통	고궁·능 입장료 감면	문화재청 산하 사업소	실태조사 ¹⁾
		버스, 여객선	국가보훈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항여객선	해양수산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 1) 문화재청의 협조

다. 자료의 검토

본 연구진에서 일차적으로 구축하는 자체 데이터셋은 중앙정부 재정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모든 080 사회복지 분야 사업들이 일차적으로 데이터셋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당초 080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사업 중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거나 의무적인 가입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검토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사회복지분야(080)가 아니더라도 내역사업에 복지사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080) 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모든 사업을 연구진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13) 관련 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등임.

불가능하다. 연구진은 해당 사업을 최소한으로 누락시키기 위해 1) 복지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회보장사업, 2)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 신문 및 방송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상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사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표 2-5〉 사회복지 분야(080)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분야명	부문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재해대책	이재민구호, 주택피해복구비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어촌보육여건개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문화 및 관광	관광	취약계층 복지관광	취약계층 복지관광
	체육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문화예술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체계 마련(서울), 사랑의집 고치기(인천),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인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충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경북) 등

자료: 기획재정부(2016), 2015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이렇게 추출된 항목들은 소관부처와 회계, 사업별(분야와 부문, 세부사업과 내역사업)로 구분되며, 재정정보와 지출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셋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 사회적 이전만 포함한다. 따라서 회계간 거래 등¹⁴⁾이나 해외 이전¹⁵⁾과 사회적 성격의 목적이 아닌 지출¹⁶⁾, 연구개발비

14) 감가상각비, 공공기금예탁금, 공공기금전출금, 국공채매입, 국내차입금상환, 금융성기금출연금, 기타민간용자금,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특별회계예탁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당기순이익, 민간기금출연금, 민간위탁금, 반환금 기타,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비통화금융기관용자금,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일반출자금, 일반회계예탁금, 일반회계전출금, 자산취득비, 자치단체교부금, 전대차관원금상환, 전대차관이자상환, 지방자치단체용자금, 차입금이자, 출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통화금융기관용자금, 한국은행예치금 등의 세목이 존재함.

(R&D)17) 역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추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1) 행정비용인가 2)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금인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배제되는 사업들은 지출항목을 통해 선별할 수도 있다. 즉 사회적 성격을 가진 지출 항목들을 집적한 후 건설비, 보상금, 연구개발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수, 일용직임금, 출연금, 일반출자금 등의 세목은 제외해야 한다. 아래 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세목을 기준으로 배제되는 항목들의 내역사업명을 제시한 것이다.

〈표 2-6〉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지출목명	지출세목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장애인지원관리, 의사상자제도운영, 청소년참여지원
	임차료	노인복지사업관리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사회복지통합정보망구축 및 운영(정보화), 장애인지원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	사회복지제도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일용임금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출연금	출연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사회복지서비스(R&D)

자료: 기획재정부(2016), 2015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이러한 원칙 역시 예외가 있는데 매뉴얼(para. 35)은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인적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경우 인건비, 연구비, 기관운영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료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에 대한 일차적인 통계 기반을 구축한 후 주택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정부지출은 국제적인 기준(IMF GFS)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분야와 부문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OECD SOCX와 동일하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부문의 경우 국제적인

15) 국제부담금, 해외경상이전, 해외자본이전, 해외차입금상환 등
 16) 무형자산, 배상금, 시설부대비, 시설비, 임차료, 포상금 등
 17)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 실시설계비, 연구개발비, 연료비, 재료비, 저장품매입비 등

기준과 우리나라의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도 빈번하게 남아있고, 수요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용자사업이다. 그런 이유로 주택부문은 대부분 사회복지지출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택부문의 이차지원은 수요자에 대한 이차지원과 공급자에 대한 이차지원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급자에 대한 이차지원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지출에서 상당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OECD SOCX 매뉴얼에 따라 자본보조는 포함하고 있다.

〈표 2-7〉 주택부문 추계범위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목명	세목명
포함항목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전세임대경상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민임대출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영구임대출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행복주택출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임대주택리츠출자	출자금	일반출자금
제외항목	주거약자 개량자금지원, 분양주택(용자), 준주택지원(용자),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국민임대, 공공임대, 임대주택리츠,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용자금	기타민간용자금

주: 2015년 7월에 도입된 주거급여는 SOCX no. 8 주거에 전액 포함됨. 본 표에 제시된 내용은 SOCX no. 9 기타에 포함되는 내용임.

자료: 기획재정부(2016), 2015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라. OECD 제출용 기초 데이터셋(OECD SOCX_KOR) 구축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9개 정책영역으로 구분 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분야코드(080, 090)와 부문코드(081~093)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영역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정부 지출 중 고속도로통행료 감면과 같이 장애인과 보훈대상이 함께 묶여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 감면액과 보훈대상 감면액은 근로무능력관련급여 (No. 3)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역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야와 부문코드가 제시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료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기능 구분이 정확한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⁸⁾.

취약계층에 대한 공능 요금 감면 등은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영역을 구분하였다. 즉, 노인 대상 감면은 노령(Old age)에 포함하였다.

〈표 2-8〉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d-Brain시스템				SOCX	
분야코드	분야명칭	부문코드	부문의명칭	NO.	정책영역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8/9	주거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082	취약계층지원 ¹⁾	3/5/9	근로무능력관련급여/가족/기타
		084	보육가족 및 여성	5	가족
		085	노인·청소년	1/5	노령 혹은 가족
		086	노동	6	적극적노동시장정책
		087	보훈	2/3/9	근로무능력관련급여/기타사회정책
		088	주택	9	기타사회정책(공급자 지원분)
		089	사회복지일반	9	기타사회정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	보건
		093	식품의약품안전	4	보건

주: 1) 취약계층지원은 요보호아동지원, 장애인, 노숙인지원으로 구성됨.

18)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081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예산이 0원이 기초자치단체가 2곳이며, 082 취약계층 부문의 예산이 과다하게 높은 기초자치단체도 있음. 이들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기초생활보장부문과 취약계층 부문의 예산이 합산되어 082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2. 사회보험지출

가. 자료수집 및 입력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공적연금¹⁹⁾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이들 사회보험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각 사회보험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은 각각의 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 및 공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각 사회보험의 자료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Health database에서, 고용보험은 LMP database에서 직접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2-9〉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사회보험제도		자료원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통계연보』
	군인연금	국방부『군인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공단『사학연금통계연보』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산재보험사업연보』, 고용노동부『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자료』, 산재의료관리원『산재의료관리원 손익계산서』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연보』, 내부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산재보험사업연보』,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연감』, 내부자료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1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구성됨.

정부지출과 달리 사회보험지출의 경우 사회적 이전 지출이 명확하게 ‘급여비’로 제시되어 있고, 행정비용 등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금의 급여종류로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²⁰⁾ 등을 공통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급여는 연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²¹⁾.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사회보험지출의 입력은 급여비만 포함하되, 급여 내 하위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 OECD 제출용 기초 데이터셋 구축

연금급여의 성격은 기능구조와 연계된다. 즉 퇴직연금은 노령(Old-age) 영역에, 유족연금은 유족(Survivors) 영역에, 장해연금은 근로무능력(Incapability-related) 영역에, 재해부조금은 기타사회정책영역(Other policy areas)에 각각 포함한다.

2013년 통계부터 그 동안 공란으로 두었던 조기퇴직연금(Early retirement pension, Category No 1.1.2)에 우리의 조기노령연금을 분류하게 되었다. 조기퇴직 연금은 장기실업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하는 연금 제도이다. 우리의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기노령연금은 연금(pension, Category No 1.1.1)에 분류하여 왔다. 이러한 분류의 변화는 국제조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장애, 장기실업, 여성 등의 사유로 지속적 노동시장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례조기노령연금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거나 또는 연금의 조기수급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OECD 보고자료 역시 연금의 조기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통로들을 ‘조기퇴직연금’에 편입하여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²²⁾은 기능구조상으로는 보건(Health)영역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은

20)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장해연금’, 군인연금은 ‘상이연금’,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으로 칭함.

21) 퇴직수당의 경우 각 연금에서 급여(국민연금 제외)를 실시하고 있음.

22) 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2000년 보험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됨.

개인의료비와 집합의료비로 구분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²³⁾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례비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의 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보호사업²⁴⁾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사회보험기관의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데이터구성양식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회보험자료를 입력하고 소관기관과 분야 및 부문, 기능 코드 등을 작성한다.

〈표 2-10〉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단위: 천 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세부사업	내역사업	결산액
사회복지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 (급여지급)	국민연금급여지급	노령연금	9,698,038,595
사회복지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 (급여지급)	국민연금급여지급	조기노령연금	2,717,072,193
사회복지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 (급여지급)	국민연금급여지급	장애연금	336,567,621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연금급여	퇴직연금	1,721,639,193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연금급여	퇴직연금공제일 시금	22,711,474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퇴직급여	퇴직급여-퇴직 연금	10,167,724,848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퇴직수당	퇴직수당	2,247,894,056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재해보상급여	유족연금보상금	5,306,000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간병급여	54,670,911
보건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진료실적	47,444,134,612

주: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함.

- 2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범위가 최근 1인 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자로부터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
- 24) 모성보호사업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음.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74조)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법 18조) 지급함.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 18조)가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1년 내의 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3. 공기업 지출

가. 자료수집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은 공기업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TV 등 통신요금과 철도, 지하철 등 교통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이다.

본 추계의 범위로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국한하며 재원이 공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였다.

〈표 2-11〉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구분	제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공기업	교통	철도요금	한국철도공사	실태조사
		지하철요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고속도로통행료	한국도로공사	
	통신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은 TV 시청료만, 노인은 고속철도와 지하철 요금 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폭넓은 교통·통신 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

〈표 2-12〉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대상기관	감면대상					
	생활 보호 대상자	장애인	노인	국가 유공자	군인	다자녀 (3자녀 이상) 부모
TV시청료	○	○	×	○	×	×
고속철도(KTX)요금할인, 한국철도공사	×	○	○	○	○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	○	○	○	×	×
대전도시철도공사	×	○	○	○	×	○
고속도로통행료	×	○	×	○	×	×

나. OECD 제출용 기초 데이터셋 구축

이러한 추계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항목과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된다. 사회보험지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양식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공기업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부문과 기능 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게 된다.

〈표 2-13〉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단위: 천 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	내역사업	결산액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대구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노인	32,242,049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부산교통공사 교통요금감면	노인	88,142,579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서울메트로 교통요금감면	노인	150,630,638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노인	97,955,125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인천교통공사 교통요금감면	노인	7,905,403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한국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노인 - 전철	154,209,732
사회복지	보훈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국가보훈	75,600
사회복지	보훈	TV시청료 감면	국가유공자	2,250,000
사회복지	보훈	부산김해경전철(주) 교통요금감면	보훈	111,134
사회복지	보훈	의정부경전철(주) 교통요금감면	보훈	49,955
사회복지	보훈	대전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보훈 - 지하철	146,126
사회복지	보훈	대구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보훈대상자	413,147
사회복지	보훈	부산교통공사 교통요금감면	보훈대상자	1,298,962
사회복지	보훈	인천교통공사 교통요금감면	보훈대상자	136,236
사회복지	보훈	고속도로통행료감면	보훈면제	1,563,34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TV시청료 감면	생활보호대상자	14,640,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TV시청료 감면	시청각장애자	5,910,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1,269,600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구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7,297,639
사회복지	취약계층	부산교통공사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18,841,304
사회복지	취약계층	서울메트로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36,159,884
사회복지	취약계층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26,178,769
사회복지	취약계층	의정부경전철(주)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1,267,858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전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감면	장애인 - 지하철	2,040,247
사회복지	취약계층	고속도로통행료감면	장애인, 보훈 할인	40,355,805

주: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함.

제2절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

1.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abour Market Policies database)

가.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개요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LMP)이란,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public intervention)하는 것이며, 특정 (목표)집단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용정책과 구분된다. 즉 LMP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interventions)만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 집단이란 실업자, 위험한 상황에 처한 취업자(employed at risk), 비경제활동인구(inactive)만 포함한다. 다만, 세 가지 목표 집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인구집단의 고용을 촉진하거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년층에 대한 고용이나 대규모 조선업이 해체된 지역의 고용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에 목표 집단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나 별도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입(예,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나 목표 집단이 아닌 일반인에게 지원하는 개입(예,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복지에서 일로의 이행(welfare to work)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 등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의 정의와 분류체계가 국제기구의 기준과 달라 국가 간 비교가 어렵고 특히 직접일자리사업(direct job creation programs)의 실적이 과대보고(over-report)되고 있다는 비판이 OECD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LMP_Korea에 포함된 일부 자료는 OECD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판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자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정합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LMP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체계를 점검하고 한국의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LMP 데이터베이스 담당자와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첫째, 기존의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한국 자료를 점검한 결과 약 40여개의 프로그램이 실적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2013년 누락된 자료를 OECD에 제출하고 소급적용을 요청하였다.

둘째, 정부 예산액 기준에서 결산액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정부 예산액 기준 자료는 일반적으로 결산액 보다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OECD가 한국의 과대보고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예산액 기준의 약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예산액 기준에서 결산액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포함하였다. 2014년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지출액만 실적에 포함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39개 매칭사업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영역이다.

넷째,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분류체계를 변경하였다. 66개 직접일자리사업 중 13개 사업은 지원고용과 재할, 고용장려금, 훈련으로 재분류하였다. 나머지 53개 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공공부문 공익형 일자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지역 공동체 지원, 자원봉사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존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데이터를 검토하여 OECD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은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에서 '보호 및 지원고용과 재할'로 조정되었다.

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 국내 통계생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2011. 6. 30)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동법 제 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이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①항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의 운영을 규정하고, ②항에서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 연계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의 집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2-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p>제13조의 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용·고용방법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p>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집적된 자료는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노동부는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체계에 맞게 재분류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한 자료를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No. 6, ALMP)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실업(No. 7, Unemployment)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통계를 참고하여 추계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범주의 정립 필요성 및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차례에 걸쳐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세부 범주는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 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사업과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단순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채용 사업,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사업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2).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이다. 여기에는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연구비, 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단순한 지식전달 성격의 교육사업 역시 포함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2).

고용서비스는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은 고용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2).

고용장려금은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은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 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12).

다. 중복성 검증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통계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도와 국제적인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것이거나 세부항목의 포함여부와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하는 노동시장데이터베이스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실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당초 다양한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취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성격의 사업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일자리사업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과 노인일자리,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고용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급여의 조건으로써 제공되거나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분을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고자 제공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일자리사업과 복지사업의 경계에 있거나 양쪽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달 체계로써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취약자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돌봄의 복지성격을 가지지만 정책 수단으로써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복지사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범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들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분류하여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통합관리된 2011년부터 적극적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관계로 중복계상된 항목들이 있다. 즉 ‘동일한 Program’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ALMP로, 보건복지부는 Old-age(또는 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중복분류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 2-15〉 동일 Program에 대한 부처간 분류 기준의 차이(예시)

Program	정책(사업)의 목적			급여 분류		비 고
	목적	주요 목적	2차 목적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노인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보충적 소득창출 및 건강증진 도모	소득보장	고용창출	ALMP	노령 급여	경제활동인구는 15세에서 64세, 노인(65세+)의 일자리는 경제활동 이후 연령으로 노동정책보다 복지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장애인 활동 지원	고용창출	ALMP	근로 무능력 급여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주된 사업이고, 부수적으로 도우미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노동부문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과의 중복성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 범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업은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에 대한 조건으로 의무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중에 부산물로서 일자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체적인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중복계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검증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하는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MP database)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하는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X)보다 일정이 앞선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생산할 때 국제통계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LMP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된 통계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주요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책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중복적으로 추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 및 연구기관 간 정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통계 생산의 범위와 중복성 감증을 위한 선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표 2-16〉 ALMP 중복계상으로 배제되는 항목 예시

소관	부문	내역사업명	비고	현물+현금	제도명칭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ALMP중복삭제	삭제	삭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성과중심자활	ALMP중복삭제	삭제	삭제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활동지원급여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일반형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시간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	ALMP중복삭제	삭제	삭제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재정지원일자리(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일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돌봄서비스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 여성	새일센터지정.운영-찾아가는 취업서비스제공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 여성	새일센터지정.운영-새일여성 인턴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 여성	민간베이비시터교육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 여성	아이돌봄서비스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노인·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 원단사업비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노인·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 원단사업비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노인·청소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 여성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 여성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 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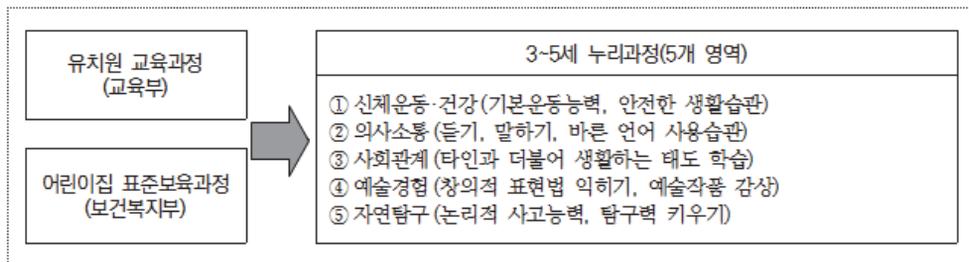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5), 2015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²⁵⁾

가. 누리과정 지원사업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히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생애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2013년에 만 3~5세로 확대되었다.

〈표 2-17〉 누리과정 지원사업



〈표 2-18〉 누리과정 도입 과정

구분	5세 누리과정 도입('12년)	3~4세 누리과정 확대('13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전체로 확대 - 5세 공통과정 실시에 따른 보육시설 무상보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로 확대 - 유아학비·보육료를 국가·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11.9.30)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11.9.3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1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4조('12.3.21) - 영유아보육법 제34조('13.1.23)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12.8.31)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13.2.2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12.10.15)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후 제도 개선 및 통계 업데이트는 연구진이 수정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부 지원 단가는 시설 증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유치원은 원아당 11만원(유아학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이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원아당 29만원(유아학비·보육료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시설 운영비 지원분을 반영한 것으로 최종적인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초 계획은 1인당 월 지원 단가를 20만원(2012년)에서 22만원(13년), 24만원(14년), 27만원(15년)으로 점증적으로 증가시켜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당초계획보다 낮은 수준이다(교육부 내부자료, 2016).

〈표 2-19〉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구분	'12년(5세 도입)	'13년(3~4세 확대)	'14~'16년
지원 대상	- 만 5세 전 계층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제공 받는 5세 유아 - 만 3~4세 소득하위 70% 지원(유치원 해당)	- 만 3~5세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제공 받는 3~5세 유아	좌동
지원 단가	〈유치원〉 - 만 5세 : 20만원 - 만 3세 : 19.7만원 - 만 4세 : 17.7만원 〈어린이집〉 - 만 5세 : 20만원 ※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 : 국공립(5만원), 사립어린이집(7만원)	〈유치원〉 - 국·공립유치원 : 6만원 - 사립유치원 : 22만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 : 국공립(5만원), 사립어린이집(7만원)	지방교육재정여건감안, 전년 수준으로 동결

누리과정 도입 전에는 보건복지부(보육료 지원)와 교육부(유아학비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재원분담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누리과정 대상 연령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분이 유아학비 지원과 동일하게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즉 2012년에는 만5세아 이용아동수만큼, 2013년부터는 만3~5세아 이용아동수만큼 교육청으로 교부되었고,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누리과정 예산액은 3조9천억원 수준이고 전년 대비 53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로 누리과정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동일해졌다.

〈표 2-20〉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입 전)	(만5세)	(만3~4세 확대)		(전액 교부금)	
국고 부담 (복지부)	5,071	3,962	3,827	2,948	-	-
(전년대비)	-	(△1,109)	(△135)	(△879)	(△2,948)	
지자체 부담 (지방비)	5,194	4,059	3,920	1,526	-	-
(전년대비)	-	(△1,135)	(△139)	(△2,394)	(△1,526)	
교육청 부담 (교부금)	6,444	16,049	26,492	34,155	39,455	40,382
(전년대비)	-	(9,605)	(10,443)	(7,663)	(5,300)	(927)
합 계	16,709	24,070	34,239	38,629	39,455	40,382
(전년대비)	-	(7,361)	(10,169)	(4,390)	(826)	(927)

나. 교육데이터베이스 생산

OECD의 교육재정조사 중 유아교육단계의 정부재원(G20)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 공립유치원(에듀파인 시스템 추출자료), 사립유치원(직접조사)이 포함된다.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조사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추출한다. 또한 공립유치원에 대한 조사 역시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추출한다. 이때 세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사는 각 지역청 혹은 개별유치원 담당자가 유치원 결산서를 기준으로 직접 작성한 조사 장표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단, 교육청에서 유치원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 2-21〉 교육비특별회계(시도 및 지역교육청)

재 원	과 목
정부자원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자원	
L1	1. 공립학교 직접지출
	교특회계[세입]결산서 총액
	민간지출총액(P21) [세입]21100. 기본적교육수입, [세입]21201. 기숙사 및 급식, [세입]16100. 민간이전수입, [세입]21204. 평생학습수입, [세입]22000. 행정활동수입, [세입]24000. 이자수입, [세입]25200. 적립금이자수입, [세입]27000. 잡수입
	사립학교 직접지출(L2)
	[세출]460. 기금적립
	[세출]500. 상환지출
	[세출]710. 예비비 및 기타
	[세입]162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L2	2. 사립학교 직접지출
	[세출]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세출]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세출]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세출]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세출]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세출]620-12. 사립학교BTL운영비
	[세출]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세출]620-14. 사립맞춤형복지비
	[세출]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세출]620-16. 사립학교기타직인건비지원

〈표 2-22〉 공립 유치원 회계(학교회계)

재 원	과 목
정부재원 - 가.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 재원	
R1	1. 공립학교 직접지출
	[세입]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세입]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세입]B3200. 자산수입
	[세입]B3300. 적립금처분수입
	[세입]B3400. 보증금회수
	[세입]C1100. 순세계잉여금
	[세입]C1300. 이월사업비
감액	[세입]A210101. 광역 급식비 보조금 감액
R10	1. 학생/가계에 대한 장학금 및 보조금
R10a	1)등록금보조금 ※ 해당 금액만큼 공립학교 직접지출에서 제외 [세입]광역자치단체전입금(A2101목) 중 학생 등록금보조금
R10b	2)등록금외 [세입]A2101-01.광역급식비보조금
정부재원 - 나. 기초자치단체(지역교육청) 재원	
L1	1.공립학교 직접지출
	[세입]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감액 [세입]A2102-01. 급식비보조금
L10	1. 학생/가계에 대한 장학금 및 보조금
L10a	1)등록금보조금 ※ 해당 금액만큼 공립학교 직접지출(L1)에서 감액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및 기타납부금을 위한 지원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A2102목) 중 학생 등록금보조금
L10b	2)등록금외 [세입]A2102-01.급식비보조금

〈표 2-23〉 사립 유치원 회계

재원	관	항	목	조사 지침
정부재원	3. 보조금			
		1. 국내 보조금		
중앙정부 재원		1. 국고보조금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부처(기관)에서 유치원에 지급한 보조금 ※ 교육청에서 지급한 전입금을 제외
광역자치단체 재원		2. 시도보조금		※ 교육청에서 지급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드시 제외
제외항목		3.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립(공립)학교보조금수입		※ 교육청에서 지급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만 입력 ※ 시도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전입금은 시도보조금(목)에 입력
기초자치단체 재원		4. 기타보조금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지역교육청) 전입금 입력바람.		군청, 구청, 지역교육청 등 기초자치단체 및 출연기관에서 지급한 보조금
정부재원	5. 과년도 수입			
		1. 과년도 수입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재원		3. 국내보조금		과년도수입 중 수업료, 설립자부담금, 외국인조금, 기타수입은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에 해당함. 국내보조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만 정부재원에 해당함
제외항목		4.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 교육청에서 지급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
정부재원	8. 적립금			
		1. 적립금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재원		1. 적립금		

다. 중복성 검증 및 자료의 연계

한국의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재원별, 학교급별로 분류하고 있다. 본 통계는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Family'(가족, Category No. 5)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OECD는 최근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매뉴얼 개정판(2017)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료 지출 추계의 정교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para. 18. 유아교육 및 보육(ECEC)서비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국의 통계와 Eurostat, 그리고 (OECD/Eurostat)에서 (미취학)교육에 대한 연간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져있다. 보육지원에 대한 비교의 수준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의무취학연령에 국가간 차이가 있어 ECEC의 연령기준을 5세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국가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7세에 이루어지는 반면 미취학학교교육(pre-primary schooling)의 참석은 그 전년에 이루어진다. 이 때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 수의 유용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출된 추정치(estimate)를 이용). 이와 유사하게 아이들이 5세에 학교에 들어가는(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미취학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primary school(초등학교)에 등록된 5세 아동의 지출을 더함으로써 산정된다.

para.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종 보육서비스의 재원조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데이터의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캐나다처럼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정액교부금(non-earmarked block-grant)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서로 다른 자금흐름(funding stream)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스위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지출하는 내역이 정부 당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OECD(201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아교육비 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본 연구의 추계에서 사용된 방법은 OECD 교육데이터베이스의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 ISCED-0) 항목을 ‘조정전 교육비’라고 할 때 조정금액을 감한 ‘조정 후 교육비’를 추계에 활용하였다. 이는 당초 OECD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령 구분을 만 5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무취학연령 역시 8세(만6세)로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하다. 문제는 의무취학연령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출을 국제비교의 수행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 6세와 만 7세가 유치원에 다니고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해당 부분은 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의 pre-primary education(ISCED-0)에서 6세와 7세분을 감한 부분을 ‘조정 후 교육비(SOCX adjusted Child care (pre-primary education)’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조정후교육비=조정전 교육비-조정금액

* 조정전 교육비는 Education database의 pre-primary education(ISCED-0)

* 조정금액은 만 6세와 만 7세의 교육비

만 6세의 교육비는 6세/전체*100

만 7세의 교육비는 7세/전체*100

그러나 최근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이러한 조정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출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또 다른 방식을 통해 추계를 실시한다. 이는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출통계를 활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으로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출을 일관된 방식으로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나타난 예·결산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비 학비 지원사업과 보육료지원사업의 예·결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정전 유아교육비 지원액 및 보육료 지원액의 합계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만 5세 초과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액과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해야 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조정 금액에 해당한다.

조정금액은 원칙적으로 만 6세와 만 7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과 유아교육비 지원액 자체를 제외해야 하지만, 실제로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1인당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출액과 만 6세이상 아동 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의무취학연령이 아니지만 조기입학한 아동만큼 지출에 포함해야 하는 관계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5세아동에 대한 지출을 더할 필요가 있다.

〈표 2-24〉 2015년 기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출

(단위: 천원)

코드 및 사업	예결산	재 원	금 액
5.2.1.2.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계		4,619,331,000
		국비	3,112,205,000
	지방비	1,507,126,000	
	결산계		4,619,331,000
		국비	3,112,205,000
	지방비	1,507,126,000	
5.2.1.3.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계		6,523,085,125
		국비	6,523,085,125
	지방비	-	
	결산계		6,523,085,125
		국비	6,523,085,125
	지방비	-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부자료

조정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만 6세 이상 아동수는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모두 배제되는 반면 조기입학 아동 수는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표 2-25〉 조정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변수

(단위: 명)

코드 및 사업	적용배제(-)	추가적용(+)
5.2.1.2. 영유아보육료지원	만 6세이상 12,030명	
5.2.1.3. 유아교육비 지원	만 6세이상 955명	조기입학 3,194명

주: 2015년 데이터 미공개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보육통계; 교육부, 2012년 교육통계.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1)과 같이 보육료지원금액에서 만 6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금액을 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데이터수집의 한계로 (2)와 같이 1인당 보육료지출액을 구하여 만 6세이상 보육료지원 아동수를 곱한 부분을 제하는 것이 차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자료의 한계로 (3)과 1인당 보육료지출액과 만 6세이상 아동수의 곱을 제하여 추정하였다.

- | | |
|---------------------------------|-----|
| 보육료지원금액-만6세이상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금액 | (1) |
| 보육료지원금액-1인당보육료지출액*만6세이상보육료지원아동수 | (2) |
| 보육료지원금액-1인당보육료지출액*만6세이상아동수 | (3) |

이 때, 1인당보육료 지출액은 보육료지원액(총계)을 보육료지원 아동수(전체)로 나눈 것임.

다음으로 유아교육비 역시 유치원 학비지원금액 중 만 6세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액을 제외하고 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지출을 추가해야 한다. 데이터의 한계로 유치원학비지원금액에서 1인당 지원액과 만6세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액(추정)의 곱을 빼고, 1인당지원액과 조기입학아동수의 곱을 더하는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방법은 유치원학비지원금액에서 1인당 지원액과 만 6세 이상 아동 수를 제외하고 1인당 지원액에 조기입학아동수의 곱을 더하는 것이다.

- | | |
|---|-----|
| 유치원학비지원금액-만6세이상아동지원액+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지출액(추정) | (1) |
| 유치원학비지원금액 - 1인당지원액*만6세이상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1인당지원액*조기입학아동수 | (2) |
| 유치원학비지원금액-1인당지원액*만6세이상아동수
+1인당지원액*조기입학아동수 | (3) |

이 때, 1인당 지원액은 유치원학비지원액을 유치원학비지원 아동 수로 나눈 것임.

본 연구의 추계결과에서는 OECD 매뉴얼에 따라 전자에서 보여준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추계방법을 통해 유아교육비 지출을 추계한다.

3. OECD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²⁶⁾

가. OECD 보건의료비데이터

보건의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성격을 띤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세계 모든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표는 차이가 없지만, 개별국가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자원을 조직화한다. 또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 이를 배경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공통적인 범위를 만들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보건의료비 총액과 하위 구성 항목을 구축하는 과정인 보건계정체계(SHA: System of Health Accounts)가 이와 같은 노력의 대표적인 예이다. 보건의료비용(Total Health Expenditure 또는 Total Expenditure on Health)은 Public Expenditure on Health(OECD, 1977) 및 Measuring Health Care 1960-1983(OECD, 1985)에서 출발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OECD는 자료의 시계열적 일관성과 국제비교의 정합성에 중점을 두고 2000년에 보건계정체계의 첫 번째 매뉴얼인 'SHA1.0'(A System of Health Accounts, OECD)을 발간하였다. 곧이어 WHO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이드라인(NHA²⁷⁾ Producers Guide, 2003)을 제작하였다. 이후 국제기구 간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OECD, WHO 및 Eurostat는 자료를 공동 수집하기로 2005년에 협약하였다. 세 기관은 2007년부터 보건계정 매뉴얼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였고,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2010년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OECD, WHO 및 Eurostat는 2011년 'SHA2011' 이라는 개정 매뉴얼을 발간하며, 2016년 Health Statistics(2014년 기준)부터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촉구하였다.

26) 본 내용은 고정환 외. (2015).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장 제3절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으며, 원저는 정형선 외. (2016). 2014년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27) NHA: National Health Accounts

새로운 매뉴얼에서는 기존의 매뉴얼(SHA1.0)과 달리 보건의료비용의 총계치를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²⁸⁾ 대신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에서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을 위한 지출을 제외²⁹⁾한 것이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해 전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총액으로 정의되는데,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이때 보건의료의 외연은 서비스가 수행되는 목적이 질병 예방, 증진, 치료, 재활, 장기돌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경상의료비는 OECD에의 보고 시점(t)을 기준으로 2년 전 시점(t-2)의 정보에 해당된다. 이는 가공통계로써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초로 작성되는데, 기초 데이터의 생산이 통상적으로 1년 늦기 때문에 경상의료비는 기준 시점과 보고 시점 간에 2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경상의료비는 기능별, 공급자별, 재원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능별 분류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출액을 구분한 것으로 개인의료비(입원, 외래, 의약품 등)와 집합보건의료비(예방서비스,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로 구분된다. 공급자별 분류는 어떤 공급자에게 의료비가 지출되는지를 구분한 것으로, 병원, 거주형장기요양시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통원보건의료센터 등), 보조서비스제공자, 의료재화소매상·기타제공자(약국 등), 예방서비스제공자, 보건의료체계관리/재원제공자(정부보건행정기관, 사회건강보험기관, 민간건강보험관리조직 등), 국내기타부문, 해외부문으로 나뉜다.

그리고 재원별 분류는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단계의 재원을 구분한 것으로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의무가입(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매뉴얼(SHA1.0)에서는 재원을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정 매뉴얼(SHA2011)에서는 가입의 강제성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기존 체계 하에서의 ‘공공재원’과 ‘민영사회보험’을

28) 국민의료비 = 경상의료비(개인의료비 + 집합보건의료비) + 자본형성

· 개인의료비: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함. 흔히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생함.

· 집합보건의료비: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관리비로 구분됨.

· 자본형성: 보건의료시설, 장비 등에 대한 자본 투자

29) 자본형성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전문가 간 논의 끝에 국제비교의 한계를 근거로 제외되었음.

포괄하여 ‘정부·의무가입제도’로, 가계직접부담을 비롯한 나머지 재원(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을 포괄하여 민간재원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보건계정체계는 다양한 자료원을 최대한 엮어서 구축되는데, 정부나 의무가입(건강)보험의 보건의료비용은 건강보험통계, 의료급여통계 등 주로 공식 행정 통계에 기초한다. 임의가입건강보험,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서의 재원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인용하며, 가계직접부담재원은 경제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가계(동향)조사,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추정한다.

나. 사회복지지출과 보건의료비

1) 개요

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건의료비 중에서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의무가입제도(SHA2011 기준)이다.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정부(Governmental Schemes),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s), 의무가입민간(건강)보험(Compulsory private insurance schemes)의 합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제도 구분상으로는 정부,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민영사회보험(자동차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2-1 참조)

한편, 보건의료비는 기능에 따라서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분된다. 개인의료비는 의료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소비를 의미하며, 의료기관(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지출이 이루어진다.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을 일컫는다.

‘그림 2-1’의 음영 처리 영역에서 발생된 비용이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복지지출에 해당된다. 한편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 상, 민영사회보험(자동차보험)에서는 예방서비스 활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가 발생되지 않는다. A영역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출된 급여비가 주를 이루며, B영역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환자에게 지출된 급여비가 주를 이룬다. D영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결산 사업들로 구성되며, E영역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사업비로 구성된다. C와 F는 자동차보험환자와

관련되어 있다.

[그림 2-1]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비

기능 구분		SHA1.0	공공재원		민간재원				
		SHA2011	정부·의무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			
		제도 구분	정부	사회 보장 기금	민영 사회 보험	민영 보험	비영리 단체	기업	가계 직접 부담
개인의료비	치료서비스	A	B	C					
	재활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보건)								
	보조서비스								
	의료재화								
집합보건의료비	예방서비스	D	E	F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								

주: 1) 상자의 크기는 재원의 규모와 무관함.

2) 민영사회보험(자동차보험)에서는 예방서비스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자료: 고경환 외. (2015).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료의 구축

가) 정부의 개인의료비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급여통계연보가 주 자료원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급여진료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의료급여환자의 간병비도 추산해서 포함한다. 그밖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 국방부, 경찰병원, 법무부 등 타부처가 지원하는 진료비용도 여기에 포함한다.

나) 사회보장기금의 개인의료비 (B)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사업연보가 주 자료원이 된다. 각 통계연보에 공표된 급여진료비(또는 요양비)가 의료비 산출을 위해서 투입된다. 특히, 산재보험사업연보는 간병료, 의지 및 보조기기료, 이송료 등의 2종 요양비 지급 내역도 담고 있는 바, 이 비용을 그대로

포함시킨다. 한편,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지출한 간병비, 이송료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추산하여 포함시킨다.

다) 민영사회보험의 개인의료비 (C)

보험연구원 내부 자료의 분석 결과를 포함한다. 이것은 자동차보험환자가 입원 및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다.

라) 정부의 집합보건의료비 (D)

정부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지는 바, 중앙정부는 정부결산자료 중에서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집계한 결과를 포함하고, 지방정부는 보건소지출내역조사³⁰⁾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포함한다. 식약처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의 결산자료, 학교보건 추정자료도 포함한다.

정부결산자료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에 따라서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분야가 '보건'인 경우는 대부분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인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 경우만을 포함한다. 한편, 인건비, 경비 등 분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지출의 일정 비율을 보건 분야로 배당한다. 단, 단위사업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에 해당되면 집합보건의료비에서 제외한다. 이는 개인의료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³¹⁾

마) 사회보장기금의 집합보건의료비 (E)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관리운영비(경비 및 인건비 등)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운영비(경영공시자료), 산재보험 관리운영비(추정치)³²⁾가

30) 국민보건계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1년간 사업 내역(결산 기준)을 조사함.

31) 의료비는 지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종 단계가 중요함. 즉,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대상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재원의 흐름 측면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됨. 이들은 각 수급권자(또는 대상자)가 의료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시현되는 것임. 따라서 집합보건의료비가 아닌 개인의료비로 구분함.

32) 산재의료관리원 운영 시(~2009년) 소요되었던 관리운영비를 근거로 추계한 결과임.

자료원으로 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예방서비스’에 포함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바) 민영사회보험의 집합보건의료비 (F)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관리운영비를 추산하여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관리운영비 중에서 의료영역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명확하게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가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정한다.

사) 임의가입건강보험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임의가입 민영보험을 포함한다.

3) 자료의 인용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3월말에 다른 영역(그림 2-1의 A~F 이외)에 해당되는 의료비 정보와 함께 ‘보건의료비용(Health Expenditure)’으로 OECD, WHO 및 Eurostat의 국제보건계정팀(International Health Accounts Team: IHAT)에 제출된다. 이후 상호 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6월말을 전후로 다른 보건통계(건강수준, 의료질, 보건의료자원 등)와 함께 ‘OECD Health Statistics’로 발표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중복 검증³³⁾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할 때 원칙적으로 연구진은 ‘보건 분야’의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출과 중복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정부 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지만, OECD 기준에서는 보건 분야 지출로 분류된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33) 연구진이 추가 작성한 것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부문과 중복 검증을 통해 어느 한 쪽에서만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예산 편성 기준에서 보건 분야 외에 포함되는 사업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노후지원사업은 6개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하위 사업들은 그 성격에 따라 노후생활지원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보건 분야에 포함될 수도 있다. 문제는 양쪽 모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진은 중복을 제거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제3절 신규 및 변경 자료에 대한 검토

1. 신규 제도의 도입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주로 보건 분야 R&D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예, 보건의료 R&D 기술료 사업, 첨단바이오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 기술개발 등). 이들 사업은 보건 지출의 매뉴얼에 따라 보건 지출에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신규 사업은 주로 시설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고려인정착지원 센터 등의 사업들이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제도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아동·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총 10만원 내외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데 이용된다. 에너지바우처는 SOCX No. 9 기타 영역에 해당하며 현물 급여로 포함된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있다.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지원을 하는 4개 분야 11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 있었고,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재원 규모는 연간 4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광열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으로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도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복지사업 간 연계성 부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에 지원이 편중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은 2015년 하반기부터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위기가구를 사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5).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긴급 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사회복지지출 매뉴얼에 따르면 동 사업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보육이나 취업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대인 서비스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다.

유사하게, 2015년에는 복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들을 통합·정비하는 사업들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복지로 홈페이지에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감사관실 내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7개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들을 대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정비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도입된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니고,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이전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 맞춤형 급여라는 명칭으로 시행(2015.7.20.)되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다층화 하였다. 즉 대상자 선정 기준이 급여별로 차이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이다. 개별 급여에 대한 소관부처 역시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모든 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는데, 이제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해양부, 생계급여를 포함한 그 외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개편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제도의 개편은 사회복지지출 통계 생산에 있어 기능측면에서 분류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예결산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사업들을 일괄 수집에서 제도 개편으로 각 급여를 주관하는 소관부처 사업에서 수집해야

한다. 이는 단순 소관부처의 변화보다는 급여성격의 변화인 만큼 통계에 제대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 급여는 모두 저소득층 지원급여로 주거급여도 생계급여의 보조형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의 '주거비 보조' 성격을 담고 있어 기능을 '주거급여'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교육급여의 분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급여가 유아녀 가족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가족' 기능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교육급여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재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한다는 측면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등과 같이 기능을 '기타'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SOCX는 타 데이터베이스와의 협력 관계에서 Education database의 '유아교육 및 보육료 지원(ECEC 서비스)'만을 원용고 있다. 교육 기능 중 교육급여를 SOCX에서 포함하는 경우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급여만 '주거' 영역에 분리하고, 그 외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등은 종전의 방식대로 '기타'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통계 생산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아래 표는 생산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영역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먼저 현행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사업을 전부 '기타' 영역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즉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종래 통합급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급여별 기능에 따른 분리(안)은 맞춤형 급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따라서 교육급여는 '가족' 영역에, 주거급여는 '주거' 영역에, 생계급여 등 기타 급여는 '기타' 영역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개별 급여의 기능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만 '주거' 영역에 분리하되, 그 외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는 '기타' 영역에 포함한다. 교육급여가 정부의 고유 기능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육 기능 중 OECD SOCX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료 지원 사업'만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중복누락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본(안)은 현 보고서에 적용한 방식이다.

이러한 통계 생산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의 총액은 동일하지만 기능별 지출 비중에는 차이가 있다. 즉 현행 기준의 경우 '기타' 영역이 GDP 대비

0.73%로 가장 높고, 급여별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가족' 영역이 GDP 대비 1.15%로 증가하는 반면 '기타' 영역은 GDP 대비 0.69%로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주거급여만 분류하는 안을 적용하면, '가족' 영역은 GDP 대비 1.14%, '주거' 영역은 GDP 대비 0.03%, '기타' 영역은 GDP 대비 0.70%로 각각 나타난다.

〈표 2-26〉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변화

(단위: 십억원, GDP대비 %)

	현행 분류기준 (전체 급여: 기타)		급여별 분류(안) 교육급여-가족, 주거급여-주거, 그 외-기타		주거급여만 분류(안) 주거급여-주거, 교육급여, 그 외-기타	
	2015	GDP 대비%	2015	GDP 대비%	2015	GDP 대비%
1. 노령	42,348	2.71	42,348	2.71	42,348	2.71
2. 유족	4,289	0.27	4,289	0.27	4,289	0.27
3. 근로무능력	9,630	0.62	9,630	0.62	9,630	0.62
4. 보건	63,260	4.04	63,260	4.04	63,260	4.04
5. 가족	17,869	1.14	18,053	1.15	17,869	1.14
6. ALMP	5,541	0.35	5,541	0.35	5,541	0.35
7. 실업	4,547	0.29	4,547	0.29	4,547	0.29
8. 주거	-	-	411	0.03	411	0.03
9. 기타	11,347	0.73	10,753	0.69	10,936	0.70
계	158,830	10.15	158,830	10.15	158,830	10.15

주: 1) GDP는 1,564,124원임.

2) 7월 이전 교육급여는 82, 7월 이후 교육급여는 101임.

3) 7월 이전 주거급여는 749, 7월 이후 주거급여는 411임.

4) 맞춤형 급여는 2015년 7월1일에 도입되었으므로, 7월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여, 7월 이후에는 급여별로 개별부처(예, 교육급여-교육부, 주거급여-국토부, 그 외 복지부)에서 운영함.

제 3 장

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제1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제2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3

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 기초통계 생산

제1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고용주의 법정급여, 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과 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용주의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으로서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중 고용주 지급분(휴가실시 앞의 두 달 해당), 질병휴가 기간의 법정임금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감면은 크게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교통부문은 항공회사의 요금 감면을 의미하며, 통신부문은 시내·시외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의 요금감면을 의미한다.

1. 고용주의 법정급여

민간복지 중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에 한하여 살펴보면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법(1953)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는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급여제도(동법 제34조)는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정퇴직금의 추계는 2005년도 자료까지는 퇴직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수록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국세연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OECD 작성지침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있다. 정년퇴직자 수는 고용보험 통계연보를 참고할 때 전체퇴직자의 0.7%로 역시 전체 법정퇴직금의 이 비율만큼 추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회사의 폐업,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퇴직자(20%)는 노령에 포함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를 활용하

여 추계한다.

출산전후휴가(동법 제74조) 급여는 기업주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³⁴⁾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먼저 기업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일에서 분만급여를 수령한 자와 자격화일에서 보수월액³⁵⁾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개월)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고용주 부담의 월급여액은 건강보공단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의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분만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월평균소득을 수령한다는 조건에 따라 실시하였다.

$$\text{기업부담의 Maternity Bene Private} = \sum W_{ij} \times 2$$

$$W_{ij} = i \text{ 연도 직장여성 중 분만한 } j \text{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2.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범위는 사업자에 따라 서비스별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범위가 다르다. 즉 교통요금은 10%~무료, 통신요금은 30%~무료, 그리고 관람요금은 50%~무료이다. 이와 같이 교통·통신요금의 경우 일정한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적거나 1회 이용의 단가가 낮을수록 감액범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34)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됨.

35)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분만급여 수령시점의 월보수액을 의미함.

〈표 3-1〉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제도		아동 및 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통 요금	지하철	· 다자녀가정 구성원 - 할인보통권(어린이) 운임 적용	-
통신 요금	시내외 전화요금	· 아동복지시설(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반수급대상자, 조건부수급대상자, 특례수급대상자(시내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및 기본,가입비/이전비(100%)
	이동통신 요금	· 아동복지시설(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반수급대상자, 조건부수급대상자, 특례수급대상자(30%) 및 기본, 가입비/이전비(100%)
	전기요금	· 3자녀이상 20% (월 1만2천원 한도) · 대가족(3자녀)-한 단계 낮은 요율(월 1만2천원 한도) · 사회복지시설- 일반용(20%) 주택용(21.6%) 심야(갑31.4%, 을20%)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정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8천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월 4천원 한도) 심야 갑31.4% 을20% · 차상위계층- 주택용 정액(월 2천원 한도) 심야 갑29.7%, 을 18%
	가스요금	· 다자녀가구 (월평균 3,100원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12,400원 할인) · 법정차상위계층 (월평균 6,200원 할인)
	열요금	· 3자녀이상가구(월 4,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월 10,000원 · 차상위계층 월 7,000원
	에너지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 만 6세 미만, 등록장애인1-6급 · 지원 금액- 1등급(1인 가구) 81,000원, 2등급(2인 가구) 102,000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14,000 · 사용기간: 12월~ 3월말(총 4개월)	

74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제도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통신요금	시내외 전화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특수학교 (50%) · 시외통화료는 월 33,000원 한도 114안내료는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제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유족(30%)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50%)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시내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및 기본,가입비/이전비(100%) · 시외통화료는 월 33,000원 한도 114안내료는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제외)
	이동통신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특수학교 (30%)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30%)
전기요금		-	· 정액(월 8천원 한도)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정액(월 8천원 한도)
가스요금		-	· 장애인 (월평균 12,400원 할인)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 (월평균 12,400원할인)
열요금		-	· 장애인1-3급(월 5,000원)	·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1-3급상이자) 월 5,000원
교통요금	철도요금	· KTX(30%) · 새마을호,ITX(30%) ·무궁화호(누리로)이하(30%)(통근열차 50%) · 전철(무료)	· KTX-장애1-3급(50%), 장애4-6급(30%) · 새마을호,ITX-장애1-3급(50%) 장애4-6급(30%) ·무궁화호(누리로)이하(50%) · 전철(무료)	독립유공자,상이등급1-2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1년 6매 무료제공 6회 초과시부터 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경전철	무료	무료	무료
	국내선 항공료	10%	· 등록 장애인(1-4급 본인), 1~3급 동반보호자 1인 40%	· 본인-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40%) ·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보호자 1명(40%) · 군인-단기하사이하(10%)
고속도로 통행료		-	장애인 1-6급(50%)	· 면제-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50%)

주: '-'표는 제도 없음.

취약계층 교통입장요금 감면의 추계방법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철도청, 문화재청 등의 협조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각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계하였다.

〈표 3-2〉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구분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민간기업	교 통	국내선항공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실태조사
		지하철	코레일공항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경전철	용인경전철	
민간기업	통 신	시내·외 전화요금	KT,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실태조사 ¹⁾
		이동통신	SK텔레콤, KT, LG텔레콤	실태조사 ¹⁾
		케이블방송수신료	씨엔엠, 제주방송, 남인천방송, CJ헬로비전, 현대HCN, 금강방송, 서경방송, 제이씨엔엘산, 푸른방송, 충북방송	실태조사

주: 1)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

3. 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

시장부문 사회복지자원에는 개별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 이전된 보험금 총액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시장부문의 사보험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고, 가구간 재분배적 성격을 갖기 보다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비사회적인 지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불의의 사망·상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Adema, 2001),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금 지출과 만기도래에 의한 저축성 보험금 지출의 성격을 분리해 내면 사회복지 자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³⁶⁾.

시장부문의 법정민간지출로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치료비로 제한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누구에게나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36) OECD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망, 장애, 의료 서비스, 은퇴와 같은 지급금에서 사회적인 성격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자발적인 민간부문에서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정책이 대부분 모기지에 포함되며,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SOCX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Adema and Ladaique, 2009).

민간회사가 운영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실적과 보험개발원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치료비와 보험회사가 향후의 의료비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불하는 '향후치료비'는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비용이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보상제도를 벗어나거나 민사상 조기 합의수단으로 이용되며 실제 향후 치료비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분과 제3섹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업부분은 법정외복리비와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제3섹터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기업, 공동체, 민간모금기관 및 기부금품모집기관의 후원금 및 모금의 배분액으로 구성된다.

1. 기업의 비법정복지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는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의 추계를 위해서 먼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1인당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용노동통계연감의 상용근로자 수를 참고하여 법정외복리비의 전체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족과 보건의료, 기타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포함되는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외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용구산업현황을 활용하고 있다(정형선 외, 2011).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시설지원 등) 등 다양한 기업의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자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확대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의 수준에 머무르는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 방법 및 활동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라든지, NGO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와 같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원 분야 또한 장학사업에 치중하던 초기와는 달리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 등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까지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각화되어 사회공헌을 비롯한 인권, 노동, 환경 등 전분야로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단순히 시혜적 차원으로 사회공헌에 접근하기 보다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이 증가추세에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의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에도 반영되어 사회공헌 평가지표 개발 및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GO 등에 대한 사회복지목적성의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건영역과 기타 영역에 포함된다.

3.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회복지시설³⁷⁾은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정부 재원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주된 자원부담주체는 정부지만 최근 민간후원금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정부재원은 이미 정부의 일반지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만 추계 대상에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2010년도 까지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자료 등 행정자료가 잘 정비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표 3-3〉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5년)

(단위: 개소)

지역	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가족	일반 사회	자활	노숙인	저소득
강원	859	408	160	218	19	18	17	-	6	13
경기	3,522	1,719	624	976	47	41	67	19	17	12
경남	1,057	366	236	346	47	19	18	11	4	10
경북	1,084	480	229	291	28	18	14	5	4	15
광주	738	205	131	353	16	8	15	3	2	5
대구	914	446	127	261	18	17	27	3	9	6
대전	606	223	132	188	18	11	21	4	8	1
부산	927	312	197	284	33	18	52	5	15	11
서울	2,280	851	610	575	59	20	95	6	47	17
세종	52	22	10	13	1	1	2	2	1	-
울산	290	99	87	68	13	9	8	1	1	4
인천	968	481	156	227	23	19	21	7	10	24
전남	1,220	525	127	473	27	25	15	6	7	15
전북	995	411	140	364	25	18	18	11	5	3
제주	264	81	64	83	14	6	9	2	3	2
충남	772	339	111	253	28	13	15	7	1	5
충북	773	352	142	224	15	14	11	4	4	7
계	17,321	7,320	3,283	5,197	431	275	425	96	144	150

주: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저소득에 포함되었고 '보건영역'은 OECD Health Database의 수치를 원용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318개소)과 결핵한센시설(5개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37)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 종교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수는 총17,321개로 시설종류별 분포를 보면 노인시설이 42.3%, 아동시설 30.0%, 장애인시설 19.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3%, 서울 13.2%, 경북 6.3%의 순을 보여 주고 있다. 2015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품 총모금액은 5,295억 원, 배분액은 5,520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모금액	배분액
계	479,144	468,135

자료: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4.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대상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IMF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 속에서 심화된 소득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사회복지재단과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다양한 재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의 일반지출로 분류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의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조달되는 경우는 자발적민간부문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추계는 해마다 발간되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5. 공동체부문의 공제회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은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포함된다. 공제회는 특정한 직역집단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직역집단이므로 직업복지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기업복지와 구별되고, 또 개별적 시장계약의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과 유사하나 가입자의 범위가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따라서 공제회는 그 성격상 기업부문이나 시장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과 일정부문 이윤을 추구하여 가입자에게 배당한다는 면에서 제3섹터나 비영리부문의 특성과도 상이하다. 결국 공제회의 급여는 공동체영역을 제공주체로 보아야 한다(고경환 외, 2011: 131).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급여가 제공된다. 그러나 공제회의 급여가 재분배적 성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시장계약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다양한 직역집단 공제회마다, 또한 하나의 공제회 내에서의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계에 포함하는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공제회 불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급여수령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자발적 민간급여로 제한한다. 다만, 공제회의 성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공제회의 성격이 회원의 상호부조에 중점이 있는 경우와 정부가 특정업종 및 업체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정책성인 것과 분류했다. 이에 따라 추계에 포함되는 공제회 목록과 추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성 격	공 제 회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 내용
상호 부조 (8)	군인공제회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POBA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경기도 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상호부조, 후생복지관련 급여
	교정공제회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호공제사업 관련 급여
정책성 (4)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에 대한 상호부조, 복지증진, 노후생활안정 급여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예방

주: 1) 공제회 성격 중 유사보험(새마을공제, 수협공제, 신협공제 등)과 보증·손해공제(의료배상공제,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제외함.

2) 지난 1981년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협공제회는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제회를 설립하고, 상호공제사업과 의료배상공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2013.11월 보건복지부 법인설립 인가.

자료: 매일경제(2013.6.20); 각 공제회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조사결과 1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6〉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단위: 백만 원)

성 격	공제회	합 계
계		754,487
상호부조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8)	570,901
정책성	노란우산공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4)	183,586

〈표 3-7〉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단위: 백만 원)

성 격	공제회	계	SOCX분류
계		754,487	-
노령퇴직급여	대한소방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577,803	노령
유족급여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3,300	유족
상해, 상병급여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649	근로무능력
결혼·출산보조금, 보육시설 내 사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9,192	가족
주택재해부조금, 종사자후생복지, 재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경찰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163,543	기타

6. 사회복지 공익법인

자발적 민간모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 영역별 지출금액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종교단체 제외)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① 교육, ② 학술, 장학, 자선, ③ 사회복지, ④ 의료, ⑤ 문화, ⑥ 기타의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본 분석에서는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 중, 공단과 어린이집법인을 제외한 총 수는 1,623개이다. 1,623개 법인의 기부금 총액은 1,647,917백만 원이며 평균은 1,015백만 원이다.

〈표 3-8〉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와 기부금 수입 총액

(단위: 개, 백만 원)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기부금 수입 총액	기부금 수입 평균
1,623	1,647,917	1,015

2) 추계결과

추계의 편의상, 2015년의 기부금 수입 총액이 2015년 기부금 수입 배분액과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부금 총액의 영역별 배분은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에서 조사된 민간모금기관의 기부금의 영역별 배분 비율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국세청 홈텍스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배분 비율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표 3-9〉에는 2013년 민간모금기관의 영역별 배분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2015년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 총액이 이에 따라 배분되었다고 할 때, 비해당을 제외한 6개의 영역의 배분액은 1조 550억 원이다.

〈표 3-9〉 2013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단위: %)

전체	노인	유족	장애	가족	주거	기타	비해당 ¹⁾
100.0	5.5	1.3	3.3	28.8	1.3	23.8	36.0

주: 1) 비해당은 보건 4.1%, 해외 26.9%, 북한 0.7%, 홍보·연구 등 4.2%로 구성됨.

〈표 3-10〉 2015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복지영역 기부금 배분 규모 추계

(단위: 백만 원)

전체	노인	유족	장애	가족	주거	기타
1,054,667	90,635	21,423	54,381	474,600	21,423	392,204

주: 참고로 사회복지 공익법인 기부금 중 보건의료 67,565백만 원, 해외 443,290백만 원, 북한 11,535백만 원, 홍보·연구 등 70,860백만 원

7. 병가급여

병가급여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일정한 범위 내 유급급여이다. 이 급여는 직장의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다. 추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유병률, 외병일수)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임금구조부문(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활용하였다. 추정상 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휴가 동안 월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였다.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6.0833^{\text{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text{상수}^2)}$$

이 때, *Sickness Bene* = 요양기간 동안 임금

M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외병일수

E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취업자수

W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¹⁾ =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외병일수의 병가기간화

상수²⁾ = 임금의 일할 환산치임.

제 4 장

사회복지지출 생산 과정과 결과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4

사회복지지출 생산 과정과 결과 <<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 부문별 추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지출과 사회보험지출, 공기업지출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지출은 공공부조와 사회보상,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지출은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하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상위정부에서 하위정부로 전달할 때 발생하는 중복계상을 제외한 순지출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성된다.

2015년 정부부문 지출은 62조568십억 원이다. 이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상의 소계는 28조729십억 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소계는 33조839억 원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서 정부지출은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분야 지출과 가족 분야 지출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추계범위 변경에 따라 지출의 감소도 소폭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는 대상과 기능별로 구분되는데 가족은 17조814십억 원으로 28.5%, 보건 5조45십억 원으로 8.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3조829십억 원 6.1%, 근로무능력관련급여 3조289십억 원으로 5.3%, 주거 2조572억 원으로 4.1%, 노령은 994십억 원으로 1.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보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45조681십억 원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73.0%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16조888십억 원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2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일반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단위: 십억 원)

제도		항 목	2014	2015		
					%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운영지원 및 복지급여지원, 보육시설운영, 보육 및 행사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장애수당 등	18,716	22,951	36.7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재해구호 등)	549	445	0.7	
		중앙정부 매칭사업(생계급여, 주거급여 ^㉞ , 해산 장애급여, 자활,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4,285	5,334	8.5	
		소계		23,550	28,729	45.9
사회 서비스	노령	중앙정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보호지원, 장사시설설치 등	88	73	0.1
		지방자치단체	경로당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장사시설설치 등	1,019	921	1.5
	근로 무능력	중앙정부	특수교육예산,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등	184	594	0.9
		지방자치단체	특수교육예산,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자녀학비 등	2,570	2,696	4.3
	가족	중앙정부	가정양육수당지원, 방과후돌봄, 보육돌봄서비스 등	12,136	13,325	21.3
		지방자치단체	아동시설기능보강, 가정위탁지원운영, 어린이집기능보강 등	4,683	4,490	7.2
	주택	중앙정부	공공임대주택건설비	1,716	2,393	3.8
		지방자치단체	공공임대주택지원 자체사업	181	180	0.3
	보건	중앙정부	복지부 등 관련 국비(집합보건의료)	2,728	3,292	5.3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등 관련 지방비(집합보건의료)	1,643	1,753	2.8
	ALMP	중앙정부	ALMP(공공고용서비스, 일자리 지원 및 창출, 고용 및 창업인센티브 등)	2,960	2,804	4.5
		지방자치단체	공공고용서비스, 일자리 지원 및 창출, 고용 및 창업인센티브 등	988	1,025	1.6
	기타	중앙정부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문화바우처, 취약농가인력지원 등	171	249	0.4
		지방자치단체	여행, 체육, 문화바우처 등	39	45	0.1
		소계		31,106	33,839	54.1
	계			54,656	62,568	100.0

주: 그 동안 예산액 기준의 지방매칭비를 2016년도 기준의 국고보조사업의 개별 검토를 통해 결산액 기준으로 전환. 지방매칭사업과 국고보조사업목록과의 미연계사업은 보정(△6.3%)하여 추계함(예산대비 결산비율이 93.7%로 예산기준의 지출은 6.3% 과대계상임).

〈표 4-2〉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단위: 십억 원)

분야	부문	사업 예시	2014	2015	%
일반·지방행정 (010)	지방행정·재정지원	장애인체육관건립, 공립어린이집건립 등	42	18	0.0
	재정·금융	직장어린이집 운영		2	
	일반행정	행정안전부 대전청사 어린이집 신축		1	
공공질서 및 안전 (020)	법무 및 검찰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7	82	0.1
	국민안전처연보	이재민 재해구호, 주택피해복구비	26	7	
외교·통일 (030)	통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등	95	87	0.1
국방(040)	전력유지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43	0.1
문화 및 관광 (060)	문화예술	문화바우처 지원	59	78	0.2
	관광	취약계층복지관광(여행바우처)	11	12	
	체육	체육바우처 지원	16	17	
사회복지 (080)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4,823	5,431	80.2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아동시설기능보강, 장애인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2,743	4,362	
	보육가족 및 여성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17,638	18,494	
	노인·청소년	기초연금, 노인관련기관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등	8,319	11,198	
	노동	ALMP	3,948	3,922	
	보훈	보훈보상금, 수당 등	3,707	3,787	
	주택	임대주택지원 등	1,893	2,571	
	사회복지일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민간사회복지지원육성 지원 등	419	404	
보건 (090)	보건	의료급여, 집합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	10,711	11,809	18.9
농림수산 (100)	농업·농촌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	50	67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저소득층연탄보조(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81	150	0.2
교통 및 물류 (120)	해운·항만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5	23	0.0
미분류 ¹⁾	내부자료	고궁통입장료 감면	4	5	0.0
계			54,656	62,568	100.0

주: ()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분야코드임.

1) 현재 정부가 분류하지 않고 있어 추후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사회보험의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는 2015년 34조485십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다. 특히 사학연금의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공적연금 지출규모

(단위: 십억 원, %)

연금구분	자료원	2014	2015		'14-'15 증감율
			구성비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780	15,184	44.0	10.2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12,590	13,726	39.8	9.0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2,315	2,665	7.7	15.1
군인연금	국방부	2,692	2,869	8.3	6.6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43	42	0.1	-1.4
계		31,420	34,485	100.0	9.8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5;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15;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15;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2015;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2015.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7조135십억 원과 산재보험 4조178십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 원, %)

구분	관련 부처	프로그램	2014	2015		'14-'15 증감율
				구성비		
고용보험 ¹⁾	고용 노동부	구직급여, 상병급여, 재취업, 기타(미지급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4,156	4,547	63.7	9.4
		출산전후휴가급여	237	259	3.6	9.4
		육아휴직급여	501	620	8.7	23.8
		고용안정, 직업능력 ²⁾	1,422	1,709	24.0	20.2
		고용보험 계	6,315	7,135	100.0	13.0
산재보험		요양급여(약국자료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재활급여	4,022	4,178	100.0	3.9

주: 1) 대부사업과 유사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은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 실적(고용보험기금)의 합계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1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통계, 2015.

보건복지부 소관 건강보험은 47조422십억 원, 장기요양보험은 3조123십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보장성강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고, 장기요양보험도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대상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다.

〈표 4-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 원, %)

보험구분	관련부처	프로그램	2014	2015	'14-'15 증감율
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	입원, 외래, 의약품, 건강검진 등	43,737	47,422	8.4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전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2,723	3,123	14.7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공기업에 대한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을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826십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하철의 교통통신요금 감면이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 수와 이용자의 증가, 지하철노선의 연장 등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감면제도가 보편적 복지로 제공되면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손실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³⁸⁾도 있다.

38) 머니투데이, 부자노인-전직 장관도 무임승차, '공짜 지하철'(2013/9/5)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이다. 공사형 공기업은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임.

〈표 4-6〉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단위: 백만 원, %)

제도구분		2014	2015		'14-'15 증감율
				구성비	
교통	철도('91.1)	248,577	262,120	31.7	5.4
	지하철('91.1), 경전철('11.9,'12.7)	460,168	499,377	60.4	8.5
	고속도로통행료('97.8)	39,636	41,919	5.1	5.8
통신	TV 수신료('97.1)	21,840	22,800	2.8	4.4
계		770,220	826,215	100.0	7.3

주: ()안은 최초 도입된 연도임.

공사형 공기업³⁹⁾으로 의정부경전철(2012.7월), 부산-김해경전철(2011.9월) 개통됨.

자료: 내부자료, 각 년도.

이러한 부문별 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기준 159조 738십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이 6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일반지출이 39.2%, 공기업 교통통신요금 감면이 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28.6%, 지방자치단체가 10.6%로 중앙정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정부일반지출이 전년대비 14.5%, 사회보험이 전년대비 9.2%, 공기업이 전년 대비 7.3%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는 전년 대비 18.0%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9)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이다. 공사형 공기업은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임.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연도	공공 사회복지지출(A) (A=a+b+c)	정부일반지출(a)			사회보험(b)	공기업(c)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¹⁾				
2014	143,642	54,656	38,699	15,956	88,217	770	
2015	159,738	62,568	45,681	16,888	96,343	826	
	구성비	100.0	39.2	28.6	10.6	60.3	0.5
'14-'15증감율	11.2	14.5	18.0	5.8	9.2	7.3	

주: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분야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와 법무부 포함)와 자체사업비(광역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포함

2015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21%로 전년 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보건 39.6%로 가장 높고 노령 26.5%, 가족 11.7%, 기타사회정책영역 6.8%, 근로무능력관련급여 5.8%,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3.5%, 실업 2.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기타사회정책영역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노령 15.5%, 유족 10.7%, 근로무능력관련급여 10.7%, 실업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공공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정책영역 구분	2014		2015		'14-'15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36,670	25.5	42,348	26.5	15.5
2. 유족	4,355	3.0	4,822	3.0	10.7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8,314	5.8	9,206	5.8	10.7
4. 보건 ²⁾	58,007	40.4	63,236	39.6	9.0
5. 가족	17,557	12.2	18,693	11.7	6.5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369	3.7	5,539	3.5	3.2
7. 실업	4,156	2.9	4,547	2.8	9.4
8. 주거 ³⁾	-	-	411	0.3	-
9. 기타	9,213	6.4	10,936	6.8	18.7
계	143,642	100.0	159,738	100.0	11.2
GDP	1,486,079		1,564,124		5.3
GDP 대비 비율	9.67		10.21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의. 2016년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3)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만(2015.7) 포함

한편 정부유형별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가족(29.2%), 기타(20.1%), 보건(18.8%), 노령(16.3%), 적극적노동시장정책(6.1%)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26.6%), 노령(19.9%), 보건(19.0%), 근로무능력(1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정책영역 구분	계		일반정부	
		구성비	중앙정부(구성비)	지방자치단체(구성비)
1. 노령	10,818	17.3	7,452 (16.3)	3,366 (19.9)
2. 유족	1,201	1.9	1,201 (2.6)	-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5,765	9.2	2,717 (5.9)	3,048 (18.1)
4. 보건	11,809	18.9	8,606 (18.8)	3,203 (19.0)
5. 가족	17,814	28.5	13,325 (29.2)	4,490 (26.6)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3,829	6.1	2,804 (6.1)	1,025 (6.1)
7. 실업	-	-	-	-
8. 주거 ¹⁾	411	0.7	409 (0.9)	2 (0.0)
9. 기타	10,921	17.5	9,168 (20.1)	1,754 (10.4)
계	62,568	100.0	45,681 (100.0)	16,888 (100.0)
구성비		100.0	73.0	27.0

주: 1)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만(2015.7) 포함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보험별 특성이 기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적연금은 노령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건의, 고용보험은 가족, ALMP, 실업에, 산재보험은 근로무능력관련급여와 보건의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은 주로 노령과 근로무능력관련급여, 기타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정부지출을 제외한 사회보험지출과 공기업 지출을 중심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는 보건 52.9%, 노령 32.4%, 실업 4.7%, 유족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정책영역	계		사회보험					공기업 (교통 통신 등 감면)
	구성비	공적 연금	건강 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노령	31,530	32.4	30,952	-	-	-	-	578
2. 유족	3,621	3.7	3,088	-	-	-	533	-
3. 근로무능력급여	3,441	3.5	445	-	-	-	2,762	233
4. 보건	51,427	52.9	-	47,422	3,123	-	882	-
5. 가족	879	0.9	-	-	-	879	-	0
6. ALMP	1,709	1.8	-	-	-	1,709	-	-
7. 실업	4,547	4.7	-	-	-	4,547	-	-
8. 주거	-	-	-	-	-	-	-	-
9. 기타	15	0.0	0	-	-	-	-	15
계	97,170	100.0	34,485	47,422	3,123	7,135	4,178	826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제도별로 살펴본 결과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은 기초연금으로 구성된 노령(34.2%)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기타 사회정책영역(28.0%), 보건(23.5%), 근로무능력관련급여(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회서비스는 가족(51.4%), 보건(14.6%), ALMP(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 고용안정서비스, 보건의료 등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은 보건(53.4%)과 노령(32.1%)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 등 특수한 정책목적에 가진 사회보험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1>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기능구분	계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1. 노령	42,348	9,824	34.2	1,572	4.5	30,952	32.1
2. 유족	4,822	1,201	4.2	-	-	3,621	3.8
3. 근로무능력급여	9,206	2,476	8.6	3,523	10.2	3,208	3.3
4. 보건	63,236	6,763	23.5	5,045	14.6	51,427	53.4
5. 가족	18,693	-	-	17,815	51.4	879	0.9
6. ALMP	5,539	-	-	3,829	11.0	1,709	1.8
7. 실업	4,547	-	-	-	-	4,547	4.7
8. 주거 ¹⁾	411	411	1.4	-	-	-	-
9. 기타	10,936	8,055	28.0	2,881	8.3	0	0.0
계	159,738	28,729	100.0	34,665	100.0	96,343	100.0
구성비	100.0	18.0		21.7		60.3	

주: 1)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만(2015.7) 포함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되나 법에 근거한 의무지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자동차책임보험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비 요금 감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년 퇴직자가 수령하는 법정퇴직금의 추계결과 2014년 169십억원, 2015년 276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퇴직금은 전체 지출액(2014년 28.1조원, 2015년 39.4조원) 중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의 금액만 추계에 포함된다. 법정퇴직금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수령하는 노령부문 추계결과 2014년 5.6조원, 2015년 7.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단위: 십억 원, %)

제도구분	연도	금액	정년퇴직자 비중	정년퇴직자가 수령하는 금액 ¹⁾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	비자발적 이직자가 수령하는 금액
법정퇴직금	2014	28,104	0.6	169	20	5,621
	2015	39,360	0.7	276	20	7,872
	증감율	40.1		63.4		40.1

주: 1) SOCX에 포함되는 법정퇴직금은 정년퇴직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연령대를 고려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2017/9/29/다운로드).

고용노동부, 2016년 고용보험 통계연보.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추계결과 2014년 2.7조원, 2015년 3.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년대비 4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퇴직연금 지출규모

(단위: 개소, 천명, 십억 원, %)

연도	전 사업장 수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	퇴직연금 가입자 수	금액(55세 이상 퇴직자)	연금	
					연금	일시금
2014	1,687,476	275,547	5,353	2,734	24	2,710
2015	1,752,503	305,665	5,904	3,905	88	3,817
증감율	3.9	10.9	10.3	42.8	272.0	40.8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퇴직연금통계, 각년도(2016/8/30/ 다운로드)

자동차책임보험금의 추계결과 2014년 1.5조원, 2015년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책임보험금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형선 외, 2016).

기업이 부담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출산전후휴직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경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2015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811십억 원으로 전년(663십억 원)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단위: 명, 십억 원, %)

연도	수급자수	금액
2014	129,727	663
2015	143,751	811
'14-'15 증감율	10.8	2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서 재가공(2017.9.21.공문)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민간부문의 교통·통신비 감면에 대한 추계결과 2015년 기준 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통부문의 지하철과 공항철도에서 금액의 규모는 작지만 전년대비 32.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항철도의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 개통(2010.12.29)과 도시철도 9호선의 증편운행(2011.10)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국내항공요금은 0.9%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전화 및 이동통신요금도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표 4-15〉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단위: 십억 원, %)

제도구분		2014	2015	'14-'15 증감율
교통	국내항공요금('11.8)	12	12	-0.9
	지하철('09.7, '11.10), 공항철도('07.3), 경전철('13.4)	30	40	32.1
통신	전화('89.7), 이동통신('96.6)	475	458	-3.5
	케이블TV 수신료('04.)	7	6	-6.7
계		524	516	-1.4

주: ()는 최초 제도가 도입된 시기임.

이상과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 2015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5조원으로 전년(11.3조원)대비 3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능별·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4-16>과 같다. 먼저 제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비자발적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7.9조원), 퇴직연금(3.9조원), 자동차책임보험금(1.7조원), 출산전후휴가급여(0.8조원),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0.3조원)과 교통통신요금 감면(0.5조원)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비자발적 이직자 및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교통통신요금감면으로 구성된 노령부문이 80.1%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자동차책임보험금으로 구성된 보건부문이 11.3%로 나타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로 구성된 가족부문이 5.4%, 교통통신감면으로 구성된 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2.2%, 저소득층 교통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된 기타 정책영역이 1.0% 순으로 나타난다.

〈표 4-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4-2015년)

(단위: 십억 원, %)

연도	정책영역구분	구성비	계	법정퇴직금 ¹⁾	법정퇴직금 ²⁾	퇴직연금	자동차 책임보험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교통통신 감면 ³⁾
2014			11,254	169	5,621	2,734	1,545	663	524
2015	노령	80.1	12,084	276	7,872	3,905			32
	근로무능력급여	2.2	338						338
	보건	11.3	1,703				1,703		
	가족	5.4	811					811	0
	기타	1.0	146						146
	계	100.0	15,082	276	7,872	3,905	1,703	811	516
'14-'15 증감율			34.0	63.4	40.1	42.8	10.2	22.3	-1.4

주: 1) 법정퇴직금 전체 금액(39,360십억 원) 중 법정퇴직연령 비율을 적용한 수치임.

2) 법정퇴직금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수령하는 급여.

3) 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항공요금, 지하철, 공항철도, 전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4 사회조사(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결과는 〈표 4-17〉과 같다. 2015년 사회복지지출은 174.8조원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159.7조원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5.1조원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154.9조원)대비 12.9%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5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1.18%(공공사회복지지출 10.21%,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0.96%의 합)로 전년(10.42%)대비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각각 92.7%, 7.3%에서 2015년 91.4%, 8.6%로 변화하였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4	금 액	154,897	143,642	11,254
	GDP %	10.42	9.67	0.76
	구성비	100.0	92.7	7.3
2015	금 액	174,819	159,738	15,082
	GDP %	11.18	10.21	0.96
	구성비	100.0	91.4	8.6
'14-'15 증감률		12.9	11.2	34.0

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보건영역(2014년 37.3%, 2015년 36.0%)과 노령영역(2014년 24.8%, 2015년 25.8%)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전년대비(2014~2015년간) 증감율을 살펴보면, 실업부문(28.4%), 기타부문(18.4%), 노령부문(17.6%), 유족부문(10.7%)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

(단위: 십억 원, %)

정책영역 구분	2014		2015		'14-'15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45,218	29.2	54,432	31.1	20.4
2. 유족	4,355	2.8	4,822	2.8	10.7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8,665	5.6	9,544	5.5	10.1
4. 보건 ²⁾	59,551	38.4	64,938	37.1	9.0
5. 가족	18,220	11.8	19,505	11.2	7.0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369	3.5	5,539	3.2	3.2
7. 실업	4,156	2.7	4,547	2.6	9.4
8. 주거 ³⁾	-	-	411	0.2	-
9. 기타	9,362	6.0	11,082	6.3	18.4
계	154,897	100.0	174,819	100.0	12.9
GDP	1,486,079		1,564,124		5.3
GDP 대비 %	10.42		11.18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의, 2016년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3)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만(2015.7) 포함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민간모금기관 등, 사회적 기업, 공동체)로 구성된다. 2015년 기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31.5조원으로 전년(29.4조원) 보다 7.1% 증가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부문91.7%, 제3섹터 8.3%로 나타난다.

기업부문의 자발적민간부문 지출은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66.1)와 기업의 임의가입 건강보험(22.3%), 사회공헌활동(1.4%), 병가급여(1.4%), 기업의 법정 외 보건비(0.5%)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3섹터는 민간모금기관(3.4%), 공동체(2.4%), 비영리단체(2.1%), 사회복지시설(1.5%), 사회적기업(0.1%) 순으로 나타난다.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15년도 민간모금기관이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한 금액은 전년(1,133십억 원)에 비해 6.9% 감소한 1,055십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9〉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단위: 십억 원, %)

부문	구분	2014		2015		'14-'15 증감율
			비율		비율	
계		29,386	100.0	31,481	100.0	7.1
제3섹터	소 계	2,672	9.1	2,624	8.3	-1.8
	민간모금기관	1,133	3.9	1,055	3.4	-6.9
	사회복지시설	531	1.8	468	1.5	-11.8
	사회적 기업	37	0.1	40	0.1	9.5
	비영리단체	624	2.1	650	2.1	4.3
	공동체	635	2.2	757	2.4	19.1
	이중계산 ¹⁾	- 287	-1.0	-347	-1.1	20.6
기업	소 계	26,714	90.9	28,857	91.7	8.0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	19,445	66.2	20,804	66.1	7.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463	1.6	434	1.4	-6.1
	기업의 법정외 보건비	146	0.5	168	0.5	15.2
	기업의 임의가입 건강보험	6,286	21.4	7,014	22.3	11.6
	기업의 병가급여	375	1.3	436	1.4	16.2

주: 1) 민간모금기관 배분금액 중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지원된 부분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는 <표 4-20>과 같다. 2015년 기준 총사회복지지출은 206.3조원으로 전년(184.3조원)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GDP대비 총사회복지지출 역시 13.19%로 전년(12.40%)대비 0.79%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2015년 총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5.3%),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지출	자발적민간지출	
2014	금 액	184,283	143,642	11,254	29,386
	GDP 대비	12.40	9.67	0.76	1.98
	구성비	100.0	77.9	6.1	15.9
2015	금 액	206,300	159,738	15,082	31,481
	GDP 대비	13.19	10.21	0.96	2.01
	구성비	100.0	77.4	7.3	15.3
'14-'15 증감율	11.9	11.2	34.0	7.1	

<표 4-21>에서 총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령영역(2015년, 26.7%)과 보건영역(35.3%)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기타사회정책영역의 지출규모는 일반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사회정책영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나 사회복지지출에서는 4위였으나 총사회복지지출에서는 구성비중이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총사회복지지출의 2014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노령, 유족, 기타영역에서 높은 증가율(노령 20.1%, 유족 10.5%, 기타 10.5%)이 나타났다.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정책영역 구분	2014		2015		'14-'15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45,852	24.9	55,086	26.7	20.1
2. 유족	4,382	2.4	4,843	2.3	10.5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9,199	5.0	10,129	4.9	10.1
4. 보건 ²⁾	66,606	36.1	72,771	35.3	9.3
5. 가족	19,548	10.6	20,745	10.1	6.1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369	2.9	5,539	2.7	3.2
7. 실업	4,156	2.3	4,547	2.2	9.4
8. 주거 ³⁾	-	-	411	0.2	-
9. 기타	29,172	15.8	32,230	15.6	10.5
총사회복지지출(십억)	184,283	100.0	206,300	100.0	11.9
GDP	1,486,079		1,564,124		5.3
GDP 대비 %	12.40		13.19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의. 2016년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3)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만(2015.7) 포함

총사회복지지출을 제도별로 살펴본 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에 속하는 사회보험(46.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사회서비스(16.8%), 자발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업(14.0%),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13.9%), 순으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법정 민간사회복지지출에 속하는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법정퇴직금,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퇴직연금은 5%이하의 비중을 나타냈다.

〈표 4-22〉 제도별 기능별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

부문	기능구분	1. 노령	2. 유족	3. 근로 무능력	4.보건	5. 가족	6. ALMP	7. 실업	8. 주거	9. 기타	계	구성비
계	계	55,086	4,843	10,129	72,771	20,745	5,539	4,547	411	32,230	206,300	100.0
공공 부문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	9,824	1,201	2,476	6,763	-	-	-	411	8,055	28,729	13.9
	사회 서비스	1,572	-	3,523	5,045	17,815	3,829	-	-	2,881	34,665	16.8
	사회보험	30,952	3,621	3,208	51,427	879	1,709	4,547	-	0	96,343	46.7
법정 민간 부문	법정퇴직 금(정년)	276	-	-	-	-	-	-	-	-	276	0.1
	법정퇴직 금(비자 발적)	7,872	-	-	-	-	-	-	-	-	7,872	3.8
	퇴직연금	3,905	-	-	-	-	-	-	-	-	3,905	1.9
	자동차 책임 보험금	-	-	-	1,703	-	-	-	-	-	1,703	0.8
	출산전후 휴가급여	-	-	-	-	811	-	-	-	-	811	0.4
	교통통신 감면	32	-	338	-	0	-	-	-	146	516	0.3
자발적 민간 부문	제3섹터	654	21	149	650	615	-	-	-	535	2,624	1.3
	기업	-	-	436	7,182	625	-	-	-	20,613	28,857	14.0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 통계 생산 기준 및 방법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 조세부담과 조세감면에 대한 데이터를 집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다소 체계화된 반면에 조세혜택은 관세감면, 자동차세 면세, 재산세 등 감면, 근로소득 공제,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표 4-23〉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분류	종류	대상	자료원
조세부담	1. 직접세	법정퇴직금, 연금소득세, 퇴직연금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¹⁾ /기업 병가급여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청, 고용노동부
	2. 간접세	이전소득자의 가계지출	통계청
	3. 사회보험료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법정민간급여수급자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조세혜택	1. 관세감면	장애인용 의료용구 등의 수입물품 감면	관세청
	2. 자동차세면세	장애인용 자동차	국세청
		· 구입단계 · 등록 및 보유단계	행정안전부
	3. 재산세 등감면	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4. 근로소득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 등 공제	국세청 기획재정부
	5. 법인세감면	사회복지 관련 기부 기업	국세청 기획재정부
6. 근로장려세제 ²⁾ (EITC)	저소득층	국세청	

주: 1) 2007년도까지는 과세, 2008년부터 비과세

2) EITC는 제도측면에서 TBSPs로 분류 하지만 재원의 특성이 일반 세출과 같아 통계는 공공복지지출에 포함.

가. 조세부담

조세부담 추계는 세수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아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접세(direct tax)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에 부과된 직접세액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선책으로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항목별세율’(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구별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한다. 이 때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⁴⁰⁾’은 ‘결정세액’을 공제 전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text{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 = \text{이전소득금액} \times \text{실효세율}^*$$

$$* \text{ 실효세율} = \frac{\text{결정세액}}{\text{근로자연간소득(공제전)}}$$

현재 소득세법(제12조)에서 이전소득 중 일부 연금 소득과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연금소득,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40) OECD Taxing Wage(2008-2009)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있음. 4가지 가구유형은 미혼가구, 홀벌이-무자녀, 홀벌이-두 자녀, 맞벌이-두 자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구형태별 자료가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함.

〈표 4-24〉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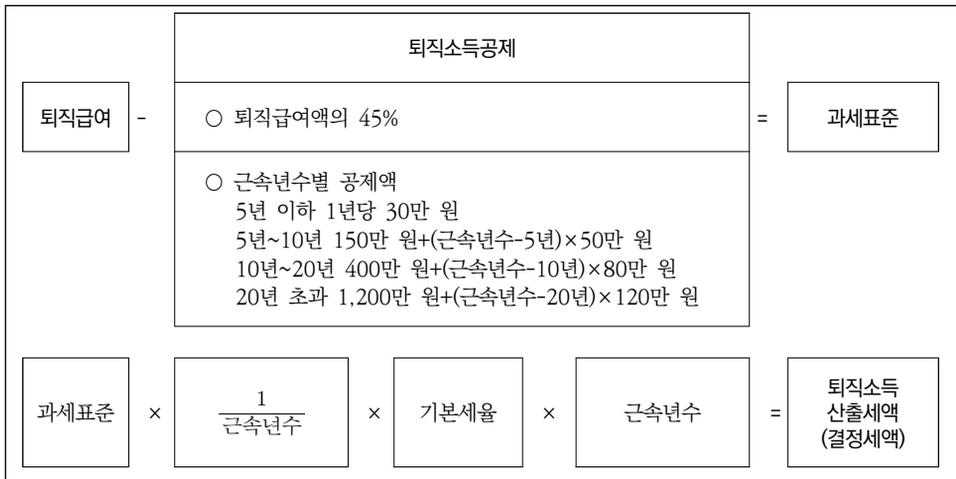
구 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공적 연금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2.1.1.이후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사적 연금 소득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세액공제(기존의 소득공제 포함) 받은 금액 또는 이연퇴직 소득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5.

한편 법정퇴직금과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과세대상이며, 고용보험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008년부터 비과세대상으로 전환(소득세법 제12조)하였다.

- 법정퇴직금 과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2012년 기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로 곱한 세액으로 과세
- 기업지급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2012년 기준)의 세율 적용

[그림 4-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2) 간접세(Indirect Tax)

간접세를 추계하는 방법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와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가 있다. 먼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가구(농가 및 어가가구는 제외), 1인가구의 지출항목이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어 간접세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전소득자⁴¹⁾의 사례수는 비교적 높지만 (전체조사가구의 47.6%, 2010) 간접세율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소비품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미시자료의 수집 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OECD는 조세자료와 국민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접세율을 추계⁴²⁾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간접세율이 추계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전소득자와 일반소득자간의 소비 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하고 있다.

평균간접세율 산출을 위해서 본 연구는 일반소비세와 특정소비세를 활용하였다. 먼저 ‘일반소비세’(5110)에는 부가가치세, ‘특정소비세’(5121)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이들에 대한 부가세(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여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2015)은 Minim 10.21%, Medium 12.24%, 그리고 Maxim 14.31%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소비범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Minim방식을 선택하였다.

$$\begin{aligned} \text{Minim} &= (\text{일반소비세} + \text{국내소비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ediu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axi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최종소비지출} \end{aligned}$$

본 연구에서 실제로 추계하고자 하는 간접세액의 세율은 <표 4-25>와 같이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율은 정부부문(서비스부문 비포함⁴³⁾)의 현금급여,

41) 이전소득자는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사회적현물이전·세금환급금의 수급자를 포함

42) OECD는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조세자료(OECD Revenue Statistics)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기초로 목시적 평균 간접세율(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43)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의료보전

사회보험 현금급여, 법정민간부문의 현금급여, 자발적민간부문의 현금급여 그리고 조세감면이다. 이 때 간접세액을 추계함에 있어 현금급여는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하였다.

〈표 4-25〉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부 문	추 계 범 위
정부부문	·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생계보호, 국가보훈의 보상금 등): 포함 · 공공부조의 현물급여(의료급여, 교육보호): 제외 · 국가공급의 사회서비스: 제외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액: 제외
사회보험	· 현금급여(공적연금,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포함 · 현물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제외
법정민간부문	· 현금급여(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포함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액: 제외
자발적민간부문	· 현금급여(기업의 고용연계급여 등): 포함 · 현물급여(종교 및 자선단체의 이전지출(현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민간의료비 등): 제외
조세지출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구입단계),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포함

3) 사회보험료(insurance premium)

사회보험료는 연금수령금액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근로소득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병가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먼저 연금수령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은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소득 등의 반영으로 과대 추계되어 본 연구에서 이 보험료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이를 포함한 경우 과대 추계가 제외하였을 때 과소추계보다 참값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수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질병휴가기간 동안 유급급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를 부담한다. 이의 추계는 근로자부담의 3대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평균), 고용보험료율)의 합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용역은 면세하고 있음.

〈표 4-26〉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5)

(단위: %)

종 류		근로자	사업주	합 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04%	3.04%	6.07%
고용 보험	실업급여	0.65%	0.65%	1.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¹⁾	-	0.25~0.85%	0.25~0.85%
산재보험		-	평균 1.7% - 최고34%(석탄광업) - 최저0.7%(금융 및 보험업 등)	0.7~34%

주: 1) 사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15년도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문』, 201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5, 근로복지공단, 『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2016. 9.21. 다운로드)

나. 조세감면

국세 부문의 조세감면은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4). 지방세 부문의 조세감면은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발표된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참고하였다. 각각의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계에 적용된 내역은 〈표 4-27〉과 같다. 참고로 2012년도 OECD와 검토에 의해 조세감면의 일부 항목들을 제외 또는 추가하였다. 먼저 제외 내역을 보면 재분배 기능이 약한 개인연금저축비과세(소득공제⁴⁴⁾, 사회적 목적이 약하고 SOCX범주와 거리가 다소 있는 교육비·보험료 특별공제, 그리고 법인세 산출에 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였다. 반면 부양가족에 대한 조세지원 성격이 높은 부양가족공제가 추가되었다.

44) OECD는 Country Tables에서 각 국가의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나 소득공제’에 대해 Memorandum item에 기록, 추계 대상으로부터 빗겨있음.

〈표 4-27〉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재원	분야	항 목	조세지출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	
국 세	사회 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2,4,5호 물품)	
		보육가족 및 여성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자녀세액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감면	
			한부모 추가공제(2013년 신설)	
		노인·청소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노 동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중대 세액공제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산재보험)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복지일반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보건	보건의료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 특별공제
		지 방 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득세, 자동차세)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휴먼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조례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장애인 소유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음성나환자집단촌지원			
	중교단체의료업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p.25~144.
 행정안전부, 2015 지방세통계연감.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해서는 이전소득자의 부담세율이 필요하다. 세율은 매크로 데이터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 할 수 있다. 먼저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은 2014년 6.12%, 2015년 6.28%로 추계되었다. 반면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은 201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추계는 매크로데이터와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직접세율이든 간접세율이든 마이크로 데이터분석 결과는 실제 조세부담 보다 낮아 참고로만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실효세율)을 활용하였다.

〈표 4-28〉 직접세율 추계결과

(단위: %)

구분	매크로데이터 ¹⁾			마이크로데이터 ²⁾
	2013	2014	2015	2010
직접세율	4.90	6.12	6.28	2.2

주: 1) 근로소득결정세액 ÷ 과세대상근로소득(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 과세미달자 제외) × 100 = 직접세율

2) 이전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사업소득세와 경상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하여 추정

자료: 2015 국세통계연보.

다음으로 매크로데이터(국민계정, SNA2008 기준)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은 2014년 기준 최소 10.44%에서 최대 14.63%, 2015년 기준 최소 10.21%에서 최대 14.31%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 5.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간접세 부담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매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최소세율을 활용하였다.

〈표 4-29〉 간접세율 추계결과

(단위: %)

구분	매크로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2013	2014	2015
간접세율	Minim	10.23	10.44	10.21
	Maxim	14.66	14.63	14.31
				5.1

주: Minim=(5110 일반소비세 + 5121 국내소비세)/(민간소비+정부소비-공무원임금)×100

Maxim=(5000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국민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100

자료: OECD 조세통계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 Revenue Statistics(2017.10.10.다운로드); 한국은행 홈페이지(2017.9.28. 다운로드), 국민계정.

사회적 목적을 위한 조세혜택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세감면제도이다. 조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 그리고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조세감면 지출 규모는 8.1조원으로 2014년(7.7조원)에 비해 5.5% 증가하였다.

〈표 4-30〉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구분	2014	2015
계	7,717	8,14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475	477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¹⁾	2	1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단계 면세금액	93	101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금액	21	22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	7,127	7,543

주: 1) 감면대상의 일부제도가 지방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장애인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 등)

자료: 행정안전부, 『2015지방세통계연감』; 국세청 내부자료, 2015; 관세청 내부자료, 2015;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각년도.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추계한 순사회복지지출 결과는 아래의 〈표 4-31〉과 같다. 2015년 순사회복지지출은 204.3조원으로 전년(183.3조원) 대비 11.5% 증가하였다. 2015년 요소 GDP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은 14.54%로 전년(13.70%)대비 0.8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 원)

구분	2014		2015		'14-'15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총사회복지지출	184,283	100.0	206,300	100.0	11.9
2. 조세부담 ¹⁾	8,740	4.7	10,164	4.9	16.3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068	0.6	1,418	0.7	32.8
간접세	7,671	4.2	8,745	4.2	14.0
3. 조세혜택 ²⁾	7,717	4.2	8,145	3.9	5.5
순사회복지지출	183,261	99.4	204,282	99.0	11.5
(요소GDP 대비 비율)	13.70		14.54		

주: 1) 직접세는 연금소득세와 기업복지의 법정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부과된 소득세임(참고로 사회보험의 일부 연금이의 각종 급여에는 소득세가 면세임). 간접세 추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기업복지 중 현금 급여(법정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TBSPs의 평균간접세율로 추계함.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액,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임. 단,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제 5 장

결론: 동향과 국제비교

제1절 추이와 동향

제2절 국제비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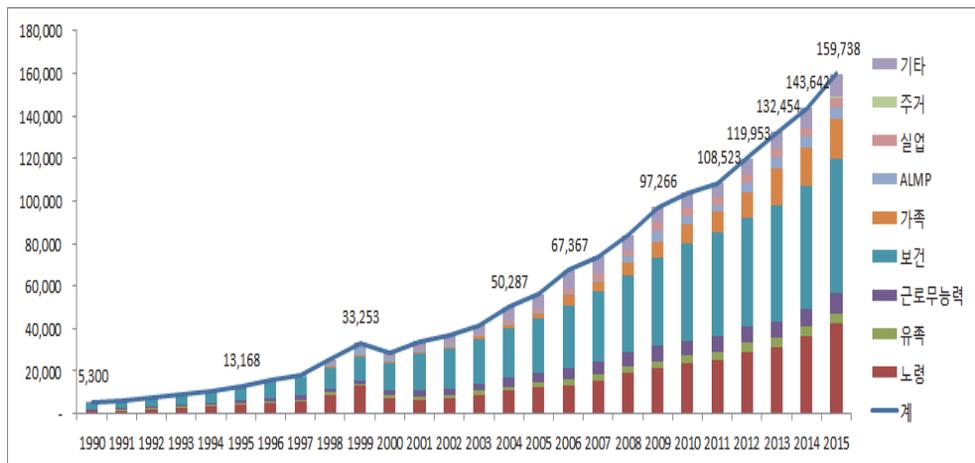
결론: 동향과 국제비교 <<

제1절 추이와 동향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통계 생산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정책 영역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보건 영역의 지출 증가와 노령 영역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례적으로 1999년에 지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IMF 이후 고용보험의 지출 급증에 따른 것이다.

[그림 5-1]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액 추이

(단위: 십억원)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 부문의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건 외 영역의 지출 증가로 인해 구성비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기타 영역의 지출 증가와 가족 영역의 지출 증가이다. 기타 영역의 지출은 2005년 경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족은 1990년대에 그 구성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2000년 2.3%, 2005년 3.8%, 2010년 8.5%로 확대하다가 2015년에 11.7%로 급증하였다. 가족 지출의 구성비가 10%를 넘어선 것은 2012년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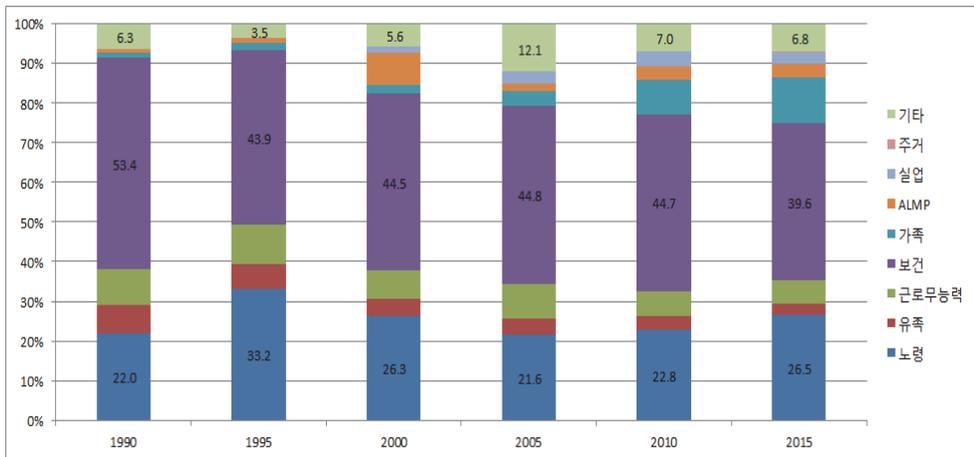
가족 지출의 증가는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 이용률의 증가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도입 등과 관련이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는 1990년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강구해왔다. 이와 함께 2009년 7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확대를 통해 한국은 이제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정 혹은 센터에 기반을 두고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공격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노령 지출은 지출액 자체도 증가하고 구성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구성비는 21.6%에서 22.8%, 2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배출과 2013년 기초연금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노령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역시 구성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그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유족 지출과 근로무능력지출은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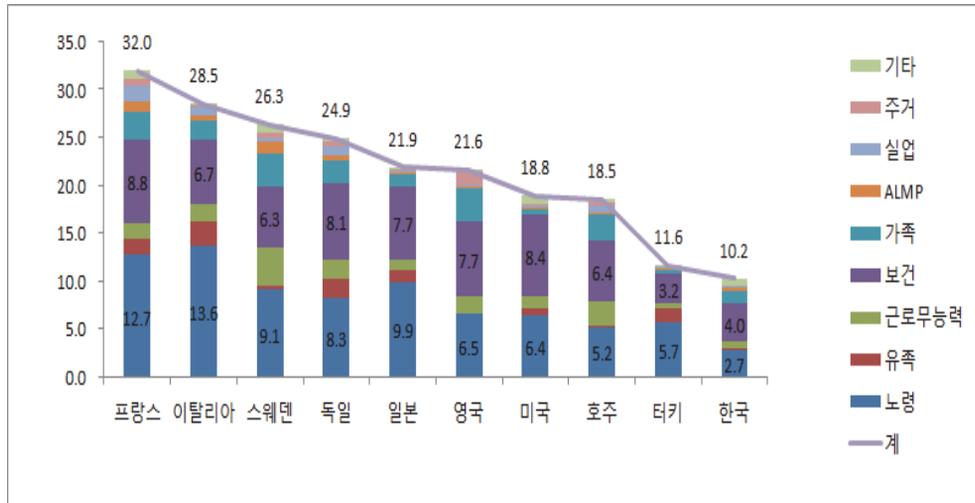
제2절 국제비교

OECD SOCX 홈페이지에 제시된 최근 자료는 2015년 기준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 위치를 살펴본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2%로 OECD회원국가 중 낮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2.0%)와 이탈리아(28.5%), 스웨덴(26.3%) 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이탈리아는 2008년에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 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경직성이 높은 노령 영역과 보건 영역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5-3]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2015)

(단위: GDP 대비 %)



주: 2013년도 기준 자료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2019.1.23. 추출)

먼저 노령 영역의 지출을 보면, 비교 대상 10개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유일하게 GDP 대비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은 GDP 대비 2.7%의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 번 더 면밀하게 따져 봐야할 것은 노인인구의 비중과 노령 영역의 지출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령 영역

의 지출이 낮다면,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령 영역의 지출이 비례적으로 높다면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건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부양비와 노령지출의 비중을 [그림 5-4]에서 살펴보면, 노령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에서 노인 부양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부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령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노령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인 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보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다.

[그림 5-4] 노령 지출과 노인 부양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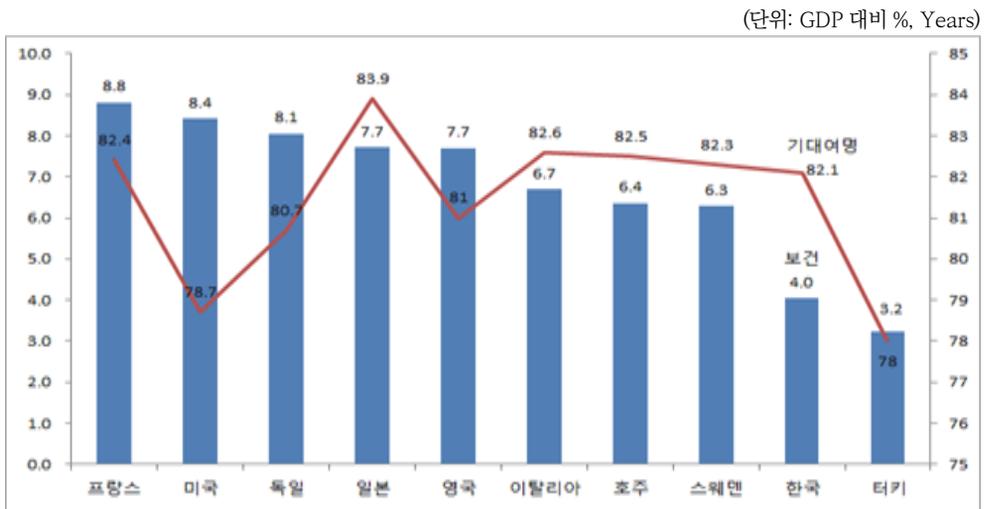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1) 노인부양비=65세 이상 노인/15~64세 생산가능인구,
 2) 2015년도 노인부양비 국제자료가 없어 2013년 자료로 공표
 자료: OECD SOCX; OECD STATS 홈페이지(2016.10.28. 추출)

다음 보건 영역의 지출을 보면, 비교 대상 10개 국가 중에서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이 GDP 대비 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은 GDP 대비 4.0%의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건지출 수준에 비해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그리고 한국이다.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비는 적게 부담하고 국민들의 기대여명은 길다. 바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정책성과를 산출하는 국가들로 볼 수 있다.

[그림 5-5] 보건지출과 기대여명(2015)



자료: OECD SOCX: OECD STATS 홈페이지(2019.1.23. 추출)

끝으로 가족 지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령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족 지출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할 수 없고 대부분 조세를 통한 현금 및 현물 급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러하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족 영역의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GDP 대비 3.5%)과 영국(GDP 대비 3.5%)으로 나타났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없는 미국(GDP 대비 0.6%)과 터키(GDP 대비 0.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족 영역의 지출이 GDP 대비 1.2% 수준으로 미국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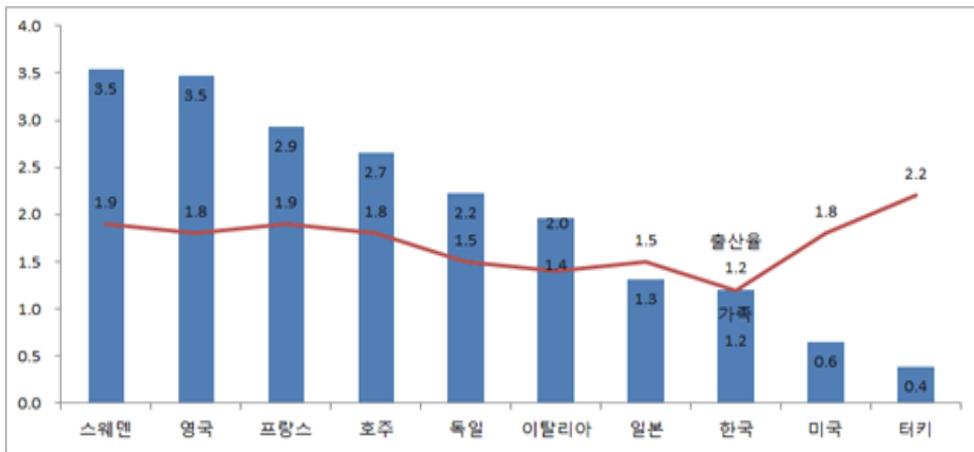
가족 지출은 보편적인 아동 및 가족 수당, 보편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일

가족 양립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들 정책은 대표적인 출산 장려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가족 지출의 성과는 합계출산율과 종종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지출과 출산율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가족 지출이 증가하여 출산율이 제고되기도 하고, 출산율이 높아져 가족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선후 방향성에 관계 없이 여전히 출산율과 가족 지출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2.2)와 스웨덴(1.9), 프랑스(1.9)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1.4)와 한국(1.2)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미국과 터키에서 가족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상당히 높게 났다.

[그림 5-6] 가족 지출과 출산율(2015)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2019.1.23. 추출)

실제로 가족 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낮지만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일본, 한국 그리고 터키이다. 일본과 한국은 출산 장벽을 제거하며, 아동 양육 부담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2010년 이후 가족 지출 증가는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아동 수당은 12세까지는 자산 조사 급여이고 그 이후 연령은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아동 수당에 대한 급여율도 증가했다. 즉 대상자의 확대와 급여율의 증가로 가족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보편적인 아동 급여는 없으나 가족 지출의 증가는 육아휴직급여와 포괄적

인 ECEC 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서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2년 4%에서 2014년 36%로 증가하였고, 3~5세 유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은 2005년 31%에서 2014년 92%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에 공식적인 보육 지원에서 대상자 선정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

터키에서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은 현금 급여와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터키에서 지난 10년 동안 3~5세 아동의 ECEC 참여율은 약 20%에서 30%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터키는 전체 인구 대비 어린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 수준에서 한국은 여전히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인부양비에 비해 낮은 노령 지출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숙과 이를 대체할 공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완전히 성숙하기 전 까지 발생하는 노인의 빈곤에 대해 보충적 소득보장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일가정 양립정책과 보편적인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가족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가 아직 출산율이라는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1. 자료원 및 자료수집기관

-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최요한, 정영애(2016).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통계연감;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통계, 2014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2014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6). 2016년 한국 노동시장정책 분류방식의 주요 변경내용.
- 공무원연금공단(2015). 공무원연금통계연보.
- 관세청(2015). 내부자료.
- 교육부. 내부자료.
- 교육부. 2012년 교육통계.
- 국가보훈처(2014). 보훈연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내부자료. 각년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2015). 2015년도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문.
- 국민연금공단(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방부(2015). 군인연금통계연보.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내부자료.
- 근로복지공단(2015). 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 금융감독위원회, 퇴직연금통계, 각년도(2016/8/30/ 다운로드)
- 기획재정부(2014).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기획재정부(2014). 2015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 기획재정부(2014). 2014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기획재정부(2015). 2015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기획재정부.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 기획재정부(2015). 조세개요 .
- 대한민국정부(2014).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문화재청. 취약계층 궁능입장료 감면 실태조사.

- 매일경제(2013.6.20.). 각 공제회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실태조사.
- 별정우체국관리단(2015). 공적연금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2년 보육통계
-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각 년도
- 사학연금공단(2015). 사학연금통계연보.
-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2011). OECD 신보건계정체계(SHA 2011) 적용 위한 국민의료 시범추계.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 정형선, 신정우, 하솔잎, 이슬기, 장준, 진다빈, 서은원(2016). 2014년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형선, 신정우, 문성용, 김경훈, 고금지, 신지영, 조수경, 민하주, 김희년, 권영근, 김정창, 김태민(2018). 2016년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통계청. 2016 사회조사보고서(보건, 가족부문).
- 한국고용정보원(2015). 고용보험통계연보.
- 한국은행홈페이지. 국민계정.
- 행정안전부(2012).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_____ (2015).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
- _____ (2016), 2015년 e-호조회계시스템.
- _____ (2017). 2015 지방세통계연감.
- Adema, W., Fron, P., & Ladaique, M.(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 Eurostat(2013). *Labour market policy statistics Methodology*.
- OECD(2004).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 _____ (2006). *Start Strong 2*.
- OECD, Eurostat, UNESCO-UIS(2015). *ISCED 2011 Operational Manual*.
- UN(2008). *2008 SNA*.

2. 웹페이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2016. 9.21. 다운로드)
-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 및 공개시스템(<http://www.hometax.go.kr>)
- OECD Education database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
- OECD Taxation_Revenue Statistics 홈페이지(<http://stats.oecd.org>)(2017. 10.10. 다운로드)
-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Index.aspx>)(2017. 10.13. 다운로드)
- Eurostat 홈페이지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index.php/Glossary:ESSPROS)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ecos.bok.or.kr>)(2017. 9.28. 다운로드)

3. 법령 정보

- 개별소비세법. 제12846호 (20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96호 (2015)
-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2014)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1호 (2014)
-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201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0967호 (201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2호 (2016)
- 노인복지법 법률 제11998호 (201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8호 (2015)
- 방송법. 법률 제13220호 (2015)
- 법인세법. 법률 제12850호 (2015)

소득세법. 법률 제12169호 (2015)

유료도로법. 법률 제12984호 (20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2987호 (2015)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216호 (2015)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761호 (2015)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2015)

지방세법. 법률 제12954호 (2015)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 (2015)

철도사업법. 법률 제12991호 (2015)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부록 4. 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 매뉴얼(SOCX Manual)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database Manual)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단위: 십억 원,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SNA2008 GDP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5,925	5,757	5,300	457	168 ¹⁾	197,712
1991	6,905	6,726	6,174	552	179 ¹⁾	238,877
1992	8,535	8,348	7,676	673	186 ¹⁾	273,267
1993	10,062	9,834	8,949	885	228 ¹⁾	310,074
1994	12,156	11,905	10,557	1,349	250 ¹⁾	366,054
1995	22,397	14,634	13,168	1,466	7,763	428,927
1996	26,250	17,189	15,519	1,670	9,060	481,141
1997	31,069	21,180	18,440	2,740	9,889	530,347
1998	39,149	30,554	25,341	5,213	8,595	524,477
1999	48,025	36,816	33,253	3,562	11,210	576,873
2000	45,282	33,558	28,752	4,806	11,724	635,185
2001	50,423	37,806	33,853	3,954	12,617	688,165
2002	54,367	40,189	36,520	3,669	14,179	761,939
2003	62,215	45,888	41,405	4,483	16,327	810,915
2004	68,441	55,249	50,287	4,962	13,192	876,033
2005	76,016	61,209	56,304	4,905	14,807	919,797
2006	89,883	72,605	67,367	5,237	17,279	966,055
2007	99,080	79,604	73,900	5,704	19,476	1,043,258
2008	107,575	89,958	83,844	6,113	17,618	1,104,492
2009	124,144	104,747	97,266	7,481	19,397	1,151,708
2010	131,024	111,396	103,959	7,437	19,628	1,265,308
2011	141,417	116,423	108,523	7,899	24,995	1,332,681
2012	154,673	129,049	119,953	9,096	25,624	1,377,457
2013	169,616	142,010	132,454	9,555	27,606	1,429,445
2014	184,283	154,897	143,642	11,254	29,386	1,486,079
2015	206,300	174,819	159,738	15,082	31,481	1,564,124
1990-2015 평균증가율	15.3	14.6	14.6	15.0	23.3	8.6
2000-2015 평균증가율	10.6	11.6	12.1	7.9	6.8	6.2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100.0	97.2	89.5	7.7	2.8 ¹⁾
1991	100.0	97.4	89.4	8.0	2.6 ¹⁾
1992	100.0	97.8	89.9	7.9	2.2 ¹⁾
1993	100.0	97.7	88.9	8.8	2.3 ¹⁾
1994	100.0	97.9	86.8	11.1	2.1 ¹⁾
1995	100.0	65.3	58.8	6.5	34.7
1996	100.0	65.5	59.1	6.4	34.5
1997	100.0	68.2	59.4	8.8	31.8
1998	100.0	78.0	64.7	13.3	22.0
1999	100.0	76.7	69.2	7.4	23.3
2000	100.0	74.1	63.5	10.6	25.9
2001	100.0	75.0	67.1	7.8	25.0
2002	100.0	73.9	67.2	6.7	26.1
2003	100.0	73.8	66.6	7.2	26.2
2004	100.0	80.7	73.5	7.2	19.3
2005	100.0	80.5	74.1	6.5	19.5
2006	100.0	80.8	75.0	5.8	19.2
2007	100.0	80.3	74.6	5.8	19.7
2008	100.0	83.6	77.9	5.7	16.4
2009	100.0	84.4	78.3	6.0	15.6
2010	100.0	85.0	79.3	5.7	15.0
2011	100.0	82.3	76.7	5.6	17.7
2012	100.0	83.4	77.6	5.9	16.6
2013	100.0	83.7	78.1	5.6	16.3
2014	100.0	84.1	77.9	6.1	15.9
2015	100.0	84.7	77.4	7.3	15.3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3.00	2.91	2.68	0.23	0.08 ¹⁾
1991	2.89	2.82	2.58	0.23	0.07 ¹⁾
1992	3.12	3.06	2.81	0.25	0.07 ¹⁾
1993	3.25	3.17	2.89	0.29	0.07 ¹⁾
1994	3.32	3.25	2.88	0.37	0.07 ¹⁾
1995	5.22	3.41	3.07	0.34	1.81
1996	5.46	3.57	3.23	0.35	1.88
1997	5.86	3.99	3.48	0.52	1.86
1998	7.46	5.83	4.83	0.99	1.64
1999	8.33	6.38	5.76	0.62	1.94
2000	7.13	5.28	4.53	0.76	1.85
2001	7.33	5.49	4.92	0.57	1.83
2002	7.14	5.27	4.79	0.48	1.86
2003	7.67	5.66	5.11	0.55	2.01
2004	7.81	6.31	5.74	0.57	1.51
2005	8.26	6.65	6.12	0.53	1.61
2006	9.30	7.52	6.97	0.54	1.79
2007	9.50	7.63	7.08	0.55	1.87
2008	9.74	8.14	7.59	0.55	1.60
2009	10.78	9.09	8.45	0.65	1.68
2010	10.36	8.80	8.22	0.59	1.55
2011	10.61	8.74	8.14	0.59	1.88
2012	11.23	9.37	8.71	0.66	1.86
2013	11.87	9.93	9.27	0.67	1.93
2014	12.40	10.42	9.67	0.76	1.98
2015	13.19	11.18	10.21	0.96	2.01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1	16.5	16.8	16.5	20.8	6.6 ¹⁾
1992	23.6	24.1	24.3	21.8	4.1 ¹⁾
1993	17.9	17.8	16.6	31.6	22.6 ¹⁾
1994	20.8	21.1	18.0	52.4	9.6 ¹⁾
1995	84.2	22.9	24.7	8.7	2,999.7
1996	17.2	17.5	17.9	13.9	16.7
1997	18.4	23.2	18.8	64.1	9.1
1998	26.0	44.3	37.4	90.2	- 13.1
1999	22.7	20.5	31.2	- 31.7	30.4
2000	- 5.7	- 8.8	- 13.5	34.9	4.6
2001	11.4	12.7	17.7	- 17.7	7.6
2002	7.8	6.3	7.9	- 7.2	12.4
2003	14.4	14.2	13.4	22.2	15.2
2004	10.0	20.4	21.5	10.7	- 19.2
2005	11.1	10.8	12.0	- 1.1	12.2
2006	18.2	18.6	19.6	6.8	16.7
2007	10.2	9.6	9.7	8.9	12.7
2008	8.6	13.0	13.5	7.2	- 9.5
2009	15.4	16.4	16.0	22.4	10.1
2010	5.5	6.3	6.9	- 0.6	1.2
2011	7.9	4.5	4.4	6.2	27.3
2012	9.4	10.8	10.5	15.2	2.5
2013	9.7	10.0	10.4	5.0	7.7
2014	8.6	9.1	8.4	17.8	6.5
2015	11.9	12.9	11.2	34.0	7.1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단위: 십억 원)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 자	비자 발적 퇴직 자	퇴직 연금										
1990	5,300	1,166	-	-	-	374	487	2,828	60	51	-	-	-	335
1991	6,174	1,471	-	-	-	511	676	3,048	89	44	-	-	-	336
1992	7,676	2,028	-	-	-	581	858	3,666	111	103	-	-	-	328
1993	8,949	2,661	-	-	-	611	879	4,142	154	144	-	-	-	359
1994	10,557	3,317	-	-	-	726	1,137	4,715	185	114	-	-	-	363
1995	13,168	4,373	-	-	-	812	1,324	5,774	262	168	-	-	-	455
1996	15,519	4,651	-	-	-	916	1,549	7,292	337	184	10	10	-	580
1997	18,440	5,458	-	-	-	1,036	1,862	8,483	429	360	79	79	-	734
1998	25,341	8,931	-	-	-	1,058	1,887	9,613	549	1,627	799	799	-	876
1999	33,253	13,005	-	-	-	1,072	1,757	11,229	530	3,266	936	936	-	1,458
2000	28,752	7,570	-	-	-	1,248	2,095	12,782	665	2,313	471	471	-	1,607
2001	33,853	6,715	-	-	-	1,361	2,510	17,511	941	1,429	845	845	-	2,541
2002	36,520	7,325	-	-	-	1,571	2,989	18,469	1,018	1,342	835	835	-	2,971
2003	41,405	8,785	-	-	-	1,861	3,586	20,750	1,268	932	1,030	1,030	-	3,192
2004	50,287	10,707	-	-	-	2,058	4,485	22,615	1,654	939	1,448	1,448	-	6,381
2005	56,304	12,184	-	-	-	2,255	4,942	25,223	2,131	1,023	1,752	1,752	-	6,794
2006	67,367	13,546	-	-	-	2,511	5,520	29,334	4,753	1,074	2,074	2,074	-	8,554
2007	73,900	15,526	-	-	-	2,791	6,010	32,853	4,540	1,256	2,434	2,434	-	8,490
2008	83,844	19,447	-	-	-	3,008	6,673	35,671	6,241	2,606	2,865	2,865	-	7,332
2009	97,266	21,349	-	-	-	3,282	7,105	41,249	7,824	4,961	4,116	4,116	-	7,381
2010	103,959	23,686	-	-	-	3,590	6,634	46,444	8,850	3,815	3,687	3,687	-	7,253
2011	108,523	25,379	-	-	-	3,923	7,245	48,871	9,350	3,308	3,561	3,561	-	6,886
2012	119,953	29,195	-	-	-	4,223	7,916	50,925	12,002	4,498	3,677	3,677	-	7,515
2013	132,454	31,478	-	-	-	3,990	8,097	54,230	17,156	5,253	3,884	3,884	-	8,366
2014	143,642	36,670	-	-	-	4,355	8,314	58,007	17,557	5,369	4,156	4,156	-	9,213
2015	159,738	42,348	-	-	-	4,822	9,206	63,236	18,693	5,539	4,547	4,547	411	10,936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직무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자	퇴직연금									실업보상	
1990	2.68	0.59	-	-	-	0.19	0.25	1.43	0.03	0.03	-	-	-	0.17
1991	2.58	0.62	-	-	-	0.21	0.28	1.28	0.04	0.02	-	-	-	0.14
1992	2.81	0.74	-	-	-	0.21	0.31	1.34	0.04	0.04	-	-	-	0.12
1993	2.89	0.86	-	-	-	0.20	0.28	1.34	0.05	0.05	-	-	-	0.12
1994	2.88	0.91	-	-	-	0.20	0.31	1.29	0.05	0.03	-	-	-	0.10
1995	3.07	1.02	-	-	-	0.19	0.31	1.35	0.06	0.04	-	-	-	0.11
1996	3.23	0.97	-	-	-	0.19	0.32	1.52	0.07	0.04	0.00	0.00	-	0.12
1997	3.48	1.03	-	-	-	0.20	0.35	1.60	0.08	0.07	0.01	0.01	-	0.14
1998	4.83	1.70	-	-	-	0.20	0.36	1.83	0.10	0.31	0.15	0.15	-	0.17
1999	5.76	2.25	-	-	-	0.19	0.30	1.95	0.09	0.57	0.16	0.16	-	0.25
2000	4.53	1.19	-	-	-	0.20	0.33	2.01	0.10	0.36	0.07	0.07	-	0.25
2001	4.92	0.98	-	-	-	0.20	0.36	2.54	0.14	0.21	0.12	0.12	-	0.37
2002	4.79	0.96	-	-	-	0.21	0.39	2.42	0.13	0.18	0.11	0.11	-	0.39
2003	5.11	1.08	-	-	-	0.23	0.44	2.56	0.16	0.11	0.13	0.13	-	0.39
2004	5.74	1.22	-	-	-	0.23	0.51	2.58	0.19	0.11	0.17	0.17	-	0.73
2005	6.12	1.32	-	-	-	0.25	0.54	2.74	0.23	0.11	0.19	0.19	-	0.74
2006	6.97	1.40	-	-	-	0.26	0.57	3.04	0.49	0.11	0.21	0.21	-	0.89
2007	7.08	1.49	-	-	-	0.27	0.58	3.15	0.44	0.12	0.23	0.23	-	0.81
2008	7.59	1.76	-	-	-	0.27	0.60	3.23	0.57	0.24	0.26	0.26	-	0.66
2009	8.45	1.85	-	-	-	0.28	0.62	3.58	0.68	0.43	0.36	0.36	-	0.64
2010	8.22	1.87	-	-	-	0.28	0.52	3.67	0.70	0.30	0.29	0.29	-	0.57
2011	8.14	1.90	-	-	-	0.29	0.54	3.67	0.70	0.25	0.27	0.27	-	0.52
2012	8.71	2.12	-	-	-	0.31	0.57	3.70	0.87	0.33	0.27	0.27	-	0.55
2013	9.27	2.20	-	-	-	0.28	0.57	3.79	1.20	0.37	0.27	0.27	-	0.59
2014	9.67	2.47	-	-	-	0.29	0.56	3.90	1.18	0.36	0.28	0.28	-	0.62
2015	10.21	2.71	-	-	-	0.31	0.59	4.04	1.20	0.35	0.29	0.29	0.03	0.70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자	퇴직연금										
1990	100.0	22.0	-	-	-	7.1	9.2	53.4	1.1	1.0	-	-	-	6.3
1991	100.0	23.8	-	-	-	8.3	11.0	49.4	1.4	0.7	-	-	-	5.4
1992	100.0	26.4	-	-	-	7.6	11.2	47.8	1.4	1.3	-	-	-	4.3
1993	100.0	29.7	-	-	-	6.8	9.8	46.3	1.7	1.6	-	-	-	4.0
1994	100.0	31.4	-	-	-	6.9	10.8	44.7	1.8	1.1	-	-	-	3.4
1995	100.0	33.2	-	-	-	6.2	10.1	43.9	2.0	1.3	-	-	-	3.5
1996	100.0	30.0	-	-	-	5.9	10.0	47.0	2.2	1.2	0.1	0.1	-	3.7
1997	100.0	29.6	-	-	-	5.6	10.1	46.0	2.3	1.9	0.4	0.4	-	4.0
1998	100.0	35.2	-	-	-	4.2	7.4	37.9	2.2	6.4	3.2	3.2	-	3.5
1999	100.0	39.1	-	-	-	3.2	5.3	33.8	1.6	9.8	2.8	2.8	-	4.4
2000	100.0	26.3	-	-	-	4.3	7.3	44.5	2.3	8.0	1.6	1.6	-	5.6
2001	100.0	19.8	-	-	-	4.0	7.4	51.7	2.8	4.2	2.5	2.5	-	7.5
2002	100.0	20.1	-	-	-	4.3	8.2	50.6	2.8	3.7	2.3	2.3	-	8.1
2003	100.0	21.2	-	-	-	4.5	8.7	50.1	3.1	2.3	2.5	2.5	-	7.7
2004	100.0	21.3	-	-	-	4.1	8.9	45.0	3.3	1.9	2.9	2.9	-	12.7
2005	100.0	21.6	-	-	-	4.0	8.8	44.8	3.8	1.8	3.1	3.1	-	12.1
2006	100.0	20.1	-	-	-	3.7	8.2	43.5	7.1	1.6	3.1	3.1	-	12.7
2007	100.0	21.0	-	-	-	3.8	8.1	44.5	6.1	1.7	3.3	3.3	-	11.5
2008	100.0	23.2	-	-	-	3.6	8.0	42.5	7.4	3.1	3.4	3.4	-	8.7
2009	100.0	21.9	-	-	-	3.4	7.3	42.4	8.0	5.1	4.2	4.2	-	7.6
2010	100.0	22.8	-	-	-	3.5	6.4	44.7	8.5	3.7	3.5	3.5	-	7.0
2011	100.0	23.4	-	-	-	3.6	6.7	45.0	8.6	3.0	3.3	3.3	-	6.3
2012	100.0	24.3	-	-	-	3.5	6.6	42.5	10.0	3.7	3.1	3.1	-	6.3
2013	100.0	23.8	-	-	-	3.0	6.1	40.9	13.0	4.0	2.9	2.9	-	6.3
2014	100.0	25.5	-	-	-	3.0	5.8	40.4	12.2	3.7	2.9	2.9	-	6.4
2015	100.0	26.5	-	-	-	3.0	5.8	39.6	11.7	3.5	2.8	2.8	0.3	6.8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자	퇴직연금										
1990	-	-	-	-	-	-	-	-	-	-	-	-	-	-
1991	16.5	26.1	-	-	-	36.6	39.0	7.8	48.2	-14.0	-	-	-	0.2
1992	24.3	37.9	-	-	-	13.8	26.9	20.3	24.9	136.5	-	-	-	-2.3
1993	16.6	31.2	-	-	-	5.1	2.4	13.0	38.7	39.6	-	-	-	9.3
1994	18.0	24.7	-	-	-	18.8	29.3	13.8	20.2	-20.6	-	-	-	1.1
1995	24.7	31.8	-	-	-	11.9	16.4	22.5	41.6	46.9	-	-	-	25.4
1996	17.9	6.4	-	-	-	12.8	17.0	26.3	28.9	9.2	-	-	-	27.5
1997	18.8	17.4	-	-	-	13.1	20.2	16.3	27.1	95.8	652.8	652.8	-	26.5
1998	37.4	63.6	-	-	-	2.1	1.4	13.3	28.1	352.6	915.3	915.3	-	19.3
1999	31.2	45.6	-	-	-	1.3	-6.9	16.8	-3.5	100.7	17.1	17.1	-	66.4
2000	-13.5	-41.8	-	-	-	16.4	19.3	13.8	25.5	-29.2	-49.7	-49.7	-	10.2
2001	17.7	-11.3	-	-	-	9.1	19.8	37.0	41.6	-38.2	79.5	79.5	-	58.1
2002	7.9	9.1	-	-	-	15.4	19.1	5.5	8.1	-6.0	-1.2	-1.2	-	16.9
2003	13.4	19.9	-	-	-	18.5	20.0	12.4	24.6	-30.6	23.4	23.4	-	7.4
2004	21.5	21.9	-	-	-	10.6	25.1	9.0	30.4	0.7	40.6	40.6	-	99.9
2005	12.0	13.8	-	-	-	9.6	10.2	11.5	28.8	8.9	21.0	21.0	-	6.5
2006	19.6	11.2	-	-	-	11.3	11.7	16.3	123.0	5.1	18.4	18.4	-	25.9
2007	9.7	14.6	-	-	-	11.2	8.9	12.0	-4.5	16.9	17.4	17.4	-	-0.7
2008	13.5	25.3	-	-	-	7.8	11.0	8.6	37.5	107.5	17.7	17.7	-	-13.6
2009	16.0	9.8	-	-	-	9.1	6.5	15.6	25.4	90.4	43.7	43.7	-	0.7
2010	6.9	10.9	-	-	-	9.4	-6.6	12.6	13.1	-23.1	-10.4	-10.4	-	-1.7
2011	4.4	7.1	-	-	-	9.3	9.2	5.2	5.6	-13.3	-3.4	-3.4	-	-5.1
2012	10.5	15.0	-	-	-	7.7	9.3	4.2	28.4	36.0	3.2	3.2	-	9.1
2013	10.4	7.8	-	-	-	-5.5	2.3	6.5	42.9	16.8	5.6	5.6	-	11.3
2014	8.4	16.5	-	-	-	9.2	2.7	7.0	2.3	2.2	7.0	7.0	-	10.1
2015	11.2	15.5	-	-	-	10.7	10.7	9.0	6.5	3.2	9.4	9.4	-	18.7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단위: 십억 원)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2.유족	3.근로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퇴직자	비자발적퇴직자										
1990	457	368	9	359	-	-	-	89	-	-	-	-	-
1991	552	435	11	424	-	-	-	118	-	-	-	-	-
1992	673	534	13	521	-	-	-	139	-	-	-	-	-
1993	885	612	15	597	-	-	-	273	-	-	-	-	-
1994	1,349	817	20	797	-	-	-	532	-	-	-	-	-
1995	1,466	1,009	25	984	-	0	9	441	-	-	-	-	6
1996	1,670	1,118	27	1,091	-	0	13	530	-	-	-	-	9
1997	2,740	1,956	84	1,872	-	0	22	666	85	-	-	-	11
1998	5,213	4,396	169	4,226	-	0	36	676	94	-	-	-	12
1999	3,562	2,692	85	2,606	-	0	53	653	153	-	-	-	11
2000	4,806	3,562	87	3,474	-	-	115	905	212	-	-	-	12
2001	3,954	2,652	52	2,599	-	-	143	839	309	-	-	-	11
2002	3,669	2,387	47	2,330	-	-	190	817	260	-	-	-	14
2003	4,483	2,931	57	2,863	-	-	239	972	321	-	-	-	21
2004	4,962	3,350	82	3,266	-	-	274	963	362	-	-	-	13
2005	4,905	3,263	80	3,182	-	-	290	1,031	307	-	-	-	14
2006	5,237	3,414	83	3,330	-	-	320	1,119	367	-	-	-	17
2007	5,704	3,757	92	3,663	-	-	341	1,117	459	-	-	-	30
2008	6,113	4,060	99	3,959	-	-	376	1,116	507	-	-	-	54
2009	7,481	5,213	127	5,082	-	-	404	1,192	526	-	-	-	145
2010	7,437	5,056	123	4,925	-	-	406	1,235	563	-	-	-	176
2011	7,899	5,489	134	5,344	-	-	397	1,223	604	-	-	-	186
2012	9,096	6,513	124	4,954	1,419	-	395	1,288	718	-	-	-	181
2013	9,555	7,090	126	4,214	2,733	-	382	1,208	701	-	-	-	174
2014	11,254	8,547	169	5,621	2,734	-	351	1,545	663	-	-	-	149
2015	15,082	12,084	276	7,872	3,905	-	338	1,703	811	-	-	-	146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자										
1990	0.23	0.19	0.00	0.18	-	-	-	0.04	-	-	-	-	-
1991	0.23	0.18	0.00	0.18	-	-	-	0.05	-	-	-	-	-
1992	0.25	0.20	0.00	0.19	-	-	-	0.05	-	-	-	-	-
1993	0.29	0.20	0.00	0.19	-	-	-	0.09	-	-	-	-	-
1994	0.37	0.22	0.01	0.22	-	-	-	0.15	-	-	-	-	-
1995	0.34	0.24	0.01	0.23	-	0.00	0.00	0.10	-	-	-	-	0.00
1996	0.35	0.23	0.01	0.23	-	0.00	0.00	0.11	-	-	-	-	0.00
1997	0.52	0.37	0.02	0.35	-	0.00	0.00	0.13	0.02	-	-	-	0.00
1998	0.99	0.84	0.03	0.81	-	0.00	0.01	0.13	0.02	-	-	-	0.00
1999	0.62	0.47	0.01	0.45	-	0.00	0.01	0.11	0.03	-	-	-	0.00
2000	0.76	0.56	0.01	0.55	-	-	0.02	0.14	0.03	-	-	-	0.00
2001	0.57	0.39	0.01	0.38	-	-	0.02	0.12	0.04	-	-	-	0.00
2002	0.48	0.31	0.01	0.31	-	-	0.02	0.11	0.03	-	-	-	0.00
2003	0.55	0.36	0.01	0.35	-	-	0.03	0.12	0.04	-	-	-	0.00
2004	0.57	0.38	0.01	0.37	-	-	0.03	0.11	0.04	-	-	-	0.00
2005	0.53	0.35	0.01	0.35	-	-	0.03	0.11	0.03	-	-	-	0.00
2006	0.54	0.35	0.01	0.34	-	-	0.03	0.12	0.04	-	-	-	0.00
2007	0.55	0.36	0.01	0.35	-	-	0.03	0.11	0.04	-	-	-	0.00
2008	0.55	0.37	0.01	0.36	-	-	0.03	0.10	0.05	-	-	-	0.00
2009	0.65	0.45	0.01	0.44	-	-	0.04	0.10	0.05	-	-	-	0.01
2010	0.59	0.40	0.01	0.39	-	-	0.03	0.10	0.04	-	-	-	0.01
2011	0.59	0.41	0.01	0.40	-	-	0.03	0.09	0.05	-	-	-	0.01
2012	0.66	0.47	0.01	0.36	0.10	-	0.03	0.09	0.05	-	-	-	0.01
2013	0.67	0.50	0.01	0.29	0.19	-	0.03	0.08	0.05	-	-	-	0.01
2014	0.76	0.58	0.01	0.38	0.18	-	0.02	0.10	0.04	-	-	-	0.01
2015	0.96	0.77	0.02	0.50	0.25	-	0.02	0.11	0.05	-	-	-	0.01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자	퇴직 연금									
1990	100.0	80.6	2.0	78.6	-	-	-	19.4	-	-	-	-	-
1991	100.0	78.7	1.9	76.8	-	-	-	21.3	-	-	-	-	-
1992	100.0	79.4	1.9	77.5	-	-	-	20.6	-	-	-	-	-
1993	100.0	69.2	1.7	67.5	-	-	-	30.8	-	-	-	-	-
1994	100.0	60.6	1.5	59.1	-	-	-	39.4	-	-	-	-	-
1995	100.0	68.8	1.7	67.2	-	0.0	0.6	30.1	-	-	-	-	0.4
1996	100.0	66.9	1.6	65.3	-	0.0	0.8	31.7	-	-	-	-	0.5
1997	100.0	71.4	3.1	68.3	-	0.0	0.8	24.3	3.1	-	-	-	0.4
1998	100.0	84.3	3.2	81.1	-	0.0	0.7	13.0	1.8	-	-	-	0.2
1999	100.0	75.6	2.4	73.2	-	0.0	1.5	18.3	4.3	-	-	-	0.3
2000	100.0	74.1	1.8	72.3	-	-	2.4	18.8	4.4	-	-	-	0.2
2001	100.0	67.1	1.3	65.7	-	-	3.6	21.2	7.8	-	-	-	0.3
2002	100.0	65.1	1.3	63.5	-	-	5.2	22.3	7.1	-	-	-	0.4
2003	100.0	65.4	1.3	63.9	-	-	5.3	21.7	7.2	-	-	-	0.5
2004	100.0	67.5	1.6	65.8	-	-	5.5	19.4	7.3	-	-	-	0.3
2005	100.0	66.5	1.6	64.9	-	-	5.9	21.0	6.3	-	-	-	0.3
2006	100.0	65.2	1.6	63.6	-	-	6.1	21.4	7.0	-	-	-	0.3
2007	100.0	65.9	1.6	64.2	-	-	6.0	19.6	8.1	-	-	-	0.5
2008	100.0	66.4	1.6	64.8	-	-	6.2	18.3	8.3	-	-	-	0.9
2009	100.0	69.7	1.7	67.9	-	-	5.4	15.9	7.0	-	-	-	1.9
2010	100.0	68.0	1.7	66.2	-	-	5.5	16.6	7.6	-	-	-	2.4
2011	100.0	69.5	1.7	67.7	-	-	5.0	15.5	7.6	-	-	-	2.4
2012	100.0	71.6	1.4	54.5	15.6	-	4.3	14.2	7.9	-	-	-	2.0
2013	100.0	74.2	1.3	44.1	28.6	-	4.0	12.6	7.3	-	-	-	1.8
2014	100.0	75.9	1.5	49.9	24.3	-	3.1	13.7	5.9	-	-	-	1.3
2015	100.0	80.1	1.8	52.2	25.9	-	2.2	11.3	5.4	-	-	-	1.0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단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 적퇴직자										
1990	-	-	-	-	-	-	-	-	-	-	-	-	-
1991	20.8	18.0	18.0	18.0	-	-	-	32.7	-	-	-	-	-
1992	21.8	22.9	22.9	22.9	-	-	-	17.8	-	-	-	-	-
1993	31.6	14.6	14.6	14.6	-	-	-	96.9	-	-	-	-	-
1994	52.4	33.4	33.4	33.4	-	-	-	95.0	-	-	-	-	-
1995	8.7	23.5	23.5	23.5	-	-	-	-17.1	-	-	-	-	-
1996	13.9	10.8	10.8	10.8	-	39.1	41.7	20.1	-	-	-	-	39.1
1997	64.1	75.0	208.9	71.6	-	26.2	66.5	25.7	-	-	-	-	26.2
1998	90.2	124.7	100.7	125.8	-	68.6	64.7	1.4	10.6	-	-	-	7.1
1999	-31.7	-38.8	-49.9	-38.3	-	5.7	47.3	-3.4	63.2	-	-	-	-3.6
2000	34.9	32.3	2.5	33.3	-	100.0	115.0	38.7	38.8	-	-	-	2.4
2001	-17.7	-25.6	-40.2	-25.2	-	-	24.5	-7.3	45.7	-	-	-	-6.5
2002	-7.2	-10.0	-10.3	-10.3	-	-	32.9	-2.6	-15.8	-	-	-	32.0
2003	22.2	22.8	22.8	22.8	-	-	25.9	18.9	23.2	-	-	-	46.7
2004	10.7	14.3	42.6	14.1	-	-	14.8	-0.9	12.7	-	-	-	-36.6
2005	-1.1	-2.6	-2.6	-2.6	-	-	5.6	7.1	-15.1	-	-	-	2.7
2006	6.8	4.6	4.6	4.6	-	-	10.5	8.6	19.4	-	-	-	21.8
2007	8.9	10.0	10.0	10.0	-	-	6.4	-0.3	25.3	-	-	-	82.3
2008	7.2	8.1	8.1	8.1	-	-	10.5	-0.0	10.3	-	-	-	77.9
2009	22.4	28.4	28.4	28.4	-	-	7.3	6.8	3.9	-	-	-	167.6
2010	-0.6	-3.0	-3.1	-3.1	-	-	0.6	3.6	7.0	-	-	-	21.9
2011	6.2	8.6	8.5	8.5	-	-	-2.2	-0.9	7.2	-	-	-	5.4
2012	15.2	18.7	-7.3	-7.3	-	-	-0.6	5.3	19.0	-	-	-	-2.5
2013	5.0	8.9	2.1	-14.9	92.6	-	-3.3	-6.2	-2.4	-	-	-	-4.2
2014	17.8	20.5	33.4	33.4	0.0	-	-8.2	27.8	-5.4	-	-	-	-14.5
2015	34.0	41.4	63.4	40.1	42.8	-	-3.6	10.2	22.3	-	-	-	-1.9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단위: 십억 원)

	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 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자								실업 보상	8 주거		
1990	5,757	1,534	9	359	-	374	487	2,917	60	51	-	-	-	335
1991	6,726	1,905	11	424	-	511	676	3,165	89	44	-	-	-	336
1992	8,348	2,563	13	521	-	581	858	3,804	111	103	-	-	-	328
1993	9,834	3,273	15	597	-	611	879	4,414	154	144	-	-	-	359
1994	11,905	4,134	20	797	-	726	1,137	5,247	185	114	-	-	-	363
1995	14,634	5,382	25	984	-	812	1,333	6,215	262	168	-	-	-	461
1996	17,189	5,769	27	1,091	-	916	1,563	7,822	337	184	10	10	-	589
1997	21,180	7,414	84	1,872	-	1,036	1,884	9,149	514	360	79	79	-	745
1998	30,554	13,326	169	4,226	-	1,058	1,924	10,288	643	1,627	799	799	-	888
1999	36,816	15,697	85	2,606	-	1,072	1,810	11,882	683	3,266	936	936	-	1,469
2000	33,558	11,132	87	3,474	-	1,248	2,210	13,687	877	2,313	471	471	-	1,619
2001	37,806	9,366	52	2,599	-	1,361	2,653	18,350	1,251	1,429	845	845	-	2,551
2002	40,189	9,711	47	2,330	-	1,571	3,179	19,286	1,278	1,342	835	835	-	2,985
2003	45,888	11,716	57	2,863	-	1,861	3,825	21,721	1,589	932	1,030	1,030	-	3,213
2004	55,249	14,056	82	3,266	-	2,058	4,760	23,577	2,016	939	1,448	1,448	-	6,394
2005	61,209	15,447	80	3,182	-	2,255	5,232	26,254	2,438	1,023	1,752	1,752	-	6,808
2006	72,605	16,961	83	3,330	-	2,511	5,841	30,454	5,120	1,074	2,074	2,074	-	8,571
2007	79,604	19,283	92	3,663	-	2,791	6,351	33,970	5,000	1,256	2,434	2,434	-	8,521
2008	89,958	23,507	99	3,959	-	3,008	7,049	36,788	6,748	2,606	2,865	2,865	-	7,386
2009	104,747	26,562	127	5,082	-	3,282	7,509	42,441	8,350	4,961	4,116	4,116	-	7,526
2010	111,396	28,742	123	4,925	-	3,590	7,040	47,679	9,414	3,815	3,687	3,687	-	7,429
2011	116,423	30,868	134	5,344	-	3,923	7,643	50,094	9,954	3,308	3,561	3,561	-	7,072
2012	129,049	35,708	124	4,954	1,419	4,223	8,312	52,214	12,721	4,498	3,677	3,677	-	7,696
2013	142,010	38,569	126	4,214	2,733	3,990	8,479	55,439	17,857	5,253	3,884	3,884	-	8,540
2014	154,897	45,218	169	5,621	2,734	4,355	8,665	59,551	18,220	5,369	4,156	4,156	-	9,362
2015	174,819	54,432	276	7,872	3,905	4,822	9,544	64,938	19,505	5,539	4,547	4,547	411	11,082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 적퇴직자												
1990	2.91	0.78	0.00	0.18	-	0.19	0.25	1.48	0.03	0.03	-	-	-	0.17	
1991	2.82	0.80	0.00	0.18	-	0.21	0.28	1.33	0.04	0.02	-	-	-	0.14	
1992	3.06	0.94	0.00	0.19	-	0.21	0.31	1.39	0.04	0.04	-	-	-	0.12	
1993	3.17	1.06	0.00	0.19	-	0.20	0.28	1.42	0.05	0.05	-	-	-	0.12	
1994	3.25	1.13	0.01	0.22	-	0.20	0.31	1.43	0.05	0.03	-	-	-	0.10	
1995	3.41	1.25	0.01	0.23	-	0.19	0.31	1.45	0.06	0.04	-	-	-	0.11	
1996	3.57	1.20	0.01	0.23	-	0.19	0.32	1.63	0.07	0.04	0.00	0.00	-	0.12	
1997	3.99	1.40	0.02	0.35	-	0.20	0.36	1.73	0.10	0.07	0.01	0.01	-	0.14	
1998	5.83	2.54	0.03	0.81	-	0.20	0.37	1.96	0.12	0.31	0.15	0.15	-	0.17	
1999	6.38	2.72	0.01	0.45	-	0.19	0.31	2.06	0.12	0.57	0.16	0.16	-	0.25	
2000	5.28	1.75	0.01	0.55	-	0.20	0.35	2.15	0.14	0.36	0.07	0.07	-	0.25	
2001	5.49	1.36	0.01	0.38	-	0.20	0.39	2.67	0.18	0.21	0.12	0.12	-	0.37	
2002	5.27	1.27	0.01	0.31	-	0.21	0.42	2.53	0.17	0.18	0.11	0.11	-	0.39	
2003	5.66	1.44	0.01	0.35	-	0.23	0.47	2.68	0.20	0.11	0.13	0.13	-	0.40	
2004	6.31	1.60	0.01	0.37	-	0.23	0.54	2.69	0.23	0.11	0.17	0.17	-	0.73	
2005	6.65	1.68	0.01	0.35	-	0.25	0.57	2.85	0.27	0.11	0.19	0.19	-	0.74	
2006	7.52	1.76	0.01	0.34	-	0.26	0.60	3.15	0.53	0.11	0.21	0.21	-	0.89	
2007	7.63	1.85	0.01	0.35	-	0.27	0.61	3.26	0.48	0.12	0.23	0.23	-	0.82	
2008	8.14	2.13	0.01	0.36	-	0.27	0.64	3.33	0.61	0.24	0.26	0.26	-	0.67	
2009	9.09	2.31	0.01	0.44	-	0.28	0.65	3.69	0.73	0.43	0.36	0.36	-	0.65	
2010	8.80	2.27	0.01	0.39	-	0.28	0.56	3.77	0.74	0.30	0.29	0.29	-	0.59	
2011	8.74	2.32	0.01	0.40	-	0.29	0.57	3.76	0.75	0.25	0.27	0.27	-	0.53	
2012	9.37	2.59	0.01	0.36	0.10	0.31	0.60	3.79	0.92	0.33	0.27	0.27	-	0.56	
2013	9.93	2.70	0.01	0.29	0.19	0.28	0.59	3.88	1.25	0.37	0.27	0.27	-	0.60	
2014	10.42	3.04	0.01	0.38	0.18	0.29	0.58	4.01	1.23	0.36	0.28	0.28	-	0.63	
2015	11.18	3.48	0.02	0.50	0.25	0.31	0.61	4.15	1.25	0.35	0.29	0.29	0.03	0.71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적 퇴직자	실업 보상											
1990	100.0	26.6	0.2	6.2	-	6.5	8.5	50.7	1.0	0.9	-	-	-	5.8	
1991	100.0	28.3	0.2	6.3	-	7.6	10.1	47.1	1.3	0.6	-	-	-	5.0	
1992	100.0	30.7	0.2	6.2	-	7.0	10.3	45.6	1.3	1.2	-	-	-	3.9	
1993	100.0	33.3	0.2	6.1	-	6.2	8.9	44.9	1.6	1.5	-	-	-	3.6	
1994	100.0	34.7	0.2	6.7	-	6.1	9.6	44.1	1.6	1.0	-	-	-	3.0	
1995	100.0	36.8	0.2	6.7	-	5.5	9.1	42.5	1.8	1.1	-	-	-	3.2	
1996	100.0	33.6	0.2	6.3	-	5.3	9.1	45.5	2.0	1.1	0.1	0.1	-	3.4	
1997	100.0	35.0	0.4	8.8	-	4.9	8.9	43.2	2.4	1.7	0.4	0.4	-	3.5	
1998	100.0	43.6	0.6	13.8	-	3.5	6.3	33.7	2.1	5.3	2.6	2.6	-	2.9	
1999	100.0	42.6	0.2	7.1	-	2.9	4.9	32.3	1.9	8.9	2.5	2.5	-	4.0	
2000	100.0	33.2	0.3	10.4	-	3.7	6.6	40.8	2.6	6.9	1.4	1.4	-	4.8	
2001	100.0	24.8	0.1	6.9	-	3.6	7.0	48.5	3.3	3.8	2.2	2.2	-	6.7	
2002	100.0	24.2	0.1	5.8	-	3.9	7.9	48.0	3.2	3.3	2.1	2.1	-	7.4	
2003	100.0	25.5	0.1	6.2	-	4.1	8.3	47.3	3.5	2.0	2.2	2.2	-	7.0	
2004	100.0	25.4	0.1	5.9	-	3.7	8.6	42.7	3.6	1.7	2.6	2.6	-	11.6	
2005	100.0	25.2	0.1	5.2	-	3.7	8.5	42.9	4.0	1.7	2.9	2.9	-	11.1	
2006	100.0	23.4	0.1	4.6	-	3.5	8.0	41.9	7.1	1.5	2.9	2.9	-	11.8	
2007	100.0	24.2	0.1	4.6	-	3.5	8.0	42.7	6.3	1.6	3.1	3.1	-	10.7	
2008	100.0	26.1	0.1	4.4	-	3.3	7.8	40.9	7.5	2.9	3.2	3.2	-	8.2	
2009	100.0	25.4	0.1	4.9	-	3.1	7.2	40.5	8.0	4.7	3.9	3.9	-	7.2	
2010	100.0	25.8	0.1	4.4	-	3.2	6.3	42.8	8.5	3.4	3.3	3.3	-	6.7	
2011	100.0	26.5	0.1	4.6	-	3.4	6.6	43.0	8.5	2.8	3.1	3.1	-	6.1	
2012	100.0	27.7	0.1	3.8	1.1	3.3	6.4	40.5	9.9	3.5	2.8	2.8	-	6.0	
2013	100.0	27.2	0.1	3.0	1.9	2.8	6.0	39.0	12.6	3.7	2.7	2.7	-	6.0	
2014	100.0	29.2	0.1	3.6	1.8	2.8	5.6	38.4	11.8	3.5	2.7	2.7	-	6.0	
2015	100.0	31.1	0.2	4.5	2.2	2.8	5.5	37.1	11.2	3.2	2.6	2.6	0.2	6.3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비자발 적퇴직 자											
1990	-	-	-	-	-	-	-	-	-	-	-	-	-	
1991	16.8	24.2	18.0	18.0	-	36.6	39.0	8.5	48.2	-14.0	-	-	0.2	
1992	24.1	34.5	22.9	22.9	-	13.8	26.9	20.2	24.9	136.5	-	-	-2.3	
1993	17.8	27.7	14.6	14.6	-	5.1	2.4	16.0	38.7	39.6	-	-	9.3	
1994	21.1	26.3	33.4	33.4	-	18.8	29.3	18.9	20.2	-20.6	-	-	1.1	
1995	22.9	30.2	23.5	23.5	-	11.9	17.2	18.5	41.6	46.9	-	-	27.1	
1996	17.5	7.2	10.8	10.8	-	12.8	17.2	25.8	28.9	9.2	-	-	27.7	
1997	23.2	28.5	208.9	71.6	-	13.1	20.6	17.0	52.2	95.8	652.8	652.8	26.5	
1998	44.3	79.7	100.7	125.8	-	2.1	2.1	12.5	25.2	352.6	915.3	915.3	19.2	
1999	20.5	17.8	-49.9	-38.3	-	1.3	-5.9	15.5	6.3	100.7	17.1	17.1	65.5	
2000	-8.8	-29.1	2.5	33.3	-	16.4	22.1	15.2	28.4	-29.2	-49.7	-49.7	10.2	
2001	12.7	-15.9	-40.2	-25.2	-	9.1	20.0	34.1	42.6	-38.2	79.5	79.5	57.6	
2002	6.3	3.7	-10.3	-10.3	-	15.4	19.8	5.1	2.2	-6.0	-1.2	-1.2	17.0	
2003	14.2	20.6	22.8	22.8	-	18.5	20.3	12.6	24.3	-30.6	23.4	23.4	7.6	
2004	20.4	20.0	42.6	14.1	-	10.6	24.4	8.5	26.9	0.7	40.6	40.6	99.0	
2005	10.8	9.9	-2.6	-2.6	-	9.6	9.9	11.4	21.0	8.9	21.0	21.0	6.5	
2006	18.6	9.8	4.6	4.6	-	11.3	11.6	16.0	110.0	5.1	18.4	18.4	25.9	
2007	9.6	13.7	10.0	10.0	-	11.2	8.7	11.5	-2.3	16.9	17.4	17.4	-0.6	
2008	13.0	21.9	8.1	8.1	-	7.8	11.0	8.3	35.0	107.5	17.7	17.7	-13.3	
2009	16.4	13.0	28.4	28.4	-	9.1	6.5	15.4	23.7	90.4	43.7	43.7	1.9	
2010	6.3	8.2	-3.1	-3.1	-	9.4	-6.2	12.3	12.7	-23.1	-10.4	-10.4	-1.3	
2011	4.5	7.4	8.5	8.5	-	9.3	8.6	5.1	5.7	-13.3	-3.4	-3.4	-4.8	
2012	10.8	15.7	-7.3	-7.3	-	7.7	8.8	4.2	27.8	36.0	3.2	3.2	8.8	
2013	10.0	8.0	2.1	-14.9	92.6	-5.5	2.0	6.2	40.4	16.8	5.6	5.6	11.0	
2014	9.1	17.2	33.4	33.4	0.0	9.2	2.2	7.4	2.0	2.2	7.0	7.0	9.6	
2015	12.9	20.4	63.4	40.1	42.8	10.7	10.1	9.0	7.0	3.2	9.4	9.4	18.4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5,757	6,726	8,348	9,834	11,905	14,634
공공 부문	소계	5,300	6,174	7,676	8,949	10,557	13,168
	정부 ^{주)}	1,401	1,633	1,922	2,183	2,550	3,059
	사회보험	3,899	4,540	5,754	6,766	8,007	10,072
	공적연금	1,235	1,571	2,141	2,785	3,453	4,483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4,452
	산업재해 보상보험	540	703	933	875	1,001	1,136
	고용보험	-	-	-	-	-	2
	장기요양보험	-	-	-	-	-	-
	공기업사회서비스	-	-	-	-	-	37
	민간 부문	소계	457	552	673	885	1,349
법정퇴직금(정년)		9	11	13	15	20	25
법정퇴직금(비자발적)		359	424	521	597	797	984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	-	-	-
민간사회서비스		-	-	-	-	-	16
자동차 책임보험금		89	118	139	273	532	441

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50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재원	세부재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17,189	21,180	30,554	36,816	33,558	37,806
공공 부문	소계	15,519	18,440	25,341	33,253	28,752	33,853
	정부	3,674	4,550	6,212	8,635	8,700	9,982
	사회보험	11,802	13,831	19,047	24,518	19,913	23,685
	공적연금	4,727	5,511	8,945	13,051	7,688	6,750
	건강보험	5,692	6,609	7,489	8,649	9,776	13,748
	산업재해 보상보험	1,358	1,560	1,454	1,277	1,460	1,826
	고용보험	24	151	1,159	1,540	989	1,361
	장기요양보험	-	-	-	-	-	-
	공기업사회서비스	43	59	81	100	139	185
	민간 부문	소계	1,670	2,740	5,213	3,562	4,806
법정퇴직금(정년)		27	84	169	85	87	52
법정퇴직금(비자발적)		1,091	1,872	4,226	2,606	3,474	2,599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85	94	153	212	309
민간사회서비스		22	34	49	66	127	155
자동차 책임보험금		530	666	676	653	905	839

(단위: 십억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0,189	45,888	55,249	61,209	72,605	79,604	89,958	104,747	111,396
36,520	41,405	50,287	56,304	67,367	73,900	83,844	97,266	103,959
11,231	12,011	17,552	19,251	25,118	26,162	30,557	36,422	36,908
25,079	29,148	32,418	36,646	41,788	47,202	52,717	60,259	66,437
7,366	8,964	10,293	12,094	13,330	15,098	17,382	18,649	20,911
14,258	15,962	17,344	19,219	22,349	25,326	27,165	30,751	34,777
2,112	2,581	2,959	3,045	3,194	3,289	3,482	3,533	3,599
1,343	1,641	1,821	2,288	2,914	3,489	4,436	6,141	5,364
-	-	-	-	-	-	252	1,184	1,786
210	246	317	406	462	537	570	585	614
3,669	4,483	4,962	4,905	5,237	5,704	6,113	7,481	7,437
47	57	82	80	83	92	99	127	123
2,330	2,863	3,266	3,182	3,330	3,663	3,959	5,082	4,925
-	-	-	-	-	-	-	-	-
260	321	362	307	366	459	506	526	563
214	271	289	305	338	374	433	553	591
817	972	963	1,031	1,119	1,117	1,116	1,192	1,235

(단위: 십억 원)

재원	세부재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16,423	129,049	142,010	154,897	174,819
공공 부문	소계	108,523	119,953	132,454	143,642	159,738
	정부	37,176	42,844	49,857	54,656	62,568
	사회보험	70,709	76,397	81,855	88,217	96,343
	공적연금	22,855	26,368	28,621	31,420	34,485
	건강보험	36,925	38,608	41,114	43,737	47,422
	산업재해 보상보험	3,706	3,938	3,888	4,022	4,178
	고용보험	5,270	5,409	5,851	6,315	7,135
	장기요양보험	1,954	2,074	2,380	2,723	3,123
	공기업사회서비스	638	712	742	770	826
	민간 부문	소계	7,899	9,096	9,555	11,254
법정퇴직금(정년)		134	124	126	169	276
법정퇴직금(비자발적)		5,344	4,954	4,214	5,621	7,872
퇴직연금		-	1,419	2,733	2,734	3,905
출산전후 휴가급여		603	718	701	663	811
민간사회서비스		595	593	573	524	516
자동차 책임보험금		1,223	1,288	1,208	1,545	1,703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	16.8	24.1	17.8	21.1	22.9
공공 부문	소계	-	16.5	24.3	16.6	18.0	24.7
	정부 ^{주)}	-	16.6	17.7	13.6	16.8	20.0
	사회보험	-	16.4	26.7	17.6	18.3	25.8
	공적연금	-	27.2	36.3	30.1	24.0	29.8
	건강보험	-	6.7	18.2	15.9	14.4	25.3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1	32.8	-6.3	14.4	13.5
	고용보험	-	-	-	-	-	-
	장기요양보험	-	-	-	-	-	-
	공기업 사회서비스	-	-	-	-	-	-
민간 부문	소계	-	20.8	21.8	31.6	52.4	8.7
	법정퇴직금(정년)	-	18.0	22.9	14.6	33.4	23.5
	법정퇴직금(비자발적)	-	18.0	22.9	14.6	33.4	23.5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	-	-	-
	민간사회서비스	-	-	-	-	-	-
	자동차 책임보험금	-	32.7	17.8	96.9	95.0	-17.1

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요금 감면 포함

154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재원	세부재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17.5	23.2	44.3	20.5	- 8.8	12.7
공공 부문	소계	17.9	18.8	37.4	31.2	-13.5	17.7
	정부 ^{주)}	20.1	23.9	36.5	39.0	0.8	14.7
	사회보험	17.2	17.2	37.7	28.7	-18.8	18.9
	공적연금	5.5	16.6	62.3	45.9	- 41.1	-12.2
	건강보험	27.9	16.1	13.3	15.5	13.0	40.6
	산업재해 보상보험	19.6	14.8	-6.8	- 12.2	14.3	25.1
	고용보험	1,123.0	516.4	668.6	32.9	- 35.8	37.6
	장기요양보험	-	-	-	-	-	-
	공기업 사회서비스	17.4	37.2	37.3	23.5	38.0	33.8
	민간 부문	소계	13.9	64.1	90.2	-31.7	34.9
법정퇴직금(정년)		10.8	208.9	100.7	- 49.9	2.5	-40.2
법정퇴직금(비자발적)		10.8	71.6	125.8	- 38.3	33.3	-25.2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10.6	63.2	38.7	45.7
민간사회서비스		41.6	51.9	44.8	35.1	93.9	21.6
자동차 책임보험금		20.1	25.7	1.4	-3.4	38.7	-7.3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3	14.2	20.4	10.8	18.6	9.6	13.0
7.9	13.4	21.5	12.0	19.6	9.7	13.5
12.5	6.9	46.1	9.7	30.5	4.2	16.8
5.9	16.2	11.2	13.0	14.0	13.0	11.7
9.1	21.7	14.8	17.5	10.2	13.3	15.1
3.7	11.9	8.7	10.8	16.3	13.3	7.3
15.6	22.2	14.6	2.9	4.9	3.0	5.9
-1.3	22.2	11.0	25.7	27.3	19.7	27.1
-	-	-	-	-	-	-
13.2	17.4	28.7	28.2	13.7	16.3	6.2
- 7.2	22.2	10.7	-1.1	6.8	8.9	7.2
- 10.3	22.8	42.6	-2.6	4.6	10.0	8.1
- 10.3	22.8	14.1	-2.6	4.6	10.0	8.1
-	-	-	-	-	-	-
- 15.8	23.2	12.7	-15.1	19.4	25.3	10.3
38.3	26.5	6.9	5.4	10.9	10.4	16.0
-2.6	18.9	-0.9	7.1	8.6	-0.3	-0.0

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요금 감면 포함

(단위: %)

재원	세부재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6.4	6.3	4.5	10.8	10.0	9.1	12.9
공공 부문	소계	16.0	6.9	4.4	10.5	10.4	8.4	11.2
	정부 ^{주)}	19.2	1.3	0.7	15.2	16.4	9.6	14.5
	사회보험	14.3	10.3	6.4	8.0	7.1	7.8	9.2
	공적연금	7.3	12.1	9.3	15.4	8.5	9.8	9.8
	건강보험	13.2	13.1	6.2	4.6	6.5	6.4	8.4
	산업재해 보상보험	1.4	1.9	3.0	6.3	- 1.3	3.4	3.9
	고용보험	38.4	-12.7	-1.8	2.6	8.2	7.9	13.0
	장기요양보험	370.8	50.8	9.4	6.2	14.8	14.4	14.7
	공기업 사회서비스	2.6	5.0	3.9	11.5	4.3	3.8	7.3
	민간 부문	소계	22.4	-0.6	6.2	15.2	5.0	17.8
법정퇴직금(정년)		28.4	-3.1	8.5	-7.3	2.1	33.4	63.4
법정퇴직금(비자발적)		28.4	-3.1	8.5	-7.3	-14.9	33.4	40.1
퇴직연금		-	-	-	-	92.6	0.0	42.8
출산전후 휴가급여		3.9	7.0	7.2	19.0	- 2.4	- 5.4	22.3
민간사회서비스		27.7	6.8	0.6	-0.4	- 3.2	- 8.7	- 1.4
자동차 책임보험금		6.8	3.6	-0.9	5.3	- 6.2	27.8	10.2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문	소계	92.1	91.8	91.9	91.0	88.7	90.0
	정부 ^{주)}	24.3	24.3	23.0	22.2	21.4	20.9
	사회보험	67.7	67.5	68.9	68.8	67.3	68.8
	공적연금	21.5	23.4	25.6	28.3	29.0	30.6
	건강보험	36.9	33.7	32.1	31.6	29.8	30.4
	산업재해 보상보험	9.4	10.4	11.2	8.9	8.4	7.8
	고용보험	-	-	-	-	-	0.0
	장기요양보험	-	-	-	-	-	-
	공기업 사회서비스	-	-	-	-	-	0.3
	민간 부문	소계	7.9	8.2	8.1	9.0	11.3
법정퇴직금(정년)		0.2	0.2	0.2	0.2	0.2	0.2
법정퇴직금(비자발적)		6.2	6.3	6.2	6.1	6.7	6.7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	-	-	-
민간사회 서비스		-	-	-	-	-	0.1
자동차 책임보험금		1.5	1.7	1.7	2.8	4.5	3.0

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세부재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문	소계	90.3	87.1	82.9	90.3	85.7	89.5
	정부 ^{주)}	21.4	21.5	20.3	23.5	25.9	26.4
	사회보험	68.7	65.3	62.3	66.6	59.3	62.6
	공적연금	27.5	26.0	29.3	35.5	22.9	17.9
	건강보험	33.1	31.2	24.5	23.5	29.1	36.4
	산업재해 보상보험	7.9	7.4	4.8	3.5	4.4	4.8
	고용보험	0.1	0.7	3.8	4.2	2.9	3.6
	장기요양보험	-	-	-	-	-	-
	공기업 사회서비스	0.3	0.3	0.3	0.3	0.4	0.5
민간 부문	소계	9.7	12.9	17.1	9.7	14.3	10.5
	법정퇴직금(정년)	0.2	0.4	0.6	0.2	0.3	0.1
	법정퇴직금(비자발적)	6.3	8.8	13.8	7.1	10.4	6.9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0.4	0.3	0.4	0.6	0.8
	민간사회 서비스	0.1	0.2	0.2	0.2	0.4	0.4
	자동차 책임보험금	3.1	3.1	2.2	1.8	2.7	2.2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9	90.2	91.0	92.0	92.8	92.8	93.2
27.9	26.2	31.8	31.5	34.6	32.9	34.0
62.4	63.5	58.7	59.9	57.6	59.3	58.6
18.3	19.5	18.6	19.8	18.4	19.0	19.3
35.5	34.8	31.4	31.4	30.8	31.8	30.2
5.3	5.6	5.4	5.0	4.4	4.1	3.9
3.3	3.6	3.3	3.7	4.0	4.4	4.9
-	-	-	-	-	-	0.3
0.5	0.5	0.6	0.7	0.6	0.7	0.6
9.1	9.8	9.0	8.0	7.2	7.2	6.8
0.1	0.1	0.1	0.1	0.1	0.1	0.1
5.8	6.2	5.9	5.2	4.6	4.6	4.4
-	-	-	-	-	-	-
0.6	0.7	0.7	0.5	0.5	0.6	0.6
0.5	0.6	0.5	0.5	0.5	0.5	0.5
2.0	2.1	1.7	1.7	1.5	1.4	1.2

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

재원	세부재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문	소계	92.9	93.3	93.2	93.0	93.3	92.7	91.4
	정부 ^{주)}	34.8	33.1	31.9	33.2	35.1	35.3	35.8
	사회보험	57.5	59.6	60.7	59.2	57.6	57.0	55.1
	공적연금	17.8	18.8	19.6	20.4	20.2	20.3	19.7
	건강보험	29.4	31.2	31.7	29.9	29.0	28.2	27.1
	산업재해 보상보험	3.4	3.2	3.2	3.1	2.7	2.6	2.4
	고용보험	5.9	4.8	4.5	4.2	4.1	4.1	4.1
	장기요양보험	1.1	1.6	1.7	1.6	1.7	1.8	1.8
	공기업 사회서비스	0.6	0.6	0.5	0.6	0.5	0.5	0.5
	민간 부문	소계	7.1	6.7	6.8	7.0	6.7	7.3
법정퇴직금(정년)		0.1	0.1	0.1	0.1	0.1	0.1	0.2
법정퇴직금(비자발적)		4.9	4.4	4.6	3.8	3.0	3.6	4.5
퇴직연금		-	-	-	1.1	1.9	1.8	2.2
출산전후 휴가급여		0.5	0.5	0.5	0.6	0.5	0.4	0.5
민간사회 서비스		0.5	0.5	0.5	0.5	0.4	0.3	0.3
자동차 책임보험금		1.1	1.1	1.1	1.0	0.9	1.0	1.0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5,757	6,726	8,348	9,834	11,905	14,634
공공 부조)	소계	491	529	585	647	688	789
	기초생활보장	491	529	585	647	688	789
	기초연금	-	-	-	-	-	-
	장애인연금	-	-	-	-	-	-
	장애수당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근로장려금	-	-	-	-	-	-
사회 보상	소계	356	485	524	555	621	711
	국가보훈	315	464	523	543	617	677
	재해구호	40	21	1	12	4	33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1
	사할린동포	-	-	-	-	-	-
	고엽제, 우반부보호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긴급지원	-	-	-	-	-	-	
사회 서비스	소계	555	619	813	981	1,241	1,596
	시설보호	57	70	81	105	263	318
	재가복지	104	128	174	239	297	424
	근로복지 ²⁾	51	44	103	144	114	166
	보건의료	343	377	455	493	567	650
	주택보급	-	-	-	-	-	-
	교육복지	-	-	-	-	-	-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39
사회 보험	소계	3,899	4,540	5,754	6,766	8,007	10,072
	공적연금	1,235	1,571	2,141	2,785	3,453	4,483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4,452
	산업재해 보상보험	540	703	933	875	1,001	1,136
	고용보험 ³⁾	-	-	-	-	-	2
	장기요양 보험	-	-	-	-	-	-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기업 복지	소계	368	435	534	612	817	1,009
	법정퇴직금(정년)	9	11	13	15	20	25
	법정퇴직금(비자발적)	359	424	521	597	797	984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	-	-	-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89	118	139	273	532	441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162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제도	세부제도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17,189	21,180	30,554	36,816	33,558
공공 부조 ¹⁾	소계	967	1,202	1,410	2,310	2,748
	기초생활보장	967	1,202	1,410	2,310	2,708
	기초연금	-	-	-	-	-
	장애인연금	-	-	-	-	-
	장애수당	-	-	-	-	4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근로장려금	-	-	-	-	-
사회 보상	소계	790	859	967	980	1,052
	국가보훈	760	851	905	914	1,025
	재해구호	29	7	62	65	19
	북한이탈 주민지원	1	1	1	1	7
	사할린동포	-	-	-	-	-
	고엽제, 유연부보호	-	-	-	-	-
	의사상자예우	-	-	-	-	1
긴급지원	-	-	-	-	-	
사회 서비스	소계	1,960	2,548	3,916	5,445	5,039
	시설보호	374	514	553	512	282
	재가복지	580	797	840	915	1,429
	근로복지 ²⁾	170	288	1,268	2,661	1,795
	보건의료	792	888	986	1,084	1,186
	주택보급	-	-	-	-	-
	교육복지	-	-	185	169	206
	교통통신 등 감면	46	62	84	103	141
아동발달계좌	-	-	-	-	-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	
사회 보험	소계	11,802	13,831	19,047	24,518	19,913
	공적연금	4,727	5,511	8,945	13,051	7,688
	건강보험	5,692	6,609	7,489	8,649	9,776
	산업재해 보상보험	1,358	1,560	1,454	1,277	1,460
	고용보험 ³⁾	24	151	1,159	1,540	989
장기요양 보험	-	-	-	-	-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22	34	49	66	127
기업 복지	소계	1,118	2,041	4,489	2,844	3,773
	법정퇴직금(정년)	27	84	169	85	87
	법정퇴직금(비자발적)	1,091	1,872	4,226	2,606	3,474
	퇴직연금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85	94	153	212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530	666	676	653	905

(단위: 십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7,806	40,189	45,888	55,249	61,209	72,605	79,604	89,958
4,082	4,284	4,762	5,663	7,012	8,225	8,944	11,836
4,033	4,217	4,690	5,565	6,880	8,059	8,480	8,301
-	-	-	-	-	-	-	2,243
-	-	-	-	-	-	-	-
49	67	71	99	133	166	464	523
-	-	-	-	-	-	-	770
-	-	-	-	-	-	-	-
1,168	1,612	1,682	1,631	1,747	2,125	2,173	2,279
1,140	1,286	1,442	1,550	1,672	1,826	1,988	2,133
10	297	200	35	28	168	79	11
16	25	36	42	41	42	51	65
-	-	-	-	-	-	-	9
-	-	-	-	1	2	2	2
3	3	4	3	5	6	7	8
-	-	-	-	-	82	46	51
4,917	5,545	5,814	10,575	10,899	15,230	15,581	17,012
384	442	459	1,418	983	2,319	2,228	5,059
1,691	2,071	2,476	2,644	3,289	4,721	5,082	4,129
913	860	365	628	560	359	394	1,301
1,364	1,601	1,863	1,931	2,308	2,750	3,139	2,880
-	-	-	3,161	2,776	3,763	3,159	2,168
377	357	401	470	573	851	1,031	888
189	213	249	323	409	466	543	578
-	-	-	-	-	-	5	10
-	-	-	-	-	-	-	-
23,685	25,079	29,148	32,418	36,646	41,788	47,202	52,717
6,750	7,366	8,964	10,293	12,094	13,330	15,098	17,382
13,748	14,258	15,962	17,344	19,219	22,349	25,326	27,165
1,826	2,112	2,581	2,959	3,045	3,194	3,289	3,482
1,361	1,343	1,641	1,821	2,288	2,914	3,489	4,436
-	-	-	-	-	-	-	252
155	214	271	289	305	338	374	433
2,960	2,637	3,241	3,709	3,568	3,779	4,214	4,564
52	47	57	82	80	83	92	99
2,599	2,330	2,863	3,266	3,182	3,330	3,663	3,959
-	-	-	-	-	-	-	-
309	260	321	362	307	366	459	506
839	817	972	963	1,031	1,119	1,117	1,116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단위: 십억 원)

제도	세부제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04,747	111,396	116,423	129,049	142,010	154,897	174,819
공공 부조 ¹⁾	소계	14,631	15,527	15,226	15,914	16,178	19,626	24,680
	기초생활보장	9,282	9,543	9,107	9,272	9,049	9,321	10,113
	기초연금	3,412	3,823	3,804	4,014	4,270	6,891	9,824
	장애연금	-	221	428	426	506	658	842
	장애수당	461	302	151	160	160	158	196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1,023	1,204	1,334	1,445	1,630	1,822	1,987
	근로장려금	454	434	402	597	562	777	1,718
사회 보상	소계	2,499	2,830	2,966	3,528	3,713	3,924	4,050
	국가보훈	2,265	2,498	2,658	2,874	3,501	3,698	3,778
	재해구호	41	168	132	495	18	30	8
	북한이탈 주민지원	62	74	86	91	91	95	87
	사할린동포	8	6	5	5	5	6	6
	고엽제 유해부호	1	1	1	2	2	4	3
	의사상자예우	7	6	5	3	4	5	3
간접지원	114	77	78	58	92	86	164	
사회 서비스	소계	19,877	19,164	19,622	24,114	30,709	31,876	34,665
	시설보호	5,862	8,214	9,278	11,514	13,313	12,329	12,732
	재가복지	4,388	420	443	513	2,021	2,150	2,153
	근로복지 ²⁾	3,255	2,508	2,109	3,365	3,941	3,948	3,829
	보건의료	3,432	3,693	3,575	3,699	3,986	4,371	5,045
	주택보급	1,162	1,697	1,225	1,230	1,410	1,896	2,572
	교육복지	1,176	1,991	2,297	3,007	5,179	6,272	7,347
	교통통신 등 감면	594	622	647	722	772	808	863
	아동발달계좌	10	10	11	13	14	15	15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9	36	51	75	85	107	
사회 보험	소계	60,259	66,437	70,709	76,397	81,855	88,217	96,343
	공적연금	18,649	20,911	22,855	26,368	28,621	31,420	34,485
	건강보험	30,751	34,777	36,925	38,608	41,114	43,737	47,422
	산업재해 보상보험	3,533	3,599	3,706	3,938	3,888	4,022	4,178
	고용보험 ³⁾	6,141	5,364	5,270	5,409	5,851	6,315	7,135
장기요양 보험	1,184	1,786	1,954	2,074	2,380	2,723	3,123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553	591	595	593	573	524	516
기업 복지	소계	5,735	5,610	6,081	7,215	7,774	9,186	12,863
	법정퇴직금(정년)	127	123	134	124	126	169	276
	법정퇴직금(비자발적)	5,082	4,925	5,344	4,954	4,214	5,621	7,872
	퇴직연금	-	-	-	1,419	2,733	2,734	3,905
	출산전후 휴가급여	526	563	603	718	701	663	811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1,192	1,235	1,223	1,288	1,208	1,545	1,703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	16.8	24.1	17.8	21.1	22.9
공공 부조 ¹⁾	소계	-	7.9	10.6	10.5	6.3	14.7
	기초생활보장	-	7.9	10.6	10.5	6.3	14.7
	기초연금	-	-	-	-	-	-
	장애인연금	-	-	-	-	-	-
	장애수당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근로장려금	-	-	-	-	-	-
사회 보상	소계	-	36.4	7.9	6.0	11.8	14.5
	국가보훈	-	47.3	12.6	3.8	13.7	9.7
	재해구호	-	- 48.5	- 96.5	1,547.0	- 69.1	779.7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사할린동포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의사상자에우	-	-	-	-	-	-
사회 서비스	긴급지원	-	-	-	-	-	-
	소계	-	11.6	31.4	20.6	26.6	28.6
	시설보호	-	23.0	14.4	30.4	149.7	20.9
	재가복지	-	22.9	36.2	36.9	24.4	42.5
	근로복지 ²⁾	-	- 14.0	136.5	39.6	- 20.6	45.2
	보건의료	-	10.0	20.7	8.4	15.1	14.6
	주택보급	-	-	-	-	-	-
	교육복지	-	-	-	-	-	-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아동발달계좌	-	-	-	-	-	-
사회 보험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	-
	소계	-	16.4	26.7	17.6	18.3	25.8
	공적연금	-	27.2	36.3	30.1	24.0	29.8
	건강보험	-	6.7	18.2	15.9	14.4	25.3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1	32.8	- 6.3	14.4	13.5
	고용보험 ³⁾	-	-	-	-	-	-
민간사회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	-	-	-	-	-
	교통통신 감면	-	-	-	-	-	-
기업 복지	소계	-	18.0	22.9	14.6	33.4	23.5
	법정퇴직금(정년)	-	18.0	22.9	14.6	33.4	23.5
	법정퇴직금(비자발적)	-	18.0	22.9	14.6	33.4	23.5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	-	-	-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	32.7	17.8	96.9	95.0	- 17.1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166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제도	세부제도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17.5	23.2	44.3	20.5	- 8.8
공공 ¹⁾ 부조	소계	22.7	24.3	17.3	63.8	19.0
	기초생활보장	22.7	24.3	17.3	63.8	17.2
	기초연금	-	-	-	-	-
	장애인연금	-	-	-	-	-
	장애수당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근로장려금	-	-	-	-	-
사회 보상	소계	11.1	8.7	12.7	1.4	7.3
	국가보훈	12.3	11.9	6.3	1.0	12.2
	재해구호	- 12.1	- 76.6	805.0	6.2	- 71.2
	북한이탈 주민지원	14.3	51.2	9.9	2.7	411.5
	사할린동포	-	-	-	-	-
	고엽제 유안부보호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긴급지원	-	-	-	-	-	
사회 서비스	소계	22.8	30.0	53.7	39.0	- 7.5
	시설보호	17.6	37.6	7.5	- 7.3	- 45.0
	재가복지	36.8	37.6	5.3	9.0	56.1
	근로복지 ²⁾	2.1	69.5	341.0	109.9	- 32.5
	보건의료	21.8	12.2	11.1	9.9	9.4
	주택보급	-	-	-	-	-
	교육복지	-	-	-	- 9.0	22.2
	교통통신 등 감면	16.3	35.1	35.8	23.5	36.5
	아동발달계좌	-	-	-	-	-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	
사회 보험	소계	17.2	17.2	37.7	28.7	- 18.8
	공적연금	5.5	16.6	62.3	45.9	- 41.1
	건강보험	27.9	16.1	13.3	15.5	13.0
	산업재해 보상보험	19.6	14.8	- 6.8	- 12.2	14.3
	고용보험 ³⁾	1,123.0	516.4	668.6	32.9	- 35.8
	장기요양보험	-	-	-	-	-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41.6	51.9	44.8	35.1	93.9
기업 복지	소계	10.8	82.5	120.0	- 36.6	32.7
	법정퇴직금(정년)	10.8	208.9	100.7	- 49.9	2.5
	법정퇴직금(비자발적)	10.8	71.6	125.8	- 38.3	33.3
	퇴직연금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10.6	63.2	38.7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20.1	25.7	1.4	- 3.4	38.7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2.7	6.3	14.2	20.4	10.8	18.6	9.6	13.0
48.5	4.9	11.2	18.9	23.8	17.3	8.7	32.3
48.9	4.6	11.2	18.6	23.6	17.1	5.2	- 2.1
-	-	-	-	-	-	-	-
-	-	-	-	-	-	-	-
21.2	35.2	7.0	38.5	34.7	25.0	179.4	12.6
-	-	-	-	-	-	-	-
-	-	-	-	-	-	-	-
11.0	38.0	4.3	- 3.0	7.1	21.7	2.3	4.9
11.2	12.8	12.1	7.5	7.9	9.2	8.9	7.3
- 49.1	3,000.5	- 32.7	- 82.4	- 21.0	504.7	- 53.0	- 86.4
128.7	59.0	43.8	16.4	- 3.9	2.0	22.9	27.4
-	-	-	-	-	-	-	-
-	-	-	-	-	12.3	6.6	25.8
111.8	22.4	6.2	- 10.3	47.1	25.5	25.4	4.1
-	-	-	-	-	-	- 44.7	11.0
- 2.4	12.8	4.8	81.9	3.1	39.7	2.3	9.2
36.1	15.2	3.9	208.8	- 30.7	136.0	- 3.9	127.1
18.4	22.5	19.5	6.8	24.4	43.5	7.6	- 18.8
- 49.1	- 5.8	- 57.5	72.0	- 10.8	- 35.9	9.7	229.9
15.0	17.4	16.3	3.6	19.6	19.1	14.2	- 8.2
-	-	-	-	- 12.2	35.6	- 16.1	- 31.4
82.9	- 5.1	12.2	17.2	21.9	48.6	21.1	- 13.9
33.6	12.8	17.1	29.4	26.9	13.8	16.6	6.4
-	-	-	-	-	-	-	101.1
-	-	-	-	-	-	-	-
18.9	5.9	16.2	11.2	13.0	14.0	13.0	11.7
- 12.2	9.1	21.7	14.8	17.5	10.2	13.3	15.1
40.6	3.7	11.9	8.7	10.8	16.3	13.3	7.3
25.1	15.6	22.2	14.6	2.9	4.9	3.0	5.9
37.6	- 1.3	22.2	11.0	25.7	27.3	19.7	27.1
-	-	-	-	-	-	-	-
21.6	38.3	26.5	6.9	5.4	10.9	10.4	16.0
- 21.6	- 10.9	22.9	14.5	- 3.8	5.9	11.5	8.3
- 40.2	- 10.3	22.8	42.6	- 2.6	4.6	10.0	8.1
- 25.2	- 10.3	22.8	14.1	- 2.6	4.6	10.0	8.1
-	-	-	-	-	-	-	-
45.7	- 15.8	23.2	12.7	- 15.1	19.4	25.3	10.3
- 7.3	- 2.6	18.9	- 0.9	7.1	8.6	- 0.3	- 0.0

(단위: %)

제도	세부제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6.4	6.3	4.5	10.8	10.0	9.1	12.9	
공공 ¹⁾ 부조	소계	23.6	6.1	- 1.9	4.5	1.7	21.3	25.8	
	기초생활보장	11.8	2.8	- 4.6	1.8	- 2.4	3.0	8.5	
	기초연금	52.1	12.1	- 0.5	5.5	6.4	61.4	42.6	
	장애연금	-	-	93.9	- 0.5	18.8	30.0	28.0	
	장애수당	- 11.9	- 34.4	- 50.0	5.9	- 0.0	- 1.5	24.6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32.8	17.7	10.8	8.3	12.8	11.8	9.0	
	근로장려금	-	- 4.3	- 7.5	48.5	- 5.9	38.2	121.2	
사회 보상	소계	9.7	13.2	4.8	18.9	5.2	5.7	3.2	
	국가보훈	6.2	10.3	6.4	8.1	21.8	5.6	2.2	
	재해구호	284.7	304.4	- 21.3	275.0	- 96.3	64.6	- 73.7	
	북한이탈 주민지원	- 4.6	19.7	16.2	5.8	- 0.7	4.5	- 8.1	
	사할린동포	- 9.3	- 25.2	- 13.8	- 10.6	6.4	13.2	- 4.2	
	고엽제, 위안부보훈	- 31.4	- 8.4	- 7.1	38.6	9.3	128.7	- 22.5	
	의사상자예우	- 16.5	- 7.4	- 10.0	- 37.6	29.4	20.9	- 41.6	
사회 서비스	긴급지원	126.0	- 32.5	1.2	- 25.6	57.6	- 5.7	90.6	
	소계	16.8	- 3.6	2.4	22.9	27.4	3.8	8.8	
	시설보호	15.9	40.1	12.9	24.1	15.6	- 7.4	3.3	
	재가복지	6.3	- 90.4	5.6	15.8	294.1	6.4	0.1	
	근로복지 ²⁾	150.2	- 22.9	- 15.9	59.5	17.1	0.2	- 3.0	
	보건의료	19.2	7.6	- 3.2	3.5	7.8	9.7	15.4	
	주택보급	- 46.4	46.1	- 27.9	0.5	14.6	34.5	35.7	
	교육복지	32.4	69.3	15.4	30.9	72.2	21.1	17.1	
	교통통신 등 검면	2.8	4.8	4.0	11.5	7.0	4.7	6.8	
	아동발달계좌	- 0.3	- 0.0	15.5	15.2	4.8	9.2	3.7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303.6	44.3	45.8	14.4	24.9	
	사회 보험	소계	14.3	10.3	6.4	8.0	7.1	7.8	9.2
		공적연금	7.3	12.1	9.3	15.4	8.5	9.8	9.8
건강보험		13.2	13.1	6.2	4.6	6.5	6.4	8.4	
산업재해 보상보험		1.4	1.9	3.0	6.3	- 1.3	3.4	3.9	
고용보험 ³⁾		38.4	- 12.7	- 1.8	2.6	8.2	7.9	13.0	
장기요양보험		370.8	50.8	9.4	6.2	14.8	14.4	14.7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검면	27.7	6.8	0.6	- 0.4	- 3.2	- 8.7	- 1.4	
기업 복지	소계	25.7	- 2.2	8.4	18.7	7.7	18.2	40.0	
	법정퇴직금(정년)	28.4	- 3.1	8.5	- 7.3	2.1	33.4	63.4	
	법정퇴직금(비자발적)	28.4	- 3.1	8.5	- 7.3	- 14.9	33.4	40.1	
	퇴직연금	-	-	-	-	92.6	0.0	42.8	
	출산전후 휴가급여	3.9	7.0	7.2	19.0	- 2.4	- 5.4	22.3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6.8	3.6	- 0.9	5.3	- 6.2	27.8	10.2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조 ¹⁾	소계	8.5	7.9	7.0	6.6	5.8	5.4
	기초생활보장	8.5	7.9	7.0	6.6	5.8	5.4
	기초연금	-	-	-	-	-	-
	장애인연금	-	-	-	-	-	-
	장애수당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근로장려금	-	-	-	-	-	-
사회 보상	소계	6.2	7.2	6.3	5.6	5.2	4.9
	국가보훈	5.5	6.9	6.3	5.5	5.2	4.6
	재해구호	0.7	0.3	0.0	0.1	0.0	0.2
	복합이탈 주민지원	-	-	-	-	-	0.0
	사할린동포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긴급지원	-	-	-	-	-	-
사회 서비스	소계	9.6	9.2	9.7	10.0	10.4	10.9
	시설보호	1.0	1.0	1.0	1.1	2.2	2.2
	재가복지	1.8	1.9	2.1	2.4	2.5	2.9
	근로복지 ²⁾	0.9	0.6	1.2	1.5	1.0	1.1
	보건의료	5.9	5.6	5.4	5.0	4.8	4.4
	주택보급	-	-	-	-	-	-
	교육복지	-	-	-	-	-	-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0.3
	아동발달계좌	-	-	-	-	-	-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	-
사회 보험	소계	67.7	67.5	68.9	68.8	67.3	68.8
	공적연금	21.5	23.4	25.6	28.3	29.0	30.6
	건강보험	36.9	33.7	32.1	31.6	29.8	30.4
	산업재해 보상보험	9.4	10.4	11.2	8.9	8.4	7.8
	고용보험 ³⁾	-	-	-	-	-	0.0
	장기요양보험	-	-	-	-	-	-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0.1
기업 복지	소계	6.4	6.5	6.4	6.2	6.9	6.9
	법정퇴직금(정년)	0.2	0.2	0.2	0.2	0.2	0.2
	법정퇴직금(비자발적)	6.2	6.3	6.2	6.1	6.7	6.7
	퇴직연금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	-	-	-	-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1.5	1.7	1.7	2.8	4.5	3.0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170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제도	세부제도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¹⁾ 부조	소계	5.6	5.7	4.6	6.3	8.2
	기초생활보장	5.6	5.7	4.6	6.3	8.1
	기초연금	-	-	-	-	-
	장애연금	-	-	-	-	-
	장애수당	-	-	-	-	0.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근로장려금	-	-	-	-	-
사회 보상	소계	4.6	4.1	3.2	2.7	3.1
	국가보훈	4.4	4.0	3.0	2.5	3.1
	재해구호	0.2	0.0	0.2	0.2	0.1
	북한이탈 주민지원	0.0	0.0	0.0	0.0	0.0
	사할린동포	-	-	-	-	-
	고엽제, 유엔투보호	-	-	-	-	-
	의사상자예우	-	-	-	-	0.0
	긴급지원	-	-	-	-	-
사회 서비스	소계	11.4	12.0	12.8	14.8	15.0
	시설보호	2.2	2.4	1.8	1.4	0.8
	재가복지	3.4	3.8	2.7	2.5	4.3
	근로복지 ²⁾	1.0	1.4	4.2	7.2	5.3
	보건의료	4.6	4.2	3.2	2.9	3.5
	주택보급	-	-	-	-	-
	교육복지	-	-	0.6	0.5	0.6
	교통통신 등 감면	0.3	0.3	0.3	0.3	0.4
	아동발달계좌	-	-	-	-	-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	
사회 보험	소계	68.7	65.3	62.3	66.6	59.3
	공적연금	27.5	26.0	29.3	35.5	22.9
	건강보험	33.1	31.2	24.5	23.5	29.1
	산업재해 보상보험	7.9	7.4	4.8	3.5	4.4
	고용보험 ³⁾	0.1	0.7	3.8	4.2	2.9
	장기요양보험	-	-	-	-	-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0.1	0.2	0.2	0.2	0.4
기업 복지	소계	6.5	9.6	14.7	7.7	11.2
	법정퇴직금(정년)	0.2	0.4	0.6	0.2	0.3
	법정퇴직금(비발적)	6.3	8.8	13.8	7.1	10.4
	퇴직연금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0.4	0.3	0.4	0.6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3.1	3.1	2.2	1.8	2.7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8	10.7	10.4	10.3	11.5	11.3	11.2	13.2
10.7	10.5	10.2	10.1	11.2	11.1	10.7	9.2
-	-	-	-	-	-	-	2.5
-	-	-	-	-	-	-	-
0.1	0.2	0.2	0.2	0.2	0.2	0.6	0.6
-	-	-	-	-	-	-	0.9
-	-	-	-	-	-	-	-
3.1	4.0	3.7	3.0	2.9	2.9	2.7	2.5
3.0	3.2	3.1	2.8	2.7	2.5	2.5	2.4
0.0	0.7	0.4	0.1	0.0	0.2	0.1	0.0
0.0	0.1	0.1	0.1	0.1	0.1	0.1	0.1
-	-	-	-	-	-	-	0.0
-	-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	-	0.1	0.1	0.1
13.0	13.8	12.7	19.1	17.8	21.0	19.6	18.9
1.0	1.1	1.0	2.6	1.6	3.2	2.8	5.6
4.5	5.2	5.4	4.8	5.4	6.5	6.4	4.6
2.4	2.1	0.8	1.1	0.9	0.5	0.5	1.4
3.6	4.0	4.1	3.5	3.8	3.8	3.9	3.2
-	-	-	5.7	4.5	5.2	4.0	2.4
1.0	0.9	0.9	0.9	0.9	1.2	1.3	1.0
0.5	0.5	0.5	0.6	0.7	0.6	0.7	0.6
-	-	-	-	-	-	0.0	0.0
-	-	-	-	-	-	-	-
62.6	62.4	63.5	58.7	59.9	57.6	59.3	58.6
17.9	18.3	19.5	18.6	19.8	18.4	19.0	19.3
36.4	35.5	34.8	31.4	31.4	30.8	31.8	30.2
4.8	5.3	5.6	5.4	5.0	4.4	4.1	3.9
3.6	3.3	3.6	3.3	3.7	4.0	4.4	4.9
-	-	-	-	-	-	-	0.3
0.4	0.5	0.6	0.5	0.5	0.5	0.5	0.5
7.8	6.6	7.1	6.7	5.8	5.2	5.3	5.1
0.1	0.1	0.1	0.1	0.1	0.1	0.1	0.1
6.9	5.8	6.2	5.9	5.2	4.6	4.6	4.4
-	-	-	-	-	-	-	-
0.8	0.6	0.7	0.7	0.5	0.5	0.6	0.6
2.2	2.0	2.1	1.7	1.7	1.5	1.4	1.2

(단위: %)

제도	세부제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¹⁾ 부조	소계	14.0	13.9	13.1	12.3	11.4	12.7	14.1
	기초생활보장	8.9	8.6	7.8	7.2	6.4	6.0	5.8
	기초연금	3.3	3.4	3.3	3.1	3.0	4.4	5.6
	장애연금	-	0.2	0.4	0.3	0.4	0.4	0.5
	장애수당	0.4	0.3	0.1	0.1	0.1	0.1	0.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1.0	1.1	1.1	1.1	1.1	1.2	1.1
	근로장려금	0.4	0.4	0.3	0.5	0.4	0.5	1.0
사회 보상	소계	2.4	2.5	2.5	2.7	2.6	2.5	2.3
	국가보훈	2.2	2.2	2.3	2.2	2.5	2.4	2.2
	재해구호	0.0	0.2	0.1	0.4	0.0	0.0	0.0
	북한이탈 주민지원	0.1	0.1	0.1	0.1	0.1	0.1	0.0
	사할린동포	0.0	0.0	0.0	0.0	0.0	0.0	0.0
	고엽제, 위안부보호	0.0	0.0	0.0	0.0	0.0	0.0	0.0
	의사상자예우	0.0	0.0	0.0	0.0	0.0	0.0	0.0
	긴급지원	0.1	0.1	0.1	0.0	0.1	0.1	0.1
사회 서비스	소계	19.0	17.2	16.9	18.7	21.6	20.6	19.8
	시설보호	5.6	7.4	8.0	8.9	9.4	8.0	7.3
	재가복지	4.2	0.4	0.4	0.4	1.4	1.4	1.2
	근로복지 ²⁾	3.1	2.3	1.8	2.6	2.8	2.5	2.2
	보건의료	3.3	3.3	3.1	2.9	2.8	2.8	2.9
	주택보급	1.1	1.5	1.1	1.0	1.0	1.2	1.5
	교육복지	1.1	1.8	2.0	2.3	3.6	4.0	4.2
	교통통신 등 감면	0.6	0.6	0.6	0.6	0.5	0.5	0.5
	아동발달계좌	0.0	0.0	0.0	0.0	0.0	0.0	0.0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0.0	0.0	0.0	0.1	0.1	0.1
사회 보험	소계	57.5	59.6	60.7	59.2	57.6	57.0	55.1
	공적연금	17.8	18.8	19.6	20.4	20.2	20.3	19.7
	건강보험	29.4	31.2	31.7	29.9	29.0	28.2	27.1
	산업재해 보상보험	3.4	3.2	3.2	3.1	2.7	2.6	2.4
	고용보험 ³⁾	5.9	4.8	4.5	4.2	4.1	4.1	4.1
	장기요양보험	1.1	1.6	1.7	1.6	1.7	1.8	1.8
민간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0.5	0.5	0.5	0.5	0.4	0.3	0.3
기업 복지	소계	5.5	5.0	5.2	5.6	5.5	5.9	7.4
	법정퇴직금(정년)	0.1	0.1	0.1	0.1	0.1	0.1	0.2
	법정퇴직금(비자발적)	4.9	4.4	4.6	3.8	3.0	3.6	4.5
	퇴직연금	-	-	-	1.1	1.9	1.8	2.2
	출산전후 휴가급여	0.5	0.5	0.5	0.6	0.5	0.4	0.5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1.1	1.1	1.1	1.0	0.9	1.0	1.0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사회복지지출	5,925	6,905	8,535	10,062	12,156	22,397
요소 GDP 대비%	3.35	3.22	3.48	3.62	3.71	5.83
총공공지출	5,300	6,174	7,676	8,949	10,557	13,168
총법정민간지출	457	552	673	885	1,349	1,466
총자발적민간지출	168 ¹⁾	179 ¹⁾	186 ¹⁾	228 ¹⁾	250 ¹⁾	7,763
조세부담(-)	-	-	-	-	-	832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32
간접세	-	-	-	-	-	800
조세혜택(+)	-	-	-	-	-	230
T1 ²⁾	-	-	-	-	-	230
T2 ³⁾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21,795
요소 GDP 대비%	-	-	-	-	-	5.68
SNA2008 요소GDP(1~3)	176,687	214,429	244,910	278,275	327,911	383,881
1.피용자보수	86,291	107,422	122,094	138,499	162,396	193,564
2.영업잉여	66,339	79,036	88,486	99,935	119,511	129,969
3.고정자본소모	24,057	27,972	34,329	39,841	46,004	60,348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2)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 감면임.

3)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임.

174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구성항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사회복지지출	26,250	31,069	39,149	48,025	45,282	50,423
요소 GDP 대비%	6.12	6.59	8.28	9.34	8.02	8.27
총공공지출	15,519	18,440	25,341	33,253	28,752	33,853
총법정민간지출	1,670	2,740	5,213	3,562	4,806	3,954
총자발적민간지출	9,060	9,889	8,595	11,210	11,724	12,617
조세부담(-)	983	1,289	1,972	2,482	2,140	2,397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29	51	90	87	102	194
간접세	954	1,238	1,882	2,395	2,038	2,203
조세혜택(+)	568	627	576	712	1,890	2,335
T1	568	627	576	712	1,890	2,335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25,835	30,407	37,753	46,255	45,032	50,361
요소 GDP 대비%	6.02	6.45	7.98	9.00	7.98	8.26
SNA2008 요소GDP(1~3)	428,810	471,516	472,976	514,232	564,490	609,793
1.피용자보수	221,868	234,807	223,394	237,609	260,585	285,670
2.영업잉여	136,107	154,922	155,285	177,193	195,248	204,469
3.고정자본소모	70,836	81,787	94,298	99,429	108,657	119,654

(단위: 십억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4,367	62,215	68,441	76,016	89,883	99,080	107,575	124,144
8.07	8.65	8.74	9.24	10.44	10.66	10.95	12.03
36,520	41,405	50,287	56,304	67,367	73,900	83,844	97,266
3,669	4,483	4,962	4,905	5,237	5,704	6,113	7,481
14,179	16,327	13,192	14,807	17,279	19,476	17,618	19,397
2,499	3,058	3,244	3,558	3,844	4,504	5,152	5,702
181	213	312	324	378	468	520	529
2,318	2,845	2,933	3,233	3,466	4,037	4,632	5,173
2,446	2,867	3,160	3,934	4,383	5,361	6,336	7,144
2,446	2,867	3,160	3,934	4,383	5,361	6,336	7,144
-	-	-	-	-	-	-	-
54,314	62,024	68,356	76,392	90,423	99,937	108,759	125,586
8.07	8.62	8.73	9.29	10.50	10.75	11.07	12.17
673,354	719,126	782,970	822,467	861,211	929,544	982,768	1,032,113
315,334	343,476	372,208	401,450	426,142	457,914	483,001	500,935
229,847	236,815	259,928	262,053	267,705	293,609	296,733	309,430
128,174	138,836	150,834	158,964	167,364	178,020	203,034	221,748

(단위: 십억 원)

구성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사회복지지출	131,024	141,417	154,673	169,616	184,283	206,300
요소 GDP 대비%	11.58	11.83	12.51	13.17	13.77	14.68
총공공지출	103,959	108,523	119,953	132,454	143,642	159,738
총법정민간지출	7,437	7,899	9,096	9,555	11,254	15,082
총자발적민간지출	19,628	24,995	25,624	27,606	29,386	31,481
조세부담(-)	6,361	6,219	7,237	7,551	8,740	10,164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589	640	748	831	1,068	1,418
간접세	5,772	5,579	6,489	6,720	7,671	8,745
조세혜택(+)	6,603	7,237	7,863	8,119	7,717	8,145
T1	6,603	7,237	7,863	8,119	7,717	8,145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131,266	142,435	155,299	170,183	183,261	204,282
요소 GDP 대비%	11.60	11.91	12.56	13.22	13.70	14.54
SNA2008 요소GDP(1~3)	1,131,470	1,195,433	1,236,224	1,287,574	1,338,151	1,405,345
1. 피용자보수	536,350	570,367	599,309	629,400	661,406	698,570
2. 영업잉여	362,987	372,685	369,525	379,072	385,437	401,095
3. 고정자본소모	232,133	252,382	267,390	279,102	291,307	305,680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사회복지지출	-	16.5	23.6	17.9	20.8	84.2
요소 GDP 대비%	-	- 4.0	8.2	3.8	2.5	57.4
총공공지출	-	16.5	24.3	16.6	18.0	24.7
총법정민간지출	-	20.8	21.8	31.6	52.4	8.7
총자발적민간지출	-	6.6	4.1	22.6	9.6	2,999.7
조세부담(-)	-	-	-	-	-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
간접세	-	-	-	-	-	-
조세혜택(+)	-	-	-	-	-	-
T1	-	-	-	-	-	-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
SNA2008 요소 GDP 대비 %	-	-	-	-	-	-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178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구성항목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사회복지지출	17.2	18.4	26.0	22.7	- 5.7
요소 GDP 대비%	4.9	7.6	25.6	12.8	- 14.1
총공공지출	17.9	18.8	37.4	31.2	- 13.5
총법정민간지출	13.9	64.1	90.2	- 31.7	34.9
총자발적민간지출	16.7	9.1	- 13.1	30.4	4.6
조세부담(-)	18.2	31.2	53.0	25.8	- 13.8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8.9	76.8	77.1	-3.4	17.0
간접세	19.2	29.8	52.0	27.2	- 14.9
조세혜택(+)	147.2	10.4	- 8.1	23.6	165.5
T1	147.2	10.4	- 8.1	23.6	165.5
T2	-	-	-	-	-
순사회복지지출	18.5	17.7	24.2	22.5	- 2.6
SNA2008 요소 GDP 대비 %	6.1	7.0	23.8	12.7	- 11.3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4	7.8	14.4	10.0	11.1	18.2	10.2	8.6	15.4
3.1	- 2.4	7.2	1.0	5.7	12.9	2.1	2.7	9.9
17.7	7.9	13.4	21.5	12.0	19.6	9.7	13.5	16.0
- 17.7	- 7.2	22.2	10.7	-1.1	6.8	8.9	7.2	22.4
7.6	12.4	15.2	- 19.2	12.2	16.7	12.7	-9.5	10.1
12.0	4.3	22.4	6.1	9.7	8.0	17.2	14.4	10.7
89.5	- 6.4	17.3	46.5	4.0	16.6	23.6	11.1	1.8
8.1	5.2	22.7	3.1	10.3	7.2	16.5	14.8	11.7
23.6	4.7	17.2	10.2	24.5	11.4	22.3	18.2	12.8
23.6	4.7	17.2	10.2	24.5	11.4	22.3	18.2	12.8
-	-	-	-	-	-	-	-	-
11.8	7.8	14.2	10.2	11.8	18.4	10.5	8.8	15.5
3.5	- 2.3	6.9	1.2	6.4	13.0	2.4	2.9	10.0

(단위: %)

구성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사회복지지출	5.5	7.9	9.4	9.7	8.6	11.9
요소 GDP 대비%	-3.7	2.2	5.8	5.3	4.5	6.6
총공공지출	6.9	4.4	10.5	10.4	8.4	11.2
총법정민간지출	- 0.6	6.2	15.2	5.0	17.8	34.0
총자발적민간지출	1.2	27.3	2.5	7.7	6.5	7.1
조세부담(-)	11.5	- 2.2	16.4	4.3	15.7	16.3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1.3	8.7	16.9	11.1	28.6	32.8
간접세	11.6	-3.3	16.3	3.6	14.2	14.0
조세혜택(+)	- 7.6	9.6	8.6	3.3	- 4.9	5.5
T1	- 7.6	9.6	8.6	3.3	- 4.9	5.5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4.5	8.5	9.0	9.6	7.7	11.5
SNA2008 요소 GDP 대비 %	-4.7	2.7	5.4	5.2	3.6	6.1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공공지출	89.5	89.4	89.9	88.9	86.8	58.8
총법정민간지출	7.7	8.0	7.9	8.8	11.1	6.5
총자발적민간지출	2.8	2.6	2.2	2.3	2.1	34.7
조세부담(-)	-	-	-	-	-	3.7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0.1
간접세	-	-	-	-	-	3.6
조세혜택(+)	-	-	-	-	-	1.0
T1	-	-	-	-	-	1.0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97.3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182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구성항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공공지출	59.1	59.4	64.7	69.2	63.5	67.1
총법정민간지출	6.4	8.8	13.3	7.4	10.6	7.8
총자발적민간지출	34.5	31.8	22.0	23.3	25.9	25.0
조세부담(-)	3.7	4.1	5.0	5.2	4.7	4.8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0.1	0.2	0.2	0.2	0.2	0.4
간접세	3.6	4.0	4.8	5.0	4.5	4.4
조세혜택(+)	2.2	2.0	1.5	1.5	4.2	4.6
T1	2.2	2.0	1.5	1.5	4.2	4.6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98.4	97.9	96.4	96.3	99.4	99.9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7.2	66.6	73.5	74.1	75.0	74.6	77.9	78.3
6.7	7.2	7.2	6.5	5.8	5.8	5.7	6.0
26.1	26.2	19.3	19.5	19.2	19.7	16.4	15.6
4.6	4.9	4.7	4.7	4.3	4.5	4.8	4.6
0.3	0.3	0.5	0.4	0.4	0.5	0.5	0.4
4.3	4.6	4.3	4.3	3.9	4.1	4.3	4.2
4.5	4.6	4.6	5.2	4.9	5.4	5.9	5.8
4.5	4.6	4.6	5.2	4.9	5.4	5.9	5.8
-	-	-	-	-	-	-	-
99.9	99.7	99.9	100.5	100.6	100.9	101.1	101.2

(단위: %)

구성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공공지출	79.3	76.7	77.6	78.1	77.9	77.4
총법정민간지출	5.7	5.6	5.9	5.6	6.1	7.3
총자발적민간지출	15.0	17.7	16.6	16.3	15.9	15.3
조세부담(-)	4.9	4.4	4.7	4.5	4.7	4.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0.4	0.5	0.5	0.5	0.6	0.7
간접세	4.4	3.9	4.2	4.0	4.2	4.2
조세혜택(+)	5.0	5.1	5.1	4.8	4.2	3.9
T1	5.0	5.1	5.1	4.8	4.2	3.9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100.2	100.7	100.4	100.3	99.4	99.0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 원, GDP 대비 %)

연도	SNA2008 GDP	사회복지지출액			GDP 대비 비율		
		사회복지	공공	민간	사회복지	공공	민간
1990	197,712	5,757	5,300	457	2.91	2.68	0.23
1991	238,877	6,726	6,174	552	2.82	2.58	0.23
1992	273,267	8,348	7,676	673	3.06	2.81	0.25
1993	310,074	9,834	8,949	885	3.17	2.89	0.29
1994	366,054	11,905	10,557	1,349	3.25	2.88	0.37
1995	428,927	14,634	13,168	1,466	3.41	3.07	0.34
1996	481,141	17,189	15,519	1,670	3.57	3.23	0.35
1997	530,347	21,180	18,440	2,740	3.99	3.48	0.52
1998	524,477	30,554	25,341	5,213	5.83	4.83	0.99
1999	576,873	36,816	33,253	3,562	6.38	5.76	0.62
2000	635,185	33,558	28,752	4,806	5.28	4.53	0.76
2001	688,165	37,806	33,853	3,954	5.49	4.92	0.57
2002	761,939	40,189	36,520	3,669	5.27	4.79	0.48
2003	810,915	45,888	41,405	4,483	5.66	5.11	0.55
2004	876,033	55,249	50,287	4,962	6.31	5.74	0.57
2005	919,797	61,209	56,304	4,905	6.65	6.12	0.53
2006	966,055	72,605	67,367	5,237	7.52	6.97	0.54
2007	1,043,258	79,604	73,900	5,704	7.63	7.08	0.55
2008	1,104,492	89,958	83,844	6,113	8.14	7.59	0.55
2009	1,151,708	104,747	97,266	7,481	9.09	8.45	0.65
2010	1,265,308	111,396	103,959	7,437	8.80	8.22	0.59
2011	1,332,681	116,423	108,523	7,899	8.74	8.14	0.59
2012	1,377,457	129,049	119,953	9,096	9.37	8.71	0.66
2013	1,429,445	142,010	132,454	9,555	9.93	9.27	0.67
2014	1,486,079	154,897	143,642	11,254	10.42	9.67	0.76
2015	1,564,124	174,819	159,738	15,082	11.18	10.21	0.96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Minim[3/2]	10.83	11.20	11.30	10.52	11.09	11.04	11.60	11.55	11.87	11.70	11.30
Medium[5/2]	14.07	14.48	14.57	13.39	13.89	13.95	14.22	13.83	14.09	13.78	13.16
Maxim[5/1]	15.18	15.68	15.73	14.78	15.27	15.31	15.76	15.31	15.68	15.47	14.79
1. 민간최종 소비지출 (국민계정)	219,890	252,658	279,564	261,382	299,760	341,442	376,803	423,157	434,864	449,981	480,170
2. 민간소비 +정부소비 -공무원임금	237,219	273,506	301,920	288,434	329,616	374,579	417,683	468,370	484,067	505,064	539,883
민간최종소비지출	219,890	252,658	279,564	261,382	299,760	341,442	376,803	423,157	434,864	449,981	480,170
정부최종소비지출	44,609	51,988	56,289	62,071	66,379	72,019	83,865	92,460	101,103	112,039	122,175
공무원임금	27,280	31,141	33,933	35,019	36,524	38,882	42,985	47,246	51,901	56,957	62,463
3. (5110+5121)	25,692	30,631	34,104	30,356	36,560	41,367	48,448	54,083	57,438	59,082	61,006
5110 General taxes	14,637	16,790	19,488	15,707	20,369	23,212	25,835	31,609	33,447	34,572	36,118
5121 Excises	11,055	13,841	14,616	14,650	16,191	18,155	22,613	22,474	23,991	24,510	24,888
5.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33,388	39,609	43,978	38,622	45,785	52,271	59,377	64,773	68,197	69,618	71,041

자료: <http://stats.oecd.org>(Revenue statistics, 2017.10.10. 다운로드)

(단위: 십억 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93	11.09	10.86	10.49	11.25	10.17	10.58	10.23	10.44	10.21
12.83	13.03	12.96	12.63	13.51	12.74	12.93	12.58	12.53	12.24
14.52	14.80	14.87	14.63	15.67	14.81	15.04	14.66	14.63	14.31
509,907	546,429	579,053	594,883	636,713	679,142	707,614	727,800	748,201	771,239
577,176	620,791	664,554	689,266	738,715	788,959	823,169	848,062	873,282	901,429
509,907	546,429	579,053	594,883	636,713	679,142	707,614	727,800	748,201	771,239
133,501	145,311	161,751	174,706	183,109	194,381	204,324	214,467	224,724	234,766
66,232	70,949	76,251	80,323	81,106	84,564	88,769	94,205	99,644	104,576
63,076	68,822	72,164	72,333	83,140	80,269	87,112	86,766	91,201	92,019
38,093	40,942	43,820	46,992	51,800	54,868	58,702	59,105	62,975	60,162
24,983	27,880	28,344	25,341	31,340	25,401	28,410	27,661	28,226	31,857
74,041	80,861	86,096	87,043	99,769	100,551	106,402	106,717	109,451	110,326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11777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조사표 (자발적민간부문 실질조사)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인 사 말 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관련 통계들을 생산하여 국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OECD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을 파악하고자 모금기관 및 기부금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사회복지통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고 경 환 배 상

※ 본 조사표는 도착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임미현 연구원, 이은숙 연구원, 이은비 연구원

- 조사 관련 문의: 044-287-8079(임미현 연구원), 044-287-8170(이은숙 연구원),

044-287-8275(이은비 연구원)

- 팩스: 044-287-8068 / 이메일: socx@khasa.re.kr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귀 법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구분	계	정규직 ¹⁾	비정규직 ²⁾
계			
남			
여			

주: 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단 연수생, 실습생, 무급봉사자, 자원봉사자제외)

3) 부속시설의 경우 모기관과 중복된 인원은 제외하고 기재

8. 귀 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운영하고 있음(홈페이지 주소: _____)
 ② 운영하고 있지 않음

9. 귀 법인/기관은 결산보고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 ① 공개함(주로 _____ 월경에 _____ 개월 동안)
 ② 공개하지 않음(그 이유는 _____)

10. 귀 법인/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① 작성함 ② 작성하지 않음

11. 귀 법인/기관은 모금 및 후원 관련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 1) 전담부서: ① 유 ② 무
 2) 전담인력: ① 유(_____명) ② 무
 3) 겸무인력: ① 유(_____명) ② 무

12. 귀 법인/기관의 지난 1년간(1.1~12.31) 모금자 수와 모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인원수(기관수)	금액(천원)
개인		
단체		

주: 실인원 기준, 모금물품 제외

13. 귀 법인/기관이 후원자 관리를 위해 하고 있는 내용 **모두** 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영수증 발급 ② 감사편지
 ③ 모금 내용 공고(소식지, 홈페이지 등) ④ 모금금품 사용내역 공고
 ⑤ 우수 개인/기관 감사패 증정 ⑥ 모금 캠페인
 ⑦ 특별행사 주최(바자회, 일일호프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4. 귀 법인/단체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중복체크 가능)

- ① 당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지출
- ② 당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속 기관 및 사업체에 지출(☑ 문 14-1번으로)
- ③ 당 법인/단체와 관련 없는 타 기관 및 사업체에 지출
- ④ 기타(_____)

14-1. 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면 모두 고르고, 시설명을 적어주세요.

구분		시설 유형
1	노인복지	① 양로시설 ^{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④ 노인요양시설 ^{주)}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 기타
2	아동복지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⑧ 종합아동복지시설 ⑨ 기타
3	장애인복지	① 지적장애인시설 ② 시각장애인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④ 지적장애인시설 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⑥ 장애영유아생활시설 ⑦ 기타
4	청소년복지	① 청소년쉼터 ② 기타
5	여성·가족복지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모(부)자보호시설 ⑤ 모(부)자자립시설 ⑥ 미혼모(자)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⑧ 일시보호시설 ⑨ 기타
6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	① 부랑인시설 ② 기타
7	정신보건	① 정신요양시설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③ 기타
8	결핵·한센	① 결핵시설 ② 한센시설

주: '08.4.4일 이전 설치 신고되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 시설 중 무료 및
실비 시설 포함

※ 시설명: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II. 수입조사표
(2015년 1.1~12.31)

재원 유형	예시	2015년 (단위: 천원)
합계	수입조사표(5쪽)합계와 지출조사표(6쪽)의 총지출금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정부 지원금	국비, 지방비, 복권기금 등에 의한 시설운영비 지원	
법인 유입금	법인, 예당, 교구, 종단 등 법인에서 유입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모금 및 후원금 내역	계	
	개인	개인 후원금
	종교기관	종교기관 후원금
	기업, 재단	기업이나 기업재단 후원금
	공공기관 (시·군·구, 학교 등)	공공기관 자발적 후원금
	민간모금 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 민간모금단체의 후원금 (해당기관은 입력하지 마세요)
	기타	
개인 회비		
잡수익	- 불용품 매각대 - 기타 예금이자수입 등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주: 1) 보조금은 그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법인유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모금 및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한 내역을 작성함.

Ⅲ. 지출조사표 (2015년 1.1~12.31)

지출비목		예시	2015년 (단위: 천원)
총 지출금			
기관 운영비	직원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전기·수도 및 시설운영비 등	
	기타		
계			
사업비	노인	경로교실 운영사업, 노인결연후원사업, 무의탁 및 독거노인지원	
	유족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및 군무원의 유족지원	
	장애	지적장애인 긴급지원사업, 장애인행사지원	
	보건의료	소아암환우치료지원사업, 건강증진지원사업	
	가족, 청소년, 아동, 한부모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 한부모 여성가장지원금, 청소년 방과후공부방지원	
	주거	주택개보수지원, 주택임차보증금지원사업비	
	해외	해외구호개발사업	
	북한	북한지원	
	기타	자립 자활사업, 부랑인지원, 긴급구호	
	타기관 후원(기부금 등)		
적립금			
이월금			
예비비			
기타			

- 감사합니다 -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71	0.31	0.59	4.04	1.20	0.35	0.29	0.03	0.70	10.21
호주	5.2	0.1	2.5	6.4	2.7	0.2	0.7	0.4	0.4	18.5
오스트리아	12.2	1.7	2.1	6.5	2.6	0.7	1.1	0.1	0.6	27.7
벨기에	9.1	1.8	2.9	7.9	2.8	0.7	2.9	0.2	0.7	29.2
캐나다	4.4	0.3	0.8	7.3	1.6	0.2	0.6	0.3	2.2	17.6
칠레	2.3	0.6	0.7	4.0	1.7	0.2	0.1	0.8	0.4	10.8
체코공화국	7.7	0.6	1.7	6.0	2.0	0.4	0.5	0.3	0.2	19.4
덴마크	10.2	0.0	4.4	6.7	3.4	2.1	0.0	0.7	1.5	29.0
에스토니아	7.0	0.1	2.3	4.8	2.8	0.2	0.3	0.0	0.1	17.7
핀란드	12.2	0.8	3.6	5.7	3.1	1.0	2.4	0.7	0.9	30.4
프랑스	12.7	1.7	1.7	8.8	2.9	1.0	1.6	0.8	0.8	32.0
독일	8.3	1.8	2.1	8.1	2.2	0.6	0.9	0.6	0.3	24.9
그리스	14.3	2.7	1.9	4.8	1.0	0.3	0.5	0.0	0.1	25.4
헝가리	8.6	1.1	1.9	4.8	3.0	0.9	0.3	0.3	0.1	20.9
아이슬란드	2.5	0.0	2.8	5.0	3.4	0.0	0.5	0.6	0.7	15.5
아일랜드	3.6	0.3	1.4	5.3	2.2	0.6	1.5	0.5	0.1	15.5
이스라엘	4.7	0.6	2.5	4.6	1.9	0.1	0.3	0.0	0.7	15.5
이탈리아	13.6	2.6	1.8	6.7	2.0	0.5	1.0	0.0	0.2	28.5
일본	9.9	1.3	1.0	7.7	1.3	0.1	0.2	0.1	0.3	21.9
라트비아	7.2	0.2	2.1	3.3	2.1	0.1	0.5	0.1	0.1	15.7
리투아니아	6.5	0.4	2.0	4.3	1.7	0.3	0.2	0.0	0.3	15.8
룩셈부르크	6.7	1.7	2.4	5.1	3.4	0.7	1.4	0.3	0.5	22.1
멕시코	2.1	0.2	0.0	3.0	1.0	0.0	..	0.9	0.5	7.7
네덜란드	6.1	0.1	3.4	2.7	1.5	0.8	1.5	0.5	1.2	17.7
뉴질랜드	4.9	0.1	2.5	7.3	2.6	0.3	0.3	0.8	0.4	19.2
노르웨이	8.5	0.3	4.3	6.4	3.3	0.5	0.4	0.1	0.8	24.7
폴란드	20.2
포르투갈	11.6	1.9	1.8	5.9	1.2	0.5	1.0	0.0	0.2	24.0
슬로바키아공화국	6.8	0.9	1.9	5.5	2.0	0.2	0.4	0.0	0.3	17.8
슬로베니아	9.8	1.5	2.0	6.1	1.8	0.2	0.5	0.0	0.7	22.6
스페인	9.3	2.3	2.4	6.5	1.2	0.6	2.0	0.1	0.2	24.7
스웨덴	9.1	0.3	4.1	6.3	3.5	1.3	0.3	0.4	0.9	26.3
스위스	6.3	0.5	2.2	3.0	1.7	0.6	0.8	0.1	0.7	15.9
터키	5.7	1.4	0.4	3.2	0.4	0.0	0.2	0.0	0.2	11.6
영국	6.5	0.1	1.9	7.7	3.5	0.2	0.2	1.5	0.1	21.6
미국	6.4	0.7	1.4	8.4	0.6	0.1	0.2	0.3	0.8	18.8
OECD평균	7.0	0.9	1.9	5.3	2.0	0.4	0.7	0.3	0.5	19.0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0.77		0.02	0.11	0.05				0.01	0.96
호주	4.7	4.7
오스트리아	0.8	0.8
벨기에	0.0	0.0	0.0	..	0.0	0.0	0.0
캐나다
칠레	1.2	0.3	0.3	0.9	0.0	0.0	0.4	0.0	0.0	3.0
체코	0.3	0.0	0.0	0.1	0.4
덴마크	0.6	2.0	0.0	2.6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0.0	0.1	0.1	..	0.0	..	0.0	0.2
독일	1.3	0.8	0.1	2.2
그리스	0.1	0.0	0.0	..	0.0	..	0.5	0.6
헝가리
아이슬란드	3.5	0.5	2.3	6.3
아일랜드
이스라엘	0.0	0.2	0.2
이탈리아	0.8	..	0.2	1.0
일본	0.5	0.0	0.0	..	0.0	0.0	0.5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0.0	0.0	0.2	0.2
룩셈부르크	0.8	0.8
멕시코
네덜란드	0.7	5.7	6.4
뉴질랜드
노르웨이	1.3	1.3
폴란드	0.0	0.0
포르투갈	0.2	0.2
슬로바키아	0.1	..	0.0	..	0.0	0.1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0.4	0.4
스위스	4.4	0.7	0.9	4.5	10.5
터키
영국	0.7	..	0.1	0.0	0.1	0.9
미국	0.2	5.6	5.8
OECD평균	0.5	0.1	0.2	0.5	0.0	0.0	0.0	0.0	0.0	1.3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부표 30〉 OECD 국가의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¹⁾(2015)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²⁾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3.48	0.31	0.61	4.15	1.25	0.35	0.29	0.03	0.71	11.18
호주	9.8	0.1	2.5	6.4	2.7	0.2	0.7	0.4	0.4	23.2
오스트리아	12.2	1.7	2.9	6.5	2.6	0.7	1.1	0.1	0.6	28.5
벨기에	9.1	1.8	2.9	7.9	2.8	0.7	2.9	0.2	0.7	29.2
캐나다	4.4	0.3	0.8	7.3	1.6	0.2	0.6	0.3	2.2	17.6
칠레	3.5	0.8	1.0	4.9	1.7	0.2	0.5	0.8	0.4	13.7
체코	8.0	0.6	1.7	6.0	2.0	0.4	0.5	0.3	0.3	19.8
덴마크	10.8	2.0	4.4	6.7	3.4	2.1	-	0.7	1.5	31.6
에스토니아	7.0	0.1	2.3	4.8	2.8	0.2	0.3	0.0	0.1	17.7
핀란드	12.2	0.8	3.6	5.7	3.1	1.0	2.4	0.7	0.9	30.4
프랑스	12.7	1.7	1.8	8.8	2.9	1.0	1.6	0.8	0.8	32.2
독일	8.3	1.8	3.4	8.9	2.3	0.6	0.9	0.6	0.3	27.1
그리스	14.3	2.7	1.9	4.8	1.1	0.3	1.0	0.0	0.1	26.0
헝가리	8.6	1.1	1.9	4.8	3.0	0.9	0.3	0.3	0.1	20.9
아이슬란드	6.0	0.5	5.1	5.0	3.4	0.0	0.5	0.6	0.7	21.8
아일랜드	3.6	0.3	1.4	5.3	2.2	0.6	1.5	0.5	0.1	15.5
이스라엘	4.7	0.6	2.5	4.6	1.9	0.1	0.5	0.0	0.7	15.7
이탈리아	14.4	2.6	2.0	6.7	2.0	0.5	1.0	0.0	0.2	29.5
일본	10.4	1.3	1.0	7.7	1.3	0.1	0.2	0.1	0.3	22.4
라트비아	7.2	0.2	2.1	3.3	2.1	0.1	0.5	0.1	0.1	15.7
리투아니아	6.5	0.4	2.0	4.3	1.7	0.3	0.4	0.0	0.3	16.0
룩셈부르크	6.7	1.7	3.3	5.1	3.4	0.7	1.4	0.3	0.5	22.9
멕시코	2.1	0.2	0.0	3.0	1.0	0.0	-	0.9	0.5	7.7
네덜란드	6.1	0.1	4.1	8.4	1.5	0.8	1.5	0.5	1.2	24.1
뉴질랜드	4.9	0.1	2.5	7.3	2.6	0.3	0.3	0.8	0.4	19.2
노르웨이	8.5	0.3	5.6	6.4	3.3	0.5	0.4	0.1	0.8	26.0
폴란드	-	-	-	0.0	-	-	-	-	-	20.2
포르투갈	11.6	1.9	2.0	5.9	1.2	0.5	1.0	0.0	0.2	24.3
슬로바키아	6.8	0.9	1.9	5.5	2.0	0.2	0.4	0.0	0.3	17.9
슬로베니아	9.8	1.5	2.0	6.1	1.8	0.2	0.5	0.0	0.7	22.6
스페인	9.3	2.3	2.4	6.5	1.2	0.6	2.0	0.1	0.2	24.7
스웨덴	9.1	0.3	4.5	6.3	3.5	1.3	0.3	0.4	0.9	26.8
스위스	10.6	1.2	3.2	7.5	1.7	0.6	0.8	0.1	0.7	26.4
터키	5.7	1.4	0.4	3.2	0.4	0.0	0.2	-	0.2	11.6
영국	7.3	0.1	1.9	7.7	3.5	0.2	0.3	1.5	0.1	22.6
미국	6.4	0.7	1.5	14.0	0.6	0.1	0.2	0.3	0.8	24.6

주: 1)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라 함은 공공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되며,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표현함.

2)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부표 31〉 OECD 국가의 민간사회복지지출¹⁾(2015)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²⁾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0.81	..	0.06	0.61	0.05		-		1.44	2.98
호주	4.7		..	1.2					0.0	5.8
오스트리아	0.7		0.8	0.7					..	2.2
벨기에	1.1	0.0	0.3	0.5	0.0				0.1	1.9
캐나다	3.1			1.6					0.0	4.7
칠레	1.2	0.3	0.3	1.5	0.0	0.0	0.4	0.0	0.0	3.5
체코	0.3	0.0	0.0	0.2					0.2	0.8
덴마크	1.3	2.0	0.1	0.2					0.8	4.4
에스토니아				0.1						0.1
핀란드	0.2		0.7	0.5					0.1	1.5
프랑스	0.2	0.1	1.1	1.6	0.0		0.0		0.6	3.5
독일	0.8		1.4	1.2	0.1				0.1	3.5
그리스	0.1	0.0	0.0	0.3	0.0		0.5		0.1	1.1
헝가리			0.0	0.3					0.0	0.3
아이슬란드	3.5	0.5	2.3	0.1						6.5
아일랜드	1.1			1.1					..	2.2
이스라엘	1.1		0.1	1.0			0.2			2.5
이탈리아	1.2		0.2	0.2					0.3	1.9
일본	2.7	0.0	0.0	0.3	0.0				0.0	3.1
라트비아				0.1						0.1
리투아니아	0.0	0.0	0.0	0.1			0.2		0.1	0.4
룩셈부르크			0.8	0.4					0.0	1.3
멕시코				0.4						0.4
네덜란드	4.7	..	1.1	6.5					1.1	13.4
뉴질랜드				0.7						0.7
노르웨이	1.0		1.5	0.0					..	2.5
폴란드				0.5					0.7	0.5
포르투갈	0.7		0.4	0.5						2.3
슬로바키아	0.4		0.2	0.1	0.0				0.3	1.1
슬로베니아	1.3					..	1.3
스페인	0.4		0.1	0.5					0.2	1.1
스웨덴	2.9		0.6	0.1					0.0	3.6
스위스	4.4	0.7	1.0	5.4	..				0.1	11.5
터키				0.2						0.2
영국	5.0		0.6	0.5			0.1		0.0	6.2
미국	5.2		0.4	6.8					0.0	12.5
OECD평균	1.3	0.1	0.3	1.0	0.0	0.0	0.0	0.0	0.2	3.0

주: 1)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이라 함은 법정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

2)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부표 32>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0.04		0.04	0.50					1.43	2.01
호주				1.2					0.0	1.2
오스트리아	0.7			0.7						1.4
벨기에	1.1		0.3	0.5					0.1	1.9
캐나다	3.1			1.6					0.0	4.7
칠레				0.6						0.6
체코			0.0	0.2					0.1	0.4
덴마크	0.8		0.0	0.2					0.8	1.8
에스토니아				0.1						0.1
핀란드	0.2		0.7	0.5					0.1	1.5
프랑스	0.1		1.0	1.6					0.6	3.3
독일	0.8		0.1	0.3					0.1	1.2
그리스	0.1		0.0	0.3					0.1	0.5
헝가리			0.0	0.3					0.0	0.3
아이슬란드				0.1						0.1
아일랜드	1.1			1.1						2.2
이스라엘	1.1		0.1	1.0						2.3
이탈리아	0.4		0.0	0.2					0.3	0.9
일본	2.2		0.0	0.3						2.6
라트비아				0.1						0.1
리투아니아	0.0		0.0	0.1					0.1	0.2
룩셈부르크			0.0	0.4					0.0	0.5
멕시코				0.4						0.4
네덜란드	4.7		0.4	0.8					1.1	7.0
뉴질랜드				0.7						0.7
노르웨이	1.0		0.2	0.0						1.3
폴란드				0.4						0.4
포르투갈	0.7		0.1	0.5					0.7	2.1
슬로바키아	0.3		0.2	0.1					0.3	0.9
슬로베니아				1.3						1.3
스페인	0.4		0.1	0.5					0.2	1.1
스웨덴	2.9		0.2	0.1					0.0	3.2
스위스	0.0		0.0	0.9					0.1	1.0
터키				0.2						0.2
영국	4.2		0.5	0.5					0.0	5.3
미국	5.2		0.3	1.2					0.0	6.7
OECD평균	0.8		0.1	0.5					0.2	1.6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부표 33〉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3.52	0.31	0.65	4.65	1.25	0.35	0.29	0.03	2.14	13.19
호주	9.8	0.1	2.5	7.5	2.7	0.2	0.7	0.4	0.4	24.4
오스트리아	12.9	1.7	2.9	7.2	2.6	0.7	1.1	0.1	0.6	29.9
벨기에	10.2	1.8	3.2	8.4	2.8	0.7	2.9	0.2	0.7	31.1
캐나다	7.5	0.3	0.8	8.8	1.6	0.2	0.6	0.3	2.2	22.3
칠레	3.5	0.8	1.0	5.4	1.7	0.2	0.5	0.8	0.4	14.3
체코공화국	8.0	0.6	1.8	6.2	2.0	0.4	0.5	0.3	0.4	20.2
덴마크	11.6	2.0	4.5	6.9	3.4	2.1	-	0.7	2.3	33.4
에스토니아	7.0	0.1	2.3	4.9	2.8	0.2	0.3	0.0	0.1	17.8
핀란드	12.4	0.8	4.3	6.3	3.1	1.0	2.4	0.7	1.0	31.9
프랑스	12.8	1.7	2.8	10.4	2.9	1.0	1.6	0.8	1.4	35.5
독일	9.0	1.8	3.5	9.2	2.3	0.6	0.9	0.6	0.3	28.3
그리스	14.4	2.7	1.9	5.1	1.1	0.3	1.0	0.0	0.1	26.5
헝가리	8.6	1.1	1.9	5.1	3.0	0.9	0.3	0.3	0.1	21.2
아이슬란드	6.0	0.5	5.1	5.1	3.4	0.0	0.5	0.6	0.7	21.9
아일랜드	4.7	0.3	1.4	6.4	2.2	0.6	1.5	0.5	0.1	17.8
이스라엘	5.8	0.6	2.6	5.6	1.9	0.1	0.5	0.0	0.7	18.1
이탈리아	14.8	2.6	2.0	6.9	2.0	0.5	1.0	0.0	0.5	30.4
일본	12.6	1.3	1.0	8.0	1.3	0.1	0.2	0.1	0.3	25.0
라트비아	7.2	0.2	2.1	3.3	2.1	0.1	0.5	0.1	0.1	15.8
리투아니아	6.5	0.4	2.0	4.4	1.7	0.3	0.4	0.0	0.4	16.2
룩셈부르크	6.7	1.7	3.3	5.5	3.4	0.7	1.4	0.3	0.5	23.4
멕시코	2.1	0.2	0.0	3.4	1.0	0.0	-	0.9	0.5	8.1
네덜란드	10.9	0.1	4.5	9.2	1.5	0.8	1.5	0.5	2.3	31.1
뉴질랜드	4.9	0.1	2.5	8.0	2.6	0.3	0.3	0.8	0.4	19.9
노르웨이	9.5	0.3	5.8	6.5	3.3	0.5	0.4	0.1	0.8	27.2
폴란드	-	-	-	0.5	-	-	-	-	-	20.7
포르투갈	12.2	1.9	2.2	6.5	1.2	0.5	1.0	0.0	0.9	26.4
슬로바키아공화국	7.2	0.9	2.0	5.6	2.0	0.2	0.4	0.0	0.6	18.9
슬로베니아	9.8	1.5	2.0	7.4	1.8	0.2	0.5	0.0	0.7	24.0
스페인	9.6	2.3	2.5	7.0	1.2	0.6	2.0	0.1	0.4	25.8
스웨덴	12.0	0.3	4.7	6.4	3.5	1.3	0.3	0.4	1.0	30.0
스위스	10.6	1.2	3.2	8.4	1.7	0.6	0.8	0.1	0.8	27.4
터키	5.7	1.4	0.4	3.4	0.4	0.0	0.2	-	0.2	11.8
영국	11.5	0.1	2.4	8.2	3.5	0.2	0.3	1.5	0.1	27.8
미국	11.7	0.7	1.8	15.2	0.6	0.1	0.2	0.3	0.8	31.3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부표 34〉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호주	17.0	16.9	16.3	15.6	16.7	16.8	17.4	18.4
오스트리아	20.6	21.4	21.1	20.6	22.7	22.1	22.5	22.5
벨기에	20.7	22.0	21.8	21.7	24.8	24.9	25.4	25.1
캐나다	15.5	15.5	15.5	15.7	17.6	16.7	16.4	17.2
칠레	10.7	9.6	9.7	10.4
체코공화국	16.8	17.6	16.7	16.1	18.7	18.3	19.3	17.9
덴마크	18.6	19.5	19.5	19.3	22.3	22.3	22.4	22.6
에스토니아	16.3	13.7	13.4	14.9
핀란드	17.3	18.5	18.7	18.0	21.6	21.5	23.2	24.1
프랑스	24.8	25.8	25.8	25.4	28.2	27.7	28.3	28.4
독일	24.0	25.1	24.5	22.3	24.3	22.8	23.1	23.3
그리스	22.0	22.0	21.2	21.4
헝가리	19.8	20.3	19.7	18.2
아일랜드	13.2	15.2	14.1	12.9	15.3	14.9	14.2	13.6
아일랜드	12.9	13.8	14.1	15.4	22.2	22.2	20.6	14.2
이스라엘	14.0	13.9	14.3	14.3
이탈리아	19.6	20.4	20.7	20.5	23.4	22.8	23.8	23.8
일본	16.7	17.2	20.2	21.5	21.3	20.8
한국	5.0	5.2	6.2	7.2	8.6	8.3	9.4	10.2
라트비아	14.8	13.7	13.7
룩셈부르크	..	18.6	18.3	16.0	19.2	16.7	17.8	17.2
멕시코	..	6.7	6.9	7.1	7.3	7.0	7.4	7.4
네덜란드	16.5	17.3	17.5	14.4	14.9	15.2	15.1	..
뉴질랜드	14.9	14.9	15.4	16.1	18.4	17.8	17.3	17.0
노르웨이	17.1	19.3	17.0	16.0	18.6	18.0	18.3	20.4
폴란드	16.9	15.7	18.0	16.2	17.1	0.4
포르투갈	..	19.5	20.1	19.7	22.6	21.9	22.1	20.9
슬로바키아	16.0	15.6	14.2	14.3	17.2	16.5	16.9	16.5
슬로베니아	19.7	20.2	20.3	19.3
스페인	16.5	17.3	17.7	18.4	23.8	23.2	22.8	22.0
스웨덴	21.4	22.2	21.5	20.4	22.4	21.2	22.5	22.0
스위스	13.2	12.9	13.5	13.9
터키	12.0	10.7	10.6	11.1
영국	15.9	16.9	17.4	17.9	21.2	20.8	21.1	19.9
미국	15.9	17.1	16.8	16.9	19.8	20.3	20.6	20.7
OECD평균	18.8	18.3	18.5	18.3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부표 35〉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호주	20.5	20.0	18.7	20.2	20.4	20.9	21.9	23.5
오스트리아	22.1	22.9	22.6	22.1	24.4	23.6	24.2	24.3
벨기에	22.1	24.0	23.8	23.4	26.7	26.6	26.9	26.7
캐나다	19.5	19.6	19.7	19.9	21.7	20.4	20.1	20.9
칠레	13.2	12.0	12.4	13.3
체코공화국	16.9	17.8	17.0	16.5	19.3	18.9	20.0	18.6
덴마크	20.9	22.1	21.8	21.9	25.3	24.9	25.3	25.4
에스토니아	16.3	13.8	13.5	14.9
핀란드	18.2	19.5	19.7	19.0	22.7	22.7	24.4	25.3
프랑스	27.3	28.4	28.5	28.4	31.2	30.9	31.6	31.7
독일	25.9	27.0	26.3	24.0	26.4	24.5	24.7	24.8
그리스	22.8	23.0	22.3	22.4
헝가리	20.2	20.6	19.5	18.1
아이스란드	16.2	18.7	17.5	16.4	19.5	19.1	18.6	18.2
아일랜드	14.4	15.2	15.9	17.0	24.3	24.5	23.2	16.1
이스라엘	16.2	15.9	16.3	16.5
이탈리아	20.8	21.7	22.0	22.0	25.0	24.3	25.5	25.4
일본	19.2	20.2	23.5	24.8	24.4	23.5
한국	7.3	7.7	8.3	9.6	10.9	10.7	11.9	13.0
라트비아	14.9	13.7	13.7
룩셈부르크	..	19.0	18.8	16.5	20.0	17.5	18.8	18.2
멕시코	..	6.7	7.0	7.2	7.6	7.3	7.7	7.7
네덜란드	21.8	23.1	23.4	23.8	25.5	26.2	26.3	..
뉴질랜드	15.3	15.3	15.9	16.5	18.9	18.3	17.9	17.6
노르웨이	18.3	20.8	18.2	17.2	20.0	19.3	19.7	22.0
폴란드	17.1	15.9	18.3	16.5	17.4	0.9
포르투갈	..	21.1	21.8	21.4	24.4	23.7	23.9	23.0
슬로바키아	16.6	16.5	15.1	15.3	18.3	17.5	17.8	17.4
슬로베니아	20.8	21.3	21.6	20.6
스페인	16.7	17.7	18.1	18.6	24.0	24.1	23.8	22.9
스웨덴	23.0	23.9	23.3	22.2	24.5	23.5	25.1	24.5
스위스	22.5	22.0	23.0	23.7
터키	12.2	10.9	10.8	11.2
영국	21.4	21.9	22.1	22.0	26.1	25.8	26.0	24.5
미국	23.6	25.5	25.2	25.7	28.6	29.8	29.6	30.0
OECD평균	21.2	20.8	21.1	20.9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202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부표 36〉 공공사회복지지출

국가명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호주	10.3	10.1	11.1	11.6	12.0	12.1	11.9	12.2	11.5	11.6	13.1	14.3
오스트리아	21.9	23.2	23.1	23.5
벨기에	23.1	24.6	25.2	25.5	24.7	25.6	25.4	25.2	25.0	24.1	24.4	25.2
캐나다	13.3	13.8	16.1	16.2	15.9	16.4	16.4	16.1	15.9	16.2	17.5	19.8
칠레	11.8	10.5	9.9	9.8	9.8
체코	14.1	15.2
덴마크	20.3	20.1	20.0	20.1	19.2	19.2	19.7	20.5	21.5	21.5	21.9	22.4
에스토니아
핀란드	17.7	17.9	18.9	19.8	20.6	21.7	22.1	22.7	22.1	21.8	23.3	28.2
프랑스	20.1	15.6	16.1	16.2	16.3	25.2	19.1	19.0	18.8	17.9	24.3	24.9
독일	21.8	22.4	22.4	22.1	21.9	22.2	22.2	22.7	22.7	21.6	21.4	22.4
그리스	9.9	11.9	13.9	14.5	14.8	15.4	15.2	15.2	13.9	14.8	15.7	15.2
헝가리
아이슬란드	13.5	14.0
아일랜드	15.7	15.8	16.6	16.7	16.1	20.4	20.5	19.8	18.6	17.1	16.8	17.7
이스라엘
이탈리아	17.4	18.7	19.2	20.2	19.8	20.1	20.1	20.3	20.2	20.4	20.7	21.1
일본	10.0	10.4	10.8	11.0	10.9	10.8	11.2	11.2	10.9	10.8	10.9	11.1
한국	2.7	2.6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19.4	20.8	20.1	20.3	19.1	18.9	18.3	19.1	18.7	18.1	18.3	18.6
멕시코	1.9	1.8	1.7	1.9	2.5	3.1	3.5
네덜란드	23.3	23.9	25.4	25.7	24.4	23.8	23.2	23.2	22.8	22.5	24.0	23.9
뉴질랜드	16.2	16.3	17.1	16.7	16.0	16.4	16.5	17.3	18.5	19.9	20.3	20.7
노르웨이	16.1	17.2	20.0	20.9	21.6	22.5
폴란드	14.2	20.5
포르투갈	9.5	10.2	9.6	9.7	9.7	9.8	10.4	10.7	10.9	10.5	12.2	13.1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5.0	16.1	16.1	16.8	16.6	17.1	16.9	16.8	17.2	17.4	19.2	19.9
스웨덴	24.8	25.6	25.5	25.8	25.0	27.0	27.1	27.3	27.8	27.2	27.2	29.1
스위스	12.7	12.5	13.2	13.5	13.7	13.4	13.5	13.6	13.6	13.3	12.1	13.1
터키	2.2	1.6	1.8	1.8	2.2	2.0	2.1	2.2	2.6	3.1	3.8	4.1
영국	15.6	16.9	17.3	18.1	18.1	18.2	18.2	17.4	16.1	15.5	14.9	16.4
미국	12.8	13.2	13.6	13.8	12.9	12.6	12.9	12.8	12.8	12.8	13.2	14.1
OECD평균	14.4	14.8	15.3	15.5	15.3	16.1	15.8	15.9	15.8	15.6	16.4	17.2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5.3	15.5	15.3	16.9	17.0	16.8	17.6	17.2	18.3	17.5	17.4	17.6	17.3	16.7
24.2	25.5	26.3	26.3	26.4	25.9	25.6	26.0	25.7	25.8	26.0	26.6	26.3	26.0
24.2	25.2	24.7	25.2	25.7	24.7	24.7	24.5	23.5	24.0	24.3	25.5	25.3	25.2
20.4	20.4	19.3	18.4	17.6	16.9	17.0	16.0	15.8	16.2	16.2	16.3	16.3	16.1
9.3	9.5	9.2	11.0	11.9	11.6	11.9	12.7	10.4	10.1	10.2	10.0	9.3	8.9
15.4	15.7	15.8	16.1	16.1	16.8	17.1	17.8	17.9	17.9	18.6	18.8	17.9	18.1
22.6	23.8	25.4	25.5	24.9	24.2	23.7	24.5	23.8	24.3	24.8	25.3	25.1	25.2
..	15.1	13.8	13.0	12.8	12.9	13.4	13.0
32.2	32.3	31.6	28.9	28.7	26.6	24.5	23.8	22.6	22.4	23.2	23.9	24.0	24.0
25.6	27.0	27.1	28.3	28.6	28.5	28.7	28.7	27.6	27.6	28.3	28.7	28.7	28.7
24.1	24.8	24.9	25.2	25.8	25.4	25.4	25.6	25.4	25.4	26.0	26.5	25.9	26.2
15.4	16.2	16.3	16.6	17.0	16.9	17.5	18.0	17.8	18.6	18.4	18.2	18.4	19.9
..	20.8	20.1	19.7	20.8	21.8	21.1	21.9
14.5	14.9	14.8	15.1	14.7	14.1	14.3	14.5	14.6	14.7	16.1	17.1	16.8	15.9
18.5	18.5	18.1	17.5	16.6	15.5	14.6	13.7	13.2	14.0	14.9	15.4	15.7	15.9
..	16.4	16.8	16.9	16.6	16.5	16.2	17.5	17.4	16.9	15.8	15.3
21.8	22.1	22.1	21.1	21.5	22.2	22.4	22.8	22.7	22.9	23.3	23.7	23.9	24.2
11.7	12.4	12.9	13.3	13.3	13.7	14.3	15.2	15.4	16.2	16.5	16.7	16.9	17.2
2.8	2.9	2.9	3.1	3.2	3.5	4.8	5.8	4.5	4.9	4.8	5.1	5.7	6.1
..	..	0.0	0.0	0.0	14.3	15.0	16.4	15.4	14.3	13.8	12.9	13.1	12.3
..	13.1	13.8	15.0	16.2	15.4	14.5	14.3	14.3	13.2	13.7
19.0	19.3	19.1	19.9	19.7	19.9	20.2	19.5	18.7	20.4	21.4	22.8	23.1	22.8
3.9	3.8	4.1	3.7	3.4	3.4	3.8	4.3	4.4	5.0	5.3	6.0	6.0	6.1
24.4	24.5	23.1	22.4	22.5	20.5	20.2	19.4	18.8	18.9	19.3	20.1	20.0	20.2
20.4	18.9	18.2	17.7	17.6	18.6	19.1	18.5	18.2	17.6	18.0	17.5	17.2	17.8
23.3	23.3	23.1	22.5	21.7	21.2	22.6	22.6	20.4	21.2	22.7	23.7	22.3	20.7
24.1	23.6	22.5	21.8	22.0	21.5	20.8	21.2	20.2	21.8	22.0	22.0	21.1	20.8
13.8	15.1	15.2	16.0	16.6	16.4	16.8	17.2	18.5	18.9	20.3	21.3	21.7	22.3
..	18.4	18.0	17.6	17.7	18.2	17.6	17.3	17.4	16.6	15.9	15.8
..	5.7	22.0	22.3	22.4	22.3	22.0	22.0	22.3	21.9	21.5	21.4
21.1	22.3	21.3	20.7	20.6	20.0	19.9	19.8	19.5	19.1	19.3	19.9	20.1	20.4
32.7	34.2	32.9	30.6	30.1	28.9	28.5	28.0	26.8	26.8	27.5	28.2	27.7	27.3
14.4	15.7	15.7	14.0	14.4	14.9	14.9	14.6	13.9	14.2	15.1	15.9	15.9	15.6
4.2	4.0	3.6	3.4	4.6	4.8	5.0	5.7	7.5	8.2	8.8	9.8	10.1	10.1
17.8	18.4	17.8	16.7	16.5	15.8	16.2	16.1	16.2	17.0	17.1	17.9	18.4	18.3
14.8	15.1	15.0	15.1	14.9	14.4	14.5	14.2	14.3	14.8	15.7	15.9	15.8	15.6
18.1	18.6	18.3	18.0	18.1	17.7	17.7	17.6	17.4	17.6	18.0	18.3	18.2	18.2

204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5.7	15.9	17.1	16.9	16.6	17.1	17.3	17.6	18.3	18.5
오스트리아	25.7	25.1	25.5	27.5	27.6	26.7	27.1	27.5	27.7	27.7
벨기에	25.1	24.9	26.3	28.6	28.3	28.7	28.7	29.2	29.4	29.2
캐나다	16.3	16.2	16.3	18.0	17.5	17.0	17.1	16.8	16.7	17.6
칠레	8.3	8.4	9.5	11.1	10.4	10.0	10.1	10.0	10.3	10.8
체코	17.7	17.5	17.8	20.1	19.7	19.8	20.0	20.9	20.2	19.4
덴마크	25.0	25.0	25.4	28.3	28.6	28.6	28.7	28.8	28.8	29.0
에스토니아	12.6	12.6	15.4	19.5	18.3	16.3	15.9	15.8	16.4	17.7
핀란드	23.7	22.8	23.3	26.9	27.3	27.1	28.3	29.4	30.2	30.4
프랑스	28.3	28.1	28.3	31.0	31.0	30.8	31.4	31.9	32.2	32.0
독일	25.0	24.1	24.2	26.6	25.9	24.7	24.5	24.7	24.7	24.9
그리스	20.0	20.4	21.3	24.0	24.9	26.0	26.9	25.1	25.2	25.4
헝가리	22.2	22.4	22.7	23.3	23.0	22.4	22.7	22.3	21.5	20.9
아이슬란드	15.5	14.6	15.1	17.3	16.9	17.0	16.7	16.2	16.3	15.5
아일랜드	15.9	16.8	19.8	23.7	24.6	23.7	23.4	22.2	20.4	15.5
이스라엘	15.1	14.6	14.8	15.3	15.4	15.2	15.5	15.5	15.5	15.5
이탈리아	24.3	24.1	25.1	27.1	27.1	26.8	27.6	28.2	28.4	28.5
일본	17.3	17.7	18.7	20.9	21.3	22.3	22.2	22.2	21.9	21.9
한국	7.0	7.1	7.6	8.4	8.2	8.1	8.7	9.3	9.7	10.2
라트비아	12.2	11.1	13.0	18.1	19.5	16.6	15.4	15.5	15.4	15.7
리투아니아	13.7	14.8	16.6	21.8	19.4	17.4	16.5	15.5	15.6	15.8
룩셈부르크	21.4	20.2	21.9	24.0	23.1	21.2	22.9	23.1	22.4	22.1
멕시코	6.3	6.3	6.7	7.3	7.4	7.2	7.2	7.6	7.6	7.7
네덜란드	16.5	16.6	15.7	17.4	17.8	17.7	18.2	18.5	18.1	17.7
뉴질랜드	18.5	18.3	19.6	20.7	20.4	20.0	20.1	19.5	19.6	19.2
노르웨이	19.5	19.6	19.2	22.4	22.0	21.5	21.4	21.9	22.8	24.7
폴란드	20.5	19.4	20.1	21.2	20.6	19.4	19.6	20.5	20.3	20.2
포르투갈	22.0	21.7	22.2	24.5	24.5	24.4	24.5	25.6	25.1	24.0
슬로바키아	15.5	15.3	15.3	18.2	18.0	17.7	17.8	18.0	18.1	17.8
슬로베니아	21.1	19.7	19.9	22.5	23.4	23.5	23.5	23.8	23.1	22.6
스페인	20.4	20.8	22.2	25.4	24.7	25.4	25.3	25.6	25.2	24.7
스웨덴	26.6	25.5	25.6	27.6	26.3	25.6	26.5	27.2	26.8	26.3
스위스	14.7	14.1	13.8	15.3	15.1	14.9	15.3	15.4	15.5	15.9
터키	10.4	10.9	11.1	13.0	12.3	11.9	12.0	11.8	11.7	11.6
영국	18.2	18.8	20.1	22.2	22.4	22.2	22.2	22.5	21.9	21.6
미국	15.7	15.9	16.5	18.6	19.4	19.1	18.8	18.8	18.8	18.8
OECD평균	17.9	17.7	18.5	20.7	20.6	20.2	20.3	20.4	20.3	19.0

〈부표 3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호주	0.0	0.0	0.1
오스트리아	1.4	1.2	1.1	1.1
벨기에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0.0
캐나다
칠레	0.4	0.4	0.5	0.5	0.7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0.2	0.2
독일	1.9	1.8	1.5	1.4	1.4	1.5	1.5	1.6	1.5	1.5	1.6	1.5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3.0	3.3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0.8	0.8	0.9	1.1	0.9	0.9	0.9	1.0	1.1	1.1	1.5	1.7
일본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한국	0.2	0.2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0.4	0.4	0.4	0.4	0.3	0.3	0.4	0.4	0.4	0.5	0.4	0.4
뉴질랜드
노르웨이	0.2	0.3	0.4	0.5	1.1	1.2
폴란드
포르투갈	0.2	0.3	0.3	0.3	0.3	0.3	0.3	0.3	0.3	0.3	0.2	0.2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1.7	1.7	1.8	2.2	2.0	2.0	2.1	2.4	2.5	2.6	3.2	3.4
터키
영국	0.2	0.2	0.2	0.2	0.2	0.2	0.2	0.3	0.3	0.3	0.3	0.5
미국	0.4	0.4	0.4	0.4	0.4	0.4	0.4	0.4	0.5	0.5	0.5	0.5
OECD평균	0.6	0.6	0.6	0.7	0.6	0.6	0.6	0.7	0.7	0.7	0.7	0.8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206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국가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호주	0.1	0.3	0.3	2.1	2.4	2.8	2.7	3.2	2.9	3.1	3.1
오스트리아	1.1	1.1	1.1	1.1	1.0	1.0	0.9	1.0	0.9	0.9	0.9
벨기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캐나다
칠레	0.8	0.9	1.1	1.2	1.3	1.3	1.3	1.5	2.4	2.4	2.4
체코	0.0	0.1	0.1	0.2	0.2	0.2	0.2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0.2	0.3	0.2	0.2	0.2	0.3	0.3	0.3	0.3	0.3	0.3
독일	1.6	1.5	1.4	1.5	1.3	1.1	1.1	1.2	1.3	1.2	1.2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3.4	3.5	3.4	3.5	3.5	3.7	3.7	3.8	4.1	4.2	4.5
아일랜드
이스라엘	1.1	0.5	0.5
이탈리아	1.9	1.7	1.5	1.5	1.3	1.3	1.3	1.2	1.1	1.1	1.1
일본	0.2	0.2	0.2	0.2	0.3	0.3	0.4	0.4	0.4	0.5	0.6
한국	0.2	0.3	0.4	0.3	0.3	0.5	1.0	0.6	0.8	0.6	0.5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0.0	0.0	0.0	0.0	0.0	0.0	0.0
룩셈부르크	0.2	0.2
멕시코
네덜란드	0.4	0.4	0.6	0.8	0.9	0.9	1.0	1.0	0.9	0.9	0.9
뉴질랜드
노르웨이	1.1	1.0	0.9	0.9	1.1	1.0	1.1	1.2	1.2	1.3	1.5
폴란드
포르투갈	0.2	0.2	0.4	0.3	0.3	0.3	0.3	0.3	0.4	0.4	0.4
슬로바키아	0.2	0.2	0.2	0.2	0.2	0.2	0.2	0.2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0.5	0.4	0.3	0.3	0.3	0.4	0.5	0.5	0.5	0.5
스위스	3.7	4.0	4.2	7.2	7.6	7.8	8.1	8.2	8.4	8.7	9.1
터키
영국	0.5	0.6	0.6	0.5	0.6	0.6	0.6	0.6	0.6	0.7	0.7
미국	0.5	0.5	0.5	0.4	0.4	0.4	0.4	0.4	0.4	0.4	0.4
OECD평균	0.8	0.8	0.8	1.2	1.2	1.3	1.3	1.4	1.4	1.3	1.3

(단위: GDP 대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5	1.7	1.9	1.9	4.2	3.5	3.3	3.4	3.6	3.8	4.0	4.5	4.7
0.9	0.8	0.8	0.8	0.8	0.8	0.9	0.8	0.8	0.8	0.8	0.8	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3	2.4	2.4	2.2	2.3	2.5	2.6	2.5	2.6	2.7	2.8	2.9	3.0
0.2	0.2	0.2	0.3	0.3	0.4	0.5	0.5	0.6	0.8	0.4	0.4	0.4
..	2.2	2.1	2.5	2.0	2.0	1.9	2.4	3.0	2.6
..
..
0.4	0.3	0.3	0.4	0.4	0.3	0.2	0.2	0.2	0.2	0.2	0.2	0.2
1.2	1.1	1.0	0.9	1.0	1.1	2.1	2.0	2.1	2.2	2.3	2.2	2.2
..	0.5	0.5	0.5	0.5	0.7	0.7	0.5	0.7	0.6	0.6
..
4.8	4.7	4.8	4.8	4.9	5.0	5.6	5.4	5.7	5.9	6.1	6.4	6.3
..
0.4	0.3	0.3	0.2	0.2	0.5	0.2	0.3	0.2	0.2	0.2	0.2	0.2
1.2	1.1	1.1	1.1	1.2	1.1	1.2	1.2	1.2	1.2	1.2	1.1	1.0
0.5	0.4	0.4	0.4	0.5	0.5	0.6	0.6	0.6	0.6	0.6	0.6	0.5
0.6	0.6	0.5	0.5	0.5	0.6	0.7	0.6	0.6	0.7	0.7	0.8	1.0
..
0.0	0.1	0.1	0.2	0.1	0.1	0.2	0.2	0.2	0.2	0.1	0.1	0.2
0.2	0.3	0.2	0.3	0.3	0.3	0.8	0.8	0.8	0.8	0.9	0.8	0.8
..
0.8	0.8	0.8	5.3	5.2	5.6	6.1	6.2	6.2	6.2	6.2	6.1	6.4
..
1.6	1.5	1.2	1.2	1.2	1.2	1.5	1.2	1.2	1.2	1.2	1.2	1.3
..	0.0	0.0	0.0
0.4	0.4	0.4	0.4	0.3	0.3	0.3	0.3	0.3	0.3	0.3	0.3	0.2
0.2	0.1	0.2	0.2	0.1	0.1	0.2	0.2	0.2	0.2	0.1	0.1	0.1
..
..
0.5	0.5	0.4	0.4	0.4	0.4	0.4	0.3	0.4	0.4	0.4	0.4	0.4
9.2	9.5	9.4	9.2	9.2	9.1	9.9	9.5	9.6	9.9	10.2	10.3	10.5
..
0.7	0.7	0.7	0.7	0.8	0.8	0.9	0.9	0.9	0.9	1.0	0.9	0.9
0.4	0.4	0.3	0.3	0.3	0.3	0.3	0.3	0.3	0.3	0.3	5.6	5.8
1.3	1.3	1.3	1.4	1.6	1.6	1.8	1.7	1.8	1.8	1.8	2.1	1.3

〈부표 38〉 민간사회복지지출¹⁾

국가명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호주	1.2	1.4	1.7	1.3	0.9	0.8	0.9	0.9	1.0	1.0	1.1	1.2
오스트리아	2.5	0.6	0.6	0.6	0.6	2.3	0.6	0.6	0.6	0.6	2.2	2.2
벨기에	1.0	1.0	1.0	1.0	0.8	0.8	0.9	0.9	0.9	0.9	1.6	1.5
캐나다	1.5	1.6	2.0	2.0	2.1	2.2	2.4	2.5	2.8	3.0	3.4	3.8
칠레	0.4	0.4	0.5	0.5	0.7
체코
덴마크	5.0	5.0	5.3	5.4	5.0	4.5	4.1	4.1	4.4	4.7	4.7	4.9
에스토니아
핀란드	0.9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프랑스	0.7	0.3	0.3	0.3	0.3	0.8	0.3	0.3	0.3	0.2	2.0	2.0
독일	3.4	3.4	3.2	3.1	3.1	3.2	3.3	3.4	3.4	3.4	3.5	3.1
그리스	0.0	0.0	0.0	0.0	0.0	0.0	0.0	2.0	1.8
헝가리
아이슬란드	3.0	3.3
아일랜드	1.2	1.3	1.3	1.2	1.4	1.5	1.6	1.7	1.7	1.4	1.4	1.4
이스라엘
이탈리아	0.8	0.8	0.9	1.1	0.9	0.9	0.9	1.0	1.1	1.1	2.0	2.1
일본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한국	0.3	0.3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0.0	0.0	0.0	0.0	0.0	0.1	0.1	0.1	0.1	0.1	0.1	0.1
멕시코	0.1	0.1
네덜란드	3.8	4.0	4.4	4.4	4.5	4.6	5.1	5.4	5.5	5.6	5.7	5.9
뉴질랜드	0.1	..	0.1	..	0.1	0.1	0.1	0.1	0.2	0.2	0.2	0.3
노르웨이	0.8	0.8	1.1	1.1	1.9	1.9
폴란드
포르투갈	0.6	0.7	0.7	0.8	0.8	0.8	0.8	0.9	0.8	0.8	0.8	0.9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0.2	0.2	0.2	0.2	0.2	0.2	0.2	0.2	0.4	0.5	0.2	0.2
스웨덴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6
스위스	1.7	1.7	1.8	2.2	2.0	2.8	2.9	3.2	3.3	3.4	4.1	4.3
터키
영국	3.4	3.8	4.0	4.2	4.4	4.4	4.5	4.6	4.4	4.4	4.7	5.6
미국	4.7	5.2	5.6	5.9	6.1	6.6	6.7	6.9	7.0	7.6	7.9	8.2
OECD평균	1.3	1.4	1.4	1.4	1.3	1.4	1.4	1.5	1.5	1.6	1.8	1.9

주: 1)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이라 함은 법정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단위: GD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2	1.4	1.4	3.3	3.5	3.9	3.5	4.0	3.7	4.0	4.0	3.5	2.7	2.8
2.2	2.2	2.1	2.1	2.0	2.0	1.9	2.0	2.1	2.0	2.0	2.0	2.0	2.0
1.9	2.3	2.3	2.1	2.0	1.9	1.9	1.8	1.7	1.9	2.0	2.5	2.5	2.4
4.1	4.3	4.4	4.4	4.6	4.8	5.1	4.9	5.0	5.3	5.4	5.3	5.4	5.5
0.8	0.9	1.1	1.2	1.3	1.3	1.3	1.5	2.7	2.8	2.7	2.7	2.7	2.7
..	0.1	0.1	0.1	0.2	0.3	0.3	0.3	0.3	0.3	0.3	0.5
5.2	5.7	5.6	5.1	4.9	4.6	4.2	4.0	3.9	3.8	3.9	4.4	4.4	3.9
..	0.3	0.1	0.1	0.1	0.1	0.1	0.1
1.1	1.6	1.5	1.5	1.5	1.4	1.4	1.3	1.3	1.3	1.4	1.4	1.4	1.3
2.0	2.1	2.2	2.3	2.4	2.3	2.3	2.3	2.6	2.7	2.8	2.8	2.8	3.0
3.1	3.1	3.0	3.1	2.9	2.8	2.8	2.8	3.0	3.1	3.0	3.0	3.0	2.9
1.8	1.8	1.8	1.8	1.8	1.8	1.8	1.9	0.0	0.1	0.1	0.1	0.1	0.1
..	0.2	0.2	0.2	0.2	0.3	0.3	0.3
3.4	3.5	3.4	3.5	3.5	3.7	3.7	3.8	4.1	4.2	4.5	4.9	4.8	4.9
1.5	1.5	1.5	1.6	1.6	1.5	1.5	1.3	1.7	1.9	2.0	1.7	2.1	2.1
..	0.1	0.2	0.2	0.3	0.3	2.3	2.2	2.4	2.4	2.3	2.4
2.4	2.2	2.0	1.9	1.7	1.7	1.7	1.7	1.6	1.6	1.6	1.8	1.6	1.6
0.2	0.2	0.2	0.5	0.5	3.3	3.5	3.6	3.5	3.8	3.9	3.2	3.1	2.8
0.3	0.4	0.4	2.2	2.2	2.4	2.6	2.6	2.6	2.4	2.3	2.6	2.1	2.1
..	0.0	0.0	0.1	0.1	0.1	0.2	0.1	0.2	0.1
..	0.0	0.0	0.0	0.0	0.3	0.1	0.0	0.1	0.2	0.2
0.1	0.1	0.1	0.1	0.2	0.2	0.4	0.4	0.5	0.6	0.6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5.9	6.1	6.3	7.1	7.0	6.9	7.7	7.8	7.8	7.7	8.3	8.5	8.6	8.4
0.4	0.4	0.4	0.5	0.5	0.5	0.5	0.5	0.5	0.5	0.5	0.4	0.5	0.5
1.8	1.7	1.7	1.7	1.9	1.8	2.0	2.3	2.0	2.1	2.4	2.6	2.3	2.0
..	0.2	0.2	0.2	0.2
0.9	1.1	1.2	1.1	1.1	1.1	1.4	1.4	1.6	1.7	1.8	1.8	1.9	2.0
..	0.6	0.6	0.7	1.0	1.0	0.8	0.8	0.9	1.2	1.4	1.1
..	0.0	0.0	0.0	0.0	0.0	0.0	0.0	1.2	1.2	1.1
0.2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5	0.5	0.5
1.4	2.9	2.6	2.5	2.4	2.5	2.5	2.5	2.5	2.6	2.7	2.7	2.6	2.7
4.7	5.1	5.3	8.4	8.8	8.9	9.3	9.4	9.5	9.9	10.3	10.4	10.7	10.5
..	0.4	0.4	0.5	0.5	0.5	0.4	0.4
6.2	6.3	6.3	5.8	5.8	6.3	6.2	6.3	7.2	6.8	6.1	6.1	5.9	6.1
8.5	8.4	8.5	8.6	8.9	8.9	9.0	9.2	9.4	9.6	10.0	10.2	10.3	10.3
2.0	2.2	2.2	2.4	2.5	2.6	2.7	2.5	2.5	2.5	2.5	2.6	2.6	2.5

210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2.9	5.2	4.4	4.3	4.3	4.6	4.9	5.1	5.7	5.8
오스트리아	2.0	2.0	2.1	2.2	2.2	2.2	2.2	2.2	2.2	2.2
벨기에	2.4	2.1	2.1	2.2	1.9	2.0	2.0	1.9	1.8	1.9
캐나다	5.5	5.3	4.9	5.1	4.9	4.7	4.7	4.7	4.6	4.7
칠레	2.5	2.6	2.9	3.1	3.0	3.1	3.2	3.3	3.4	3.5
체코	0.5	0.5	0.6	0.8	0.8	0.8	1.0	0.8	0.8	0.8
덴마크	3.3	4.3	3.9	4.9	4.5	4.3	4.2	4.6	5.0	4.4
에스토니아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핀란드	1.3	1.3	1.3	1.5	1.5	1.5	1.5	1.5	1.5	1.5
프랑스	3.3	3.3	3.3	3.4	3.4	3.4	3.5	3.5	3.5	3.5
독일	2.8	2.9	3.1	3.3	3.3	3.3	3.4	3.5	3.4	3.5
그리스	0.6	0.6	0.9	0.9	1.1	1.1	1.1	1.2	1.1	1.1
헝가리	0.4	0.4	0.4	0.4	0.4	0.4	0.4	0.4	0.3	0.3
아이슬란드	4.9	5.1	5.2	5.7	5.6	5.8	6.0	6.2	6.5	6.5
아일랜드	2.1	2.2	2.3	2.8	2.8	3.2	3.4	3.3	3.0	2.2
이스라엘	2.4	2.4	2.7	2.5	2.5	2.4	2.4	2.4	2.4	2.5
이탈리아	1.7	1.7	1.8	1.8	1.9	1.9	2.0	2.0	1.9	1.9
일본	2.7	3.2	3.3	3.7	3.5	3.6	3.7	3.5	3.2	3.1
한국	2.3	2.4	2.1	2.3	2.1	2.5	2.5	2.6	2.7	3.0
라트비아	0.2	0.1	0.1	0.1	0.2	0.1	0.1	0.1	0.1	0.1
리투아니아	0.2	0.2	0.2	0.3	0.3	0.3	0.3	0.3	0.3	0.4
룩셈부르크	0.5	0.6	0.5	1.1	1.2	1.2	1.3	1.4	1.3	1.3
멕시코	0.2	0.2	0.3	0.4	0.3	0.3	0.3	0.4	0.4	0.4
네덜란드	11.7	11.6	11.8	12.8	13.0	13.3	13.5	13.5	13.4	13.4
뉴질랜드	0.5	0.5	0.5	0.6	0.7	0.7	0.7	0.7	0.7	0.7
노르웨이	2.0	2.0	1.9	2.3	2.0	2.2	2.1	2.2	2.4	2.5
폴란드	0.2	0.2	0.2	0.3	0.3	0.3	0.4	0.4	0.4	0.5
포르투갈	2.0	1.9	2.0	1.9	1.9	2.0	2.0	2.0	2.0	2.3
슬로바키아	1.2	1.2	1.3	1.3	1.4	1.1	1.3	1.1	1.0	1.1
슬로베니아	1.2	1.1	1.1	1.2	1.2	1.2	1.4	1.4	1.4	1.3
스페인	0.5	0.5	0.4	0.5	1.1	1.2	1.2	1.2	1.1	1.1
스웨덴	2.7	2.7	2.9	3.2	3.0	3.3	3.5	3.7	3.6	3.6
스위스	10.3	10.2	10.2	11.0	10.6	10.7	10.8	11.2	11.2	11.5
터키	0.4	0.4	0.4	0.3	0.3	0.2	0.2	0.2	0.2	0.2
영국	6.0	5.4	5.6	6.1	6.4	6.5	6.6	6.4	6.2	6.2
미국	10.5	10.8	10.7	10.8	11.5	11.6	11.9	12.1	12.3	12.5
OECD평균	2.6	2.7	2.8	3.0	3.0	3.0	3.1	3.1	3.1	3.0

〈부표 39〉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국가명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호주	1.2	1.4	1.7	1.3	0.9	0.8	0.9	0.9	1.0	1.0	1.1	1.1
오스트리아	1.1	0.6	0.6	0.6	0.6	1.1	0.6	0.6	0.6	0.6	1.0	1.0
벨기에	0.9	0.9	0.9	0.9	0.7	0.7	0.8	0.8	0.8	0.7	1.5	1.5
캐나다	1.5	1.6	2.0	2.0	2.1	2.2	2.4	2.5	2.8	3.0	3.4	3.8
칠레
체코
덴마크	5.0	5.0	5.3	5.4	5.0	4.5	4.1	4.1	4.4	4.7	4.7	4.9
에스토니아
핀란드	0.9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프랑스	0.7	0.3	0.3	0.3	0.3	0.8	0.3	0.3	0.3	0.2	1.7	1.7
독일	1.5	1.6	1.6	1.6	1.6	1.7	1.7	1.8	1.9	1.9	1.9	1.6
그리스	0.0	0.0	0.0	0.0	0.0	0.0	0.0	2.0	1.8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1.2	1.3	1.3	1.2	1.4	1.5	1.6	1.7	1.7	1.4	1.4	1.4
이스라엘
이탈리아	0.5	0.5
일본
한국	0.1	0.1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0.0	0.0	0.0	0.0	0.0	0.1	0.1	0.1	0.1	0.1	0.1	0.1
멕시코	0.1	0.1
네덜란드	3.4	3.6	4.0	4.0	4.2	4.3	4.7	5.0	5.1	5.1	5.3	5.5
뉴질랜드	0.1	..	0.1	..	0.1	0.1	0.1	0.1	0.2	0.2	0.2	0.3
노르웨이	0.6	0.5	0.6	0.7	0.8	0.7
폴란드
포르투갈	0.4	0.4	0.4	0.5	0.5	0.5	0.5	0.6	0.5	0.5	0.6	0.7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0.2	0.2	0.2	0.2	0.2	0.2	0.2	0.2	0.4	0.5	0.2	0.2
스웨덴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6
스위스	0.8	0.8	0.8	0.8	0.8	0.9	0.9
터키
영국	3.2	3.6	3.8	4.0	4.2	4.1	4.3	4.3	4.1	4.1	4.4	5.1
미국	4.4	4.8	5.3	5.5	5.7	6.2	6.2	6.5	6.6	7.1	7.4	7.7
OECD평균	1.2	1.3	1.3	1.3	1.2	1.2	1.2	1.3	1.3	1.3	1.5	1.6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9.1.23. 다운로드)

212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국가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호주	1.1	1.1	1.1	1.2	1.2	1.1	0.8	0.8	0.8	0.9	0.9
오스트리아	1.0	1.1	1.1	1.0	1.0	1.0	1.0	1.0	1.2	1.1	1.1
벨기에	1.9	2.3	2.2	2.0	2.0	1.9	1.9	1.8	1.7	1.9	2.0
캐나다	4.1	4.3	4.4	4.4	4.6	4.8	5.1	4.9	5.0	5.3	5.4
칠레	0.3	0.3	0.3
체코	0.1	0.1	0.1	0.1	0.1	0.1	0.1	0.1
덴마크	5.2	5.7	5.6	5.1	4.9	4.6	4.2	4.0	3.9	3.8	3.9
에스토니아	0.3	0.1	0.1	0.1
핀란드	1.1	1.6	1.5	1.5	1.5	1.4	1.4	1.3	1.3	1.3	1.4
프랑스	1.8	1.9	1.9	2.1	2.1	2.1	2.1	2.1	2.4	2.4	2.5
독일	1.5	1.6	1.6	1.6	1.6	1.6	1.7	1.6	1.7	1.8	1.8
그리스	1.8	1.8	1.8	1.8	1.8	1.8	1.8	1.9	0.0	0.1	0.1
헝가리	0.2	0.2	0.2	0.2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1.5	1.5	1.5	1.6	1.6	1.5	1.5	1.3	1.7	1.9	2.0
이스라엘	0.1	0.2	0.2	0.3	0.3	1.2	1.7	1.8
이탈리아	0.5	0.5	0.5	0.4	0.4	0.4	0.4	0.5	0.5	0.5	0.5
일본	0.2	0.2	3.0	3.2	3.2	3.1	3.3	3.3
한국	0.1	0.1	0.1	1.8	1.9	1.9	1.6	1.9	1.8	1.8	1.9
라트비아	0.0	0.0	0.1	0.1	0.1	0.2
리투아니아	0.0	0.0	0.0	0.3	0.1	0.0
룩셈부르크	0.1	0.1	0.1	0.1	0.2	0.2	0.3	0.2
멕시코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네덜란드	5.5	5.7	5.7	6.3	6.1	6.0	6.8	6.8	6.9	6.8	7.4
뉴질랜드	0.4	0.4	0.4	0.5	0.5	0.5	0.5	0.5	0.5	0.5	0.5
노르웨이	0.8	0.8	0.8	0.8	0.8	0.8	0.9	1.0	0.8	0.8	0.9
폴란드	0.2
포르투갈	0.7	0.8	0.8	0.8	0.8	0.8	1.0	1.1	1.2	1.3	1.4
슬로바키아	0.4	0.4	0.5	0.8	0.8	0.6	0.6	0.7
슬로베니아	0.0	0.0	0.0	0.0	0.0	0.0	0.0
스페인	0.2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스웨덴	1.4	2.5	2.3	2.1	2.1	2.2	2.1	2.0	1.9	2.1	2.2
스위스	1.0	1.1	1.1	1.2	1.1	1.2	1.2	1.2	1.2	1.2	1.2
터키	0.4	0.4	0.5	0.5
영국	5.7	5.7	5.8	5.3	5.2	5.7	5.6	5.7	6.6	6.1	5.4
미국	7.9	8.0	8.0	8.1	8.5	8.6	8.6	8.8	9.0	9.2	9.6
OECD평균	1.6	1.8	1.8	1.7	1.8	1.9	1.9	1.7	1.7	1.8	1.8

(단위: GDP 대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	1.0	1.0	1.0	0.9	1.0	1.0	1.0	1.0	1.1	1.1	1.2	1.2
1.1	1.2	1.2	1.2	1.2	1.3	1.4	1.3	1.3	1.3	1.4	1.4	1.4
2.5	2.5	2.4	2.4	2.1	2.1	2.2	1.9	2.0	2.0	1.9	1.8	1.9
5.3	5.4	5.5	5.5	5.3	4.9	5.1	4.9	4.7	4.7	4.7	4.6	4.7
0.4	0.4	0.3	0.3	0.4	0.4	0.5	0.4	0.4	0.5	0.5	0.5	0.6
0.1	0.1	0.2	0.2	0.2	0.2	0.3	0.2	0.2	0.2	0.4	0.4	0.4
4.4	4.4	3.9	3.3	2.1	1.9	2.4	2.4	2.3	2.3	2.2	2.0	1.8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1.4	1.4	1.3	1.3	1.3	1.3	1.5	1.5	1.5	1.5	1.5	1.5	1.5
2.4	2.5	2.6	2.9	2.9	3.0	3.1	3.2	3.2	3.2	3.3	3.3	3.3
1.9	1.9	1.9	1.9	1.9	2.0	1.2	1.2	1.2	1.2	1.3	1.2	1.2
0.1	0.1	0.1	0.1	0.1	0.3	0.4	0.4	0.5	0.6	0.5	0.5	0.5
0.3	0.3	0.3	0.4	0.4	0.4	0.4	0.4	0.4	0.4	0.4	0.3	0.3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1.7	2.1	2.1	2.1	2.2	2.3	2.8	2.8	3.2	3.4	3.3	3.0	2.2
2.0	2.0	2.1	2.2	2.2	2.2	2.2	2.2	2.2	2.2	2.2	2.3	2.3
0.6	0.5	0.5	0.6	0.6	0.6	0.6	0.6	0.6	0.8	0.8	0.8	0.9
2.8	2.7	2.4	2.3	2.8	2.8	3.1	2.9	3.0	3.1	2.9	2.7	2.6
2.0	1.5	1.6	1.8	1.9	1.6	1.7	1.6	1.9	1.9	1.9	2.0	2.0
0.1	0.2	0.1	0.2	0.1	0.1	0.1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3	0.3	0.3	0.3	0.4	0.2	0.3	0.3	0.4	0.4	0.5	0.4	0.5
0.2	0.2	0.2	0.2	0.2	0.3	0.4	0.3	0.3	0.3	0.4	0.4	0.4
7.7	7.7	7.5	6.4	6.4	6.2	6.7	6.8	7.1	7.3	7.3	7.2	7.0
0.4	0.5	0.5	0.5	0.5	0.5	0.6	0.7	0.7	0.7	0.7	0.7	0.7
1.0	0.8	0.8	0.8	0.8	0.7	0.8	0.9	0.9	0.9	1.0	1.1	1.3
0.2	0.2	0.2	0.2	0.2	0.2	0.3	0.3	0.3	0.4	0.4	0.4	0.4
1.4	1.6	1.6	1.6	1.6	1.6	1.7	1.6	1.7	1.7	1.7	1.8	2.1
1.0	1.2	0.9	1.0	1.1	1.2	1.2	1.2	1.0	1.1	1.0	0.9	0.9
1.2	1.2	1.1	1.2	1.1	1.1	1.2	1.2	1.2	1.4	1.4	1.4	1.3
0.5	0.5	0.5	0.5	0.5	0.4	0.5	1.1	1.2	1.2	1.2	1.1	1.1
2.2	2.1	2.3	2.3	2.3	2.5	2.8	2.7	3.0	3.1	3.2	3.2	3.2
1.1	1.1	1.1	1.1	1.0	1.0	1.1	1.1	1.1	0.9	0.9	1.0	1.0
0.5	0.4	0.4	0.4	0.4	0.4	0.3	0.3	0.2	0.2	0.2	0.2	0.2
5.4	5.2	5.3	5.3	4.6	4.8	5.2	5.6	5.6	5.7	5.4	5.3	5.3
9.8	9.9	9.9	10.2	10.5	10.4	10.5	11.2	11.3	11.6	11.8	6.6	6.7
1.8	1.8	1.8	1.8	1.7	1.7	1.8	1.8	1.9	1.9	1.9	1.7	1.6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 (The SOCX Manual)⁴⁵⁾

II.1. 서론 (Introduction)

1.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 (SOCX)는 사회지출의 경향과 세부 사회지출 프로그램 수준에서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SOCX에 있는 세부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지출 총합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한 사회정책분야에서의 지출 항목을 분석을 위해 재그룹화할 수 있으며, 사회 정책 개혁의 경향에 대한 국가 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16 개국의 공공지출 추산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세부 지출은 대부분 국가에서 1980년부터 2013/14년까지 이용 가능하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OECD에 가입한 국가의 데이터는 더 짧은 기간만이 제공된다. SOCX의 현 버전은 35개 OECD국가-2010년에 OECD에 가입한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및 2016년에 가입한 라트비아 포함-의 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 자세한 SOCX 데이터는 2013/14 이후의 기간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SOCX와 같은 공공사회지출 시리즈는 OECD Economic Outlook (OECD, 2017b), EU의 Annual Macro-economic Database (AMECO), 또는 예산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복지지출 전망 관련 OECD 조사표에 대한 국가의 응답에 있는 국가 총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2014, 2015, 그리고 2016년까지 연장하였다. OECD Economic Outlook과 AMECO에서의 예측을 기반으로, 2015년과 2016년의 공공사회지출이 추정되었다.

3. 지난 몇 년 동안 SOCX는 민간 사회복지지출, 공적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서의 아동에 대한 지출, 그리고 사회지출의 순(세후) 사회복지지출 지표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발되었다. OECD 사회 정책국 (Social Policy Division)은 OECD 조세 정책 및 행정 센터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 34 개국에서 이용 가능한 순사회복지지출 지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유감

45) 본 절은 "THE SOCX MANUAL - Methodology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7 EDITION" 제시된 OECD SOCX Manual을 번역한 것임.

스텝제도, 급여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적절한 추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항목만은 그 날로부터 약 2~3년 후에 제공되고 수집될 수 있다. 다음 2015년까지의 SOCX 데이터 및 세금 추계를 포함한 SOCX 데이터의 수집은 2017년 후반부에 시작될 예정이다. .

4. 다음 절에서는 SOCX에 대한 배경 지식과 사회 보장 영역을 정의한다(범주 분류 및 기록 관행; 그리고, 순(세 후)사회복지지출 지표를 위한 방법론 논의). 부록에서는 SOCX의 총 지출 항목과 관련되어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SOCX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또한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참고).

1. II.1. 서론 (Introduction)

4.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정책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OECD, 1996). 원칙적으로 국민계정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이 사회지출과 재원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SNA, 1993, SNA, 2008). 그러나 SNA에서 '사회적 이전(현금과 현물급여)'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 총합의 속성은 공공 사회정책프로그램과 경향의 분석에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무국은 공공지출에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국민계정의 기능별로 어떤 항목이 정부의 (하위)총합지출액에 포함되는지 구분하는 포괄적 기준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Varley, 1986; Oxley et al., 1990). 그 결과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가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의 자국 통화로 '사회지출 프로그램'이라는 상세 수준에서 지출 항목을 기록함으로써 명료화 하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SOCX는 캐나다 50개, 네덜란드와 미국 65개, 프랑스 300개 등의 분리된 사회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SOCX에 포함된 지출 데이터의 구체적인 속성은 SOCX 지출 항목에서 부적절한 기록(이중계산 등)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양질의 수준에서 명료성과 연관되는 질적 통제의 중요한 양식을 따른다.

5. SOCX에 포함된 사회지출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수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노력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SOCX의 상세 수준은 OECD 경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국가 내 심도 깊은 연구와 국가간 사회보장정책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서로 다른 정의를 이용하거나 모든 장애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서 평가 관련 지출만 그룹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그룹의 지출이 이용자의 욕구와 부합하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한다. OECD 분석자들과 외부 연구자들은 SOCX의 사회지출 구성 변화나 트렌드와 같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minada and Goudszwarrd(2005), Castles(2004, 2008), Castles and Obringer(2007), Darby and Melitz(2007), Pearson and Martin(2005), Siegel(2005), Townsend(2007), Whiteford and Adema(2007), Kirkegaard(2009), Fishback(2010), Adema & Whiteford(2010), OECD(2009, 2011a, 2015, 2017) 등의 연구가 있다.

6. SOCX는 또한 총합의 공공과 민간 사회지출을 9개의 사회정책 영역에 따라 그룹화하여 제공하고 국내총생산(GDP), 총국민소득(GNI), 정부총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 그리고 1인당 구매력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의 국제 비교를 촉진한다. SOCX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회지출 프로그램의 재원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7. OECD는 순·총사회지출(net=after tax, total=public and private)과 같이 회원국의 서로 다른 사회정책만을 위한 자원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왔다. 이러한 작업은 1990년대 중반에 최초 6개 국가들에 대한 순 공공사회지출 추정을 통해 시작되었고(Adema et al, 1996), 수년 동안 방법론적 분석들과 가용 데이터가 확장되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 스페인, 터키, 영국과 미국, 이렇게 27개국을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OECD의 조세정책센터(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와 긴밀한 협동 작업을 통해 수행되었고, 위의 지표들은 이제 SOCX에 필수적인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2년마다 업데이트 된다. 다음 협동 작업은 2017년 후반부에 시작하여 2018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8.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는 국민계정시스템과 보건계정 시스템(OECD, 2017ab, and SNA, 2008)과 호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유럽의 사회보장통계시스템(Eurostat's European System of Social Protection Statistics-ESSPROS)과 ILO 사회보장통계(SSI)와도 광범위하게 연계된다(Box II. 1; Eurostat, 2008, and ILO, 2005). 사회지출과 사회적 지원의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광범위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지표의 일부로써 Asian Development Bank에 의해 수집된다(ADB, 2006 and 2008).

Box II. 1: OECD와 Eurostat and ILO social accounting systems의 관계

SOCX와 비교하여 Eurostat의 유럽사회보장통계시스템(EEPROS)⁴⁶의 범위와 ILO의 사회보장조사(SSI)⁴⁷의 범위는 사회지출의 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SOCX 보다 더 넓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가 OECD 조세통계(OECD, 2008b)와 일관되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작업에 요구되는 투입이 정책분석강화 측면의 이점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사회지출 측면에서 OECD는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수단의 포괄적인 회계(comprehensive accounting)를 촉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아래 참조). 총지출 항목에서 SSI는 교재에 대한 지출과 같은(SOCX는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각서항(memorandum item)으로 보고함.)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범주를 가진다. ESSPROS의 범위는 개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SOCX와 SSI보다 더 협소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지출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ILO와 OECD 모두 적극적노동 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OECD 정의는 실업자의 고용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까지 포함하는 등 가장 덜 엄격하다.

기능별 분류에서 ESSPROS(Eurostat, 2016)와 사회보장조사(ILO, 2005)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ESSPROS는 7개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SSI는 11개의 기능으로, SOCX는 현재 9개의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분한다.

46)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living_condition_and_social_protection/data/database

47) <http://www.ilo.org/dyn/ilossi/ssimain.home> 참조.

II.2. 사회영역 정의 (Defining the social domain)

9. 사회지출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지출이 ‘사회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OECD는 사회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0.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사회지출의 정의에서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구간 이전은 사회적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12. 사회적 급여는 현금급여(예, 연금,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사회부조급여), 사회서비스(예, 보육,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수단(예,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 민간의료플랜에 대한 기여금의 조세취급)을 포함한다.

13. ‘사회적’ 지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급여가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다루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a) 개인 간 재분배 혹은 b)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한다.

II.2.1. 사회적 목적 지향 (Towards a social purpose)

14.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으로 그룹화한다:(자세한 사항은 II.3 참고)

- 노령- 연금들(Box II. 2), 조기퇴직연금, 노인층에 대한 가사보조 및 생활보조 서비스
- 유족- 연금과 장제비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돌봄서비스, 장애급여, 산업 재해 및 사고에 따라 지급 되는 급여, 피고용인 상병급여
- 보건 - 입원 및 외래 환자 간호 지출, 의료상품, 예방
- 가족 - 아동 수당과 크레딧, 보육지원,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조, 한부모가족급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서비스, 훈련, 고용인센티브, 장애인 통합,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취업촉진(start-up) 인센티브
- 실업 - 실업보상,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조기 퇴직
- 주거 - 주택수당과 임대보조
- 기타 사회정책영역 - 범주 구분이 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 대상 현금급여, 기타 사회서비스; 예를 들면 OECD 비회원국에 주로 나타나는 식품 보조 등

Box II. 2. 소득과 유예 임금; 연금과 퇴직급여에 대한 SOCX의 취급
(Earnings and deferred wages; the treatment of pensions and severance payments in SOCX)

사회지출의 정의에 따라서 근로에 대한 보수는 엄격하게 배제하므로 휴일수당, 교통비와 보너스 등은 SOCX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지출액에서 현재 노동에 대한 보수가 배제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수나 후불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상 공공과 민간의 연금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의 중요한 부분(예, 고용주 기여로 재원이 조달되는)은 후불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다. 만약 사회지출이 그런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연금 지급액은 SOCX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Eurostat, ILO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관습적으로, 은퇴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과거 고용주 기여에 의해 공동으로 재원이 조달된 연금은 사회 지출의 일부로 고려된다.

만약 연금이 사회지출로 고려된다면 다른 유사한 지급액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보통 저축은 종종 은퇴를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유사하게 OECD 국가들에서 생명 보험 저축 수단은 동일한 이유로 사용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특히 은퇴를 위해 저축되는지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상세 데이터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그런 자료는 SOCX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이 SOCX에 포함된다면 은퇴를 위한 퇴직금을 SOCX에 포함하는 것이 일관적이다. 그러나 퇴직금은 은퇴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퇴직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고용 관계가 중지될 때 지급되는데 고용 관계의 중지는 자발적 퇴직일 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다.

방법론적인 선택에 있어 SOCX는 은퇴에 대한 퇴직금을 연금과 유사한 은퇴수당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은퇴 연령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금은 분리된 지급액으로 고려하고 보수로 취급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OECD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와 SOCX는 공적 재원으로 조달되고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 그들의 경제활동이 중지되거나 감원되어 해고당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일시해고수당(redundancy compensation)”은 포함한다. 이는 전체 “법정 퇴직금” 중 소수의 특정 그룹만을 실업 수당 항목 아래에 포함한다.⁴⁸⁾

이론적으로 SOCX는 은퇴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법정 퇴직금은 지출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며, 그 나머지는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상세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을 지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가별 사례에 기초해야 한다.

Box II. 2. 계속

대체로 이러한 이슈는 아래의 세 국가와 가장 연관이 깊다.

i) 이탈리아에서는 GDP 대비 1%가 퇴직금에 지출되는데, 이 중 공사영역 피고용인에게 지불된 금액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가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공적 영역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의 대부분이 은퇴시 지급되었다. 민간 영역의 피고용인에 대한 퇴직금에서 연령에 관한 통계는 없는 반면, “지급된 총 급여액의 상당부분이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유럽통계(Eurostat)는 이탈리아의 퇴직금을 노령영역으로 분류한다.

ii) 일본에서 2013년 자발적인 민간 퇴직금은 GDP 대비 2.7%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퇴직금/은퇴소득에 관한 통계는 일본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국세연보에서 출판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퇴직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은퇴시에 이 급여액을 받는다고 말한다.⁴⁹⁾

iii) 한국의 총 퇴직금은 GDP의 2%정도이다. 대부분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나 퇴직연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지급된다. 한국의 정책은 퇴직급여를 사내연금저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를 “퇴직 연금 급여”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전환을 독려하고자 세제혜택을 제공하여도 강제는 아니며 참여하는 사업체는 약 15%이다.(고용노동부, 2009) 전액고용주지급퇴직금은 소수(약10에서 최대 30%)만이 은퇴자에게 해당되기에 SOCX는 법정민간 노령 지출액 내 총 퇴직급여의 20%(GDP 0.4%)를 포함한다. 향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SOCX에 포함될 것이다.

요약하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대부분의 지출은 은퇴시에 지급되므로 이는 SOCX에 포함된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법정 퇴직금에 대한 지출 중 일부만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모든 법정퇴직금을 노령 지출에 포함하는 것이 그런 지출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보다 오류를 더 크게 할 것이다. SOCX의 오차범위를 낮추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정보가 유용할 때까지는 전체 법정 퇴직금 중 20%만을 포함한다.

15. 정책의 목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의 경계선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아동빈곤의 퇴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 목적이고, 아동에 대한 지원(현금 급여와 서비스를 통해서든지, 혹은 조세시스템을 통해서든지)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혼인여부에 대한 우호적인 조세 수단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서 사회적인 지원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 지원이 사회적 정책의 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는 합의된 바가 없다(국가별로 과세에 적합한 근거인 기본적인 경제 단위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

16. 실제로 데이터 이슈 역시 어떤 항목이 사회적인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저축 프로그램이 은퇴 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배정되었을 때(혹은 기타 사회정책 영역에 포함되는 준비금), 그것은 '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17. 임대보조는 노인, 장애인, 그리고 다른 인구집단에 대한 시설 보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으로 고려된다(노령, 근로무능력 급여 등에 기록됨).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모기지(담보대출)정책은 그런 프로그램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어느 수준까지 혹은 자산 가치의 어느 수준까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는 불명확하다. 관련한 임계값이 국가마다 다르고, 그러한 국가별 포괄적인 데이터도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건설에 대한 모기지(담보대출) 보조(mortgage relief)와 자본 보조(capital subsidies)는 여기서 고려되지 않는다.

18. SOCX의 유아교육 및 보육(ECEC)서비스에 해당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국의 통계와 Eurostat, 그리고 (OECD/Eurostat)에서 (미취학)교육에 대한 연간 자료수집을 통해서 수집되었다(OECD, 2010b). 아동보육지원의 더 나은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48) 한국에서 법정 퇴직금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SOCX no. 7(실업)에 포함되어있음. 그러나 한국의 법정 퇴직금은 사실 공적으로 조성된 일시해고수당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실업 항목에 더 이상 포함할 수 없음.

49) 한국 역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연보에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 지출을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낮은 종신고용제에 가까운 반면 한국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보고서(OECD)에서 논의하듯이 노동 유연화가 높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화된 상태에서 계약만으로 인한 퇴직금의 비율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음.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정년퇴직자 비율(2.5%)인데 반해 계약기간만료(16.1%),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54.4%)로 높아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초등학교 의무취학연령에 관한 지표들이 국가간 차이 비교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북유럽)국가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7세에 이루어지는 반면 미취학학교교육 (pre-primary schooling)의 참석은 그 전년에 이루어진다. 비교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 수의 유용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출된 추정치(estimate)를 이용하기도 한다). 유사하게 아이들이 5세에 학교에 들어가는(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미취학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primary school(초등학교)에 등록된 5세 아동의 지출을 더함으로써 산정된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종 보육서비스의 재원조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데이터의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유럽국가에서는 기록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중종 연방국가)에서는 보육에 대한 공적지원에 대한 견고한 견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는 캐나다처럼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정액교부금(non-earmarked block-grant)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육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서로 다른 자금흐름(funding stream)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스위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지출하는 내역이 정부 당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연방 국가로 제한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inhabitants)에 대해 아동보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일반적인 정액교부금으로 재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소득보장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흐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대상자의 보육을 재정지원 한 경우이다.

II.2.2. 개인간 재분배 또는 의무적인 참여 (Inter-personal redistribution or compulsion)

20. 지출프로그램은 참여가 의무적일 때, 또한 수급권이 프로그램 참여자간 자원의 재분배와 연루될 때만 '사회적'으로 간주된다. 즉 수급권이 그들의 개별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개인별 직접적인 시장 매매의 결과가 아닌 경우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급(공적 정부 그리고/혹은 비정부조직에 의해)과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가구간 재분배와 항상 관련 있다.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조세 혹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인구집단간 혹은 인구집단내 자원의 재분배를 유도한다(예, 실업보험기금의 모든 구성원).

21. 민간 프로그램에서 개인간 재분배는 종종 정부의 규제나 조세 개입에 의해 도입된다. 정부는 개인들 그리고/혹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위험 프로파일이나 만연한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예를 들어 위험분산(예, 보험 회사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을 통해)을 통해 공공정책은 아픈 사람들을 보조할 수 있고 가구간 재분배를 보장할 수 있다. 집합적인 혹은 개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공공 조세 개입은 또한 개별적인 위험 프로파일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세한 시장 가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집단의 동의나 고용주들에 의한 사회적 급여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규정된 민간 제도와 조세혜택제도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유사점이 있다.

22. 사회적 급여는 또한 이론적으로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에 반드시 연루되지 않는 몇몇 (공공과 민간) 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저축 체계를 정부가 강제로 관리한다(Ramesh, 2005). 이는 조세경감의 제공과 함께 이러한 플랜의 의무 가입 범위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 판단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II.2.3. 공공, 민간, 순수 민간 지출 (Public, private social and exclusively private expenditure)

23. 공공과 민간 사회보장의 구분은 관련 재정 흐름을 공공 기관 혹은 사적 기관 중 누가 컨트롤하는가에 달려있다. 공공 사회지출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통해 일반 정부(각기 다른 정부수준과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통제되는 재정 흐름을 가지는 사회지출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의무가입에 따른 기여금의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상병급여는 관습적으로 공공으로 고려된다. SNA93과 SNA08에 따라 SOCX는 자율적인 기금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민간지출항목으로 포함한다(호주는 부분적으로,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영국). 일반 정부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급여는 '민간'으로 고려된다.

24. 민간부문의 사회적 급여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 법정민간사회지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영역을 통해 작동되는 사회적 지원으로 예를 들어 공적으로 입법화된 이유로 고용주가 부재중인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상병급여나, 민간보험기금에 의무적인 기여금을 통해 누적된 급여
- 자발적민간사회지출: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와 관련되고, NGO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사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급여와 개인플랜에 대한세제혜택과 미국의 경우 연금, 보육지원,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관련 집단(주로 고용 관련) 지원

25. SOCX는 OECD 국가들의 민간사회지출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이들 데이터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재정 할당 정보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26. 사회적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개인보험의 가입은 관련된 사람에 관한 문제이고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합당한 민간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림짐작하면 가구간 재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개인이 그 혹은 그녀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제공하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 지출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순수 민간’으로 간주된다. 표 II.1은 그러한 지출이 사회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반면에 박스 II.3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에 대한 이슈들을 보다 상세하게 제공한다.

표 II.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⁵⁰⁾⁵¹⁾

	공공		민간	
	의무적인	자발적인	의무적인	자발적인
재분배	자산조사 급여, 사회보험급여	공공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자영자의 선택참여(opt in)	고용주 제공의 상병급여, 강제적인 기여로부터 누적된 급여, 예를 들어 연금 혹은 장애보험	조세이익의 급여, 예를 들어 개인 은퇴계좌, 직업연금, 고용주 제공 의료플랜
재분배 없음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저축체계로부터 제공되는 급여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비조세이익의 연금 급여	순수 민간: 개인의 선호에 따른 시장 가격으로 야기된 보험 플랜에서 누적된 급여

27. 생명보험저축플랜은 생명보험급여의 일부가 사회적 목적을 따르더라도 급여 중 사회적 목적에 포괄적인 정보가 유용하지 않아서 사회적인 영역 외로 분류된다. 사실상 생명보험급여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없다. 비록 재보험이 실제로 생명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갖기 어렵다고 해도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생명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OECD, 2016a). 상당한 정도의 생명보험정책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 모기지(담보대출) 제도도 포함하지만, 사망, 장애, 의료개입과 은퇴 급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가진 민간 생명보험급여는 중요할 수 있고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포함된다. (아래 참고)

50) 정의에 따라 개인간 이전은 사회적 속성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영역으로 고려되지 않음.

51) 어두운 부분은 사회적인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급여를 반영함.

Box II.3: 사회적 목적 급여의 확인 및 분류 (Identifying and categorising benefits with a social purpose)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는 사회적 급여의 공급성격에 따라 공공, 법정민간, 자발민간 사회복지지출을 9개의 다른 사회정책영역으로 분류한다. 개인의 위험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시장가격에 따른 사회적 성격을 갖는 다른 모든 (보험) 지원은 사회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분배나 의무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의 예로 개인연금과 개별 건강보험이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의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 법적근거와 재정흐름에 대한 정보는 공공, 법정민간, 자발민간, 순수민간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때때로 분류기준은 명확하다. 예로, 공적보험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수당은 공공지출이다.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육아휴직기간의 지속적 임금은 법정민간지출이며 고용주가 자발적(노동계약에 따라)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발민간지출이다. 급여가 이러한 급여들의 혼합된 형태일 경우이거나 적절한 데이터 분류가 없을 경우 분류가 어려워지며 판단이 내려져야한다.

특히, 민간연금의 경우 법정민간급여와 자발민간급여, 사회적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의 급여에 대해 확고한 분류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다년간 적립하고 시간에 따라 기여의 성격이 변할 수 있는 연금과 같은 의무적 참여의 분류문제는 심화된다.

t년도에 급여지출이 이루어진 예, B(t)를 살펴보겠다. C(t-n)는 그전년도들의 기여와 관련이 있고 I(t-n)는 투자한 소득에 대한 환급율을 의미한다.

$$B(t) = F [\sum (C(t-n), I(t-n))]$$

일정기간에 걸쳐 할당되는 특정 지원에 대한 기여의 총규모(C)는 다른 종류의 법정 기여들의 합일 수 있다: (C_m), (C_v), 순수민간기여(C_e). 어느 한 해의 경우:

$$C = C_m + C_v + C_e.$$

그러므로, 해당 해의 급여지급은 지난기간의 4가지 다른 기여와 관련이 있고 각 기여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해마다 변할 수 있다.

종종, 급여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총합(Bx)만을 기록하고 각기 다른 종류의 기여(Cm, Cv, Ce)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호주의 퇴직연금제도인 Superannuation에 의한 연금지급액이나 스웨덴의 민간연금은 법정민간, 자발민간, 순수민간 기여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다. 호주의 슈퍼엔에이션의 경우 법정기여에서의 지출액은 현재 상대적으로 작기에 민간영역의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모든 연금지급(일시지급액제외)을 자발민간사회급여로 구분한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법정기여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할수록 법정기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개인연금제도를 예를 들면, 미국의 개인 퇴직금 적립계정은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정도만(자발민간)사회영역에 있다. (기여가 아닌 지급에 대한 우호적 세제혜택을 갖는 뉴질랜드는 연금지급액 중 세제혜택이 있는 지급액만 포함한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세제혜택이 없는 기여인 민간급여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구별이 데이터의 한계로 불가하다. 개별적 연금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국가간 사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세금데이터는 연금과 개인 퇴직금 지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 영역에 해당한다.) SOCX의 민간연금지출에 포함한다.

28. (위와 같이) 국가별로 조세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민간 급여의 역할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목적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시스템의 재분배적 속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적한다. 몇몇 민간 사회프로그램은 공공프로그램보다는 더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를 야기하고, 민간 연금과 의료플랜에 대한 조세감면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대상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민간 고용 관련 사회적 급여는 (이전에) 고용된 인구집단 사이에 소득을 재할당하고 재정상 유리한 개인 혹은 집단의 연금 플랜도 마찬가지다. 재분배에서 국가간 차이는 개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지출의 수준과도 연관이 있다. 덴마크와 같은 공공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재분배는 민간 사회지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 (oecd, 2008; Whiteford & Adema, 2007)

II.3. SOCX의 사회복지지출프로그램 (Social expenditure programme data in SOCX)

II.3.1. 정책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Categorisation of programmes across policy areas)

2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 사회정책영역-으로 구분한다. 표 II.2 Panel A는 SOCX 데이터베이스의 공공과 법정민간 프로그램 구조를 보여주고, 표 II.2 Panel B는 정보의 질이 재정 할당정보만큼 높지 않고 프로그램별 상세한 지출에 대한 포괄적 정보가 없지만 SOCX 데이터베이스의 자발민간지출의 단순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표 II.2. SOCX 공공부문과 의무적인 민간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Panel A: 사회정책영역에 따른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p>1. 노령(OLD 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조기퇴직연금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들 <p>2. 유족(SURVIV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제비 기타 현물 급여들 <p>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INCAPACITY-RELATED BENEFI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연금 연금(산업재해) 유급상병휴가(산업재해) 유급상병휴가(기타 상병수당)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설/재가보조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들 <p>4. 보건(HEAL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급여 	<p>5. 가족(FAMI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수당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재가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들 <p>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훈련 청년에 대한 지원 고용보호지원 장애인 고용 지원 <p>7. 실업(UNEMPLOY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보상/해고수당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현물급여 <p>8. 주거(HOUS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보조 기타 현물급여들 <p>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보조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조 기타 현물급여들

주: 통계항목 수는 매뉴얼을 기준하면 58개, OECD 홈페이지 iLibrary에는 62개를 제시하고 있어 4개의 항목 차이 발생(Category No.4의 현금급여, Category No. 6의 2개, Category No. 8의 현금급여).

Panel B: 자발적 민간 지출의 범주
<p>1. 노령(OLD 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민간영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p>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p> <p>4. 보건(HEALTH)</p> <p>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p>

30. 9개의 정책 영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프로그램의 예를 포함한다(보다 상세한 프로그램의 코드에 대해서는 부록 II. 2를 보라):

1. 노령(Old-age)은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된다. 노령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러한 범주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한다.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분류되고 노령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된다.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은 포함한다.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역시 포함한다(예를 들면, 노인 그룹홈 운영 경비). SNA93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SOCX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을 민간 지출로 기록한다.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50.10.1.1.1.1 기초 체계: CNAV”는 프랑스의 "Régime général"이라고 부르는 공공기초연금체계임.
- “208.10.1.2.1.2 노인층에 대한 일상생활 수행 보조”는 덴마크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임.
- “392.20.1.1.1.1 피고용인 연금 기금”은 일본의 의무적인 민간직업연금체계임.
- “826.30.1.1.1.4 전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영국의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 급여프로그램임.

2. 유족(Survivors)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지출 프로그램이다. 유족급여 수급자의 부양자녀에 대한 수당과 보조금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 “124.10.2.1.1.2 CPP and QPP: 생존한 배우자 연금”은 캐나다의

연금 플랜이고 퀘벡 연금 플랜 프로그램은 생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

- “348.10.2.2.1.1 장제비(자산조사)”는 헝가리의 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장제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다)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 때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한다.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포함한다.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서 기록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한다.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에 포함한다. 이 항목에는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756.10.3.1.1.1 장애연금: 질병보험(비자산조사)”는 스위스의 공적 비자산조사형 장애보험연금이다.
- “442.10.3.1.4.4 유급상병휴가”는 질환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질환 발생 첫째 날부터 3개월까지,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임금의 100%를 배상(상한선까지)하는 룩셈부르크의 공공 프로그램이다.
- “578.20.3.1.4.1 질환과 급여 대기 기간”은 노르웨이에서 질환의 발생시 첫 2주간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는 의무적인 급여에 대한 추정이다.
- “752.30.3.0.0.0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스웨덴의 자발적인 민간 계약 장애 연금에 포함된다.

4. 보건(Health)- 보건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이용한다.(OECD) 보건에 대한 모든 정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정책 지출에

대한 의무 기여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 등이다.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은 정부의 병원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같은 자본 이전은 제외한다 (Box I.4).

- 보건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 외래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한 개인의 보건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한다.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이러한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조세혜택이 있음)한다. SOCX의 이번 그리고 이전의 자료에서 보건과 사회정책당국에 의해 보고되는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출의 이중계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최근 보건계정(System of Health Accounts)의 개선으로 투명성이 보다 확보되었으며, 이 영역의 기록이 개선되었다(OECD, 2010d, 2000b and www.oecd.org/health/sha). 자세한 정보는 부록 II.1.2를 보라.

5. 가족(Family)은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포함한다(1인가구는 제외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과 연관된다. 출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지출은 가족 현금수당 하위에 분류된다(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PF1.1 와 PF3.1 -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56.10.5.1.1.1 가족수당: 피고용인의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사무소 (national office)”는 벨기에에서 가족에게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프로그램이다.
- “246.10.5.1.2.6 소득보전 (질병보험)은 핀란드에서 자녀 출생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
- “203.10.5.2.1.4 아동보육(취학전 교육)”은 체코공화국에서 아직 6세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시설보육(day-care)과 취학전 교육서비스(pre-school services)에 대한 공적 지출이다.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day-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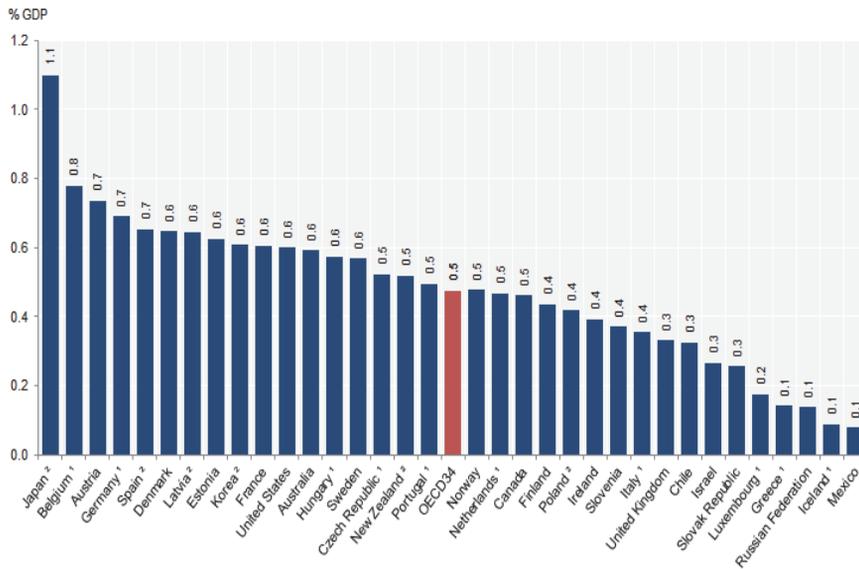
pre-school, 혹은 어떤 국가에서는 학교 환경에 속해있음)에 대한 지원을 더 잘 비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의무취학연령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몇몇 노르딕 국가에서 아동은 7세에 학교에 들어가는 반면 직전 해에 6세 아동은 pre-primary school에 참가한다. 비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의 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도출된 추계치를 이용하여). 유사하게 아동이 5세에 학교에 입학(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하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취학전 지출(pre-school expenditure) 데이터는 초등학교에 등록된 5세 아동에 대한 지출을 추가함으로써 조정된다(이와 관련해서는 OECD Family database- PF3.1 -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참조). 부록 I.1.4를 보라.

Box I.4. 보건 분야에서의 자본 지출

OECD 보건 데이터 조사표는 응답자에게 모든 보건 공급자를 위한 3가지의 총 고정 자본 유형(인프라, 기계 및 장비, IP 제품)을 묻는 “자본 표(capital table)”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의 질과 시계열 가능 여부는 국가마다 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OECD 보건 데이터에서는 SOCX뿐만이 아니라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eh 주요 총계로서 사용하고 있다.

국가계정은 보건 분야에 대한 자본 지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Chart I.1 은 보건 부문에서의 자본 투자가 2015년에는 GDP의 약 0.5%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보건 지출이 OECD평균 GDP의 9%이기 때문에, 자본투자는 “총 보건 지출 (Total Health Expenditure)”의 약 5%일 것이다.

Chart I.1: 보건 의료 부문의 총 고정 자본 형성, GDP 비중, 2015년(혹은 인근 연도),



1. ISIC 86의 총 고정 자본 형성을 의미: Human health activities(ISIC Rev.4).
 2. ISIC Q의 총 고정 자본 형성을 의미: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ISIC Rev.4).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7, OECD National Accounts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은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모든 사회지출(교육 이외)을 포함한다. 이 항목은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보다 ALMP에 대한 지출의 분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부록 II.1.3을 보라.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484.10.6.0.1.1 정부고용서비스(Servicio nacional de empleo, SNE)”는 멕시코의 항목임.
- “40.10.6.0.2.5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은 오스트리아의 항목임.
- “620.10.6.0.4.39 고용-훈련 직무순환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항목임.
- “300.10.6.0.4.17 특별한 사회적 그룹의 고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은 그리스 항목임.
- “554.10.6.0.5.9 직업활동/지역 참여”는 뉴질랜드의 항목임.

7. 실업(Unemployment)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게 대해 투입된 정리해고수당과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정책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원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6.10.7.1.1.2 뉴스타트 수당”은 호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등록된 실업자에게 주는 항목임.
- “380.10.7.1.2.1 노동시장 이유로 인한 조기 퇴직”은 이탈리아의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것임.

8. 주거(Housing)는 이 영역에는 임대료 보조와 개인에게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다른 급여들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해 주거비용 보조로 ‘꼬리표를 붙인’ 직접적인 공공 보조를 포함(어떤 국가에서는, 예로 노르웨이에서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한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현물급여로 분류한다(SNA, 2008- D.6331참고). SOCX는 또한 노인과 장애인 긴급한 상황에 놓여 보호소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물 주거 제공을 각 영역에서 포함한다(1.2.1, 3.2.1, 그리고 9.2.2.순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론, 건설에 대한 자본 보조, 그리고 주거시설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 등 주거 지원의 다른 형태들은 특히 그러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때 사회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을 추계하는데 있어 방법론과 그러한 지원에 대한 적용과 측정방법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없어 현재는 그러한 주거 지원은 SOCX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는 2017년에 GDP의 2.14% 로 계산된다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PH2.2 Tax relief for home owners (.pdf) (.xlsx)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참조). SOCX는 또한 주거 지원의 건설비에 대한 (자본-)보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17년에 저소득가구 투자에 대한 CREDIT이 GDP 대비 0.04%인 8.2십억 미국달러에 달했다(US Treasury, 2017). SOCX는 또한 주거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민간 임대 영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설 보다는 더 적게 받는 공공 주거가구는 대략 500만 가구이다(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s de la France, 2007). 가구당 암묵적인 지원의 가치(예를 들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거주시설에 대해 낮은 임대료를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시장 임대료를 지원 받는 것의 차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암묵적인 주거 보조의 총 가치에 대한 추계는 자료가 없다.

9.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이민자와 난민,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된다.

- “276.10.9.1.1.1 소득지원(사회부조)”은 독일의 항목임.
- “840.10.9.1.1.1 근로소득세제지원: 환급가능한 부분(EITC)”은 미국의 항목임.

II.3.2.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분류 (Categorisation of means-tested programmes)

31. SOCX는 사회적 지원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회적 소득과 자산의 역할과 관련하여 3가지로 분류한다.

- “0. 비 소득 혹은 자산조사형 급여(Non income- or means-tested benefits)”: 과거 보험 정책(보험급여)에 기여 여부 혹은 특정 인구 집단(예: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득 및/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가능한 급여이다.
- “1. 자산조사 급여(Means-tested benefits)”: 현재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격요건이 결정되는 급여이며, 어느 수준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2. 소득조사 급여(Income-tested benefits)”: 현재 소득만을 조건으로 자격요건이 결정되는 급여이며, 어느 수준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32. 급여가 자산조사 혹은 소득조사형인지는 지원의 수준이 아닌 지원 자격요건을 결정하는데 소득과 자산의 역할에 달려있다. 모든 인구집단(예: 아동)에 급여를 제공하나, 소득/자산이 지급률을 결정하는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은 자산조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Eurostat, 2016 참조).

II.3.2. 회계 규정과 운용 (Accounting conventions and practices)

참고자료, 회계 연도 (Reference, fiscal and tax years)

33.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기록기간은 국가마다 같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년 (calendar year, 1월 1일-12월31일)에 따라 데이터를 기록하지만,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 등 예외적인 국가는 역년(calendar year)과 다른 회계연도 (financial year)가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데이터가 보고된다. 국가회계에 따른 동일한 관습을 적용하고자 할 때 “n” year는 그것이 1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6월 1일이든, 10월 1일이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회계연도가 역년(calendar year)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기간은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할 때 prorata temporis(시간비례의 원칙) 기초에서 수행된다. 모든 국가에서GDP 데이터는 역년 기준이다.

- 캐나다, 일본, 영국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회계연도(n)는 4월 1일(n)부터 3월 31일까지(n+1) 이므로, $GDP(n)=0.75*GDP(n)+0.25*GDP(n+1)$ 에 대해 조정된다.
- 미국은 회계연도(n)가 10월 1일(n-1) 부터 9월 30일까지(n) 이므로, $GDP(n)=0.25*GDP(n-1)+0.75*GDP(n)$ 으로 조정된다.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참조연도는 역년에 따르지 않고 6월부터 7월로 정의되지만, GDP 에 대한 계산 기간은 역년을 따른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과 함께 시작한다.

사회복지지출은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SOCX does not include administrative costs)

34. SOCX는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을 배제한다. 예를 들면, 급여를 제공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가지는 않는다. 행정 비용은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간접비(overheads)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수급자 등록, 급여 행정, 기여의 수집, 통제(컨트롤), 조사, 평가, 재보험

35. 그러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와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같은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 출처가 자체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the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그리고 OECD Health Data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위의 행정비용과 마찬가지로 의료직원, 고용서비스 직원과 보육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출도 SOCX에 포함하는데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구직자에 대한 응대 및 카운슬링,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 환자에 대한 응대와 병원 서비스 등-의 통합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금이전과 자연증가에 기초한 자본투자를 포함한다 (SOCX includes capital transfers and records transactions on an accrual basis)

36. SNA 93과 비슷하게 자본투자(예, 건설비용)는 자연증가에 기초하여(accruals basis) 포함된다. 즉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에 대한 건설비용이 1백만 미국달러(이자를 포함하여)라고 할 때, 건설된 지 4년 이상이라면 연간 배상비용은 25만 미국달러가 투자 지출로 매년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융자금은 제외한다 (SOCX generally excludes loans)

37.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은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지원과 관련이 없는 개입으로 규정한다. 이는 어떠한 개입도 수혜자가 동시에 등가성의 무언가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보장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가구들에게 제공된 이자가 붙는 대출은 사회보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입자가 이자지출과 원금상환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목적을 위해 대출이 무이자이거나 시장 이자율보다 저리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만큼을 사회적 급여로 간주한다.”(Eurostat, 2016 Esspros Manual)

비정기적인 관리 및 회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SOCX excludes non regular management and accounting programmes)

38. 실질적인 이유로, 정기적인 관리와 회계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재해의 발생과 관련한 소규모, 비공식적 및 부수적 유형과 임시 지원 및 긴급 구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II.3.4 자료출처 (Data sources)

39. SOCX 데이터 프로세스의 속성은 하나의 총 망라된 조사표에서 모든 데이터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고, 각기 다른 자료로부터 각기 다른 포맷으로 추출된다:

-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보건의에 대한 공공지출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에 관한 데이터는 OECD Health Data와 OECD database on Labour Market Programmes에서 각각 제공된다(OECD, 2010d, 그리고 2011b, Statistica Annex). 3,4,5세(ISCED 0)의 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OECD Educational database의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지출의 시리즈에서 제공된다.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업보상(현금 이전)에 관한 데이터는 비EU국가의 경우 LMP에서 추출되며 EU국가의 경우 ESSPROS에서 추출된다.
- 10개 비유럽 OECD 회원국에 대해서는 SOCX 조사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고용, 노동,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대표의 서비스를 통해 생산된다.
- 25개 유럽국가들(EU 22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ESSPROS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근거하여 EUROSTAT에 의해 제공된다(EUROSTAT, 2016).

40.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유럽 OECD 국가들에서 데이터 생산자와의 교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선택은 거의 없다. 시작부터

OECD 회원국이면서 EU에 속한 국가들은 여러 개의 사회복지지출 조사표를 취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ROSTAT를 통해 OECD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이해할 만하지만, a) 개별국가의 데이터가 '공증'된 후에야만 EUROSTAT에서 정보를 받고-b) 비유럽 OECD국가들과의 데이터와 ESSPROS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비교가능해야 한다. 게다가 ESSPROS 데이터는 보건과/혹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모든 공적 지출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파일은 필연적으로 여러 다른 출처로부터 구축된다.

41. 모든 OECD 국가들에 대한 지출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EUROSTAT 데이터의 제출이 설명되어야 하고, 모든 OECD국가에서 자발적인 민간 사회지출 항목이 공공 지출 데이터와 비교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다른 자원에서 가져온 지출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다 일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부록 II. 1은 데이터의 자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포함한다.

42. SOCX에 사용된 다른 일련의 참조들은 OECD(2017e)에서 있다:

- Gross Domestic Product (GDP)
- Deflator for GDP
- Gross Domestic Product at 2000 prices (GDPV)
- Gross National Income (GNI)
- Net National Income (NNI)
-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GOV)
- Purchase Power Parities (PPP)
- Exchange rate (EXC)
- Population (POP)

II.4. 순(세후)사회복지지출

43. 공공예산 등에 기록되는 총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는 조세제도가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세제도는 영향력이 크고 그 정도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의 국가 간 비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44. 일반적인 세입은 공공사회지출 자금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세입흐름(사회보장기여금)이 그 목적에 대해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OECD, 2016a). 하지만, 조세제도 또한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⁵²):

1. 급여소득의 직접과세: 정부는 수급자의 현금이전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한다. 총 사회복지지출 지표가 보여주는 만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급여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서 지급된다. 간접세는 주어진 급여소득 이상으로 하는 소비를 억제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정부는 또한 사회정책목적에 직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이용한다. 사회적 효과를 수반하는 재정조치에는 현금급여(아동세제혜택(child tax allowances))를 대체하거나 민간부문의 급여(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공을 장려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tax breaks for special purposes: TBSPs)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과 함께 가계에 도움을 주는 고용주나 민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포함된다(가계를 수급자로 하는 고용주 지급 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민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45. 의약품과 같이 간접세의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사회복지혜택의 직접과세와 간접과세의 조정이 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접과세 대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지출 데이터와 세율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52) 재정조정은 급여의 순가치에 대한 '1차효과(first round effects)'를 측정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병원이나 보육원 직원)의 소득에 대한 직접과세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II.4.1. 현금급여의 직접 과세

46. 일부 OECD 국가에서는 급여가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급여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급여가 직접세를 때고 지급된다. 실업보험급여의 처리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표 II.3). 오스트리아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전에 평균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벌고 배우자와 두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았다면 2015년에 16,750유로 정도를 받았고 이 중에서 669유로는 세금공제를 받았다. 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스웨덴 사람은 연간 18,902유로를 소득지원 받지만 소득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5,038유로를 지불해서 순급여소득은 13,864유로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가정이 받는 총액은 훨씬 높아도 순소득은 오스트리아보다 낮다. 사회복지지출 총액으로 봤을 때 이전소득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이전소득의 상당부분을 국고 재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위한 순(세후)공공지출은 스웨덴 총액의 75% 수준이다.

47. 여러 유형의 급여가 과세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표 II.3). 일반적으로 실업보조금, 사회지원금, 주택급여, 가족급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공공 및 민간 퇴직, 장애인 연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만 세율은 낮다(OECD, 2017c). 또한 병가시에 받는 지속적인 임금은 소득으로 과세된다(OECD, 2017d).

표 II.3. 국가 간 다른 급여의 과세 방식

급여의 과세 및 사회보장 조치(2007)

구분	연금 이전 (노령, 장애인)	아동보조	실업	주택	사회지원
호주	T(경감)	N	T(n)S(n)	N	-
오스트리아	TS(경감)	N	*	N	N
벨기에	T(경감)S(경감)	N	T(n)	-	N
캐나다	T(경감)	-	T	-	N
체코	T(경감)	N	N	N	N
덴마크	T	N	TS(경감)	N	TS(경감)
핀란드	T(경감)S(경감)	N	TS(경감)	N	N
프랑스	TS(경감)	N	TS(경감)	N	N
독일	T(경감)S(경감)	tc	*	N	-
그리스	TS(경감)	N	N	N	-
헝가리	T	N	TS(경감)	N	N
아이슬란드	T	N	TS	N	TS
아일랜드	TS(경감)	N	T(n)	N	N
이탈리아	T(경감)	N	TS(경감)	-	-
일본	TS(경감)	N	N	-	N
한국	T(경감)	-	N	-	N
룩셈부르크	TS(경감)	N	TS(경감)	TS	TS
멕시코	T(n)	N	-	-	-
네덜란드	TS(경감)	N	TS	N	*
뉴질랜드	T	N	-	N	-
노르웨이	T(경감)S(경감)	N	TS	N	N
폴란드	TS(경감)	N	T	N	N
포르투갈	T	N	N	-	N
슬로바키아	T(경감)	N	N	-	N
스페인	T(경감)	N	TS(경감)	-	T(n)
스웨덴	T	N	TS	N	N
스위스	T	T	TS(경감)	-	N
터키	N	-	N	-	-
영국	T	N	T(n)S(n)	N	N
미국	T(경감)	N	T	N	N

주: T: 세금 부과 S: 사회보장기여금(SSC) 부과 N: 세금이나 SSC 둘 중 하나 부과 T(n) 혹은 S(n): (장기간) 수혜자는 보조 수준을 초월하는 범위를 공제, 세금공제 혹은 영세율로써 세금이나 SSC를 납부하지 않음: 특별한 제도가 없거나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음 "(reduced)": 경감률은 수혜자를 위해 지불 *: 보조가 세금 소득후의 비율(그러므로 과세할 수 없음), tc: 낭비할 수 없는 세액공제(환급형)

자료: OECD Tax-Benefit models database(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OECD Pensions at a Glance.

II.4.1.1. 방법과 자료출처, 행정기록, 마이크로 시뮬레이션과 마이크로 데이터

48. 직접과세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총 지출항목(예컨대 실업보상이나 노령연금급여 지출 등) 조정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각국에서 특정 급여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가장 믿을만한 정보로 세금당국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사회보험기금에서 나온 데이터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혼하지 않고 독일과 스페인의 급여수급자가 내는 사회보장 부담금 정보가 전부이다. 그 외 일부 국가에서는(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이태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현금급여에 대한 직접과세의 조정은 세금통계 등 행정기록을 통해 급여수급자가 지불한 세금 추정값을 이용해서 산정한다(부록 I.2 참조). 벨기에의 경우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국세통계정보와 국민 계정에 기초했다.

49. 그 외 국가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제공한 ‘평균항목별세율 (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 추정값을 이용해 급여수급자가 낸 직접세의 규모를 산정했다. 이는 공공연금급여, 실업보상금, 육아휴직수당 등 특정지출항목에 대한 평균세율(사회보장 부담금 포함) 등이다. AITR은 세금에 관한 행정 데이터 등 각국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 계산했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항목별 세율을 계산했다. 이러한 방식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직접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어서 이들 AITR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사회복지지출 항목에 적용했다.

50. 거의 모든 급여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AITR을 계산한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를 매우 세세하게 보고하고 다양한 이전항목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의 평균항목별세율을 다루고 있다. 덴마크는 21개의 이전항목에 대한 AITR을 다루고 있고, 스웨덴은 10건의 이전항목에 대해 이를 다루고 있다. 과세대상 급여가 적고 (그래서)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AITR을 계산하는 국가들은 일부 세율만 보고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AITR의 산정

51. AITR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적 급여(보조)에 부과되는 세금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AITR은 특정 급여를 받은 사람이 낸 전체 세금을 해당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전체소득(소득원 무관)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AITR}_i = \frac{\sum_{t=1}^n T_i}{\sum_{t=1}^n I_i}$$

이 때 I 는 과세대상인 “ i ” 유형의 소득금액, T 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낸 세금, “ i ”는 소득 유형 또는 카테고리, “ t ”는 소득유형이 “ i ”인 세금 단위, “ n ”은 “ i ” 유형의 소득 샘플의 세금단위의 수임. 광범위한 소득카테고리인 “ i ”에는 노령연금급여, 실업보상금, 임금소득 등이 포함됨(표 Q3 참조).

5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셋에는 가계소득과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 기술은 신뢰할만한 추정 값을 생산하지만 계산과정에서 소득의 배분 방식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동수당처럼 급여가 비과세라고 가정하면 해당 AITR은 선형적으로 0과 같다. 이전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동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사회보장 부담금 포함)을 이용해서 순이전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의 직접세를 계산하는 것이 더 복잡해진다. 가령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았거나, 연간소득이 일정 소득과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거나, 여러 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득항목별로 납부한 세금을 배정해야 하고 각 소득유형의 가중치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소득별로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급여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소득이 25%라면 소득세의 75%는 급여소득에 과세된 것으로 가정한다(과세대상 중 일부는(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 소득항목과 세금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경우 세금공제는 해당 소득항목에 배정해야 한다.).

53. 급여소득이 누진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다양한 소득의 총액에 적용 가능). 각기 다른 소득에 순서를 매기거나 어떤 소득을 가장 높은 세율 혹은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를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특정소득(또는 여러 소득)에 대해 가계가 내야 할 세율을 바탕으로 평균항목별세율을 계산한다. 각각의 다른 소득의 상대적인 가중치에 따라 소득세를 분배하고 (상기 설명 참조) 표본에 있는 가계에 대해 총계를 내서 AITR을 계산할 수 있다(Box II.4 참조).

Box II. 4: 평균항목별세율 산정 사례

한군데에서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급여소득에 관한 평균항목별세율(AITR) 계산은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1년에 100단위의 공공연금을 10%의 '표준' 세율로 수령한다면 그의 순연간이전소득은 90단위이다. 여기에서 공공퇴직소득을 받는 모든 가계가 기타 소득이 없다면 공공연금소득에 대한 AITR은 10%이다. 그런데 퇴직자 중 일부가 비과세 아동보조금을 받는다면 이 소득은 이 가계의 소득세율 계산에서 무시되고 아동보조금에 대한 AITR은 0이다.

연금수령자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공연금을 50단위 받고 민간연금을 100단위를 받는 퇴직자가 있다고 하자. 누진세가 없다면 가계의 세율은 10%이고 순이전소득은 135단위이다. 그러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 중 일부 소득은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Table box 4.1 참조) 그렇게 되면 '평균' 세율은 올라간다. 이 경우 100단위의 이전소득은 10%로 과세되고 50단위는 15%로 과세된다. 총소득세는 17.5단위이고 이는 전체 가계 소득에서 공공과 민간연금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가중치에 따라서 각각에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소득에 순서를 매겨서 어떤 소득을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어떤 소득을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를 임의로 결정하여 각각의 소득원을 다르게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다. AITR의 차이는 급여수급자가 속한 소득그룹과 관련이 있다.

표 II.4. 소득의 2가지 유형에 대한 AITR 계산

가 계	공공연금	민간연금	총연금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연금소득요소별 세금	
						공공	민간
1	50	25	75	10%	7.5	5.0	2.5
2	75	50	125	15%	13.8	8.3	5.5
3	100	0	100	10%	10.0	10.0	0.0
4	50	100	150	15%	17.5	5.8	11.7
5	50	250	300	15%	40.0	6.7	33.3
총 계	325	425	750		88.8	35.8	53

주: AITR 공공연금소득=공공연금/총공공연금소득 을 넘어서는 과세액 11.1%
 주: AITR 민간연금소득=민간연금/총민간연금소득 을 넘어서는 과세액 12.5%
 가정: 소득이 100단위 미만이면 표준세율은 10%이고 100단위 이상일 때에는 소득의 15%

54.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급여소득이 비과세이면 해당 AITR은 선형적으로 0과 같다. 그러나 비과세 급여소득이 과세대상인 급여소득의 소득테스트에 고려되어 직접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과세 급여를 수령한 가계는 기타 소득이전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3개의 사회복지사업(소득보장보조금, (지방의) 사회복지원, 노동보상제도)이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의 과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3개의 급여 모두 비과세이지만 해당 소득이 여타 급여의 소득 테스트에 고려되기 때문에 이들 수급자가 여타 급여제도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캐나다 당국은 평균(한계) 세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이 3개 사업을 소득원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세율을 3개의 사회이전금에 각각 적용하여 암묵세를 산정하고 이를 다시 3개 사업의 이전지출 금액으로 나누어 AITR을 계산했다(부록 I.2 참조).

II.4.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55. 소비세는 일정한 급여를 이용한 소비의 실질가치를 낮추고 (급여소득의 직접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또 다른 세금수입을 창출한다.⁵³⁾ 급여소득의 직접과세가 국가간 차이가 있듯이 직접세 역시 국가 간 차이가 있어서 복지국가지출의 직접적인

53) 이 방법은 수급자가 급여소득을 저축하지 않고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저축도 어느 시점에서는 소비가 될 것이고 급여소득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1에 가깝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제한적이다.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과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가(비유럽권 OECD 국가)에서는 간접세율이 높은 국가의 수급권자가 받는 순소득수준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사회복지지출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가령 급여수급자에게 100단위의 순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평균 간접세가 4%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104단위의 총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평균직접세율이 24%인 덴마크에서는 132단위의 총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비유럽권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낮은 간접세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지출의 국가 간 비교의 질이 개선된다.

56.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세가 저소득층 가계(이 중 다수가 이전소득 수급자임)의 자금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호주는 2000년 7월에 10% (식품 제외)의 재화 및 용역세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 수급자를 위한 보상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캐나다도 저소득층 가계 지원을 위해서 재화 및 서비스 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I.4.2.1. 방법과 데이터 원천: 국민 계정과 세입통계

57.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관한 자세한 데이터는 없다. 가계 소비조사 결과로 다양한 소득 계층의 소비패턴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국가별로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비조사에 따르면 간접세 납부는 적게 신고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수 총계가 실제 세수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Gho et al., (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 매뉴얼에서는 OECD 세입통계와 OECD 국민 계정(OECD, 2017a, and 2017e)에 있는 전 회원국의 데이터 총계를 이용해서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구했다. 추정 값이긴 하지만 이 방식이 명확하고 투명하다.

58. 표 II.4에는 간접세가 3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3번째 줄에 제시된 것으로 일반소비세와 특정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합한 간접세 수입금액이다. 4번째 줄은 이 외에도 재정독점(fiscal monopolies)에 의한 수입과, 관세, 서비스세, 기타 minor tax가 포함된다. 5번째 줄에는 이 외에도 자동차 면허와 알코올 판매 등

재화의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간접세 산정에 이 3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표 II.4의 4번째와 5번째 줄에 제시된 간접세에는 가계가 내지 않는 간접세 항목이 3번째 줄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3번째 줄의 간접세 항목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가계가 내지 않는 일부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3번째 줄에 제시된 간접세가 오차범위가 가장 적으므로 급여소득을 이용한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계산하는 데 가장 적당하다.

59. 국민계정에 있는 민간소비 데이터는 표 II.4의 1번째 줄에 나와 있다. 그러나 OECD 세입 통계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수한 세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부처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 간접세를 내야 한다(이는 다시 정부부문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소비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 더해지고 직원 봉급에 해당되는 정부소비는 여기에서 빠진다(2번째 줄). 이렇게 해서 일관된 간접세 과세기준 근사치를 마련했다.

60.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은 일반소비세에 특별소비세를 더한 세입과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를 더한 것에 정부 직원 봉급을 뺀 소비세 과세기준 간의 비율이다(6번째 줄 참조). 2013년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 (4.0%), 멕시코 및 일본 (6.0%)이었고, 호주와 캐나다는 8-9%대였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영국은 10~14% 사이였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5%와 23.7% 사이였으며, 룩셈부르크는 27%였다.

표 II.4-1: 2013년 현금이전에 대한 간접세

(단위: 자국통화, 백만)

	MS	AUT	BEL	CAN	CHL	CZE	DNK	FIN	FRA	DEU	EST	ECU	HUN	ISL	ISR	ITA	JPN	KOR	UK	MEX	MDA	MLT	NLD	NOR	PLT	PRT	SKN	SVK	ESP	SWE	CHE	TUR	GBR	USA	USA	DEU
이 민간 최종 소비 지출	87,289	13,74	26,97	1,653,88	87,806	2,021,9	81,463	11,271	1,582	1,827,4	4,78	12,81	4,73,82	88,88	58,42	81,81	90,94	28,222,30	27,83,00	1,421	1,027,5	282,5	13,72	2,23,00	1,05,58	11,14	4,153	4,174	38,408	1,53,37	34,35	1,18,72	1,28,84	11,32,28	3,73	
이 민간소비자 정부소비 - 정부지출	940,36	20,37	28,72	4,271,42	81,11,42	2,41,58	1,18,37	12,401	1,41,077	1,88,56	1,23	1,42,74	1,02,88	1,98,07	75,23	83,81	113,30	38,851,00	1,67,10	1,17	1,38,13	40,54	153,00	1,47,14	1,28,45	12,27	4,885	22,21	66,070	2,75,38	38,28	1,46,31	1,08,074	12,27,28	5,84	
이 일반소비자 물품세 (5110+5121)	63,21	32,58	35,38	1,13,28	45,32	282,49	26,38	20,81	28,81	2,54	2,16	4,667,2	20,88	11,67	15,36	13,81	22,07,28	8,78,00	4,98	60,85	5,18	23,84	31,03	12,27	18,85	6,88	4,87	84,81	43,47	3,38	18,84	18,88	46,32	-	-	
이 일반소비자 - 일반물품세	50,19	24,88	27,89	1,170,74	38,022	180,47	10,88	18,847	18,26	1,58	1,58	4,134	18,28	97,87	10,72	9,821	13,03,90	3,05	55,74	4,24	21,83	15,510	11,687	13,70	4,98	3,06	6,113	31,82	2,33	10,73	11,16	32,84	-	-		
이 일반소비자 - 일반물품세	26,02	13,88	15,88	4,87,15	1,87,15	1,87,15	8,132	7,51	31,54	6,424	7,6	8,22	8,270	5,171	6,888	5,13	45,70	4,78,36	27,8,00	1,44	10,111	6,84	1,88	7,423	16,74	4,85	1,96	1,59	23,81	8,45	8,03	6,42	46,37	12,87	-	
이 일반소비자 - 일반물품세(5100)	16,08	8,42	11,49	3,863,29	45,88	283,87	24,48	22,83	27,88	2,38	2,78	4,563,33	25,27	16,35	15,6	12,884	23,10,88	8,91,00	4,98	1,57,28	6,18	28,86	22,33	18,12	21,87	7,02	1,80	91,67	46,63	33,36	28,88	70,36	42,28	-	-	
이 일반소비자 - 일반물품세(5000)	16,516	37,76	42,88	1,78,95	48,38	287,2	21,40	28,52	28,84	2,16	2,16	5,082,29	28,89	85,21	17,84	18,32	16,77,00	5,68	15,888	7,02	28,81	34,67	19,83	21,78	7,88	5,31	8,32	46,85	37,93	21,29	16,78	70,36	-	-		

표 II.4-2: 급여소득에 대한 평균 간접세율

	1%		4%		8%		14%		21%		28%		35%		42%		49%		56%		63%		70%		77%		84%		91%		98%		105%	
이 일반소비자 물품세(5100)	1%	4%	8%	14%	21%	28%	35%	42%	49%	56%	63%	70%	77%	84%	91%	98%	105%	112%	119%	126%	133%	140%	147%	154%	161%	168%	175%	182%	189%	196%	203%	210%	217%	224%
이 일반소비자 물품세(5100)	1%	4%	8%	14%	21%	28%	35%	42%	49%	56%	63%	70%	77%	84%	91%	98%	105%	112%	119%	126%	133%	140%	147%	154%	161%	168%	175%	182%	189%	196%	203%	210%	217%	224%
이 일반소비자 물품세(5000)	1%	4%	8%	14%	21%	28%	35%	42%	49%	56%	63%	70%	77%	84%	91%	98%	105%	112%	119%	126%	133%	140%	147%	154%	161%	168%	175%	182%	189%	196%	203%	210%	217%	224%

주: 1 번째 열의 4자리 코드는 OECD(2017b) 세수통계의 분류를 의미
 자료: OECD (2010e), 국민계정(www.oecd.org/statistics/national-accounts); OECD (2017b), 세수통계, OECD, 파리 (3, 4, 5 절)

II.4.3.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61. 조세제도를 통한 지출, 또는 조세지출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emption(소득이 과세기준에서 제외); allowances(총소득에서 금액 공제); credits(과세채무에서 금액 공제); 세금감면(노인 등 특정그룹을 위한 세율 인하); 그리고 세금 유예이다. 그러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OECD, 1996). 특히 조세지출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benchmark)'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없다. 각국이 조세지출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조세제도 구조) 매우 다르고, 조세지출의 측정이 어려워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조세지출'의 하위항목 간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매뉴얼에서는 현금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부분과 조세제도를 통해서 급여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기준(benchmark)'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언급이 따로 필요 없다.

62. 많은 OECD 국가들은 조세제도를 통해서 사회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크게 2가지 조치가 있다. 첫 번째는 가계의 특정소득원이나 소득유형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현금이전은 영세율이나 인하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감면은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과세와 유사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직접과세(앞의 내용 참조)에 대한 섹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세금면제나 세율 인하는 급여소득에 징수되는 직접세 산정에 이미 반영했고(예를 들어 아동수당과 관련된 지출은 영세율이 적용됨) 여기에서는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Tax Break with a Social Purpose: TBSP) 항목으로 또다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부양아동을 위한 세금공제(이는 아동 수당의 비과세와는 다름)는 TBSP로 기록했다(아래 참조).

63. 사회적 효과가 수반되는 세제조치의 2번째 유형은 사회적 목적의 세제 혜택(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TBSP)이다. TBSP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64. "세금인하, 면제, 공제, 또는 유예로 a)사회복지지출로 분류되었을 이전수급과

동일한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b)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 현금급여를 대체하는 TBSP에는 부양아동에 대한 세금공제가 포함된다. 민간부문의 지출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진 TBSP에는 비영리 NGO에 대한 세금감면, 민간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그리고 민간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된다.

II.4.3.1. 방법과 데이터 원천: 손실세입의 평가

66.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의 규모에 관한 정보는 각 나라의 당국에서 발간한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 정부(2015), 캐나다 재무부(2015), 미국의 OMB(2015)가 발간한 보고서 등이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세제조치로 인해 손실된 세수, 즉 재정조치로 인해서 축소된 세입 금액의 추정값이 보고된다. 그리고 캐나다, 일본, 미국의 예에서처럼 중앙/연방정부에 의한 세제혜택은 다루지만 하위단계의 정부에 의한 세제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보고되지 않음). 국가별로 종합적인 정보가 (아직)없지만 캐나다의 경우 sub-national TBSP의 규모는 GDP의 0.6%에 가까울 것이다.⁵⁴⁾

67. 많은 국가가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의 비중을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의 총계를 낸다. 그러나 조세지출과 TBSP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한 부모에 대한 세금공제와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이 별도로 존재하는 예를 살펴보자. 이 2개의 재정조치는 보통은 따로 계산(보고)된다. 그러나 두개의 TBSP 중 하나를 빼면 일부 납세자는 더 높은 한계세율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나머지 TBSP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세제혜택 수혜자가 이미 최대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한). 두 개 TBSP의 가치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각각의

54) 캐나다는 연방세와 지방세에서 지출되는 급여소득의 직접세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2000년대 중반에 지방세가 연방세의 50% 정도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2007년 현금급여와 유사한 TBSP의 실제가치는 연방 TBSP의 가치인 GDP의 1.3%가 아니고 요소비용 GDP의 2% 수준이었을 것이다. 동 보고서에는 사회적 목적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데이터가 일부 기록되었다(가족구성원 크기, 자녀의 유무, 부양가족 등).

조치를 따로 합하는 것보다 금액이 커진다. 각각의 TBSP는 서로가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이다. 손실된 개별 세입 추정치는 TBSP의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미래의) 납세액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추정치의 총계는 전체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68. TBSP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OECD, 1996). 위에서 기술한 ‘세수손실법’은 특정조치에 의해 손실된 세입 금액을 사후에 측정하는 방식이다. 표 II.5를 보면 측정방법에 따라서 세제혜택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연기연금 소득이나 미래의 급여에 대해 기납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 세수손실법보다 추정값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의 현재가치가 세수손실법에 다른 추정값보다 훨씬 낮지만 연금부담금을 제외하면 반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개인퇴직상품 가입자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해당 소득이전에 대해 미래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들은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미래의 지불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가치, 미국, 2015

(단위 : 100만 달러)

	계산 방법	
	세수손실 가치	현재 가치
연금부담금과 소득-고용주 지원보험 제외	66,620	67,150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부담금과 소득 제외	16,400	1,350
Keogh Plans(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과 소득 제외	25,490	4,960

주: 미 행정부는 지출등가의 추정치가 기본조세지출 추정치와 동일한 경우가 많고, 두 추정치가 다른 경우 이 개념을 적용하는 기준도 판단을 요하며, 모든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세금지출항목에 걸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

자료: US OMB (2047), Analytical Perspectives, 미국 예산, 회계연도 2017.

69. 사회복지지출과 TBSP 모두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로 계산할 수 있다. 현금주의는 정부의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며 발생주의는 특정 기간에 정부에 발생할 과세채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연금에 대한 TBSP를 제외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⁵⁵⁾ 적립형 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래의 세금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의 연금부담금으로 2014년의 임금과 미래시점의 해당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자, 자본이익 등)에 대한 세금납부가 연기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특정시점에 2014년의 연금부담금과 미수수익이 지급될 것이고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세입을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것이다.

70.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는 민간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금면제와 일시불연금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일종의 계약성 저축으로써 이에 대한 세금감면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세금감면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셋은 없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Tax Breaks for Pensions)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일부 국가의 추정 값은 동 보고서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memorandum item(비고항목)에만 포함시켰다.

II.4.3.2. 계산에 포함된 세제혜택과 포함되지 않은 세제혜택

71. 많은 OECD국가에서(독일과 프랑스 등)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세제도에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가 각국의 기본 세금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세지출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원은 분명 재정적·사회적인 지원이므로 TBSP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에 대한 지원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재정조치는 TBSP로 간주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부양자녀가 있으면 사회보호제도를 통해 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만 혼인계약만으로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혼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래서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러한 조치가 기본조세제도의 일환인지 여부를 떠나서). 프랑스의 경우 ‘quotient familial(가족비율)’을 통한 아동에 대한

55)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현금주의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세입통계의 보고방식이 최근에 바뀌면서 발생주의로 추정한 TBSP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 2013년에 110억 유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⁵⁶⁾

72.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에는 민간연금 부담금의 비과세 등 민간연금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연금급여가 미래에 발생하고 과세나 세금감면이 연금저축 기간 중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루기는 어렵다. 적립형연금의 세제혜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고용주나 직원이 연금부담금을 내고, 이는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다.
- 연금 납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부담금을 투자하는 기금은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
- 연금저축 기간이 끝난 후에 받는 연금(pension), 연금보험(annuity), 일괄 지불금은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

73. 위의 고려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계산과 국가마다 상이한 계산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셋은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조세제도가 공공예산에 미치는 비용(현금주의)에 대한 데이터는 일부 있다. 이들 데이터는 현재의 조세제도가 미래의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II.4.4. 순 사회복지지출의 기본틀: 개요

74. 사회복지지출지표를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액과 사회정책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을 하나의 기본 틀에 통합해서 순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표 II.6은

56) 프랑스의 소득세 제도는 가계를 기본단위로 본다. 그래서 가계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세대상 가계소득에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이 적용되는데, 이는 누진적 한계세율표에서 가계소득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게 해준다. 가족계수는 전체 과세대상가계소득 'R'을 가구 구성원으로 결정되는 'N'이라는 인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N'은 가구구성원의 합이다: 부부는 각각 1개 단위이며, 첫 두 자녀는 각각 0.5 단위, 세번째 자녀부터는 한자녀 당 1개 단위로 계산된다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부양가족을 둔 가정은 좀 더 유리한 규칙이 적용된다). 부부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가족계수는 3이 되고 3자녀를 둔 경우 4가 된다. 소득수준이 동일하면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계수는 낮아진다.

이러한 기본 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아래에 괄호 안의 숫자/글자는 이 표에서 해당되는 줄을 나타낸 것이다).

- 먼저 총 공공사회지출(1)에서 국고로 귀속된 직접세와 공공급여로 소비된 재화에 대한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공공사회지출(2)을 계산한다. 그리고 현금급여와 유사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연금 제외)의 가치(T1)가 소비에 사용되므로 이들 항목에 대한 간접세의 귀속가치를 빼서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TBSP(4)를 도출한다. 현행 민간급여(T2)에 대한 TBSP의 가치를 더하면 순 현재 공공사회지출(6)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순 공공사회지출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규모와 급여수급자에게 재분배되는 순 사회복지의 비중을 잘 반영해 준다.
- 정부통제 하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지원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민간급여도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급여가 직접세와 간접세의 과세대상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순 정부통제 사회지출(net government-controlled social expenditure)은 순 공공 법적사회지출 (net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 이라는 제목 안에 제시했다(9). 마지막으로 총 자발적 민간급여도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 자발적 민간사회지출을 계산했다(11).
- 순 공공급여, 법정민간급여와 자발적급여를 합하면 순 총사회지출(13) 지표가 나온다. 이 지표는 국내생산에서 사회급여수급자에게 할당된 비중을 정량화해 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 민간사회급여(T3)에 대한 세제혜택은 민간사회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TBSP가 공공지출 항목이지만 민간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순 공공사회지출과 순민간사회지출을 더하는 것은 가계에 지원되는 금액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순 총사회지출(13)은 순 현행 공공사회지출(6)과 순 직접 민간사회지출(12)을 더한 값에서 현행 민간사회급여(T2)를 마이너스한 값이다.⁵⁷⁾ 순 총사회지출은 한 경제의 국내생산 중에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57) 민간부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가치는 민간부문급여에 부과된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TBSP가 얼마만큼 민간급여의 가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75 마지막으로 순 사회지출 지표는 경제규모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시장가격 GDP가 아닌 요소비용 GDP로 표시했다. 이는 간접세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급여를 조정했기 때문에 분모인 GDP도 동일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소비용 GDP는 간접세나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가장 적절한 지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을 국가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 부록 I.2에 시장가격 GDP 대비 순 지출지표를 포함시켰다. 동 부록에는 국민소득(국내소득이 아닌) 대비 순 지출지표도 포함시켰다.

표 II.6. 총 사회지출부터 순 사회지출까지: 간략한 개요

+/-	줄번호#	항목
	1.	총 직접 공공사회지출
-		공공 현금보조로 지불된 직접세와 사회적 기여금
	2.	순 현금 직접 공공사회지출
-		순 현금이전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3.	순 직접 공공사회지출
+	T1	현금급여를 반영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혜택
-		현금급여와 유사한 세제혜택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4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TBSP
+	T2	현행 민간사회급여에 대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5	순 TBSP(연금 제외)
	6.	순 현행 공공 사회지출[3+5]
	7.	총 법적 민간 사회지출
-		직접세와 법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법적 민간현금으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8.	순 직접 법적 민간 사회지출
	9.	순 정부 법적 사회지출[6+8]
	10.	총 자발적 민간 사회지출
-		직접세와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11.	순 직접 자발적 민간 사회지출
	12.	순 직접 민간 사회지출[8+11]
	13.1	순 총 사회지출[6+12-T2]

주: 1)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순 총 사회지출은 현행 민간보조를 향한 세금 우대조치를 감한 순 공공 그리고 순 민간 사회지출의 합으로 얻어진다.

2) 음영이 있는 줄은 세금이 조정됨.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 (LMP Manual)⁵⁸⁾

1. 개요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1996년 7개 회원국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2개의 집행위원회로 소규모 태스크포스(task-force team)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실업문제 타개를 위해 단행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LMP)의 비용과 참여에 관한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1997년 11월 유럽이사회가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을 출범하면서 그 타당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노동시장정책(LMP)은 그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 및 기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개입만을 의미하는 등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차 대상 집단은 공공고용알선기관에 등록된 실업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참여 활성화도 정책의 우선과제로 부상하였다

여러 해에 걸쳐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방법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노동시장정책 방법론의 초판은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유럽연합통계청과 ‘고용 및 사회문제 집행위원회’의 공동프로젝트로 마련되어 정책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참가자의 수, 경비 등 노동시장정책 개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집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5월 출판된 노동시장정책 방법론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00년과 2005년 사이 사용된 참고 지침을 담고 있다.

2006년 6월까지 유럽연합통계청은 다음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1998-2004년까지의 자료에 관한 7개의 간행물들을 출판하였다:

58)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서 2013년 발간한 “Labour market policy database Methodology”의 내용을 번역·정리함.

- (a) 노동시장정책의 총지출, 범주별 지출, 수혜자별 지출, 급여 유형별 지출, 범주별 및 국가별 상세노동시장지출,
- (b) 범주별 노동시장정책 전체 참가자, 범주별 참가자의 진입과 탈퇴, 범주별 및 국가별 참가자 관련 상세수치(연령 및 성별 분류 등)

추계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통계업무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처음 추계를 시작한 1998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견이나 질의, 제안 등을 보내오는 등 지침 개선을 위해 기여하였다. 이러한 개발, 검토 및 개정의 과정은 ‘고용 및 사회문제 집행위원회’와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시장정책 추계 방법론은 고용위원회가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의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표명한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확대되어 왔고, 신규회원국 대부분은 2005년부터 노동시장정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은 2006년부터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에는 최초로 노동시장정책 자료를 OECD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두 조직은 유럽연합 통계청의 방법론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고, OECD는 매뉴얼의 개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는 유럽 2020 합동 평가 프레임워크(JAF)를 통해 EU 고용 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원 중 하나이다. JAF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고용위원회 및 사회보호위원회가 개발하여 사용 중인 지표 기반의 평가 시스템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현 상황과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측정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를 체계화했다. LMP와 관련한 지표들은 정책 분야 3(활동 노동시장 정책)과 정책 분야 4(고용 지향적인 적합한 사회 보장 시스템)에 속한다.

LMP 통계는 효율적인 기능을 달성하고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노동시장에 공개적으로 조정하는 노동시장 조정을 다룬다. LMP 조정은 선별적으로 노동시장 내 특정 그룹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고용 정책 조정과 구별된다. 3개의 주요 목표 그룹이 인정되며, 실업자, 위기의 피고용자 및 비활동자가 그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차 대상 집단은 공공고용 서비스(PES)에 실업자로 등록되거나 고용주의 경제적 여건 곤란으로 인해 현재는 고용 상태이지만 비자발적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럽과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는 이러한 집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어려움에 직면한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예를 들면 이혼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여성, 첫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 고령 근로자 및 장애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활동자로 간주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LMP 대상 집단으로 다룬다.

포괄적인 방법론은 LMP 자료 수집 범위, 통계 단위 및 포함 범위를 규정하며, LMP 조정의 등급분류 체계를 설명하고,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LMP 방법론 2013이 본 간행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9년 3월에 발간된) 2006 LMP 방법론의 부록과 LMP 방법론 - 2006 개정본을 통합한 것으로서 LMP 태스크포스가 2013년 7월에 방법론에 대해 승인한 수많은 변동사항을 담고 있다. LMP 태스크포스가 도입한 몇몇 핵심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카테고리 3(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을 최상위 카테고리로서 삭제하여 카테고리 4의 하위항목으로 작성하였다 (4.3).
- 카테고리 4, 5, 6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표를 추가함. 특히 이것은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생산성 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하위 카테고리 5.1을 제외하고 LMP 대책 (즉, 카테고리 2-7에서의 조정)이 설계상 시간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반복한다.
- 예정 지속기간에 대한 항목 10의 정교화: (예를 들면 보조금이 장애인에게 더 오래 지급되는 경우) 최대 연장 기간 및 지속기간이 가변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조정에 대한 신규 하위항목. 이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박스도 추가되었다.

본 방법론 개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사람들 특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LMP 태스크포스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 범위(SCOPE)와 주요 정의(KEY DEFINITIONS)⁵⁹⁾

2.1. 범위

- §1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는 제반 노동시장 개입을 포괄한다. 노동시장에서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은 효율적인 기능을 달성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특정 집단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타 일반적인 고용정책과 구분된다.
- §2 일반정부에 의한 공적개입은 실질적인 지출(actual disbursements) 또는 기존 세입의 감소(foregone revenue)(세금, 사회복지 기금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분담금 등에서의 수입 축소)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3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광역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2 개입유형(TYPES OF INTERVENTION)

- §4 모든 노동시장정책의 개입은 몇몇 서비스를 제외하고는(§6 참조) 다음에서 정한 하나 이상의 대상 집단(§17-§19 참조)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비를 발생시킨다. 많은 경우에 공공경비의 직접 수혜자는 사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집행된 활동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노동시장정책의 대상 집단인 참가자(§20 참조)이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개입이 있다:
- §5 서비스(services)는 참가자의 주요활동이 구직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참가로 인해 노동시장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노동시장개입을 가리킨다.
- §6 서비스에는 참가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의 다른 기능도 포함된다. 이는 사용자를 위한 일자리 알선(placement) 및 기타 서비스, 관리 기능, 일반경비, 공공고용알선기관의 책임(§44-§51 참조)에 따른 기타 활동 등이 포함된다.

59) 원문과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급적 원문의 형식을 그대로 따름.

§7 수단(measures)은 참가자의 주요활동이 구직과 관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참가로 인해 노동시장상황이 변화하게 되는 노동시장개입을 가리킨다. 노동시장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개입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이 수행되는 활동이지만 감독을 받고 있고, 참여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전일제 혹은 중요한 파트타임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 참여자의 직업적인 자격요건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 개입이 take-up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포함한)고용을 제공

§8 노동시장정책수단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개입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13-§15 참조). 대부분의 정책수단은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에 처한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업자의 취업 활성화 목표를 갖거나 아니면 실업위기에 놓인 사람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9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수단 중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정책수단은 영구적인 근로능력감소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상시 지원 제공과 관련된다 (§ 90 참조).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용에 대해 생산성의 감소나 기타 간접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10 지원(support)은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제공하거나 또는 노동시장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개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개입을 뜻한다.

§11 참여자(§20 참조)는 일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없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지만,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한 사람도 포함된다.

§12 지원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으나 정책수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융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해당 조치의 일부로 간주된다(§ 189 참조).

2.3 대상 집단(target groups)

§13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여기에서는 대상 집단이라고 함-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용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목표가 유사할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대해 누구에게나 비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보다 일반적인 고용정책이나 사회보호정책 또는 재정정책과 노동시장정책(LMP)에 대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14 3개의 주요 대상 집단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다(§17-§19 참조). 모든 노동시장 정책수단(§7참조)과 지원(§10 참조)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이러한 집단 중 적어도 하나를 목표로 하거나 국가별 구체적인 대상설정기준(§15 참조)을 따라야 한다. 노동시장서비스(§5 참조)는 적용이 보다 광범위하고 노동시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개입을 포함한다.

§15 또한 상기의 대상집단 이외의 집단의 고용증진을 위해 정부가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집단(예, 청년)이나 특정지역에서 존재하는 실업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들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용자가 고용하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개입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집단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16 데이터베이스는 3개의 주요 대상 집단 내에서 개입이 특정 집단(§301 참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대상 집단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대상 집단의 수를 정하고 있다.

§17 실업자-일반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 각국별 정의에 따라 등록실업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이러한 3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포함된다.

§18 실업위기에 있는 취업자-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경제상황,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실업 위기에 있는 사람.

§19 비경제활동자-현재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상기 정의에 따라 취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실직했다는 의미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며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

2.3.1 참여자(participant)라는 용어의 사용

§20 참여자와 관련한 표현(예. -에 참가하고 있는)은 개입의 유형과 무관하게 각 개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정책 수단에서 개인은 훈련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일자리’(subsidized job) 등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게 되므로 참여자라는 표현은 술어적으로 의미에는 맞는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경우 개입은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현금지급만을 가리키므로 수급자(beneficiary)라는 표현이 그 의미상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표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참여자라는 표현이 두 의미를 모두 함축하는 것으로 정한다.

2.4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입의 사례

§21 노동시장에 집행되나 노동시장정책 대상집단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공공개입은 일반고용 및/또는 재정개입으로 간주하며 본 데이터 수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상설정 기준에서 유일한 예외가 존재한다면 노동시장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36 참조).

§22 노동시장정책은 대상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집행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개입은 제외된다.

§23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여 보다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개입. 이러한 개입은 직접적인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용자에게 인력 중 일정 비중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개입(장애인 고용할당제)은 3가지 주요 대상 집단 중 하나에 혜택을 주나 경비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장려수당(in work benefit)을 제공하는 개입은 사회복지 급여(수급)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 이미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노동 시장정책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 종업원을 위해 계속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개입은 인적자본 개발을 목표로 하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실업위기에 처한 취업자(§18 참조)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 신규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게 제공되며 이 때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에 실직 상태였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보조금

3. 통계단위(STATISTICAL UNIT) 및 적용범위(COVERAGE)

3.1 통계단위

§24 본 자료 수집의 통계단위는 상기 정의에 따른 노동시장 개입이다.

§25 각각의 개입에 대해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는 지출과 참여자에 관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개입에 적용되고 이를 설명한다. 본 고에서는 요구되는 데이터의 상세내용을 지출, 참여자, 정성적 데이터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3.2 지리상의 적용범위

§26 데이터베이스는 각국의 전체 영토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자 한다.

§27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기타 하위 자치단체가 국가기관과는 독립적으로 노동시장정책 개입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입을 별개의 개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28 이러한 개입이 사실상 국가차원의 지역별 집행인 경우에는 보고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3 측정기간

§29 각각의 개입에 관한 데이터는 해당 개입이 유효하나 사용되지 않았던 기간(연)을 포함하여 해당 개입이 유효(예: 법률에 의해 적용이 허용)한 각 연도(역년, 曆年)에 따라 수집된다.

§30 개입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예: 법률에 의해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등) 더 이상의 경비 지출이 없고 모든 참가가 종료될 때까지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고한다(§372 참조).

§31 노동시장정책 개입 보고의 회계연도가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고 이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역년)와 가장 중복이 많이 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32 각국의 모든 데이터는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 개입에 관한 데이터가 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메타데이터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4. 개입의 분류(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S)

§33 모든 노동시장정책의 개입은 활동의 유형별로 분류되는데, 활동유형이란 개입이 소기의 목적(예: 훈련 또는 고용 인센티브)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노동시장정책 서비스에서는 1개의 범주, 노동시장정책 조치에서는 5개의 범주, 노동시장정책 지원에서는 2개의 범주가 있으며 이러한 범주의 각각은 대부분 2개 이상의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다.

§34 아래 표는 개입의 유형에 따른 범주를 나열하였으며 각 범주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반 세부 사항을 모두 보여주는 분류표는 원문의 별첨A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p>노동시장정책 서비스(LMP services)</p> <p>1. 노동시장서비스</p> <p>노동시장정책 수단(LMP measure)</p> <p>2. 훈련 [* 3. 직무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4. 고용장려금에 포함됨 (§67 참조)]</p> <p>4. 고용장려금</p> <p>5. 보호 및 고용지원(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과 재활(rehabilitation)</p> <p>6.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p> <p>7. 창업인센티브</p> <p>노동시장정책 지원(LMP support)</p> <p>8. 실직(out-of-work) 소득유지와 지원</p> <p>9. 조기퇴직</p>
--

§35 이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활동의 유형에 따른 개입의 분류에 대한 체계를 정의한다. 정의는 개입의 유형-서비스, 정책수단, 그리고 지원(§5에서 §12 참조)에 의해 그룹화된다.

4.1 노동시장정책 서비스

〈표 2〉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서비스

<p>1. 노동시장 서비스</p> <p>1.1 대상자(client) 서비스</p> <p>1.1.1 정보 서비스</p> <p>1.1.2 개별 사례 관리</p> <p>1.2 그 밖의 공공고용알선서비스(PES)의 활동</p> <p>1.2.1 노동시장정책(LMP) 수단의 집행</p> <p>1.2.2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집행</p> <p>1.2.3 기타 서비스/활동</p>
--

§36 노동시장 서비스(범주 1)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이 하는 모든 서비스와 활동 및 기타 공공기관 또는 공공재원으로 계약을 맺은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실업자 및 기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선별하는 것을 지원한다.

- §37 공공고용알선기관(PES)는 전국적 고용알선기관(그리고 지방/광역의 유사기관) 및 기타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실업자 및 기타 구직자의 노동시장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 §38 공공고용알선기관의 서비스/활동을 보고할 때는 본사와 광역/지방 사무실의 서비스/활동을 구별할 것을 권고한다.
- §39 범주 1의 범위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의 모든 활동 및 기타 공공재정으로 운용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를 포괄한다.
- §40 고객서비스(1.1)는 공공고용알선기관 및 기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업자 및 기타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거나 사업주의 직원 채용 및 선별을 지원한다.
- §41 고객서비스는 온라인 일자리는행과 같은 셀프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및/또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혜택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한다.
- §42 정보서비스(1.1.1)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훈련, 기타 지원의 기회에 대한 소개 및 특별 정보를 제공하는 개방된 서비스와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중개서비스이다.
- §43 개별 사례관리 서비스(1.1.2)는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예: 집중 카운셀링 및 지도, 구직지원, 개인별 행동계획)와 항구적인 (재)고용을 위해 계획된 경로의 일부로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후점검서비스이다. 면접을 위한 여행경비, 기타 구직관련 비용의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184 참조).
- §44 공공고용알선기관의 기타 활동(1.2)은 상기에서 정한 공공고용알선기관이 하는 제반 기타 서비스와 활동으로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포괄한다.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아닌 기관이 하는 유사한 서비스와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45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운영(1.2.1)은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범주 2-7에서 경비는 정책조치의 직접적인 비용만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정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간접운영비용은 포괄하지 않는다(§142참조).
- §46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사업주와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개입되어 있는 사업주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조율

- 기획, 조율, 모니터링, 평가, 의사결정 등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
-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훈련센터의 유지비용 등 노동시장정책 조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특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기타 업무

§47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운영(1.2.2)은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운영과 지급 및/또는 지급/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에 대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감독과 관련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48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실업수당 및 기타 노동시장정책 급부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하위범주는 공백이 된다.

§49 노동시장정책 지원 운용 관련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구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않은 경우) 수혜자 등록 및 모니터링
- 수당지급, 청구확인 등
-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외부 수당자금/사무실, 법률관련사항 등을 감독 또는 모니터링

§50 기타 서비스/활동(1.2.3)은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의 제반 기타 서비스, 활동, 일반비용 등을 포괄한다.

§51 이러한 하위범주의 범위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이 맡고 있는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4.2 노동시장정책 조치

〈표 3〉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수단

2. 훈련
2.1 시설훈련
2.2 직장내훈련
2.3 교대훈련
2.4 도제를 위한 특별지원
* 3. 직무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4. 고용장려금에 포함됨 (§67 참조)
3.1 직무순환
3.2 일자리 나누기
4. 고용장려금
4.1 신규채용장려금
4.1.1. 상시
4.1.2 임시
4.2 고용유지지원금
4.3. 일자리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4.3.1 일자리순환
4.3.2 일자리 나누기
5. 보호 및 지원 고용 과 재할
5.1 보호 및 지원 고용
5.2 재할
6.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7. 창업 인센티브

§52 훈련(범주 2)은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정책 대상집단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치를 포괄하며 공공기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53 제반 훈련 조치에는 교실 수업의 증거, 또는 직장내 훈련의 경우 특별히 교육 목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54 훈련의 범주에는 교실 및/또는 작업장에서 보내는 훈련시간의 비중에 따라 분류되는 3개의 하위 범주(아래 참조)를 포함한다. 훈련수당만을 제공하는 조치는 수혜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훈련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아래 하위 범주 참조).

§55 구직신청 방법 또는 면접 기술에 관한 카운셀링 등 일자리를 얻는 개인의 능력만을 개발하는 단기 과정은 구직 지원(assistance)의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범주 1).

§56 창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영 자문은 범주 7의 창업 조치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110 참조).

§57 훈련참가자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경비는 범주 8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189-§192) 참조).

§58 시설훈련(2.1)은 훈련시간의 대부분(75% 이상)을 훈련기관(학교/전문대학(college), 훈련원 또는 훈련 유사 기관)에서 보내는 조치를 포괄한다.

§59 원격 학습(e-러닝 포함)은 공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고, 대상 집단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며, 감독/모니터링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그리고 최소 수준의 강도(최소한 파트타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위 범주 2.1의 기관 훈련으로 봐야 한다.

§60 직장 내 훈련(2.2)은 훈련시간의 대부분(75% 이상)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조치를 포괄한다.

§61 전적으로 업무에 기초한 훈련이고, 형식을 갖춘 훈련이라 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조치는 업무를 통한 학습 또는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간주되며 범주 4의 임시 채용인센티브로 간주되어야 한다(§79 참조).

§62 교대훈련(2.3)은 훈련시간이 훈련기관과 작업장 사이에서 반반씩 할당되는 조치를 포괄한다.

§63 도제를 위한 특별지원(2.4)는 다음을 통해 도제제도를 위한 특별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사용자가 견습공을 채용하도록 제공되는 인센티브, 또는
- 특정 소외계층을 위한 훈련수당

§64 도제(apprenticeship)는 “참가자가 참가에 대해 급여/보상을 받고, 계약(또는 합의)에 의해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고, 과정을 완수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졸업증서를 받게 되는 교대훈련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65 도제제도가 공식적인 자격부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하위 범주 4.1에서 보조금 수령 고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66 도제제도는 모든 청년에게 열려 있는 일반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제공이나, 일반적인 고용정책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본 자료 수집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PES가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모든 청년층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 견습생

제도는 PES의 활동(§39)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위 카테고리 1.2.3의 별도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세출과 참가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246).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집단의 도제제도 선택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조치만이 여기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67 일자리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범주 3)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대책은 이제 하위 카테고리 4.3에 포함된다(§83-§89 참조).

§68 고용장려금(범주 4)는 실업자 및 기타 대상집단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실업 위기에 있는 사람의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포괄한다.

§69 고용장려금은 공공보조금없이 존재하거나 창출될 수 있는 개방시장 일자리,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을 가리킨다.

§70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 있으나 공공 또는 비영리부문의 일자리도 자격이 있으며 따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71 고용장려금과 더불어 공공자금은 고용된 사람의 노동비용이며, 일반적으로 노동비용의 대다수는 여전히 사업주가 부담한다. 하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 공공자금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72 직장내 훈련의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 배치와 관련되고, 훈련 투입이 확인되는 조치는 범주 2에 포함되어야 한다.

§73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만(관련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한)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조치는 하위 범주 5.1에 포함된다.

§74 범주 4, 5, 6의 조치를 구분하는 기준은 §109 하단의 <표 4>에 있다.

§75 신규채용장려금(4.1)는 신규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수용을 위해 장려금을 제공하거나 근무경험을 통해 고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기회를 높이고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지급이 가능한 조치이다.

§76신규채용장려금에는 노동시장정책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고, 신규일자리 수용이 조건부인 급부(복직 상여금, 직장근무지 이동/재배치 수당 등)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을 위한 다른 형태의 취업장려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무하지 않는 시간/요일에 대해 계속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 직무를 시작하도록 실업자를 장려하는 조치는 고용 인센티브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범주 8이 아니라 범주 4.1에 포함된다.

§77 사용자의 신규근로자 채용을 위한 장려금에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예: 보조금 지급 기간 확대 또는 작업장 적응을 위한 추가지원). 하지만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이 신규일자리를 수용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보호 시스템을 갖춘'(sheltered) 작업장의 제공을 위한 지원은 범주 5.1의 보호 및 지원에 의한 고용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99 참조).

§78 상시채용장려금(4.1.1)은 정규직(개방형 계약)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79 임시채용장려금(4.1.2)은 임시직(기한부 계약)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80 고용유지지원금(4.2)은 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 위기에 있는 사람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81 고용유지지원금은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나 고용주의 기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일하지 못한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지급(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지급)은 항상 하위 범주 8.2의 부분적 실업 급여로 봐야 한다.

§82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서만 적용 가능하다. 저소득집단을 위한 일반적인 근로장려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83 일자리순환과 일자리 나누기(범주 4.3)는 실업자 또는 또 다른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참가자 구분은 §247 참조).

§84 실업자 또는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고 근로자를 위한 교육휴가를 촉진하는 제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85 일자리순환(4.3.1)은 일정기간 동안 실업자 또는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근로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86 직무순환 조치에서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직업활동으로부터 완전한 휴가를 준다. 많은 경우 이는 추가적인 훈련을 받기 위함이지만 출산휴가 등 다른 사유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근로자는 휴가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87 일자리 나누기(4.3.2)는 실업자나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근로자를

일부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88 일자리 나누기 조치에서 기존 근로자는 실업자나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이 채우는 근무시간 감소에 대해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89 일자리 나누기는 연령이라는 기준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근로자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분 조기퇴직이나 조건부 조기퇴직(9.1.2-§129 참조)과 구분될 수 있다.

§90 보호 및 지원에 의한 고용과 재활(5)는 지원에 의한 고용 및 재활을 통해 근무역량이 감소된 사람의 노동시장통합을 진작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91 근무역량이 감소된 사람은 주로 국가별 정의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만 사고 또는 질병 이후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약물중독에서 회복 중이거나 노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재활을 통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포괄한다.

§92 범주 4, 5, 6의 조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109 하단 박스 <표 4>에 있다.

§93 보호 및 지원에 의한 고용(5.1)은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근로역량이 감소한 사람의 생산적인 고용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93 보호 고용이라 함은 장애나 그 외 근로 제한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위해 특별히 설정한 것으로서 공공 지원이 있든 아니면 없든 간에 민간 기업에서의 고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비율로 건장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

§95 지원 고용이라 함은 장애나 기타 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 공공 지원(재정 등)을 통해 건장한 직원과 함께 근로할 수 있게 해주는 정규직 고용을 의미한다.

§96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계획된 지원기간이 없다. 그러나 무기한 보조금을 통해 임금 100% 이상(즉 관리비도 포함)을 충당하는 평생 보호된 일자리의 제공은 통상적으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주 밖에 있다. 여기에 있는 보호된 일자리 제공은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97 특정 시간 내에 해당 인원을 상시직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재활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시 보호 고용은 5.1이 아니라 하위 범주 5.2의 재활 조치로 봐야 한다.

§98 장애인이 일반회사에 취업하도록 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 가능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는 범주 4에 해당한다(§77 참조). 예를 들면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사회적 기업이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 대상 집단의 인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조치는 범주 4에 포함된다.

§99 특정 개인을 위한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보호된 작업장 제공을 위한 보조금은 범주 4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규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보조금은 작업장에서 근로역량이 감소한 개인을 수용하는 상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범주 5.1에 포함된다.

§100 보호된 작업장제공은 작업장의 물리적 개조(건물 및/또는 장비)와 직장생활의 조력자(mentor) 및 기타 전문화된 지원제공을 포함하여 특별한 조직구성의 시행 등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01 재활(5.2)은 근로역량이 감소된 사람(영구적 또는 일시적)을 위한 재활을 제공하고 참가자가 본인의 장애 또는 조건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업무(지원에 의한 고용을 포함)나 정규훈련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02 재활은 직업적인 재활만을 가리킨다. 사회 및 의료적인 재활은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벗어나며 포함되지 않는다.

§103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6)은 장기실업자 또는 그밖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04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공공개입 없이 존재하거나 창출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비시장적 인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을 가리킨다(즉, 이러한 일자리는 통상적인 시장 수요에 부가적인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개인에게 근로능력 유지, 기술수준의 향상, 일반적인 고용가능성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일자리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출된다.

§105 이 범주의 조치는 계획상 지속기간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일시적이어야 한다. 이는 항목 10.2의 최대치가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여야 하며 이 범주의 모든 개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106 이러한 일자리는 대체로 공공 또는 비영리 부문에 존재하나, 민간부문에서도

지역사회의 관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도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차별을 두지 않는다.

§107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조치와 함께 공공자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108 보호 직장에서의 고용 지원은 반드시 범주 6이 아니라 범주 5(§96의 명확화에 적용 받음)에 기록해야 한다. 임시직이거나 계약직인 경우에는 이것을 하위 범주 5.2의 재할로 봐야 한다(그 외 하위 범주 5.1이 적용됨).

§109 범주 4, 5, 6의 조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래 <표 4>에 있다.

<표 4> 범주 4, 5, 6의 개입 구분 기준

기준	범주 4	범주 5		범주 6
정규 노동시장 일자리	항상	5.1	항상(지원 고용) 아님(보호 고용)	아님
		5.2	해당 없음(재활기관) 아님(임시 보호 고용)	
계획상 제한적인 지원의 지속 기간	항상	5.1	아님	항상
		5.2	항상	
계약직에 한함(일정 기간 계약)	일부	5.1	아님	항상
		5.2	해당 없음(재활기관) 항상(임시 보호 고용)	
인건비의 대부분(50-100%)을 공적 자금으로 충당	가능하지만 혼치 않음	5.1	가능하지만 혼치 않음(지원 고용) 일부(보호 고용)	항상
		5.2	해당 없음(재활기관) 일부(임시 보호 고용)	

§107 창업 인센티브(7)은 실업자 또는 기타 대상 집단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진작시키는 조치를 포함한다.

§108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지급이나 또는 대출, 시설제공, 사업자문 등 간접적인 지원 등의 형태를 띌 수 있다.

§109 창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영관리에 대한 자문은 이 범주에만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훈련(2)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13 신규 기업이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 대상 집단에서 최초의(또는 최초로 몇 명)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는 범주 4에 포함된다.

§114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 창업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을 지원하는 대출 또는 장려금은 해당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노동시장정책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만 포함된다.

4.3 노동시장정책 지원

〈표 5〉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지원

<p>8. 실직 중 소득보장과 지원</p> <p>8.1 실업보상금부(Unemployment Benefits)</p> <p> 8.1.1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p> <p> 8.1.2 실업보조(Unemployment Assistance)</p> <p>8.2 부분 실업 급여 (Partial Unemployment Benefits)</p> <p>8.3 시간제 실업 급여 (Part time Unemployment Benefits)</p> <p>8.4 잉여인력 정리하고 보상금</p> <p>8.5 파산 보상금</p>	<p>9. 조기 퇴직</p> <p>9.1 조건부</p> <p> 9.1.1 완전</p> <p> 9.1.2 부분</p> <p>9.2 무조건부</p> <p> 9.2.1 완전</p> <p> 9.2.2 부분</p>
---	--

§115 실직 중 소득보전 및 지원(8)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금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나 임금의 상실에 대해 개인을 보상하고자 하는 지원을 포함한다:

-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 일시하고 또는 강제단축근무를 하거나 그밖에 (계절적 효과를 포함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구조조정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잉여인력 정리하고 보상금)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116 실업보상금부(8.1)는 과거에 취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포함하여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급부이다

§117 실업보상금부의 수급자격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지만, 몇몇 경우(예, 고령근로자) 이러한 조건은 완화될 수 있다. 개입 관련 설명에서 언제 이러한 경우가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조건 완화를 통해 수혜를 입은 참가자의 수도 메타데이터에 보고되어야 한다.

§118 훈련이나 기타 2-7의 노동시장정책 조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업 보상금부는 해당조치의 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189- §192 참조).

- §119 실업보험(8.1.1)은 실업보험제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한 실업급여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종종 소정의 기간 동안만 지급된다.
- §120 실업보조(8.1.2)는 실업보험제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지급가능한 급여를 포괄한다. 실업보조는 일반적으로 자산조사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121 부분실업 급여(8.2)는 그 사유(경기 침체 또는 둔화, 장비고장, 기후여건, 사고 등)는 상관없이 공식적인 근로시간 단축조치 및/또는 간헐적인 업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임금 또는 급여상실을 보상하는 급부를 말한다.
- §122 시간제실업 급여(8.3)는 전일제 일자리나 부가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잃고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123 잉여인력 정리해고 보상금(8.4)은 기업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기업활동을 줄일 경우 개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공공기금에서 이러한 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보상을 말한다.
- §124 파산 보상금(8.5)은 파산/지급불능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보상하기 위해 공공기금에서 일시불로 지급되는 보상을 말한다.
- §125 조기퇴직(9)은 구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퇴직을 함으로써 실업자 또는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의 일자리 소개가 촉진되는 고령근로자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지원을 말한다.
- §126 조기퇴직 수당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기준연금제도에서 정한 표준 은퇴연령이 지나서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 §127 조건부 조기퇴직(9.1)은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퇴직자를 대신하여 실업자나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고용촉진 지원을 말한다.
- §128 완전 조건부 조기퇴직(9.1.1)은 고령근로자가 완전히 퇴직하고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는 경우의 조건적 조기퇴직의 사례를 말한다.
- §129 부분적 조건부 조기퇴직(9.1.2)은 고령근로자가 근로시간은 축소하지만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조기퇴직의 사례를 말한다.

§130 무조건부 조기퇴직(9.2)은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고 이러한 퇴직자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지 않는 지원을 말한다.

§131 무조건부 조기퇴직 지원은 산업부문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적인 조치로 야기되는 실업 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해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132 어려운 근로조건(예: 광산업, 어업)에 처한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부문별 조기퇴직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133 완전 무조건부 조기퇴직(9.2.1)은 고령자가 완전히 은퇴를 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化)되는 무조건부 조기퇴직의 경우를 말한다.

§134 부분 무조건부 조기퇴직(9.2.2)은 고령근로자가 근로시간은 축소하지만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무조건부 조기퇴직의 경우를 말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